

연구보고 2011-24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

서문희 이윤진 유해미 송신영 김세현

머 리 말

세계적인 초저출산을 경험하는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다각적인 저출산 대응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확대를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부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였고, 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육아휴직제도 강화, 유연근로시간제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1차 계획의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증가된 부문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의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자 육아휴직, 탄력근무, 보육지원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이 아니면 출산 자체가 어려워진 사회에서 자녀 양육지원은 여성취업률과 출산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이다. 자녀양육 환경의 개선은 결국 여성이 직장에서의 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출산 및 자녀 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저출산 제고 관점에서 육아지원을 포괄적으로 다루었다. 국내외 자녀양육지원 제도와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보육, 가정내 양육지원, 근로자를 위한 양육지원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고, 논의들을 토대로 앞으로 육아지원 내실화를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정책대안은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책은 예산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일과 가정 양립이 보편적 가치인 사회에서 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의 기초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가 균형 잡힌 육아자원정책의 추진으로 출산수준을 제고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2011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이 영

요 약

1. 서론

- 본 연구는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자녀 양육·보육지원의 실태와 요구,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자녀양육 지원의 실태와 요구를 검토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둬.
-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자녀 양육 지원 부분을 검토함.
 - OECD 국가의 가족지원정책, 보육서비스 중심 지원 정책, 사업장 근로 유연성 관련 고용정책과 보육지원 동향을 검토함.
 - 양육 관련 정보 구득 경로를 알아보고, 남편과 조부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어머니의 양육·출산 관련 태도를 파악하고 그 관련성을 분석함.
 -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분석함.
 - 지역사회 영유아와 부모 이용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를 파악함.
 - 취업 부모 자녀 양육 애로사항, 사업장 내 탄력근무 등 유연한 근로 환경과 요구, 근로자 자녀양육지원 시설과 서비스 관련 실태와 요구를 파악함.
 - 위의 논의를 토대로 육아지원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함.
- 연구방법은 다음과 같음.
 - 기초 자료와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함.
 - 전국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 부모 2,003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녀 양육 실태, 정책 수혜 실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함.
 -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함.
 - 부모 17명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함.
 -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로 의견을 수렴함.

2. 연구 배경 및 정책 개요

- 연구의 배경으로 외국 자료를 검토함.
 - OECD 국가 등 외국 연구들은 육아 지원이 여성취업률과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임을 보고함.
 - OECD 국가들의 가족지원 정책은 현금지원, 보육서비스 지원, 조세 지원 등으로 다양하고, 탄력적 근무제도와 짧은 근로시간이 특징임.
-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육아지원정책의 배경과 개요를 검토하고 육아지원의 현황을 파악함.
 -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함.
 - 사업체 육아지원으로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근무유연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직장보육 지원, 가족 친화경영을 추진하지만, 전반적 수준은 미흡함.
 - 지역사회 육아지원으로 파견보육 지원, 오프라인 서비스 기관 운영하는데, 아직 접근성은 부족한 상태임.

3. 자녀양육 환경과 양육태도

- 자녀양육 환경과 양육태도 조사 결과 개요와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육아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충분하다는 응답이 27.3%이며 습득 경로로 육아관련사이트가 37.7%로 가장 많아서 건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육아정보포털 필요성을 나타냄.
 - 남편 양육참여 정도가 평일 남편의 근로시간과 정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 근로시간 감축이 남편 양육참여 확대의 주요한 방안임을 시사함.
 - 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 특히 취업모 자녀양육에서 조부모 지원의 중요성을 나타내었는데 조부모의 건강 등 부담이 커서 조부모 지원이나 대안적 서비스 모색이 필요함을 시사함.
 - 조부모 및 베이비시터에게 아이를 맡기는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적응에 힘들까봐 이외에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

라는 응답이 많아서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필요성을 나타냄.

- 미취업모가 자녀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고,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와 자녀장래가 걱정이라는 문항에서 부정적 정서가 높아서 미취업모 자녀의 보육서비스 지원 필요성을 나타냄.
- 어머니의 자녀양육 태도에는 아버지의 양육 참여와 조부모 양육 지원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 출산 제고와 관련하여 미취학, 취학아동의 기관 이용 비용의 부담이 크게 작용함. 조사 응답자의 79.3%는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취학자녀 교육비 부담이 42.4%로 가장 많고, 미취학자녀 양육비 부담 19.8%이었음.

4. 아동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요구 분석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아동이 월~금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95.5%이고 토요일 매주 이용은 1.1%, 격주 이용은 1.9%로 나타나, 토요일 보육정책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함.
- 자녀가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는 17.4%임. 영아도 25.1%임. 이는 현행 보육서비스가 영유아 자녀를 둔 어머니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연계가 미흡하다는 점을 암시하는 것으로, 보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대한 기본적 성찰과 이에 따른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였음.
- 기관 이용 비용에 대하여 62.5%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전액 지원대상자도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50% 이상임. 이는 상당 부분 특별활동 비용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추가 부담 감소를 위한 조치가 요구됨.
- 설문조사에서 서비스 이용 가능성은 시간제보육 58.2%, 토요일 보육 50.1%,야간보육 37.8%이며 24시간과 휴일보육은 각각 6.8%, 7.6%로 10% 미만으로 산출되어서 취약보육 강화 필요성을 나타냄.
- 가정내 보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나타냄. 취약보육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아이 집에서 도우미가 보는 게 좋다는 비율이 야간보육 30.3%, 토요일 보육 21.1%, 휴일보육 23.4%임.

- 보육시설,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질적 수준 개선 노력은 필요하고, 유치원 접근성 인식은 2009년 조사결과와 유사함.
- 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여부를 모른다는 응답이 비율이 18.3%이고 2.0%는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응답하여 어린이집 정보 공개 필요성을 보임.
- 지원정책에 대하여 잘 안다는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이 보육료·교육비 지원 79.1%이고 이외는 50%대 이하임.
- 각 지원정책별로는 출산수준 제고에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아 기본보육료가 50%대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양육수당은 40%대이며 소득공제는 35.4%로 낮음.
 - 자녀 추가출산 의사에는 영아 대상 지원인 기본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양육수당은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응답자의 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볼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특히 저소득층 여성의 노동권 보장 등의 측면에서 향후 정책방향 모색 시에 신중한 접근을 요함.

5. 부모와 자녀 이용기관 이용과 요구

- 부모와 자녀의 이용기관 이용과 요구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보육정보센터는 서울 및 일부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도에만 설치되어 있어 공급이 부족한 편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접근성이 낮음.
 - 보육정보센터에서 실시하는 5가지 사업의 인지율은 최저가 육아정보나눔터 16.7%이고 최고가 장난감 도서관 28.8%임.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50.8%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영아 종일 돌봄과 공동육아나눔터는 37.0%, 24.7%로 낮음.
 -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부모의 개선요구사항이 보육정보센터 공간 확대 31.5%, 설비 및 교재교구 개선 31.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편사항 역시 장비나 재료 불충분 17.9%, 공간, 환경 미비가 16.4%로 가장 많이 응

답되었음.

-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을 나타냄. 휴일에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중인 어머니의 참여가 어렵고 가족단위의 활동 참여도 어려움.
- 장난감도서관은 보육정보센터 서비스 중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사업이나, 부족한 장비 및 재료 등으로 인해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있음.
- 육아품앗이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즉 인력, 공간, 비용 지원 등이 수반되어야 함을 나타냄.

6. 취업부모 육아 지원과 요구

□ 취업부모 육아지원 실태 분석결과 요약과 정책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 취업 부모 지원의 강화 필요성은 여전한. 자녀의 임신과 출산 후 1년 동안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첫째 25.4%, 둘째 12.6%, 셋째 10.9%임.
- 자녀 양육문제로 재택근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84.5%, 근무시간 조정의 어려움이 58.1%로 조사되어서, 사업장에서 일과 자녀 양육병행 시 탄력적 근무형태로의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 특히, 아이가 아플 때, 기관에서 부모님 오라고 할 때, 늦은 퇴근 또는 예상치 못한 야간 근무 때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음. 일하는 엄마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 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함.
-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은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홍보가 필요함.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와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 공제에 대하여 취업모의 64.4%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음.
- 사업체 중심의 지원제도가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실현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됨.
- 휴직 사업장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37.2%가 눈치가 보여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여,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풍토 개선이 필요함을 나타냈음.
-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보육비

지원이 29.8%로 가장 높았음.

- 보육지원정책 중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66.7%로 가장 높고, 효과적인 제도로도 보육비 지원에 이어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선택한 비율이 높음.

7. 정책 제언

가.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확대를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단기적으로는 연계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하여 하나의 거대한 가상 공간을 구축함.
- 이용시설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각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모와 자녀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함.
- 이용시설은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이 도모되어야 함. 일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야간이나 휴일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배치 등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함.
-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홍보 등으로 부모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능동적 활동이 필요함.
- 양육 수당은 단기적으로는 이용 대상 소득기준은 보육 비용지원 수준과 동일하게 통일하고, 지원 금액은 영아보육에 대한 기본철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 어머니의 경제활동 위축 등 부작용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또한, 아동발달 지원을 고려하여 영아 대상 정책으로 제한하고, 유아로 확대 시에는 보육과 분리하여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함.

- 가정내 보육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함.
 - 공공형 파견보육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제고가 요구됨.
 -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교육, 관리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현행과 같이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의 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함.
 -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이나 파견에 대한 지침서를 적성하여 영리 및 비영리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고려함.
-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이웃탁아모, 조부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임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함.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부모 육아품앗이 활동은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함.
 - 육아품앗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체계적인 대응 능력이 요구됨.
 - 육아품앗이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실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의 홍보 강화가 필요함.
 - 품앗이 사업 활성화 위해 비용 지원, 인력 지원, 공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고, 프로그램 지원은 다양한 접근을 필요로 함.
 - 육아품앗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다양화를 모색함.

나. 아동 보육·교육기관 운영 개선

- 보육시설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이 필요함.
 - 현행 보육서비스는 어머니의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노동시장정책과 유리되어 있으므로 노동정책보다는 부모 양육지원정책으로 정립하는 것이 적절함.
 - 현행 보육 이용 시간은 취업모를 기준으로 12시간 보육에 맞추어져 있기

에 재정립이 필요함. 단기적으로는 이용 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모의 취업여부 등 필요성에 의하여 이용시간에 따른 지원 차등화 고려함. 향후, 이용시간 다양화 이외에 어린이집 평일 운영시간 자체를 현실화하고, 시간연장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함.

- 평일보육을 월~금으로 설정하고 토요일보육을 평일보육보다는 휴일보육 범주에 넣는 것이 적절함.

취약보육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함.

- 시간연장형보육은 거점형 시설로 육성하여 일정 규모를 정하여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역량은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 현재 7시 30분부터 적용되는 시간연장보육은 시작시간을 6시반 정도로 한 시간 정도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고, 현재 교사 연장근무 수당 제도는 이보다는 단시간 보육교사라도 상시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함.
- 시간제 보육도 일반 보육시설에 별도반을 두거나 거점형 시설, 특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임.
- 취업모의 아픈 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별도의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재정 지원이 교사 인건비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고, 평가인증제도와 보육비용 지원을 연계함.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등으로 구체적인 어린이집 정보가 공개되어야 하고, 또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등 정부 정책 홍보도 강화되어야 함.

전액지원에도 불구하고 부모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추가부담이므로, 중기적으로 지원단가 조정과 더불어 충실한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기관의 특별활동 요구를 줄여나가야 함.

다. 취업부모 양육 지원 활성화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확산이 필요함.

-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함.
- 가정친화 기업 등 탄력적 근무제도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근무

형태의 다양화와 유연성을 확대함. 이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여성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함.

□ 육아휴직의 활성화가 요구됨.

-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인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일 이상을 완화하여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수를 줄여나가야 함.
- 육아휴직급여가 2011년부터 통상급여의 40%로 최소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OECD들 다른 나라들의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침.
- 양육을 남녀공동 책임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육아휴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육아휴직기간의 부모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이를 실행하는 사업체 우대 및 지원을 강화함.
- 현재 월 2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장려금과 현재 월 2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수준을 현실화 함.

□ 직장의 보육서비스 지원 확대

- 직장보육 활성화로 기업체 밀집지역 등에 기업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을 모색함.
- 직장보육시설이 이용 아동 부모의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 기금에 의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부분 적용함.
-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 협력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직장에서 담당하여야 할 보육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 영유아 수가 소수이거나 사업장 소재지 특성 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의무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인근 보육시설에의 위탁이나 보육수당 지급 방법으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함.

차 례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4
4. 연구의 제한점	9
II. 연구의 배경	11
1. 육아지원과 여성취업 및 출산율	11
2. 외국의 가족 지원정책 동향	16
3. 선행연구	32
III. 육아지원정책 개요	40
1. 저출산과 육아지원정책	40
2. 사업장 육아지원제도와 실제	45
3. 지역사회 육아지원제도와 실제	55
IV. 자녀양육 환경과 양육태도	62
1. 육아 관련 정보 지원	62
2.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64
3. 자녀양육 태도와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77
4. 소결	91
V. 아동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94
1.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현황	94
2. 취약보육 이용과 수요	105
3. 보육·교육서비스의 수준과 효과	114

4. 비용 지원에 대한 인식	121
5. 소결	140
VI. 부모와 자녀 이용기관 이용과 요구	143
1. 보육정보센터 이용과 요구	143
2.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과 요구	156
3. 소결	161
VII. 취업부모 육아 지원과 요구	164
1. 취업모의 근로 특성	164
2. 일·가정 양립의 애로점	167
3. 사업체 육아지원과 요구	176
4. 소결	186
VIII. 정책제언	188
1.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188
2. 아동 보육·교육기관 운영 개선	194
3.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활성화	199
4. 맺는말	202
참고문헌	204
부록	211
부록 1. 부표	213
부록 2. 영유아 부모 조사표	220
부록 3. 심층면접 질문지	234
부록 4.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조사표	237

표 차례

〈표 I-3-1〉 부모 설문조사 완료수	4
〈표 I-3-2〉 부모 설문조사 내용	5
〈표 I-3-3〉 가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6
〈표 I-3-4〉 보육정보센터 이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7
〈표 I-3-5〉 아동 특성	8
〈표 I-3-6〉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8
〈표 II-1-1〉 국가 단위 가족정책과 출산 관련 연구결과 요약	14
〈표 II-2-1〉 OECD 일부 국가의 출산 및 육아 휴직(2008)	16
〈표 II-2-2〉 OECD 국가의 아버지 휴가제도 현황	17
〈표 II-2-3〉 스웨덴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22
〈표 II-2-4〉 아동1인당 보육 비용과 부모부담	22
〈표 II-2-5〉 프랑스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24
〈표 II-2-6〉 독일 베르린 시 한 자녀 월 차등보육료 사례	26
〈표 II-2-7〉 아동수당과 아동보육수당	29
〈표 II-2-8〉 직업활동 자유선택 보조금	29
〈표 II-2-9〉 연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아동가구 세액공제액: 2011	31
〈표 III-1-1〉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41
〈표 III-1-2〉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11. 4	41
〈표 III-1-3〉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42
〈표 III-1-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부문 분야별 중점과제	43
〈표 III-1-5〉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주요 내용	44
〈표 III-2-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주요 내용	46
〈표 III-2-2〉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법의 변천	46
〈표 III-2-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연도별 지급 실적	46
〈표 III-2-4〉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 2011.3	47
〈표 III-2-5〉 근로형태	47
〈표 III-2-6〉 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활용	48
〈표 III-2-7〉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의무 이행률	51

〈표 III-2- 8〉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51
〈표 III-2- 9〉	가족친화경영 평가항목 중 자녀 양육지원 사항	52
〈표 III-2-10〉	2010 가족친화 점수 결과	53
〈표 III-2-11〉	2010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 이유	53
〈표 III-2-12〉	2010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 성과	54
〈표 III-2-13〉	2010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의 장애요인	54
〈표 III-3- 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2010)	55
〈표 III-3- 2〉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58
〈표 III-3- 3〉	보육료 지원 건수	58
〈표 IV-1- 1〉	육아 관련 지식 및 정보의 충분 여부	62
〈표 IV-1- 2〉	육아 관련 지식 및 조연의 습득 경로	63
〈표 IV-2- 1〉	모 취업여부별 남편의 양육 참여 정도	65
〈표 IV-2- 2〉	모 취업여부별 남편의 근무 시간(평일, 주간) 평균	66
〈표 IV-2- 3〉	남편의 평일 근무시간별 양육 참여 정도	66
〈표 IV-2- 4〉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67
〈표 IV-2- 5〉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영아·유아	68
〈표 IV-2- 6〉	조부모 양육지원 방식	68
〈표 IV-2- 7〉	조부모 양육지원 시 자녀를 맡기는 기간	69
〈표 IV-2- 8〉	조부모의 하루 평균 양육지원 시간	70
〈표 IV-2- 9〉	조부모 양육지원 비용 지불 형태	71
〈표 IV-2-10〉	조부모 양육지원 지불 비용	71
〈표 IV-2-11〉	조부모 양육지원 지불 비용 평균 비교	72
〈표 IV-2-12〉	조부모 양육지원 애로사항 개요	73
〈표 IV-2-13〉	조부모 양육지원 애로 사항: 5점 척도	73
〈표 IV-2-14〉	조부모 양육지원과 타 서비스 중복 이용여부	74
〈표 IV-2-15〉	조부모·베이비시터 양육지원 이유	75
〈표 IV-2-16〉	모 취업으로 인한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76
〈표 IV-2-17〉	모 취업으로 인한 조부모 양육지원 유형: 자녀 출생순위별	77
〈표 IV-3- 1〉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78
〈표 IV-3- 2〉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5점 척도	79
〈표 IV-3- 3〉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	80

〈표 IV-3- 4〉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	81
〈표 IV-3- 5〉 긍정적 모 양육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81
〈표 IV-3- 6〉 부정적 모 양육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82
〈표 IV-3- 7〉 부모의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	83
〈표 IV-3- 8〉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5점 척도	84
〈표 IV-3- 9〉 부정적 모 양육정서에 대한 회귀분석	85
〈표 IV-3-10〉 자녀양육 가치와 방식	86
〈표 IV-3-11〉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87
〈표 IV-3-12〉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 의사 및 계획하는 자녀 수	88
〈표 IV-3-13〉 현 자녀수 및 특성별 추가출산 의사와 계획하는 자녀 수	88
〈표 IV-3-14〉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이유	89
〈표 IV-3-15〉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이유: 자녀수 1명	90
〈표 IV-3-16〉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이유: 자녀수 2명	90
〈표 IV-3-17〉 추가출산 계획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91
〈표 V-1- 1〉 아이가 다니는 기관 유형	95
〈표 V-1- 2〉 아이가 기관에 가는 횟수	96
〈표 V-1- 3〉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97
〈표 V-1- 4〉 아이를 기관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	98
〈표 V-1- 5〉 부모사정으로 평소 이용시간 초과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정도	99
〈표 V-1- 6〉 초과보육시 부모의 가장 빈번한 사정	100
〈표 V-1- 7〉 월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여부 및 지원 금액	101
〈표 V-1- 8〉 연령구분 및 지원여부별 월 추가 납부 비용	102
〈표 V-1- 9〉 제 특성별 월 보육료·유아교육비 및 추가 납부액 차이	102
〈표 V-1-10〉 자녀 연령과 지원여부별 보육·교육비용의 부담 정도	104
〈표 V-1-11〉 특성별 생활수준 대비 매월 보육·교육비용의 부담 정도	104
〈표 V-2- 1〉 보육서비스 필요성: 시간제보육	106
〈표 V-2- 2〉 보육서비스 필요성: 야간보육	107
〈표 V-2- 3〉 보육서비스 필요성 : 24시간보육	108
〈표 V-2- 4〉 보육서비스 필요성: 토요일 보육	109
〈표 V-2- 5〉 보육서비스 필요성: 휴일보육	110
〈표 V-2- 6〉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 사유	111

〈표 V-2- 7〉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	111
〈표 V-2- 8〉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어려움 정도: 4점 척도	112
〈표 V-2- 9〉	취약보육서비스 선호 장소	113
〈표 V-3- 1〉	어린이집 설치 충분성 및 보낼만한 곳 유무	115
〈표 V-3- 2〉	유치원 설치 충분성 및 보낼만한 곳 유무	116
〈표 V-3- 3〉	이용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117
〈표 V-3- 4〉	이용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118
〈표 V-3- 5〉	특성별 이용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119
〈표 V-3- 6〉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가정·부모에게 도움된 부분: 5점 척도 120	
〈표 V-4 1〉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인지 및 수혜 여부	122
〈표 V-4 2〉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인지 및 수혜 여부(2009)	122
〈표 V-4 3〉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보육료·유아교육비	123
〈표 V-4 4〉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영아 기본보육료	124
〈표 V-4 5〉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양육수당(중앙정부)	125
〈표 V-4 6〉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양육수당(지방정부)	126
〈표 V-4 7〉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소득공제	127
〈표 V-4 8〉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만족도	128
〈표 V-4 9〉	정부지원여부별 만족도	129
〈표 V-4-10〉	정부지원 정책 만족도 중다회귀분석 결과	129
〈표 V-4-11〉	정부 지원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130
〈표 V-4-12〉	정부 지원 수혜시 가정경제 도움 정도: 3점 척도	131
〈표 V-4-13〉	정부 지원의 출산 제고 효과	132
〈표 V-4-14〉	정부 지원의 출산 제고 효과: 4점 척도	132
〈표 V-4-15〉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133
〈표 V-4-16〉	취업모를 위한 보육지원 정책 인지	135
〈표 V-4-17〉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의 적절성 및 이유: 입소 우선순위 ..	136
〈표 V-4-18〉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의 적절성 및 이유: 소득공제	137
〈표 V-4-19〉	양육수당 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	138
〈표 V-4-20〉	양육수당의 상향 조정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	138
〈표 V-4-21〉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139
〈표 VI-1- 1〉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 인지 및 이용 경험	143

〈표 VI-1- 2〉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사업 인지	144
〈표 VI-1- 3〉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이용 빈도	145
〈표 VI-1- 4〉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방문 시 이용 수단 및 오는 시간 평균	145
〈표 VI-1- 5〉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이용 이유: 1순위	146
〈표 VI-1- 6〉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이용 이유: 1+2순위	147
〈표 VI-1- 7〉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빈도	148
〈표 VI-1- 8〉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	148
〈표 VI-1- 9〉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1회 이용 시간	149
〈표 VI-1-10〉	연령별 자녀양육에 유용한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1순위 ..	150
〈표 VI-1-11〉	연령별 자녀양육에 유용한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1+2순위	150
〈표 VI-1-12〉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	151
〈표 VI-1-13〉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미이용 이유(중복 응답)	152
〈표 VI-1-14〉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의 육아 도움 정도	152
〈표 VI-1-15〉	지역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의 자녀양육 도움	153
〈표 VI-1-16〉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 빈도	153
〈표 VI-1-17〉	자녀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 목적	154
〈표 VI-1-18〉	자녀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 충분 정도	154
〈표 VI-1-19〉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제공 프로그램의 충분성 인식정도 ..	155
〈표 VI-1-20〉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개선점: 1순위	155
〈표 VI-1-21〉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개선점: 1+2순위	156
〈표 VI-2- 1〉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157
〈표 VI-2- 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 시간제 아이돌보미	157
〈표 VI-2- 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 영아 종일 돌봄	158
〈표 VI-2- 4〉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 공동육아나눔터	158
〈표 VI-2- 5〉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시 자녀양육 도움 정도	159
〈표 VII-1- 1〉	지역별 취업모 종사상 위치	164
〈표 VII-1- 2〉	지역별 취업모 직장 사업체 규모	165
〈표 VII-1- 3〉	지역별 취업모 근로 특성	165

〈표 VII-1- 4〉	지역별 취업모 야근 유형	166
〈표 VII-1- 5〉	지역별 취업모 주말 근무 특성	166
〈표 VII-1- 6〉	지역별 취업모 근로시간 및 급여	167
〈표 VII-2- 1〉	일-가정 양립의 지원과 애로 사항(4점 척도)	168
〈표 VII-2- 2〉	사업체 규모별 지원과 애로정도: 4점 척도	169
〈표 VII-2- 3〉	사업체 규모별 일하며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170	
〈표 VII-2- 4〉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 시 겪는 애로 정도	170
〈표 VII-2- 5〉	지역별 취업모의 기관 이용 시 겪는 애로 정도: 5점 척도 ·171	
〈표 VII-2- 6〉	사업체 규모별 아이가 아플 때 주로 돌봐주는 사람	172
〈표 VII-2- 7〉	사업체 규모별 토요일·휴일보육 필요시 주로 돌봐주는 사람 172	
〈표 VII-2- 8〉	출산·자녀양육을 이유로 일 중단 경험	173
〈표 VII-2- 9〉	출산·자녀양육으로 일 중단 사유	175
〈표 VII-2-10〉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	176
〈표 VII-3- 1〉	사업체 내 자녀양육지원제도 실시 현황	177
〈표 VII-3- 2〉	사업체 규모별 자녀양육지원제도 실시 비율	177
〈표 VII-3- 3〉	사업체 내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178
〈표 VII-3- 4〉	사업체 규모별 직장 내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사용 가능성 ·179	
〈표 VII-3- 5〉	사업체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사용 경험	179
〈표 VII-3- 6〉	사업체 규모별 직장 내 자녀양육지원제도 사용 경험	180
〈표 VII-3- 7〉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유	180
〈표 VII-3- 8〉	직장 자녀양육지원 이용 가능성이 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181	
〈표 VII-3- 9〉	사업체 규모별 직장 자녀양육지원 이용 가능성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	181
〈표 VII-3-10〉	사업체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과 시설 유무 및 수혜 여부 ·182	
〈표 VII-3-11〉	사업체 규모별 직장내 양육 지원 시설 실시와 수혜	183
〈표 VII-3-12〉	혜택 여부(직장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이 있는 경우)183	
〈표 VII-3-13〉	직장어린이집 이용 안하는 이유	183
〈표 VII-3-14〉	직장 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의 자녀 출산 결정에 미친 영향184	
〈표 VII-3-15〉	직장 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185
〈표 VII-3-16〉	직장 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 인식	185

그림 차례

[그림 II-2-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대비 합계 출산율	15
[그림 II-2- 2]	근로자의 휴가적립제도 적용 방법	19
[그림 II-2- 3]	근로시간 조정 방법	20
[그림 II-2- 4]	공식보육서비스 등록률 2008	21
[그림 II-2- 5]	비공식 보육 서비스 이용 비율: 주 단위, 2008 이후	21
[그림 II-2- 6]	GDP 대비 가족지원 지출 비율: 2007	28
[그림 IV-1- 1]	남편의 자녀양육참여 정도(종합)	64
[그림 V-2- 1]	취약보육 서비스별 필요성	105
[그림 V-2- 2]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	112

부표 차례

<부표 II-1- 1>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와 놀아주기	213
<부표 II-1- 2>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 학습 지도	213
<부표 II-1- 3>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 식사 및 옷입기 도와주기	214
<부표 V-2- 1>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시간제보육	214
<부표 V-2- 2>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야간보육	215
<부표 V-2- 3>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오전 연장보육	215
<부표 V-2- 4>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24시간보육	216
<부표 V-2- 5>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토요일보육	216
<부표 V-2- 6>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일요일 및 기타 휴일보육	217
<부표 V-2- 7>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야간보육	217
<부표 V-2- 8>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토요일보육	218
<부표 V-2- 9>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일요일 등 휴일보육	218
<부표 V-2-10>	정부지원금의 출산 제고 효과 정도(4점 척도)	219
<부표 VII-2- 1>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 시 겪는 애로 정도: 5점 척도	219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유래 없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여 OECD 평균 1.6에 크게 미달한다. 인구학적으로 저출산의 요인은 결혼 기피와 만혼이다. 미혼여성의 초혼 연령은 1990년 24.78세, 2000년 26.49세, 2008년 28.32세로 10년마다 평균 2세씩 상승하였다. 만혼화는 가임기간 축소, 가임력 저하 및 임신부와 태아 건강이상을 우려한 임신·출산 기피를 초래한다. 이러한 저출산의 인구학적 요인 외에도 저출산의 구조적, 문화적 원인으로는 경제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가치관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가치관의 변화로 젊은 층의 결혼·출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인식은 현저히 약화되고, 청년층의 취업난 가중 및 비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증가 등 불안정한 고용 여건으로 인해 결혼 및 출산이 지연된다. 노동시장 불안정에 따른 소득불안정의 심화는 과도한 결혼 비용, 교육기간 증가 등 다른 사회적 요인과 맞물려 초혼연령 상승과 25~29세 청년층의 유배우율 감소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기혼자의 출산 기피·지연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비용 및 사교육비 부담 증가 등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과 어머니에 대한 과도한 자녀 책임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다. 육아정책연구소(2010)에 따르면 한 자녀 가계의 양육비는 가구 지출 대비 39.8%, 2인 55.5%, 3인 69.0%이다. 자녀 1인당 출산 후 대학 졸업 시 까지 총 2억 6천만원 소요된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9). 또한 여성의 고학력화 등으로 여성의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가 증가한 반면, 여성이 육아와 직장생활 병행을 할 수 있는 사회문화적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기혼여성에 대한 차별적 관행 등 직장에서의 양성평등 의식 미흡, 시간제 일자리나 근무 유연성 부족 등 기업의 가족친화적 환경 미흡, 세계 최고의 연간 근로시간과 잦은 술자리 등으로 인한 남성의 가정내 육아와 가사분담 부족 등 부정적 요인들이 가정, 기업, 사회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존재한다. 이처럼 일과 가정의 양립이 어려운 환경은 어린 자녀를 둔 젊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을 동시에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출산·육아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현저히 낮아지며, 여성 전반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약 50% 수준으로 OECD(2011b) 평균 61.8%에 미치지 못한다. OECD 국가들에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여성취업률이 높은 국가일수록 출산율도 높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어,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양자의 동시 제고가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높은 실업율과 불안정한 고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출산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부부이인생계부양모델을 지향하여 소득불안정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저출산 극복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임을 말해준다.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워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여 왔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으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특히 영유아 보육·교육지원 확대로 출산 양육에 대한 책임을 사회가 분담하는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산전후 휴가급여 인상, 육아휴직제도, 유연근로시간제 및 가족친화기업 인증제 도입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대한민국정부, 2006).

그러나 제1차 기본계획에 의해 2010년까지 시행된 저출산 대응은 효과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국가 차원에서 보편적 지원이 요구되나,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지원에 한정되어 특히 중산층 전반을 적극적으로 포괄하지 못하였으며, 기업 차원에서 육아휴직·직장보육지원 등 제도적 장치들이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였고, 개별 가정 차원에서 여성에 비해 남성의 양육 책임 및 역할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지역사회 차원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 지원서비스 기관의 접근성과 효용성도 낮은 수준이다(대한민국정부, 2010).

이에 따라 저출산고령사회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였다. 제2차 계획은 1차 계획의 기본적인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증가된 부문을 강조하였다. 무엇보다 출산 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 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의 효과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여 여성의 경력단절을 해소하고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 확대와 육아휴직, 탄력근무, 보육지원 등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육아 지원 내실화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지역사회와 사업장을 위주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개별 가정내에서 양육 책임을 둘러싼 양성평등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가정과 지역사회, 사업장으로 각각 구분하여 육아지원 전반을 포괄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들 각 부문이 각각 분리되어 다루어진 경향이 있으나, 육아지원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이들 각 부문이 연계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각 부분별로 실태를 파악하고 요구도를 분석하여 이들 관계를 종합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우선 개별 가정내 양육 환경과 양육 실태를 파악하고, 보육·교육 기관 서비스 이용 전반과 지역사회내 이용 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 사업장내 육아지원제도와 실태 및 요구를 분석하여 향후 정책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가정, 지역사회에서의 자녀 양육·보육 지원 서비스의 실태와 요구, 그리고 사업장에서의 자녀양육 지원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고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련 정부 정책으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중 자녀 양육 지원 관련 부분을 검토한다.

둘째, OECD 국가를 중심으로 가족 지원 정책, 보육서비스 중심 지원 정책, 사업장 근로 유연성 관련 고용정책과 보육서비스 지원 등 세 가지 관점에서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시사점을 도출한다.

셋째, 양육 관련 정보 구득 경로, 남편과 조부모의 자녀양육 지원 등 가정내 자녀 양육환경과 양육태도 및 출산 관련 의견 관련 태도를 파악하고 남편과 조부모의 자녀양육 지원과 양육 관련 태도와의 관련성을 검토한다.

넷째, 보육·교육기관 이용, 비용 지원 실태와 요구 등을 분석한다. 특히 일하는 부모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취약보육 관련 제도와 이용 실태 및 요구를 파악한다.

다섯째, 지역사회 영유아와 부모 이용기관 이용 실태와 요구를 파악한다.

여섯째, 취업 부모 육아지원과 관련하여 자녀 양육 애로사항, 사업장 내 탄력 근무 등 유연한 근로 환경과 요구,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시설과 서비스 관련 실태와 관련 요구를 파악한다.

일곱째, 위의 논의들을 토대로 육아지원 내실화를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관련 국내외 문헌연구

각 부처 통계 등 관련 기초 자료와 선행연구를 수집·분석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OECD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 등 외국의 영유아 보육·교육, 일·가정 양립 지원 관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및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특히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가 실시한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와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2009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자료 중 영유아 및 초등학교 저학년 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실태, 가정내 돌봄지원 및 요구도를 자료를 이용하여 부모 설문 조사를 보완하였다.

나. 부모 설문조사 실시

1) 가구조사

전국 영유아와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이 있는 부모를 2,000명을 목표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자녀 양육 실태, 정책 수혜 실태, 인식 및 요구도를 파악하였다.

조사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고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의 지역규모별로 조사대상자 수를 40:40:20으로 배분하여 6개 시·도를 표본으로 추출하고 각 시·도에서 아동수를 기준으로 읍·면·동을 선정하였다. 조사는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표 I-3-1참조).

〈표 I-3-1〉 부모 설문조사 완료수

구분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수도권	300	340	114
충청권	168	160	100
전라권	150	161	100
경상권	120	188	101

주요 조사내용은 응답자 및 가구 특성 변수, 자녀 가치 및 태도, 자녀 양육 지원 관련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양육 지원 부분은 ① 가족 및 조부모 돌봄지원, 가정내 가사분담, 지역사회 지원 등을 포함한 자녀양육 환경, ② 보육시설 등 기관에서의 종일, 야간, 24시간 등 보육 서비스 이용 실태와 요구, ③ 사업장에서 출산·육아휴직 및 근로 유연성 관련 실태 및 사업장 보육지원 실태와 요구로 세분하였다(표 I-3-2참조).

〈표 1-3-2〉 부모 설문조사 내용

구분	문항
가구, 부모 특성	- 가구 및 가구원 구성 특성 - 부모의 근로 특성 및 아동 특성
자녀 양육 및 지원	- 자녀 양육 관련 지식 및 정보 습득 경로 - 보육정보센터 등 지원기관 인지 및 이용 - 조부모 자녀양육 지원 및 남편 참여 정도 - 취약보육 지원 필요성, 보육시설 이용 여부 및 이용 가능성 - 자녀 양육 비용 지원 인지, 수혜경험, 효과성 및 만족도 등
미취 아동 보육·교육기관 이용	- 보육·교육기관 이용, 선택 이유, 이용시간 등 제 이용 특성 - 비용 지원 실태, 비용 부담 등 - 기관 이용 만족도 및 효과 - 어머니 자녀양육 애로사항
비공식 보육	- 조부모 자녀 양육 지원 특성 - 비혈연인 양육 지원 특성
초등학교 저학년아동 보육	- 방과 후 기관 이용 -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및 보육프로그램 이용 및 요구
취업모 사업장 일·가정 양립 지원	- 근로자 자녀 양육지원 제도의 운영 및 이용 실태 - 일·가정 양립 애로사항 - 출산 및 양육지원 우선순위

가구 조사 대상자 총 2,003명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 거주자가 약 80%를 차지하며, 가족유형으로는 부부+자녀로 구성된 핵가족이 90%를 넘었다. 부모 특성은, 학력은 부의 경우는 4년제 대졸, 모의 경우는 전문대 졸업과 4년제 대졸 비율이 유사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나며, 직업은 부의 경우는 사무직 종사자와 기능직 종사자의 비율이 높고, 모의 경우는 취업 중이 32.6%이고 주부 비율이 66.8%이었다(표 1-3-3 참조).

가구조사 결과 분석은 교차분석을 통한 가구 특성별 분포상의 차이와 t-검증, F검증을 통해 평균값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고 아버지나 조부모 등 가족의 자녀 양육지원과 어머니의 양육태도 및 추가 출산의사간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3-3〉 가구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2,003)			
지역			가구 소득		
대도시	36.8	(738)	149만원 이하	90.1	(1,805)
중소도시	42.4	(850)	150~199만원	2.1	(42)
읍·면	20.7	(415)	200~249만원	7.2	(144)
가족유형			250~299만원	-	(1)
부부+자녀	90.1	(1,805)	300~349만원	-	(1)
한부모+자녀	2.1	(42)	350~399만원	7.8	(156)
3세대 이상 가족	7.2	(144)	400~449만원	7.4	(148)
(한)조부모+손자녀	-	(1)	450만원 이상	10.1	(203)
친인척+자녀	-	(1)	무응답·비해당	0.1	(3)
기타	0.5	(10)			
부학력			모학력		
고등학교 이하	37.7	(755)	고등학교 이하	45.0	(901)
전문대졸업	20.6	(412)	전문대졸업	24.6	(492)
4년제 대학 졸업	33.8	(678)	4년제 대학 졸업	26.9	(538)
대학원 졸업	5.6	(113)	대학원 졸업	2.8	(57)
무응답·비해당	2.2	(45)	무응답·비해당	0.7	(15)
부직업			모직업		
관리자	3.5	(70)	관리자	0.1	(3)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13.7	(275)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9.9	(199)
사무종사자	23.7	(475)	사무종사자	8.4	(168)
서비스 종사자	9.6	(193)	서비스 종사자	5.3	(106)
판매직 종사자	9.1	(183)	판매직 종사자	4.2	(85)
농·임·어업숙련종사자	0.3	(7)	농·임·어업숙련종사자	0.0	(1)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16.2	(324)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0.8	(16)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12.9	(258)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0.9	(19)
단순노무 종사자	5.2	(105)	단순노무 종사자	2.6	(53)
기타	0.7	(14)	기타	0.1	(2)
무직(학생, 주부, 군인 포함)	2.9	(58)	무직(학생, 주부, 군인 포함)	66.8	(1,338)
무응답·비해당	2.0	(41)	무응답·비해당	0.6	(13)

2)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조사

지역사회 이용시설 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 시·도 및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오프라인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면접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 1-3-4〉 보육정보센터 이용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단위: %(명)

구분	계	(수)	구분	계	(수)
전체	100.0	(1,110)			
지역			가족유형		
중앙	2.2	(24)	부부+자녀	93.8	(1,041)
서울	43.4	(482)	한부모+자녀	0.8	(9)
인천	5.3	(59)	부부+자녀+조부모	3.2	(36)
경기	27.6	(306)	한부모+자녀+조부모	0.3	(2)
강원	1.5	(17)	기타	0.2	(3)
충청	6.3	(70)	무응답	1.7	(19)
경상	9.5	(105)	월평균 가구소득		
전라	3.9	(43)	200만원 이하	7.4	(82)
무응답	0.4	(4)	200~300만원 미만	26.5	(294)
			300~400만원 미만	39.1	(434)
			400~500만원 미만	19.8	(220)
			500만원 이상	5.9	(65)
			무응답	1.4	(15)
부연령			모연령		
20대	2.0	(22)	20대	7.0	(78)
30대	59.2	(657)	30대	70.5	(783)
40대	25.3	(281)	40대	18.7	(208)
50대	1.1	(12)	50대	0.6	(7)
무응답·비해당	12.4	(138)	무응답·비해당	3.1	(34)
부직업			모직업		
사무직	55.2	(612)	사무직	10.1	(112)
전문직	10.2	(113)	전문직	6.0	(67)
기술직	9.3	(103)	기술직	0.1	(1)
자영업	12.1	(134)	자영업	2.0	(22)
일용직	0.3	(3)	일용직	0.6	(7)
무직	-	-	무직	0.1	(1)
학생	-	-	학생	0.2	(2)
주부	0.4	(4)	주부	77.7	(862)
기타	0.3	(3)	기타	0.2	(2)
무응답·비해당	12.4	(138)	무응답·비해당	3.1	(34)
부학력			모학력		
고졸 이하	7.1	(79)	고졸 이하	18.3	(203)
대졸(전문대 포함)	76.5	(849)	대졸(전문대 포함)	74.2	(824)
대학원 졸업	4.0	(44)	대학원 졸업	4.4	(49)
무응답·비해당	12.4	(138)	무응답·비해당	3.1	(34)

조사 문항은 서비스 이용과 만족, 요구 사항으로 구성하였다(부록 4 참조).
 조사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총 1,110명은 서울 지역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비

율이 43.4%이고 경기 지역이 27.6%이다. 이들의 가족유형으로는 가구 조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핵가족 가구가 93.8%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부모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대체로 20~30대 비율이 가장 높고, 직업은 부는 사무직이 55.2%, 모는 주부가 77.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이외 부모 학력은 전문대 이상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표 1-3-4 참조).

응답 대상 가구의 막내 자녀 연령은 만 1세 비율이 23.3%로 가장 높고, 만6세 이상을 제외한 이외의 연령대에서 대체로 12%~17%로 유사한 수준이었다(표 1-3-5 참조).

〈표 1-3-5〉 아동 특성

구분	단위: 명, %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만 5세	만 6세 이상	무응답
수	150	259	184	151	171	129	50	16
비율	13.5	23.3	16.6	13.6	15.4	11.6	4.5	1.4

다. 집단 심층면접

설문조사 대상 부모 중 17명을 선별하여 자녀 양육 관련 실태와 육아지원서비스 이용 및 욕구에 대한 집단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표 1-3-6〉 심층면접 대상자 일반적 특성

지역	번호	모 연령	자녀 연령(이용기관)	근로시간	근로형태
인천	1	30	7세(유치원), 9세(초등학교)		
	2	37	6세(유치원), 8세(초등학교)		
	3	31	4세(어린이집), 6세(유치원)		
	4	31	3세(어린이집), 4세(어린이집)		
대전	5	41	7세(어린이집), 9세(초등학교)		
	6	38	4세(어린이집)		
	7	39	6세(어린이집), 8세(초등학교)		
전주	8	33	3세(어린이집)		
	9	36	1세(미이용), 3세(어린이집)		
	10	36	1세(어린이집), 3세(어린이집)		

(표 I-3-6 계속)

지역	번호	모 연령	자녀 연령(이용기관)	근로시간	근로형태
취업모	인천	1	2세(미이용, 조부모), 13세(초등학교)	반일제	비정규직
		2	4세(어린이집)	전일제	비정규직
대전		3	5세(어린이집), 11세(초등학교)	전일제	정규직
		4	1세(미이용, 조부모), 3세(미이용, 조부모), 5세(어린이집)	전일제	정규직
전주		5	2세(어린이집), 4세(유치원)	전일제	정규직
		6	4세(어린이집), 7세(어린이집)	전일제	정규직
		7	2세(어린이집), 4세(어린이집)	전일제	정규직

이를 통해 설문조사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구체적이고 미시적 문제나 요구를 파악하고자 하였다(부록 3 참조). 심층면접 대상은 취업모와 경력단절자를 포함한 미취업 모로 구분하였으며, 3개 지역에서 총 6회에 걸쳐 실시하였다(표 I-3-6 참조).

라. 간담회 및 자문회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연구 범위 및 방향, 조사 방법과 정책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육아지원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정, 지역사회 및 사업장에서의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및 수혜 현황을 검토하고 부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데 중점을 둔다.

본 연구는 단 년도 연구이지만 향후 4년간 동일한 저출산과 일·가정 양립 관련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연구할 예정이다. 본 연구는 향후 각 정책 대상 및 영역별로 심도 있는 후속 연구를 위한 기초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본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첫째는 광범위한 연구 범주를 포괄적으로 접근함에 따라 거의 대부분의 유아지원 다양한 정책을 다루어야 하므로 각 주제를 심도 있게 다루는 데 한계가 있었다. 둘째는 조사 자료의 대표성 한계이다. 본 연구

의 기초자료가 되는 부모조사는 여러가지 제약으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으로
층화하되 모든 시·도를 포함하지 못하고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표본을
추출하여 추진되었기 때문에 조사 자료가 통계로 전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II. 연구의 배경

1. 육아지원과 여성취업 및 출산율

제1절에서는 OECD 국가 등 외국 사례에 관한 기존 연구를 검토하여 육아지원정책이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한다.

가. 육아지원과 여성취업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보육서비스 등 양육지원정책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율간의 관계는 일관되지 않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연구에서는 양육지원정책 수준과 여성의 취업률은 대체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반면에 자녀 유무와 자녀 수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경향이 있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공급은 여성취업률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많은 연구들이 이러한 경제학적 이론을 증명하였다. 이는 두 가지로 설명된다. 첫째는 보육서비스의 공급으로 여성이 가정 내에 부여하여야 하는 가치가 감소됨을 의미하고, 둘째는 여성근로자에게 보육비용이 조세와 같은 영향을 가지므로 이 비용이 증가하면 소득이 낮아지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갖기 때문에 시장 노동 선호도를 약화시킨다(Meyer. et al., 1999)는 것이다. 즉, 자녀 양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기혼여성의 노동공급에 중대한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다. Cleveland 등(1996)에 의하면 보육비용이 영유아 부모의 노동 공급을 줄이고 보육서비스 구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다. 공보육시설이나 재정 지원이 취약한 국가들에서 이러한 현상은 두드러지는데, 시장 보육서비스가 보편화 된 캐나다의 경우 보육비용이 10% 증가되면 고용은 3.9%, 보육서비스 구매는 11%가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가정에서 대안이 있는 경우 외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 시간제 취업 등으로 수입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것이 다시 보육서비스 미 이용으로 이어진다고 하겠다. 접근성 높은 보육시설의 공급과 보육료 혹은 소득 지원 등 현금지원이 기혼여성의 노동 공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영유아 정책은 노동참여뿐 아니라, 근로시간, 임금, 직업상 지위 등에도 영향을 준다(Cleveland & Krashinsky, 2003).

국가를 단위로 한 연구들을 보면, Immervoll & Barber(2005)는 OECD 국가들의 3세 미만아를 둔 여성의 취업률과 3세 미만아의 보육등록률을 이용한 단순 회귀분석에서 영아 보육 등록률은 출산율에 대하여 16%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자는 이 둘의 관계를 양방향으로 추정하였다. 여성취업이 증가하면 영아 보육시설 이용이 증가하고, 또한 여성취업이 증가하면 보육이용 영아가 증가한다는 것이다. Del Boca(2002)도 이탈리아의 저출산과 낮은 여성 취업률 원인을 보육에 대한 재정 지원의 취약성에서 찾고 보육이 탄력적 근무와 더불어 출산과 여성취업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Meyers와 Gornick(2003)은 Esping-Anderson의 세 가지 복지국가 유형¹⁾을 적용하여 ECEC의 사회화 정도와 모성 취업간의 관계를 분석하여,²⁾ 사회적 지원이 미약한 나라에서는 자녀가 어머니의 취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는 여성이 자녀 양육 부담으로 취업과 퇴출이 용이한 서비스나 판매업종에서 시간제 근로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육아휴직이 여성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되고 있지 않다. 단기적으로는 육아휴직이 여성의 경력 단절 등 근로 유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장기 휴가가 취업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일정하지 않다(Meyer. et al., 1999). 그러나 Ruhm(1998)은 유럽의 9개 국가의 1969~93년간 자료를 분석하여 부모휴가, 육아휴직 기간이 여성 취업률을 증가시킨다고 발표하고, 이는 육아휴직 기간 증가가 수당지급 유무에 관계없이 25~54세까지의 여성의 취업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70년대에 자료 분석 결과와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2) 출산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현금 지원, 육아 휴직, 보육 지원 등 가족지원 요인이 출산율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들이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여준다.

<표 II-1-1>은 OECD 국가를 단위로 출산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두고 현금

- 1) Esping-Anderson(2002)은 '탈 상품화'에 대한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독립적 가구 구성권 개념 미포함(Orloff) 등 여성주의 관점의 비판을 수용하여 '탈가족화' 개념을 제시하고 측정기준으로 보육서비스, 아동수당, 모·부성 휴가를 제시하였으나 유급노동에의 접근권과 3개 지표의 이질성 등의 비판은 여전히 있음.
- 2) 취업에 있어서 예상되는 퍼센트 포인트 감소(penalty)는 어린 자녀를 둔 기혼모들 가운데 결혼 상태, 자녀 수, 엄마의 나이와 교육 정도, 기타 가계 수입 등의 요인들을 감안하여 산출한 것임.

지원, 출산 및 육아 휴직 관련 요인, 아동 보육 관련 변수의 연행을 분석한 연구결과들이다. 이들의 연구 방법들이 상호 상이하기는 하지만 대체적 경향은 나타내고 있다. 이에 의하면 먼저 현금 지원 연구는 D'Addio and Mira d'Ercole(2005)와 Luci & Thévenon(2011) 연구는 10%의 소득 증가가 0.02의 출산 수준 제고를 가져온다고 한 반면에 Kalwij(2010) 연구에서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OECD, 2011).

개별 국가 연구로 미국에서는 조세감면이 가족 규모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Whittington et al., 1992, D'Addio & D'Ercole, 2005 재인용). 프랑스의 경우는 1994년 수당 개혁이 아동 양육비용의 25%를 감소시켜 둘째아 출산을 11% 늘이고 셋째아 출산을 2% 감소시켜 총 5%의 출산 증가 효과를 낳은 것으로 보고하였다(Laroque & Salanie, 2004, D'Addio & D'Ercole, 2005 재인용).

휴가 요인 역시 상반된 결과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휴가 기간과 소득대체는 임신 촉진 요인으로 작용한다. 휴가 기간은 Gauthier and Hatzius(1997)와 Luci & Thévenon(2011)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긍정 관계를 나타내는 국가 사례로 노르웨이와 핀란드의 경우 휴가의 연장이 출산에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하였다(Rosen, 2004, D'Addio & Mira d'Ercole, 2005 재인용). 아동 1인당 총 휴가 급여도 두 연구에서 긍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출산 휴가에 대한 소득대체비율 역시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이 함께 보고되었다.

근로와 관련하여서도 연구마다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는 않으나 Luci & Thévenon(2011)은 장시간 근무, 주말 근무는 출산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반대로 몇 연구는 시간제 고용은 특히 고학력자에게서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함을 보고하였다(D'Addio & Mira d'Ercole, 2005)

보육과 관련하여, Sleebos(2003)는 기존 문헌을 검토하고 각 연구들이 연구방법과 육아 관련 정책의 범주 차이로 상반되는 결과를 내었으나, 대체로 출산과 약간 긍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Sleebos(2003)는 OECD 국가들의 1998년 출산율과 1995~2000년의 보육 등록률을 이용하여 3세미만의 영아 보육 이용 가능성이 출산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단순 회귀분석하여 회귀계수를 0.01로 산출하고 설명력을 43%로 추정하였다. 또한 1998년 자료에서는 현금 급여는 출산수준에 대하여 7%의 설명력을, 일과 가족의 조화로운 정책은 27%의 설명력을 갖는다고 보고하여 출산수준 제고 정책으로 영아를 위한 공보육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임을 나타내었다. Luci & Thévenon(2011)는 보육 등록률이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하였다.

〈표 II-1-1〉 국가 단위 가족정책과 출산 관련 연구결과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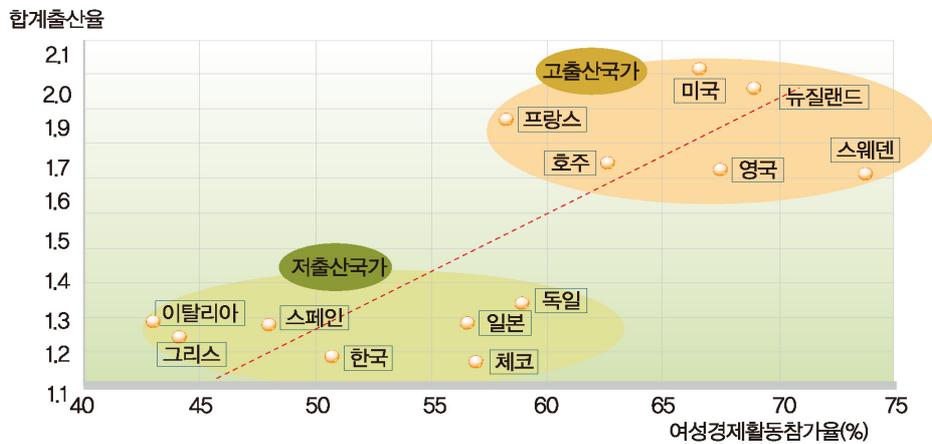
구분	설명된 변수	현금 지원	휴직			아동보육 지원		국가, 기간, 방법론
			기간	출산 휴가 소득 대체율	아동 1인당 지출 (모든 휴가 포함)	아동 1인당 사용 여부	등록률	
Gauthier and Hatzius (1997)	총 출산율	긍정	긍정적, 통계학적으로 미미	부정적, 통계학적으로 미미	-	-	-	- 22개 OECD 국가 - 1970-1990 패널 자료
Adsera (2004)	총 출산율	-	긍정	-	-	-	-	- 28개 OECD 국가 - 1960-1997 패널 자료
D'Addio and Mira d'Ercole (2005)	총 출산율	긍정	부정	긍정	-	-	-	- 16개 OECD 국가 - 1980-1999 패널 자료
Hilgeman and Butts (2009)	18~45세 가임기 여성	-	부정	유의하지 않음	-	-	긍정	- 20개국 1995-2000 유럽 또는 세계가치조사 횡단 다중단계 접근법
Kalwij (2010)	출산 시기	효과 없음	포함되지 않음	-	긍정	효과 없음	포함되지 않음	- 16개 유럽국가 2004 유럽사회 조사의 유럽인 출산기록 자료 분석 정보
	가족 규모	효과 없음			유의한 영향 없음	긍정		
Luci & Thévenon (2011)	합계출산율 (TFR)	긍정	긍정	-	긍정	유의하지 않음	긍정	- OECD 국가 - 1982-2007 패널 자료

자료: OECD(2011a). Doing Better for Families.

D'Addio & Mira d'Ercole(2005)은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첫째, 보육 시설, 특히 공보육시설의 이용 가능성이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출산과 일의

조화를 돕는 강력한 도구이며, 둘째 육아휴가 기간과 소득 보전이 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주며, 셋째, 육아에 대한 재정 지원이 제한적이지만 출산 수준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출산율과 여성취업률에 관해서는 상호 부적 관계를 보이던 1980년대와는 달리 1990년 이후 출산 수준이 높은 국가가 여성취업률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참조 II-2-1).



자료: 보건복지부(2010). 저출산고령사회 제2차 기본계획

[그림 II-2-1] 여성경제활동참가율 대비 합계 출산율

따라서 이러한 정책들이 조화를 이루는 국가들은 여성취업률과 출산율이 모두 높다는 것이다. D'Addio & Mira d'Ercole(2005)는 우리나라에 대하여 이러한 세 가지 정책요인을 잘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한다면 출산율이 2.5까지도 증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숙희 등(2006)이 OECD 20개국 자료를 분석하여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남성 일자리 우선권, 파트타임 근로자 중 여성의 비율 등으로 측정된 양성평등 환경조성 정도가 가장 중요하고, 다음이 자녀 비용 경감, 보육환경 개선 순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이들 요인을 개선할 경우 출산 수준이 1.5까지 상승이 가능한 것이 주장하였다.

2. 외국의 가족 지원정책 동향

제2절에서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가족지원정책의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휴가 및 휴직

1) 개요

외국은 출산휴가가 육아휴직과 연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미국을 제외하고 OECD국가들의 출산휴가 기간은 2008년 평균 19주이다. 미국에는 12주까지 가능하고 호주는 52주의 육아휴직 중 단지 6주를 출산휴가에 할애한다. 약 1/3 국가가 소득 대체율이 거의 100%이다. 미국은 중앙정부 법으로는 유급 출산휴가를 제정하지 않았으나 각 주에서 프로그램으로 출산휴가를 지원한다.

〈표 II-2-1〉 OECD 일부 국가의 출산 및 육아 휴직(2008)

구분	출산휴가			육아휴직					총 100% 소득 대체 기간	여성 휴가 (직) 최대 기간
	기간	소득 대체 율	100% 대체 기간	연장 가능 기간	여성 휴직 기간	수당 비율	100% 소득 대체 기간	무급 기간		
	(1)	(2)	(3)	(7)	(8)	(9)	(10)	(11)	(3)+ (10)	(1)+(8) or (7)
호주	6.0	0.0	0.0	52.0	46.0	0.0	0.0	52.0	0.0	52.0
벨기에	15.0	76.9	11.5	13.0		21.8	2.8	10.2	14.4	15.0
캐나다	17.0	48.5	8.3	35.0		55.0	19.3	15.8	27.5	35.0
덴마크	18.0	50.4	9.1	46.0		50.4	23.2	22.8	32.3	46.0
핀란드	18.0	65.9	11.9	143.5	138.5	16.6	23.8	119.7	35.7	156.5
프랑스	16.0	100.0	16.0	146.0	143.0	19.0	27.8	118.2	43.8	159.0
독일	14.0	100.0	14.0	148.0	148.0	27.5	40.6	107.4	54.6	162.0
이탈리아	20.0	80.0	16.0	26.0		30.0	7.8	18.2	23.8	26.0
일본	14.0	60.0	8.4	44.0	44.0	70.9	31.2	12.8	39.6	58.0
한국	12.8	100.0	12.8	45.6		21.2	9.7	35.9	22.5	45.6
노르웨이	9.0	80.0	7.2	91.0		34.7	31.6	59.4	38.8	91.0
스웨덴	8.5	80.0	6.8	51.4		60.0	30.9	20.6	37.7	51.4
영국	52.0	24.6	12.8	13.0		0.0	0.0	13.0	12.8	52.0
미국	12.0	0.0	0.0			0.0	12.0

자료: OECD(2011c). Family Database

육아휴직 기간은 국가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인다. 미국은 제도가 없다가 하면 핀란드, 프랑스, 독일은 140주 이상을 허용한다. 17세기 초기 이전에 제도를 도입한 국가들은 대체로 2년 넘는 기간을 주고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2007년에 제도를 개선하면서 그 기간을 1년으로 줄였다.

소득 대체는 호주, 미국은 무급이며 OECD 국가 중 프랑스 등 12개 국가는 전액을 지급하고 14개 국가는 유급과 무급을 혼합하는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부모 휴가급여 비율은 대체로 출산휴가 급여보다 낮다.

휴직 적용 아동 연령은 상한선을 안 두는 국가들이 상당수이지만 상한 연령을 둘 경우에 3세가 가장 많고, 덴마크는 4세, 벨기에 포르투갈이 6세, 스웨덴, 네델란드가 8세까지로 정하고 있다(표 II-2-1 참조).

여러 나라들이 휴직을 남녀가 동일하게 사용하게 하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그 방식은 일정한 기간을 부부가 나누어 사용하는 가족 권한 방식, 다른 한쪽으로 이전할 수 있는 개인 권한 방식, 이전이 불가능한 개별 방식으로 구분된다. 육아휴직제도 중 아버지 할당제를 시행 중인 국가는 주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등 양성평등 수준이 높은 북유럽국가들이었다. 덴마크를 제외한 노르딕 국가들에서 아버지 휴가가 길며 소득대체율은 80%를 넘는다(표 II-2-2 참조). 그러나 최근 들어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륙 유럽국가들에서도 제도 도입이 이루어는 경향을 보이는데, 대표적인 예로는 2007년 독일 등을 들 수 있다.

〈표 II-2-2〉 OECD 국가의 아버지 휴가제도 현황

단위 : 주, %

구분	아버지 휴가기간	소득대체율	100% 대체기간
벨기에	1.4	87.4	1.2
덴마크	2.0	50.4	1.0
핀란드	7.0	70.0	4.9
프랑스	2.0	100.0	2.0
독일	17.3	67.0	11.6
한국	0.4	100.0	0.4
노르웨이	10.0	80.0	8.0
스웨덴	10.0	80.0	8.0
영국	2.0	4.7	0.1

자료: OECD(2011c). Family Database.

또한 많은 국가들에서 아픈 자녀를 돌보기 위한 단기 휴가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스웨덴, 이탈리아 등에서는 이의 사용이 보편화 되어 있다.

2) 독일 사례

2000년대 후반에 육아휴직제도를 개혁한 사례로는 독일을 들 수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양육을 선호하는 저출산 국가로 일 년에 대략적으로 40만명의 여성이 부모휴직(Elternzeit)을 하고 그 절반 정도가 직장으로 돌아온다고 한다. 독일은 2007년에 정액급여를 임금비례방식으로 전환하고 아버지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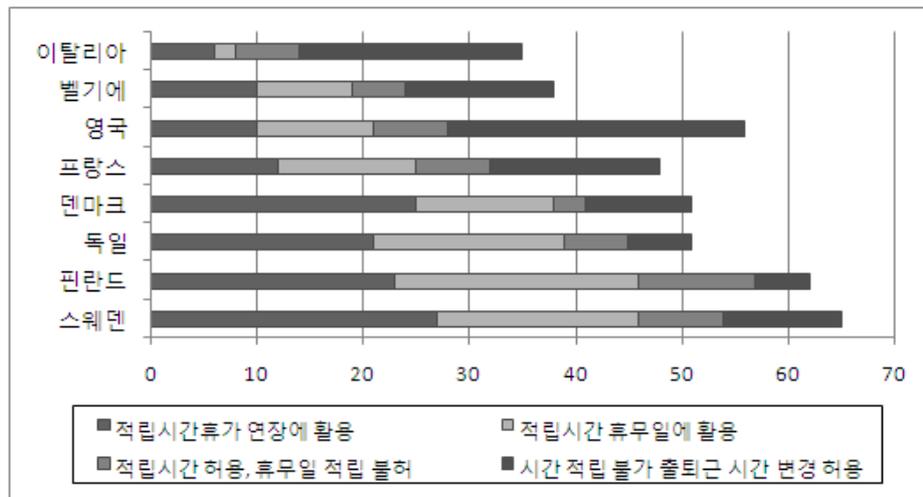
독일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에 관한 법률(Gesetz zum Elterngeld und zur Elternzeit; BEEG)에 의하면 독일의 육아휴직은 자녀 연령 3세까지 최대 3년이 가능하지만 유급 수급기간은 12개월이다. 단 부모 양쪽이 양육휴직기간을 사용한 경우에는 한 명에게 2개월치를 연장 수급한다. 즉, 8주간의 아버지 할당제가 도입된 것이다. 아버지 할당제는 기민당(CDU)과 기사련(CSU) 그리고 사민당(SPD)의 대연정을 통해 “아이들에게 엄마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버지 또한 필요하다(Kinder brauchen Mütter, Kinder brauchen aber auch Väter)”는 모토 아래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한 결과이다(석종석, 2007).

수당 산정방법은 근로자의 세금공제 후 실질소득에 따라 정해지는데, 평균적인 소득자의 경우에는 출산 전 실질소득의 67%로 계산한다. 금액은 상한액은 1,800유로이며 최저수당은 300유로이다. 수급자격은 만 3살 이하의 아이를 가진 부모이다. 단 고용주의 동의하에 만3세가 도달한 이후 12개월 내 신청이 가능하다. 만8세가 경과하면 어떤 이유로건 신청이 불가하다. 남녀로 가족을 이루지 않은 개별 남(男)혹은 여(女)의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3세 미만인 자녀가 2명 또는 6세 미만인 자녀가 3명인 부모를 위해 다자녀보너스제도와 쌍둥이 이상을 출산한 부모를 위한 쌍둥이수당제도가 있다(석종석, 2007).

육아휴직 수당 수급자 통계는 2007년 8월 기준으로 수급자 수는 약 200,000명이며, 육아휴직수당 금액별 통계는 300유로 108,000명, 500~1,000유로 약 50,000명, 1,800유로 18,000명이다. 육아휴직수당 수급자 중 남성 비율은 약 8.5%이다. 2006년 양육휴직 남성비율은 3.5%이었다.

나. 근로 유연성

OECD 가족데이터베이스는 국가별 근로시간의 유연성으로 적립 시간을 휴가 연장에 활용, 적립 시간을 휴무일에 활용, 적립 시간을 허용하되 휴무일 적립 불허, 시간 적립 불가하고 출퇴근 시간 변경 허용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비율을 제시하고 있다(그림 II-2-2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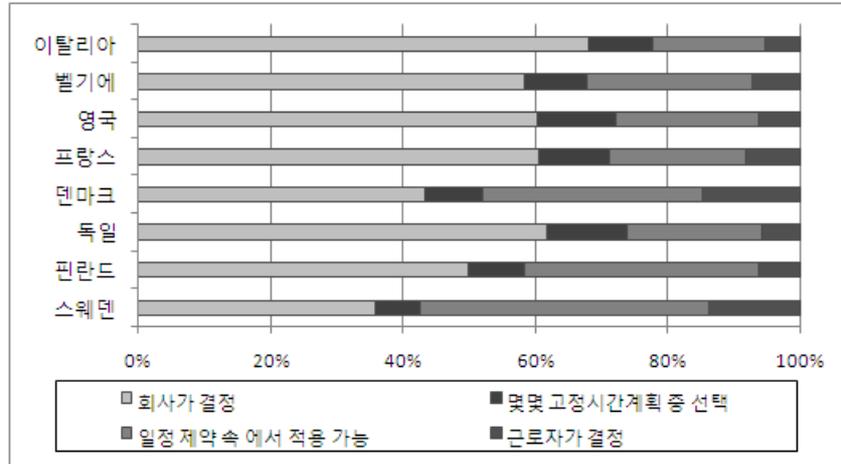


자료: OECD(2011c). Family Database.

[그림 II-2-2] 근로자의 휴가적립제도 적용 방법

전체적으로 사업장내 이들 제도의 시행율은 스웨덴이 60% 이상이고, 핀란드, 영국이 적용 비율이 높으며 이탈리아가 35% 수준으로 낮은 국가에 속한다. 내용으로 보면 핀란드, 덴마크, 스웨덴 중 노르딕 국가들은 근로시간을 적립하여 휴가 연장이나 휴무일에 사용 가능하다는 비율이 높고, 영국은 근로시간 탄력 적용 비율이 높고 근로시간 적립 비율은 낮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그림 II-2-3>은 국가별로 근로시간을 누가 정하는 지를 회사나 고용주 결정, 몇몇 고정 시간 중 선택, 일정 제약 속에서 근로자 선택 가능, 근로자 결정으로 나누어 제시한 것이다. 이에 의하면 회사가 근무시간을 결정한다는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웨덴으로 36%이고 덴마크는 43% 수준이다. 스웨덴은 근로자가 결정한다는 비율이 14%이고, 43.7%인 다수가 일정한 제한을 두고 범주 안에서 근로자가 결정할 수 있다.



자료: OECD(2011c). Family Database.

[그림 11-2-3] 근로시간 조정 방법

다. 보육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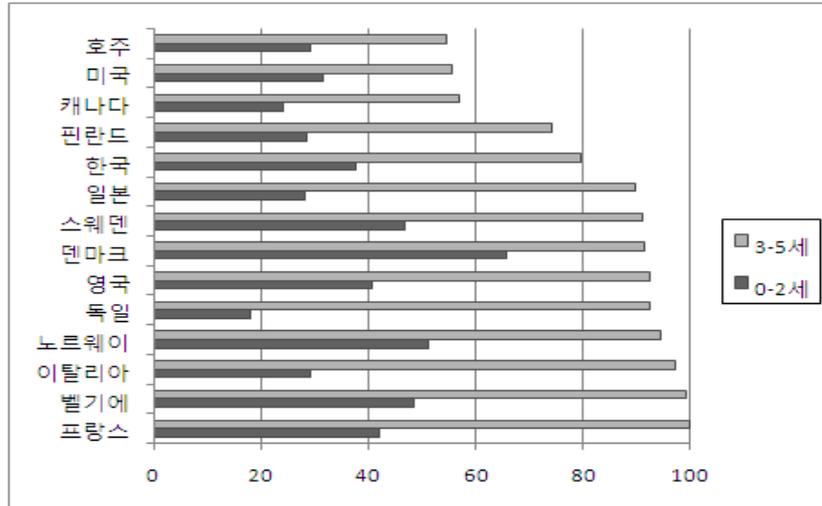
1) 개요

<그림 11-2-4>는 2008년 기준 공식적 보육서비스 이용률을 나타낸다. 유아는 많은 국가에서 공식보육서비스 이용률이 80%를 넘고, 영아는 독일을 제외하고는 20%를 넘는다. 조기교육 욕구가 증대하면서 보육에서 교육적 요인이 강화되고는 있으나 영아의 공공보육서비스 이용은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조부모 등의 비공식적 보호(Informal care)도 일·가정 양립의 중요한 자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관 이용률이 높은 노르딕 국가의 비공식적 보호 비율은 낮은 반면에 기관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영국이나 이탈리아 등에서는 비공식 보호 서비스 이용 비율이 높다(그림 11-2-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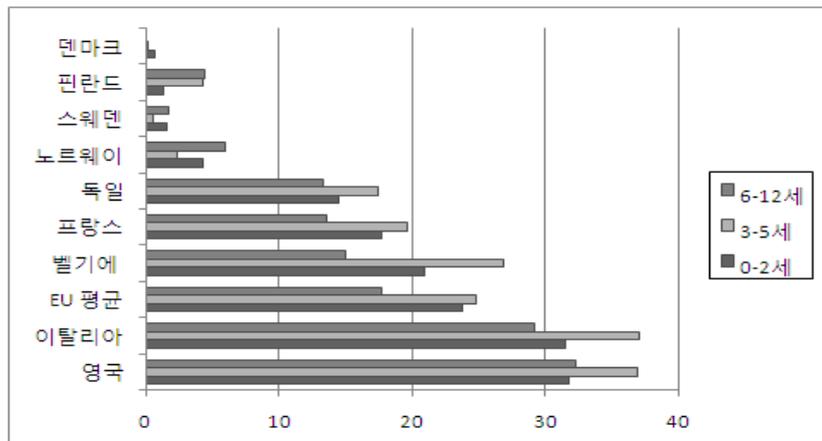
한편 방과후 돌봄 지원은 호주, 덴마크, 스웨덴 등에서는 공급이 충분하여 이용하기 쉬우나 나머지 나라들은 발전 단계에는 있으나 아직 충분하지 않다.

보육 공급자 보조금이나 부모 보조금이 어린 자녀를 둔 부모의 취업의 어려움을 축소시키고 있다. 여러 국가가 대체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조세제도를 통해 고소득 집단도 지원한다.



자료: OECD(2011c). Family Database.

[그림 II-2-4] 공식보육서비스 등록률 2008



자료: OECD(2011c). Family Database.

[그림 II-2-5] 비공식 보육 서비스 이용 비율: 주 단위, 2008 이후

보육비용 지원은 정부가 직접 공공시설을 지어서 운영하면서 시설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과 민간이 투자한 시설에 부모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 있는데, 이 둘은 대부분 대체 관계이다. 스웨덴을 비롯한 노르딕 국가들은 공공

시설을 운영하면서 저렴한 비용을 부모에게 수납하고, 공급이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영미국가들은 대부분 부모보조금으로 지원한다.

2) 외국 사례

가) 스웨덴

스웨덴은 공공시설과 시설보조금을 중심으로 지원하며, 영유아는 가구 평균 소득의 3%를 보육료 상한선으로 설정하고 있다. 출생순위에 따라 영유아는 첫째아는 최대 3%, 둘째아는 2%, 셋째 자녀 1%, 넷째 이상은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방과후 보육은 첫째아는 최대 2%, 둘째아와 셋째 자녀는 1%, 넷째 이상은 무료이다(표 II-2-3 참조).

아동 1인당 보육비용은 유아원은 미 16,200불이다. 이중 부모는 8%를 부담한다.

〈표 II-2-3〉 스웨덴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출생순위	영유아			방과후		
	소득대비 비율	스웨덴 크로네	미 달러	소득대비 비율	스웨덴 크로네	미 달러
1	3	1260	195	2	804	130
2	2	804	130	1	402	65
3	1	402	65	1	402	65
4+	-	-	-	-	-	-

단위 : €

자료: Minister for Education(2007). The politics of preschool: Intentions and decisions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wedish pre-school.

〈표 II-2-4〉 아동1인당 보육비용과 부모부담

구분	스웨덴 크로네	미 달러	부모 부담
유아원	105,000	16,200	8
가정보육	84,300	12,600	10
방과후	32,400	4,900	16
전체	72,500	11,200	10

자료: Minister for Education(2007). The politics of preschool: Intentions and decisions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wedish pre-school.

나) 영국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 만5세인 영국도 2010년 하반기부터 3, 4세 유아는 연간

38주 동안 주당 15시간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외 보육료는 근로세액공제(The Working Tax Credit (Entitlement and Maximum Rate) Regulations 2002, Reg. 20 and Schedule)를 통하여 2011-12년 한 자녀는 최대 주당 175파운드, 두 자녀 이상은 주당 300파운드를 상한선으로 최대 70%까지 지원한다. 이는 최대 80%에서 축소된 비율이다.

한편 기업이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고용 취업보육수당, 보육비, 교육비 지원을 장려하였는데, 이는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 기준에 포함된다. 두 번째는 2005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고용주가 보육 바우처, 계약에 의한 위탁 보육, 사업장에 유아원을 설치·운영하여 근로자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경우에 그 비용을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기준에서 제외하는 제도이다. 근로자의 조세 부담과 보험금 부담을 감소시켜 그만큼을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2006년 조사 결과 2.5%의 기업이 근로자의 보육 지원제도를 채택하여, 아동을 가진 해당 근로자의 36%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근로자의 약 8%에 해당된다(HM Revenue & Customs, 2006). 또한 2008년 부모조사에서는 보육료 지원을 받은 부모의 28%, 전체 서비스 이용가구의 7%가 고용주로부터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DfCSF, 2009).

세제와 연동된 고용주의 지원제도 중 16세 이하 자녀에게 적용가능한 보육 바우처는 예비세금감면(pre-tax deduction)의 일종으로 조세정책을 통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일하는 부모가 보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의 하나이다.³⁾ 고용인과 고용주가 계약에 의하여 종이 및 전자 형태의 보육바우처를 받아서 사용하게 되는데, 보육바우처는 급여명세표와 함께 받거나 이메일로 받아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제출할 수 있으며, 심지어 고용주가 보육서비스 제공자에게 직접 보내기도 한다. 고용주는 근로자와 계약에 의하여 급여에서 바우처 금액을 삭감(salary sacrifice)할 수 있는데, 이것이 보육 바우처 발행의 조건은 아니다. 급여를 그대로 두고 추가 지원으로 바우처를 발행하는 기업도 상당수이다. 보육서비스 바우처를 받는 근로자는 일주 당 55파운드, 매달 243파운드까지

3) 영국은 고용주의 근로자 보육 지원 방안으로 고용 취업보육수당, 보육비, 교육비 지원을 장려하였는데 이들은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 기준에 포함됨. 그런데 2005년부터 보육 바우처, 계약에 의한 위탁 보육, 사업장 유아원 설치 및 운영하여 근로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및 국가보험금 산정기준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2006년 조사 결과 2.5%의 기업이 근로자의 보육 지원제도를 채택하여, 36%의 근로자가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보육바우처로 받을 수 있는데, 보육바우처에 해당되는 비용은 소득세, 국가보험금에서 면제되어 세율 적용에 따라 1년에 한 부모당 각각 1,195파운드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모두 취업 중이면 각각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고용인에게는 전환된 급여분의 국가보험 분담금을 부과하지 않으므로 고용인이 보험 분담금의 12.8%까지 절약할 수 있다(HM Revenue & Customs, 2014).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는 보육시설, 유아원, 유치원, 탁아소, 보모, 아기 돌보미, 방과 후 클럽, 휴일이나 주말의 놀이활동 클럽 등과 같이 다양한 서비스가 모두 적용되는데, 이들 서비스는 아동세액공제 시 적용하는 보육서비스와 마찬가지로 각 지방 당국으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등록된 서비스이어야 한다. 보육바우처 제도는 대부분 보육바우처 회사를 통하여 실시되는데, 수수료는 제공되는 보육바우처 서비스 비용의 5~8% 정도이다.

다) 프랑스

프랑스는 유아는 시설보조금으로 영아는 부모보조금 형태를 채택한 국가이다. 프랑스는 유아는 거의 대부분이 공공기관에서 무료 공교육을 실시하고 등록률은 거의 100%에 육박한다.

〈표 II-2-5〉 프랑스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 기준

구분	단위 : €		
	1수준	2수준	3수준
한자녀 가족 소득 상한선	20,079 이하	20,059 이상 44,621 이하	44,621 이상
단체나 회사 고용 보육			
보육모(Childminder): 0~3세	678,32	565,27	452,22
보육모(Childminder): 3~6세	339,16	282,64	226,12
시설/가정보육자(Home child carer): 0~3세	819,67	706,57	593,53
시설/가정제공자(Home child carer): 3~6세	409,84	353,29	296,77
가정 고용 보육 보조금: 0~3세			
0-3세	448.25	282.65	169.57
3~6세	224.13	141.35	84.79

자료: Centre des Liai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2011). Schedule 1: Summary of family benefits. provided under Section L511-1 of The French Social Security Code as of 1st February 2011. Retrieved from http://www.cleiss.fr/docs/regime_france/an_a1.html

4) <http://www.hmrc.gov.uk>

그러나 영아 등 보육에 대해서는 부모보조금 형태로 지원한다. 보육보조금은 소득수준을 3구간으로 나누고, 대상은 영아와 유아로 나누며, 보육서비스 유형에 따라서 차등으로 다르게 지원한다. 2011년 기준으로 가정에서 개별적으로 0~6세 자녀를 위하여 고용할 경우에 전년도 소득에 기초하여 한자녀 기준으로 20,079유로, 20,079~44,621유로, 44,621유로 이상의 3구간으로 나누어 영아는 각각 448.25유로, 282.65유로, 169.57유로를 지원한다. 회사나 단체를 이용하는 경우 0~3세 보육으로 보모는 678.32유로에서 452.22유로, 가정보육 제공자나 소규모 보육시설은 819.67유로에서 593.53유로를 지원한다(표 II-2-5참조).

라) 독일

독일은 통일 전인 1998년에는 서독은 유아원의 64%, 영아 기관의 55%가 사립이고 방과후 호르트는 55%를 정부가 운영하였다. 반면에 동독이 노르딕 국가들과 같이 영유아기관의 2/3, 호르트의 86%가 공공기관이었다. 그러나 통일 이후 서독과 동독 모두 공공보다는 사립, 비영리 기관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OECD, 2006). 2007년 공립시설의 지역 차이는 최소 7%, 최대 40%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2010년 영아 기관 이용은 23%인데, 동독인 세서니 안할트(Saxony-Anhalt)주는 56%에 비하여 서독인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는 14%로 지역 차이가 있다(Grathwohl, 2010). 유아 기관이용은 통일 이전에는 서독은 70%, 동독은 거의 100%에 육박하였었는데, 2009년 현재는 동서 지역이 90.5%, 94.6%로 유사하다(European Commission, 2011).

독일은 사립시설의 상당부분이 비영리이며, 특히 구교와 신교 등 교회 단체에서 많이 운영하는 특성을 갖는다. 서독 일부 주를 중심으로 보면 2002년 기준으로 바덴-브르템버그(Baden-Wurtemberg)주는 56%가 비영리단체 등에 의하여 운영되는데 이 중 86%가 교회이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ordrhein-Westfalen) 주는 구교와 신교 등 교회가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50%를 차지하고, 이들은 포함하여 시설의 3/4을 자원단체가 운영한다(OECD, 2003).

주로 3세 미만이 다니는 보육시설을 이용료는 지역마다 차이가 나지만 대개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결정되는데, 부모 부담분은 평균 시설이용료의 14%로 추정하였다.

5)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

지방정부로 베를린 시의 보육료 차등 지원 사례를 보면, 부모의 소득계층을 41개 단계로 분류하여 시간을 구분하여 보육료를 차등해서 내도록 하고 그 이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한다(표 III-2-6 참조).

자녀가 두 자녀인 가정은 한자녀 기준 보육료의 80%, 세 자녀 가정은 60%, 네 자녀 이상 가정은 50%가 적용된다.

〈표 II-2-6〉 독일 베를린 시 한 자녀 월 차등보육료 사례

단위 : €

등급	연소득	5시간	7시간	9시간	9시간 이상
1	22,500유로 미만	15	20	25	25
10	36,420~37,859유로	57	85	113	130
20	50,820~52,259유로	98	146	195	224
30	65,220~66,659유로	148	221	295	339
40	79,620~81,059유로	198	296	395	454
41	81,060유로이상	203	304	405	466

자료: Der Paritatishe Berlin(2010). Rechtsvorschriften und Vereinbarungen

마) 캐나다 퀘벡주

캐나다의 보육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재정에 의해 지원되는 대부분의 보육정책은 저소득 가정에 대한 국가 보조금의 형태로, 보육서비스가 권리라기보다는 복지서비스로 간주되는 경향이 강하다(김혜원 외, 2007).

특이한 점은 퀘벡주의 보육비용 지원이다. 1997년 캐나다에서는 처음으로 퀘벡주 보육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법률(Québec's Act Respecting Childcare Centres and Childcare Services)에서 '모든 아동은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질 좋고 연속성 있는 개별적 보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보육서비스에 대한 보편주의적 원칙을 밝히고(Tougas, 2002), 일정 비용을 정부가 보육시설에 아동 1인당 비용으로 직접 운영비로 지원하고 부모의 보육서비스 이용비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형태로 투자를 강화하였다. 1997년에는 4세 아동에 대한 보육비를 하루 5달러로 제한하고, 1998년 9월, 3세 아동에게까지 확대하였으며, 2001년에는 12세 이하 아동이 이용하는 모든 보육서비스와 방과후 프로그램으로 확대하였다. 2003년 11월에는 보육비가 7달러로 상승하여 현재 유지되고 있다. 이는

보육비용의 14%이다. 즉, 보육비용의 86%는 정부가 부담한다는 것이다. 부모의 소득이나 취업(학업) 여부에 관계없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층 가족의 경우 주당 23시간까지 무료로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Tougas, 2002).

퀘벡주의 보육서비스는 세 가지 유형으로 공급된다. 아동보육센터(childcare centre)는 비영리 법인이나 기업에만 허가하며, 주간보호센터(day care centre)는 영리 기업이나 또는 비영리 기관을 운영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하나의 센터에 한하여 허가한다. 가정보육(Home childcare)은 사적 주거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보육으로 관리기구(coordinating office)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형태로 등록되어야 한다.

라. 현금 이전 지원

1) 개요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지원에서 가장 보편적인 형태는 수당이다. OECD 국가 중 일부를 제외하고 가족지원 금액의 약 40% 이상을 현금 수당으로 지원한다. 반면에 조세를 통한 지원은 현금보다 비중이 높지 않으나, 캐나다, 독일, 일본, 미국 등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

OECD 국가 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유럽의 15개국⁶⁾이고, 스위스와 이탈리아 2개 국가는 고용과 연계시키고 있다.⁷⁾ 자료에 따르면 세계적으로는 조사된 175개 국가 중 보편적 수당 도입국은 25개국이다. 피고용자에만 지급하는 근로 복지제도로 도입한 국가는 27개국이고, 이 중 20개국이 아프리카 국가로 분류된다.⁸⁾

자녀가 있는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은 현금이전지출을 수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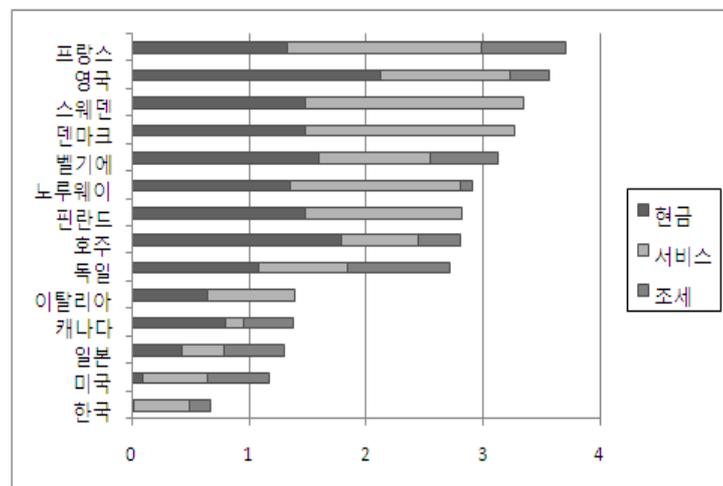
6)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헝가리, 슬로바키아, 프랑스, 영국,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포르투갈, 체코, 일본임.

7) 스위스는 연방 프로그램은 한 명이상의 아동을 부양하는 농업근로자나 소규모 자영농(가족수당) 또는 배우자(가사수당)에게, 주 프로그램은 비농업 취업자 중 1자녀 이상 부양자이며, 주 정부(칸톤)에 따라서는 농부를 포함하여 자영업자에게도 지급함. 고용자는 통상 아동수당 기금에 가입하고, 칸톤에 따라 고용자가 지급을 보증하며, 공무원은 별도 제도가 있음. 이탈리아는 취업자 또는 사회보험·복지급여 및 실업수당을 받는 자 중 1명 이상의 아동 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지급함. 연금을 받는 자영업자는 별도 제도에 의함.

8)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2006). 내부자료

하는 재정지출 이외에 조세정책이 있다. 조세정책으로는 세율인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와 같은 정책세 감면 등이 있다.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소득공제가 이루어지는 경우, 소득수준에 따라 한계세율의 체감에 대한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다. 독일, 덴마크 등 유럽 국가들은 아동수당이나 부가급여와 같이 재정정책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영미권 국가들은 세액공제제도와 같은 조세정책을 중심으로 자녀양육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OECD 국가들은 현금, 서비스, 조세 등 가족 지원 지출금의 GDP 대비 평균 비율은 2.25%인데, 덴마크,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이 3% 이상을 지출한다(그림 II-2-6 참조).



자료: OECD(2011c). Family Database.

[그림 II-2-6] GDP 대비 가족지원 지출 비율: 2007

2) 외국 사례

가) 프랑스

프랑스는 현금과 서비스와 조세가 균형을 이루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본 고에서는 가족에 다양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프랑스는 가족(아동)수당으로 2011년 1월 기준으로 두 자녀 126.4유로, 세 자녀 288.38유로, 이후 각각 161.97유로가 추가되며, 11세와 16세 아이에는 35.55유로, 14세 및 16세 이상은 각각 63.21유로가 추가된다(표 II-2-7 참조).

〈표 II-2-7〉 아동수당과 아동보육수당

	BMAF 대비 %	월 지원금
단위 : €		
아동수당(Child benefit)		
2 자녀수당	32	125,78
3 자녀수당	79	286,94
자녀 1인당 추가 수당	41	161,17
11-16세 아동수당	9	35,38
16세 이상 아동수당	16	62,90
14세 이상 아동수당 (1997/1/4 이후 출생 아동)	16	62,90
아동보육수당(Early childcare benefits)		
출생급여	229,75	907,60
입양급여	459,50	1815,21
기초 수당	45,95	181,52

주: BMAF는 가족수당 계산 기초액(la base mensuelle de calcul des allocations familiales)으로 2011년 395.04유로임.

자료: CNAF(2011). Vos prestation 2011. <http://www.cnaf.fr>
Centre des Liai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2011). Schedule 1: Summary of family benefits. provided under Section L511-1 of The French Social Security Code as of 1st January 2011. http://www.cleiss.fr/docs/regime_france/an_a1.html

〈표 II-2-8〉 직업활동 자유선택 보조금

구분	100% 감소	50%이하 감소	50%초과 80% 이하 감소	비고
기초수당 미지급시	560,49	426,12	426,12	
기초수당 지급시	379,79	245,51	141,62	

자료: CNAF(2011). Vos prestation 2011. <http://www.cnaf.fr>

프랑스는 이러한 가족수당 이외에도 출생·입양 수당, 기초수당, 직업활동 선택보조금을 지급한다. 출생 수당은 임신 7개월간 907.6유로를 지원받으며, 입양 시에는 1,815 유로를 지원한다. 기초 수당은 3세 미만아 및 20세 미만 입양아에게 지원되는 수당이다. 직업활동 선택보조금은 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직업활동

을 못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그 축소 정도에 따라서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이다(표 II-2-8 참조).

이외에도 20세 미만 자녀가 아플 경우 아이 곁에 있어야 하는 매일 부모 보조금으로 2011년 기준으로 양부모는 월 41.97유로, 한부모는 49.15유로를 지원하며 지출이 인정될 경우 월 106.88유로까지 지급된다. 이는 310일까지 지급이 가능하다. 또한, 장애아교육수당, 편부모 수당, 개학 수당, 세 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가족보조금 등 다양한 수당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제공되는 수당은 가족수당계산 기초액에 의거하므로, 가족수당계산 기초액 대비 비율로 수당의 상대적 수준을 가늠할 수 있다.

나) 영국

영국은 보편적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첫번째 아동은 주당 20파운드이고, 그 이후 출생 아동은 아동 1인당 각각 일주일에 13.20파운드가 적용된다. 아동수당은 부모 소득이나 저축 등에 관계없이 16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면세가 되는 급여이다. 아동 연령이 16세나 17세라도 교육이나 훈련 중이거나 또는 승인된 기관에서 일을 하거나 교육 중이면 수혜 대상이 된다. 아동이 함께 살지 않더라도 아동을 부양하고 지불하는 액수가 수당 급여액보다 많으면 신청 대상이 된다. 부모가 없는 아동은 보호자 수당으로 아동 당 주에 14.30파운드를 지급한다(표 II-2-9 참조).

영국의 세액공제는 2003년에 중류소득의 가정을 돕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로, 부양하는 아동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아동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근로에 참여하는 소득이 낮은 계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세액공제(Working Tax Credit)가 있다. 관련법규(The Child Tax Credit Regulations 2002)에 의한 아동세액공제는 영유아 및 교육받는 아동을 양육하는 16세 이상 부모가 대상이며, 취업 및 소득과 연계하여 세액을 공제한다. 아동세액공제는 대상 아동이 통상만 15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되고 장애아동은 만 16세 생일 이후 9월 1일까지 적용된다. 그러나 전일제로 교육을 받을 경우에는 19세까지 적용되며, 16세 이상 17세 미만으로 교육중인 경우에도 특정조건을 전제로 20주 동안까지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영국의 자녀를 기르는 가정 중 90%는 공제를 받는다. 최대 세액은 가족이 545파운드, 자녀가 2,555파운드, 장애아는 경증 5,355파운드, 중증 6,485 파운드이다.

〈표 II-2-9〉 연 소득수준별 자녀수별 아동가구 세액공제액: 2011

단위: 파운드

연 소득	주당 16시간 이하 근로 아동세액공제			주당 16시간 근로 아동세액공제와 근로세액공제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	
				90파운드	최대 175	150	300	150	300
0	3,100	5,660	8,200	10250	13345	14990	20450	17550	23010
5,000	3,100	5,660	8,200	10250	13345	14990	20450	17550	23010
8,940 ¹⁾	3,100	5,660	8,200	9880	12975	14620	20080	17180	22640
10,000	3,100	5,660	8,200	9570	12665	14315	19775	16875	22335
15,000	3,100	5,660	8,200	7520	10615	12265	17725	14825	20285
20,000	1,405	3,960	6,520	5470	8565	10215	15675	12775	18235
25,000	545	1,910	4,470	3420	6515	8165	13625	10725	16185
30,000	545	545	2,420	1370	4465	6115	11575	8675	14135
35,000	545	545	545	545	2415	4065	9525	6625	12085
40,000	545	545	545	545	545	2015	7475	4575	10035
45,000	0	0	0	0	0	0	5425	2525	7985
50,000	-	-	-	-	-	-	3375	475	5935
55,000	-	-	-	-	-	-	1325	0	3885
60,000	-	-	-	-	-	-	0	-	1835
65,000	-	-	-	-	-	-	-	-	0

주: 1) 소득기준선

자료: HM Revenue & Customs(2011). Child Tax Credit and Working Tax Credit

관련법(The Working Tax Credit (Entitlement and Maximum Rate) Regulations 2002, Reg. 20 and Schedule)에 의하면 근로공제는 기본이 1,920파운드, 장애요인 2,650파운드, 30시간 요인 790파운드, 두 번째 성인 및 한부모 요인 각각 1,950파운드, 중증 장애요인 1,130파운드, 주당 16~29시간 근로 1,365파운드 또는 30시간 근로 이상 요인 2,030파운드로 구성된다.9)

따라서 아동을 기르는 가족이 받는 공제는 소득수준, 자녀수, 근로여부 및 시간, 지출한 보육료 등에 의해 결정된다. 2011년부터 작용되는 제도는 지급 대상이 다소 축소되었는데, 먼저 일하지 않거나 부부가 주당 16시간 미만을 일하는 부모의 공제금액은 아동세액공제액만으로는 연 소득 41,300파운드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최대는 한 자녀 3,100파운드, 두 자녀 5,660파운드, 세자녀 8,220파운드이고 최저는 모두 545파운드를 공제 받는다. 공제 대상 상한선이 낮

9) HM Revenue & Customs(2011). Tax Credit Technical Manual

아졌다. 다음으로 1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에는 자녀수와 보육료 지출액에 따라 차등을 둔다. 최대 지원은 보육료의 70%이다. 부부가 종일제로 근로하며 연소득이 25,000파운드이고 세 자녀를 부양하면서 주당 300파운드 이상을 보육료로 지급할 경우에 16,185파운드를 받을 수 있다.¹⁰⁾

장애아동의 경우는 장애아동 수당을 받거나 등록된 맹아인 경우에 해당된다. 소득공제액은 장애아동은 주당 53파운드로 연 2,800파운드, 중증장애아는 주당 75파운드로 연 3,940파운드를 공제 받는다.

3. 선행연구

가. 저출산 원인

국내에서 저출산의 원인을 제시한 연구는 다양하나, 전국 규모 자료를 통한 심층분석으로 포괄적으로 최근 연구로는 이삼식 외(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저출산의 원인은 인구학적 요인, 경제적 요인, 가치관요인으로 나누어 분석, 제시하였다. 이 연구와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2005년 기초연구(이삼식 외, 2005)를 중심으로 저출산의 원인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인구학적 요인으로서 첫째, 만혼화로,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가 증가 등으로 결혼과 출산·양육이 상당한 기회비용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혼화 현상은 지속적으로 출산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2005년 분석에서도 첫째 출산을 늦게 한 여성일수록 둘째 출산이 그만큼 늦어지거나 또는 둘째 출산에 대한 의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가족관계가 중요하여, 원 가족과의 관계는 미혼남녀의 결혼 의향이나 결혼 계획 연령에 유의미한 연관성을 가지는 경향이 높고, 부부와 1자녀로 구성된 가족에서 남편의 가사 및 양육시간 증가는 부인의 둘째 자녀 추가 출산 의향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세 번째로 첫째아 출산 전 임신소모의 경험은 생애과정에서 출생아수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제적 요인으로, 첫째는 주거 상황으로 주택 소유 여부, 점유 형태 변화, 주

10) 자녀가 없는 경우는 설명을 생략함.

거부담 정도, 주택마련대출 여부 및 대출 금액 등은 도시지역에서 출산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 번째 경제적 요인으로서 가구의 보육·교육비용 지출과 정부의 지원인데, 가구의 보육·교육비 지출액은 추가출산의향과 추가출산의향 자녀수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정부의 보육교육비 지원 수혜 여부는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가구에서는 실제 지불액과 무관하게 보육료가 부담된다고 느끼면 이로 인해 추가출산이 어렵다고 인식을 할 가능성이 큼을 나타낸다. 셋째 경제적 요인은 결혼 전후에 이미 나타나는 경력단절의 문제이다. 자녀수에 따라 취업기혼여성의 노동시장 지위는 상이할 가능성이 높는데 주당 노동시간에는 차이가 없다. 즉, 한국사회에서는 비정규직이 노동조건의 악화를 의미하는 것이지 시간사용의 유연화를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네 번째로서 기혼여성은 남성의 참여와 조부모와 같은 사적 자원의 지원이 충분하지 않아 여성은 여전히 아동 돌봄과 가사 책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더욱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양육과 가사의 책임은 여성의 취업 여부와 무관하였다. 2005년 연구(이삼식 외, 2005)에서도 둘째 출산으로 이행 분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변수는 관찰기간 내 여성의 취업 여부였다. 첫 출산 이후부터 둘째 출산에 이르는 기간¹¹⁾ 동안 취업한 적이 있는 여성들은 취업한 적이 없는 여성들에 비해 2.3배 정도 더 둘째 출산을 연기하거나 포기하였다.

사회문화적 요인으로서 미혼남녀와 기혼여성 모두 결혼 필요성, 혼전동거, 부부관계의 근대적 성역할규범 등에 동의 정도는 높아진 반면, 자녀 필요성, 자녀의 정서적 가치 등에 대한 동의 정도는 낮아졌다. 즉 결혼의 필요성에 동조할수록, 자녀의 필요성이나 정서적 가치에 동의할수록 결혼할 의향이 높다. 기혼여성의 출생아 수와 기대 자녀 수에 대한 영향에서도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동조, 자녀의 형제 자매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남성생계부양자모델이나 성별분업적 역할 규범에 동조하는 여성들이 더 적은 수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

나. 보육·교육비 지원 관련 연구

이삼식 외(2006)는 또한 저출산 대책들 중 보육비·양육수당지원, 소득공제 및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들은 출생아 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11) 중도절단자의 경우에는 현재 시점까지 임.

으로 분석하였다. 반면에 산전진찰비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직장보육시설 확충,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 산전후휴가 급여부담 경감 등이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은 미세한 것으로 보고하고, 그 주된 이유로는 정책 대상이 한정되어 있고 정책 수준이 극히 미약하기 때문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이삼식 외(2008)는 논리모형을 반영하여 저출산 정책의 논리성과 효과성 평가 모형을 설정하고 시계열 및 2007년 조사자료를 활용하여 보육·교육비지원이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는 0.39로 정적 효과($p < .001$)를 보였고, 한편, 보육·교육비지원정책이 여성의 취업여부를 매개로하여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간접적인 효과는 0.02로 미약하나마 정적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보육·유아교육시설 확충서비스 증대가 총 출산자녀수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0.20($p < .001$)으로 자녀양육에 대한 물리적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추가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민희철 외(2008)의 정책 실험(policy experiments) 연구에서는 취업모에 대한 보육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는 약 2% 정도이고 결혼은 약 0.04% 증가 효과가 있다고 분석하고, 기본적인 출산정책은 자녀가 있는 모든 가구에게 지원을 하되 취업모에 대한 지원을 보완책으로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육아정책연구소(서문희 외, 2009) 연구도 차등보육료·교육비, 만5세아 무상 지원, 셋째아 현금 지원이 출산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차등 지원과 만5세아 지원은 직접적 작용 이외에도 정책의 자녀양육부담 완화 효과 인식 제고라는 매개를 통하여 출산 의사에 작용하며, 특히 한 자녀 가정에는 차등지원과 출산축하금 수혜경험이 둘째 자녀 출산의사에 긍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육아휴직 등 사업장에서의 일·가정 양립 지원 연구

김혜원(2009)은 빠르게 진행된 저출산의 가장 일차적인 원인으로는 초혼 및 초산연령의 증가이며, 부차적인 원인으로는 추가적인 자녀 출산의 지연 또는 포기 보고, 일·가정 양립 환경을 크게 출산과 관련된 환경과 자녀 양육과 관련된 환경으로 나누어 산전후휴가나 육아휴직 등 출산 직후 1년 내에 적용되는 제도와 출산 1년 이후에 주로 적용되는 보육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육아휴직제도와 관련하여서는 급여제도의 개선안을 제시하였는데 그 중 하나는 정물

제도의 개편, 조기 복귀 및 복귀 후 계속 취업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휴직기간 내 사회보험료 및 퇴직금 적립액에 대한 사회적 부담 확대, 육아휴직급여의 출산 자녀 수별 차등 지급, 대체인력 풀 관리 강화를 통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육아휴직이 여성의 고용 및 경제활동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이다. 최은영(2006)은 육아휴직이 취업모의 경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대체 수준이 OECD 평균인 4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휴직기간 중 감소하는 소득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계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 박재규(2007) 역시 산전후휴가제도, 육아휴직,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상징적 의미 외에 내용상 내실화가 되어 있지 못하는 점과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점을 이유로 들며,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강화시키고, 기업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차원의 홍보, 대체인력제도 등의 지원을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장혜경(2007)은 가족친화적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금 및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제도의 시행과 관리·감독에 있어 정부 역할의 중요하다고 하였다.

한편 장혜경(2007)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통해 근로자들은 고용이 보장되는 단축근무를 원하며, 단시간 근로가 바람직하게 운영될 때 일·가정 양립의 직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김태홍 외(2010)는 기업의 근무유연제 시행 실태를 조사하여 우리나라 상시간 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 중에서 유연근무제, 즉 단시간근로제도, 선택적 근로시간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재택근무 혹은 원격근무제, 재량근로시간제, 그리고 보상휴가제를 1개 이상 도입한 사업체는 30.3%이고, 전체 조사된 사업체 중에서 지난 1년 동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27.0%로 보고하였다. 즉, 제도를 도입한 사업체 중에서 제도를 활용하는 업체는 89.1%이었다. 이 보고서는 단시간 근로 이용자 중 미취학 자녀나 학령기 자녀를 둔 부모 비율이 11.5%이고, 선택적 근로 이용자 중에서는 10.6%라고 제시하였다.

라. 직장보육에 관한 연구

지금까지 수행된 직장보육에 관한 연구들은 이용자의 만족도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들은 다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

업모보다 보육만족도가 전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성영혜·손지미, 1999). 직장보육시설이 일반보육시설보다 긍정적으로 평가받는 이유는 여성근로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운영하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김으로써 심리적, 정서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신뢰감을 갖게 되기 때문이라는 보고가 있고(김교성·김경희, 2003; 김리진·윤종희, 2000), 직장보육시설 만족과 관련해서는 아동과 부모와의 근접성, 물리적 환경(김주미, 1995; 임재택, 1993)과 교육활동 및 교사(성영혜 외, 1999) 면에서 만족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지원이 사업체에 주는 효과로는 근로자의 복지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사업체의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는 내용으로 종합될 수 있다(권미량 등, 2006). 김현주(2004)는 근로자가 직장보육 서비스에 만족할수록 직무몰입도와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외국의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는데, Guttaman(1994)은 직장보육이 취업모의 일과 가족을 연결, 통합함으로써 근로자의 만족감, 자기발전, 사업체 기여 등을 가능하게 하고 경영주 측면에서는 근로자의 비생산적 근무태도로 인한 사업체의 생산성 저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직장보육은 회사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향상시켜 직·간접적인 기업 홍보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연구들(김혜선, 1997; 손지미, 1991; 이기숙·김희진·박은혜, 2003)도 있다. 이 외에도 직장보육의 활성화를 통해 여성인력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고(이기숙 외, 2003), 공동 육아의 의미를 부각시키는(권미량 외, 2006)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직장보육서비스의 효과로 출산 수준에 영향을 주는 정도에 대한 객관적 자료는 없으나, 직장보육의 활성화가 중요한 일·가정 양립 수단이라는 전제에서 정책연구가 일부 추진된 바 있다(서문희·김은설·박수연, 2008; 김유경 외, 2003; 김진이, 2001; 이기숙 외, 2002). 서문희·김은설·박수연(2008)는 일하는 엄마 지원 방안의 하나로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검토하여 산업단지 어린이집 등 설치 확대 방안 등 운영과 지원 측면에서 구체적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직장보육시설 지원 제도 개선에 기초를 제공하였다. 김진이(2001)는 직장보육에 대하여 시설 설치 이외에 다양한 지원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고, 이기숙 등(2003)은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제도, 그리고 직장보육시설의 수요자·공급자·지원자의 인식개선으로 나누어 개선방향을 모색하여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이 되는 당해 사업장 근로자 자녀 비율을 30% 수준으로 낮추는 데 기

초를 제공하였다. 김유경 등(2003)의 연구는 규제 준수도 연구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 직장보육에 대한 규제집단, 집행공무원 및 제3차 집단의 규제 준수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방안과 직장보육시설 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마. 취업모 지원 취약보육 연구

취약보육 중 야간, 24시간, 휴일보육과 같은 취약보육이 일하는 여성의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관련 연구들은 대체로 실태와 요구를 파악하거나(강문희 외, 2000; 하정희, 2001)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서원경, 2005) 보육 영역의 연구로 추진되었고, 이를 출산이나 일·가정 양립과 직접 연계하여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은 없었다. 이는 이들이 당연히 이러한 기능을 한다는 전제에서 출발되었기 때문에 이를 더 규명해 볼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바. 가정내 보육서비스 관련 연구

가정내보육(in-home care)은 아동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을 의미한다. 가정 내 보육은 주로 친인척이나 이웃 주민, 혹은 민간업체에서 파견된 인력이나 베이비시터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 연구는 주로 가정내 보육의 제도화 및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연구이며 출산 수준이나 일·가정 양립과 연계한 연구는 거의 없다.

정책 연구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논의 속에서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외국의 가정보육제도를 검토하고 가정보육모에 의한 보육서비스를 제도 도입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였고(서문희 외, 2002), 육아지원센터를 통한 가정보육의 제도화 방안을 제시하였으며(이옥 외, 2004), 가정보육교사 도입 방안 검토(백선희 외, 2007), 돌봄의 제도화라는 큰 틀에서 아동 돌봄의 제도화 검토(장혜경 외, 2008) 연구가 추진되었다.

둘째, 여성가족부 아이돌보미 시범사업이 추진되면서 정민자 외(2006)는 여성가족부 지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의 제도 도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후 2010년 종일 돌봄 제도 실시와 더불어 가정 내 양육 지원을 위한 별도의 법을 제정하기 위한 연구(최선자 외, 2010)가 실시되었다. 또한 지방정부 사업으로 보육교사를 가정에 파견하는 경기도 가정보육

교사 관련 성과분석이 추진되었다(임양미, 2011).

셋째, 영리 베이비시터회사에서 파견한 베이비시터의 질적 수준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영리 베이비시터회사 및 베이비시터를 이용하는 가정의 실태를 조사하여 베이비시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추진되었다(서문희 외, 2002; 서문희 외, 2007, 장혜경 외 2010).

넷째, 민간 비영리부분 파견보육 관련 연구로, 성지미 등(2005)은 노동부 지원으로 여성친화적 사회적 일자리로서의 영아보육을 설정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고, 여성노동자협의회는 2006~2008년, 한국여성재단은 2010~2011년에 저소득층 가구 가정내 파견보육 사업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평가를 육아정책연구소와 공동으로 진행하였다(서문희·임윤옥·이세원 외, 2008; 서문희·유해미·이세원, 2011).

사. 가정내 자녀양육 분담 관련 연구

일부에서는 양성평등이 확립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늘어남에 따라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고 이에 따라 출산율이 저하한다고 보지만, 이는 양성평등 가치관이 확립되지 못한 국가에서 양성평등 정도가 높아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고, 양성평등이 전 사회적인 가치관으로 기조를 형성하고 실천되고 있는 선진국에서는 양성평등 수준과 출산율 수준은 정비례적인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Chesnais, 2005). 또한 육아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이 맡고 있는 경우에 아이를 가진 여성은 정규적인 직업을 계속하기 어려우나,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가 사라지고 아버지가 자녀양육의 책임을 더 많이 맡게 될수록 출산율과 여성취업간의 부정적인 상관관계는 감소한다(한유미·곽혜경, 2004)는 연구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가정내 부부간 자녀양육 분담 실태를 다룬 연구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가 있는데 남성일인생계부양가족과 부부일인생계부양가족을 대상으로 양육 분담 정도와 자녀양육과 가사에 투자하는 시간을 조사한 결과 남성일인생계부양가족에서 부인(20~44세)이 양육(돌봄 노동)을 부인이 전적으로 또는 대체로 전담하는 비율이 71.7%인 반면, 부부가 공동으로 분담하는 비율은 26.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비해 부부일인생계부양가족에서 부인(20~44세)이 남편과 양육을 분담하는 정도는 부인이 대체로

또는 전적으로 전담하는 비율이 54.7%로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는 낮으나,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자녀양육과 가사에 투자하는 시간 역시 1일 남편 72분, 부인 197분으로 여성이 약 3배 정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에 대해 이삼식(2007)은 돌봄을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한국사회의 젠더 구조, 유교주의적 가부장 문화와 함께 근대화 및 산업화 과정에서 경제 발전을 위해 가족이 희생되었기 때문이라고 보고 우리나라 연간 근로시간이 2,390시간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홍승아(2010) 역시 장시간 노동의 만연과 적절한 가족시간 미확보, 가족 내 평등한 역할분담 미정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부부간 자녀양육 등 가사분담이 저출산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이루어져 왔는데 그 중 대표적인 연구로 Torr & Short(2004)는 한 명의 자녀가 있는 미국의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가구 내 가사분담의 정도가 실제로 5년 후 둘째 아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맞벌이 가구를 부부간 가사 분담 비율에 따라 모던 커플, 중간 커플, 전통적 커플로 분류하였을 때 둘째 아이의 출산이 모던 커플에서 8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국내에서는 박수미(2008)가 「2005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부부간 성 형평성 정도가 취업 여성의 둘째 출산 계획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아버지의 자녀양육 분담을 증진시키기 위한 정책으로는 부성휴가 및 육아휴직에 대한 아버지할당제가 대표적이다. 그러나 많은 연구자들은 아버지의 육아휴직 참여가 일·가정 양립에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들며 할당분을 지정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박재규, 2007; 최은영, 2006).

Ⅲ. 육아지원정책 개요

제3장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지원정책의 배경과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육아지원의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저출산과 육아지원정책

가. 배경

최근 들어 육아지원정책이 보다 강조되는 배경으로는 2004년 이후 부모 부담 비용 지원에 중점을 둔 보육정책의 강화에도 불구하고 제자리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 취업률과 출산율을 들 수 있다.¹²⁾

우리나라 출생 아동 수나 출산율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다(표 III-1-1 참조). 2010년 합계출산율¹³⁾은 1.22명으로 2009년 1.15명보다 0.07명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결혼 연령 상승으로 20대 후반의 출산율¹⁴⁾은 79.8명으로 전년보다 0.6명 하락하였고, 30대 초반 연령층의 출산율은 112.7명으로 전년보다 11.9명 증가하였다. 2005년까지 20대 후반이 가장 높은 출산율을 보였으나 2006년 이후 30대 초반으로 바뀌었으며 두 연령층의 출산율 차이는 최근에 더 커지는 추세이다

출생아의 출생 순위는 전체 출생아 중 첫째아 비중은 50.3%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출생아의 절반이 넘는 수준이고, 둘째아는 39.0%로 2004년 39.3% 이후 최고 수준이다. 셋째아 이상도 10.7%로 1985년 10.9% 이후 최고 수준이다.

이러한 저출산은 평균 수명의 증가와 더불어 고령화를 촉진시키며, 경제활동 인구 감소, 부양비 증가 등으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12) 초반에는 보육 중심의 육아지원 정책이 저출산 개선 효과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그러한 정책의 효과가 단시간에 나타나지 않음 인식이 확산되면서 지속적 확대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겠음.

13)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4) 여성인구 천 명당임.

는 점에서 우려되고 있다.

〈표 III-1-1〉 합계출산율 및 연령별 출산율

단위: 명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합계출산율	1.467	1.297	1.166	1.180	1.154	1.076	1.123	1.250	1.192	1.149	1.22
연령별출산율											
15-19세	2.5	2.2	2.6	2.5	2.3	2.1	2.2	2.2	1.7	1.7	1.5
20-24세	38.8	31.4	26.5	23.6	20.6	17.8	17.6	19.5	18.2	16.6	16.2
25-29세	149.6	129.2	110.9	111.7	104.5	91.7	89.4	95.5	85.6	80.4	79.8
30-34세	83.5	77.5	74.5	79.1	83.2	81.5	89.4	101.3	101.5	100.8	112.7
35-39세	17.2	17.0	16.6	17.1	18.2	18.7	21.2	25.6	26.5	27.3	32.6
40-44세	2.5	2.4	2.4	2.4	2.4	2.4	2.6	3.1	3.2	3.4	4.1
45-49세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주: 합계출산율은 가임여성 1명당 출생아수, 연령별 출산율은 해당연령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생아 수입.

자료: 통계청(2011). 통계포탈

다음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는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통계청에서 제시하는 경제활동참가율¹⁵⁾이다(표 III-1-2참조). 이는 2011년 4월 현재 30~39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6.4%로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 93.2%에 비하여 크게 낮은 수준이다.

〈표 III-1-2〉 성 및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2011. 4

단위: %

구분	전체	남자	여자
전체	61.6	73.6	50.2
15~19세	6.5	5.5	7.5
20~29세	63.6	64.6	62.7
30~39세	75.2	93.2	56.4
40~49세	80.6	93.8	67.1
50~59세	73.9	88.1	59.6
60세이상	38.4	52.3	27.7

자료: 통계청(2011). 통계포탈

15)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 인구 중 조사 대상 기간 동안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수입이 있는 일을 한 취업자와 일을 하지는 않았으나 구직활동을 한 실업자를 말함.

다음은 2009년 전국조사 자료로 영유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최연소 자녀가 영아인 여성은 29.9%, 유아인 경우는 44.9%로 최연소 자녀가 영유아인 모의 취업은 35.8%로 조사되었고, 최연소 자녀가 초등학생인 모의 취업률은 51.8%인데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는 48.6%, 고학년은 55.0%로 차이를 보인다(표 III-1-3 참조). 아동 연령별로 구체적으로 보면, 연령이 높아지면서 취업률이 증가하는 정적 관계를 보다 잘 나타낸다. 영아를 둔 어머니의 취업률은 2004년에 비하여 다소 상승하였다.

〈표 III-1-3〉 최연소 아동 연령구분별 모의 취업상태

구분	취업	미취업	모부채 모름	전체	(수)	단위: %(명)
						2004년조사 취업률
영아	29.9	69.0	1.1	100.0	(1,563)	26.8
유아	44.9	50.2	4.9	100.0	(984)	42.6
초등학교 저학년	48.6	44.7	6.7	100.0	(1,176)	47.6
초등학교 고학년	55.0	37.2	7.8	100.0	(1,176)	55.5

자료: 서문희 외(2009). 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개발센터
서문희 외(2004). 2005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여성가족부

취업여성의 출산이 미취업여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취업률이 증가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속되는 저출산은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두 문제가 동일한 일·가정 양립 정책이 대안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그 핵심적인 정책 대안으로 육아 지원이 언급되는 것이다.

나. 저출산 대책 중 육아지원 정책 개요

정부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범정부적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 계획은 2006년 1차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2010년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정책 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은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성장 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 개선,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사회적 분위기 조성의 4가지 정책 방향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중 부모의 취학 전 영유아 양육 부

담 경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정책을 위주로 살펴보고자 한다.

<표 III-1-4>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중점과제 목록으로, 전체적으로는 일·가정 양립 일상화 24개,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46개,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25개 과제로 총 95개 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표 III-1-4>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 부문 분야별 중점과제

분야	중점과제	부처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휴가휴직 제도 개선 · 육아휴직 급여 정률제 및 복귀 인센티브 도입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청구권 도입 · 산전후 휴가 분할사용 허용	고용노동부
	유연한 근로형태 확산 ·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준 개선 · 스마트 워크센터 도입 및 확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강제방안 도입 · 공공기관 가족친화인증 확산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재정부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가족형성 여건 조성 ·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 유자녀 현역병 상근예비역 편입	국토해양수산부 국방부
	임신·출산 지원 확대 · 분만취약지 보건의료인프라 지원 확대 · 난임부부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자녀양육 비용 지원 확대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확대 · 다자녀가장 공무원 퇴직 후 재고용 · 다자녀가정 세제, 주택, 학비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해양수산부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지원 인프라 확충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방과후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취약계층 아동지원 · 드림스타트 사업 활성화	보건복지부
	안전한 보호체계 구축 · 성폭력 피해아동 지원 강화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아동학대 예방) · Wee프로젝트(학교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
	아동정책 기반조성 ·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보건복지부

자료: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기본 방향은 우선 제1차 기본계획의 기초는 유지하되, 정책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 즉 일·가정 양립 확산, 결혼·출산·양육 부담 경감 확대,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환경 조성을 3대 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취업 여성의 출산과 양육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육아휴직제 개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활성화 등을 통해 자녀양육 기회를 확대하고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야간보육 및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여 맞벌이 부부에 대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직장보육 시설 설치 확대 등 가족친화 경영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고자 하였다.

〈표 III-1-5〉 육아지원인프라 확충 주요 내용

구분	주요내용
취약지역 내 국공립 보육시설 지속 확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우선 설치 · 농어촌 소규모 보육시설 확충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	<p><보육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인증 고도화, 운영체계 합리화 · 평가인증 결과 공개 · 인증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재정지원 연계, 유효기간 연장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교과목 및 이수학점 상향 조정, 실습 강화,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 관리 철저, 보수교육-자격 연계 <p><유치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결과 공개· 우수사례 적극 발굴, 교육 연수 자료로 활용
수요자 중심의 육아지원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맞벌이 부부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확대: 시간연장 인건비지원 확대, 보육료 지원 확대, 유치원 종일반 확대, 국공립 입소순위 합리화 · 시간제 보육바우처 및 운영시간 다양화 · 이웃간 돌봄나눔사업 활성화: 가족품앗이, 공동육아나눔터
아이돌보미 서비스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간제 돌봄 지원 확충 · 영아 종일제 돌봄 지원 확대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법제화 추진
영아에 대한 가정내 돌봄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돌봄인력 자격기준 및 관리 규정 등 법적 근거 마련 · 돌봄 인력 교육지원 · 안전사고 공제제도 도입(법적 근거 마련 후 추진)
취학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과후 돌봄서비스 공적지원 확대: 지역아동센터 확대 및 내실화, 초·등돌봄교실 확대, 프로그램 내용 확대 · 민간 돌봄 서비스 시장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추진, 온라인 매칭시스템 구축

자료: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또한 출산과 양육의 가장 큰 걸림돌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및 양육수당 확대 등 자녀양육비용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베이

비시터 시장 조성, 방과후 돌봄 확충, 보육시설 이용시간 다양화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정비한다는 방침이다.

가족 형성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고 의료 및 산모신생아 도우미와 같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직접적인 지원을 늘리고, 보육·교육비 및 양육수당 등 금전적 지원 확대와 함께 다양하고 질 높은 육아지원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표 III-1-5 참조).

2. 사업장 육아지원제도와 실제

가. 사업장 내 육아지원

1)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미취학 자녀를 가진 부모에게 제공하는 정부 정책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제도이다. 산전후휴가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계속하여 90일의 보호 휴가를 주되, 반드시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2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표 III-2-1 참조). 육아휴직은 입양의 경우에도 가능하나 산전후휴가는 실제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여성만 가능하다.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져 산전 휴가가 45일을 초과한 경우에도 산후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종전에는 출산휴가기간 중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지급하고,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하였으나, 우선 지원 대상기업¹⁶⁾ 근로자가 '06.1.1 이후 출산하는 경우에는 90일간의 급여를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최초 60일분은 사업주가, 이후 30일 분은 고용보험에서 지급한다.

산전후 휴가는 종전에는 90일을 연속하여 사용하였으나, 2차 기본계획은 이를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표 III-2-2 참조). 또한 남성에게는 사흘간의 무급휴가를 제공하였으나, 이를 유급화하고 필요 시 무급으로 이틀까지 추가하

16) 우선 지원대상 기업(고용고용법 시행령 제12조)은 광업 300인 이하,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 300인 이하, 운수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100인 이하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 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임

여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다.

〈표 III-2-1〉 육아를 위한 휴가휴직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산전후 휴가	· 산전·후 90일 임신기간 중 분할사용(이전에는 연속사용만 가능) · 배우자 유급 3일에 필요시 무급 2일 추가 가능(중전 무급 3일)
육아 휴직	· 육아휴직 급여 40만원 정액지급 → 40% 정률지급(50만원~100만원) · 휴직급여 중 일부(15%) 복귀 후 지급(50만원 이상분에 한함) · 건강보험료 경감률 증가(50%→6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도입 · 육아휴직급여 중 일부 보전 ·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표 III-2-2〉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법의 변천

구분	내용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988.4.1	만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산전후휴가를 포함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부여(남녀고용평등법 제정)
1995.8.4	부모 중 한명이 선택적으로 육아휴직 활용 가능
2005.12.30	육아휴직 대상 연령 1세에서 3세로 확대
2010.2. 4	부부가 동일한 자녀에 대해 각각 1년씩 육아휴직 사용 가능 육아휴직 대상 연령 확대(3세→6세)
고용보험법	
2001.11.1	육아휴직 급여제도 신설, 육아휴직 급여액 월 20만원
2002. 12.30	육아휴직 급여액 월 30만원
2004. 2.25	육아휴직 급여액 월 40만원
2007. 10.17	육아휴직 급여액 월 50만원
2011.1.1	육아휴직 급여액 통상임금의 40%(※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표 III-2-3〉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직 급여 연도별 지급 실적

구분	산전후휴가급여(A)	육아휴직급여		비율(B/A)	
		합계(B)	남		여
2004	38,541	9,303	181	9,122	24.1
2005	41,104	10,700	208	10,492	26.0
2006	49,539	13,672	230	13,442	27.6
2007	60,964	21,185	310	20,875	34.8
2008	72,260	29,145	355	28,790	40.3
2009	75,047	35,400	502	34,898	47.2
2010	80,532	41,733	819	40,914	51.8

자료: 한국고용정보원

자녀 연령이 6세까지 확대되었으므로 맞벌이 부부는 부부가 교대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2년간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¹⁷⁾

2004~2010년 동안 육아휴직 활용자는 연평균 28.4% 증가하였다. 남성의 경우 전체 활용자 수는 많지 않지만, 2008년 이후 50% 이상 증가하였다. 산전후 휴가 급여 수급자 대비 육아휴직 급여자 비율은 2010년에는 50%를 넘었다(표 III-2-3 참조).

그러나 산전후휴가급여제도에 사각지대가 광범위하여 정책 전달의 한계가 존재한다. 현행 고용보험법 상 산전후 휴가급여의 고용보험에 의한 지원은 피보험자에 한정되어 있다. 특수고용형태 출산여성근로자와 출산 여성자영업자는 산전후 휴가급여제도로부터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 임금근로자 중 고용보험 가입률은 정규직 77.2%, 비정규직 44.1%로 총 65.3%이다(표 III-2-4 참조).

〈표 III-2-4〉 근로형태별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수혜자 비율: 2011.3

단위 : %

구분	사회보험			근로복지			
	국민연금 ¹⁾	건강보험 ²⁾	고용보험	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임금근로자	65.7	68.6	65.3	65.2	65.4	44.4	57.2
정규직	79.1	80.6	77.2	77.9	79.8	54.6	69.6
비정규직	39.5	45.1	44.1	40.2	37.3	24.3	33.0

주: 1) 2) 직장가입자만 포함
 자료: 통계청(2011).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

〈표 III-2-5〉 근로형태

단위: %(명)

구분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소계	한시직	시간제	비전형
계	100.0	66.2	33.8	19.7	9.0	13.5
남자	100.0	72.0	28.0	17.0	4.6	12.0
여자	100.0	58.3	41.7	23.5	14.9	15.6

자료: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여성취업자¹⁸⁾의 근로 형태는 임금 근로자 중 정규직이 58.3%이고 41.7%가 비

17) 피보험자인 배우자와 동시에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기간에 대하여는 부부근로자 중 1인에 대하여만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함.
 18) 취업률은 15세 인구 중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자, 동일가구 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주당 18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사

정규직이다. 남성 근로자에 비하여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표 III-2-5 참조).

3) 근무유연제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는 단시간 근로는 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로 규정한다. 통상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인 경우 해당 사업장 내에서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자는 단시간 근로자이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의거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대다수는 풀타임(full-time) 위주의 장시간 근로자로 주 30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는 2009년 기준 OECD 평균 16.2%에 현저히 떨어지는 9.9%에 불과하다. 장시간 위주의 경직적인 근로환경은 자녀를 둔 여성이 경제활동과 자녀양육을 병행할 어렵게 하는 주된 요인 중 하나이다.

정부는 재택근무, 시차출퇴근, 시간제 근로 등 일과 가정 양립에 유리한 유연 근무제도를 시행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사용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2010년 노동고용부 조사(김태홍 외, 2010)에 의한 개별유연근무제도의 도입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체 중에서 단시간 근로제도를 도입한 사업체는 13.7%이었고 그다음으로 보상휴가제 11.6%,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7.3%, 선택적 근로시간제 6.1%, 원격근무제 2.8%, 재량근무제 2.2%, 재택근로시간제 1.6%이었다.

〈표 III-2-6〉 유형별 유연근무제도 도입 및 활용

단위: 개 %

구분	단시간 근로제	선택적 근로 시간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재택 근무제	원격 근무제	재량 근로 시간제	휴가 보상제
도입	13.7	6.1	7.3	1.6	2.8	2.2	1.6
활용	12.5	5.2	5.8	1.2	2.6	1.8	9.6
활용률	91.4	65.2	80.0	73.8	91.8	79.3	83.2

주: 1) 도입(활용)비율은 조사 사업체 중 도입(활용) 사업체 비율을 나타냄.

2) 활용율은 제도 도입 사업체 중 제도 활용 사업체 비율을 나타냄.

3) 조사대상 업체수는 10,000소임.

자료: 김태홍 외(2010). 노동고용부

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휴직자 비율을 말함.

유연근무제 도입 사업체의 지난 1년 동안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가 있는 사업체 비율 제도 활용 현황을 보면, 단시간근로시간제는 91.4%, 선택적근로시간제 85.2%, 탄력적근로시간제 80.0%이었다. 원격근무제를 도입한 사업체의 제도 활용률은 91.8%로 상당히 높은데 비해서, 재택근무제는 73.8%로 재택근무제의 활용률은 저조하였다. 재량근로시간제도는 79.3%로 다소 활용률이 낮았다. 보상휴가제는 도입 사업체의 83.2%가 활용하고 있었다(표 III-2-6 참조).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시간제근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재량근무제, 집중근무제, 유연복장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 근무형태, 시간, 방법, 복장, 장소 등 5개 분야 9개 유형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유연한 근로문화 확산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 워크센터를 도입하여 원격근무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간·장소의 제약 없는 업무 수행을 지원할 예정이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는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전 자녀를 둔 근로자가 전일제 육아휴직 대신 최대 1년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 근무할 수 있는 제도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회에 한해 분할 사용이 가능하다.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혼합하여 사용이 가능하다. 이 제도는 2007년도에 마련되었으나 기업에서는 단시간 근로자의 인력관리 부담이 있고, 근로자 측에서는 신청 거절과 육아휴직과 대비하여 전혀 일하지 않고 받는 금액이나 일을 하고 받는 금액의 차이가 없게 되므로 선택 요인이 거의 없다. 정부는 사업주가 허용여부에 대한 재량을 갖고 있는 부분을 개선하고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무시간 단축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5월 13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다.

4) 직장보육

직장보육시설¹⁹⁾은 근로자의 출·퇴근 등의 상황이 반영되고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높은 등 확대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비용과 엄격한 설치기준에 따른 부담 및 불이행에 대한 제재가 없다는 점에서 이행이 저조하다. 이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지원 확대, 설치기준 완화, 의무사업장별 접근방식 다양화,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19) 영유아보육법에 의하여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남녀 근로자 500인 이상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 의무 설치 사업장으로, 의무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정부는 2011년 직장보육시설 설치 층수를 종전의 3층에서 안전기준 마련과 더불어 직장보육시설과 보육전용건물의 경우, 5층까지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²⁰⁾ 또한 2차선 이내 도로를 횡단하여 이용 가능한 놀이터를 인근 놀이터로 인정함으로써 설치 기준을 완화하였다. 보육수당 지급은 직장 내 또는 인근에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한 경우로 제한한다. 이밖에도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종전 7%에서 10%로 인상하고 유구비품 교체시 지원비용을 상향토록 추진하고 개·보수비에 대한 무상지원, 경력있는 우수 교사 확보, 보육시설 내 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 등으로 기업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이행 강제방안을 도입하여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공표제도를 도입하였다.

노동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돕기 위하여 고용보험기금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에게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건립비, 매입비, 임차비, 개·보수비, 전환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해 준다.²¹⁾ 또한 무상 지원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위한 시설전환비 및 유구비품비를 지원한다.²²⁾

직장보육시설에는 고용보험 기금으로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 인건비와 교재교구비를 지원한다. 시설장은 매분기 말일 기준 보육아동수가 20인 이상인 경우에 지원하고, 취사부는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보육아동수와 관계없이 지원한다. 교재교구비 지원은 중소기업이 설치한 직장보육시설 대상으로 규모에 따라 월 120만원~480만원을 지원한다. 또한 운영비는 사업주단독 또는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주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지원은 대체로 고용주 지원으로 간주된다.

20) 층수완화에 따른 안전기준 조건은 전층 스프링클러 설치·양방향 비상계단 설치·주출입구와 직통계단 거리는 30m 이내·내부 마감재는 불연재 설치·자동화재탐지기 설치·2급 방화관리자 화재관리 등임.

21) 융자금은 최고 7억원이며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상환에 대출금리는 우선지원대상기업(중소기업) 연 1.0% 대기업 연 2.0%이다. 토지매입비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됨.

22) 시설전환비는 최고 2억원(사업주단체의 경우 최고 5억원), 유구비품비는 최고 5천만원(교체비용은 3천만원임. 소요비용의 80~60% 지원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 영아, 장애아시설은 80%를 지원함.

〈표 III-2-7〉 사업장 유형별 직장보육 의무 이행률

단위: 개소, %

구 분	의무사업장	이행				미이행
		소계	설치	수당	위탁	
전체	824	561	308	206	47	263
(비율)	(100.0)	(68.1)	(37.4)	(25.0)	(5.7)	(31.9)
국가기관	55	50	41	-	9	5
(비율)	(100.0)	(90.9)	(82.0)	-	(18.0)	(9.1)
지자체	129	129	72	56	1	-
(비율)	(100.0)	(100.0)	(55.8)	(43.4)	(0.8)	-
학교	73	56	22	30	4	17
(비율)	(100.0)	(76.7)	(30.1)	(41.1)	(5.5)	(23.3)
(공사)기업	567	326	173	120	33	241
(비율)	(100.0)	(57.5)	(30.5)	(21.2)	(5.8)	(42.5)

주: 국가기관 중 국방부의 군부대는 제외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한편 직장보육시설 미설치 시 지원하는 보육수당은 보육시설 이용여부 또는 정부 보육료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50%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2011년 현재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사업장은 824개소이다. 이 중에서 68.1%인 561개소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설치는 37.4%인 308개 사업장이고 그 이외는 수당과 위탁으로 대신하고 있다. 사업장 유형별로는 국가기관 및 지자체는 97.3%가 의무 이행중이며, 학교는 76.7%, 기업은 57.5%가 보육시설 설치 등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어린이집 설치는 국가기관이 82.0%로 가장 높고, 지자체가 55.8%이며, 학교와 기업은 30% 수준이다(표 III-2-7 참조).

〈표 III-2-8〉 직장보육 의무 미이행 사유

단위: %(개소)

구분	이행추진중 (설치중 등)	예산부족 (비용부담)	장소 미확보	보육수요 부족	기타/ 무응답	계
전체	0.4	21.7	17.1	42.6	18.3	100.0(263)
국가기관	0.0	20.0	0.0	0.0	80.0	100.0(5)
학교	5.9	11.8	17.6	52.9	11.8	100.0(17)
기업	-	22.4	17.4	42.8	17.4	100.0(241)

주: 기타/무응답은 검토 중, 노사협의 중, 필요성 부재, 무응답 등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2011). 내부자료

미이행 사업장은 31.9%인 263개소인데, 미이행 사유는 예산부족 21.7%, 보육 수요 부족 42.6%, 장소 미확보 17.1% 순이다(표 III-2-8 참조). 보육수요 부족이라는 사업장은 수당으로 설치 의무를 대체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이다.

나. 가족친화경영

직장과 가정의 관계에 대한 사회적 환경 및 가치관의 변화로 인하여 누구나 본인이 원할 경우 가정과 직장생활에서 두 가지 역할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사회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2008년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하고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가족친화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인증평가 항목은 운영, 실행 및 만족도로 구성되어 있다. 실행 사항은 사실 모두 직·간접적으로 자녀 양육 지원과 관련이 있으나, 특히 자녀 양육 지원과 직접 관련된 사항은 기본요소로 근로자 본인 및 배우자 출산 지원,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을 들 수 있고, 특성화 요소로 탄력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 건강 지원 등을 들 수 있다(표 III-2-9 참조).

평가결과 100점 기준으로 7점을 받으면 인증을 획득하는데, 2008년부터 2010년 11월 현재 65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표 III-2-9〉 가족친화경영 평가항목 중 자녀 양육지원 사항

단위: %(개소)

구분		내용
기본요소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	출산 관련 휴가·휴직제 등 보육비 지원, 사내 보육시설, 학자금, 방과 후 프로그램 등
특성화 요소	탄력적 근무시간제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원	시차 출퇴근제, 근무시간 선택제, 시간 제 근로, 집약근무제 등 재택근무, 모바일 오피스 등 가족간호 관련 비용 보조/대출, 근로자 부모 부양을 위한 지원

자료: 여성가족부(2011). 2011년 가족친화 인증 매뉴얼

<표 III-2-10> 2010 가족친화 점수 결과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공공부문	대학	상장법인
평균점수	51.6	56.9	41.5	45.1
탄력적 근무제도	49.9	54	42	45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69.1	79.9	61.3	56.1
부양가족 지원제도	17	19.2	12.4	14.4
근로자 지원제도	37	39.4	27.5	34.1
가족친화문화조성	59.4	62.8	42.2	55.3
(수)	(1,338)	(731)	(209)	(607)

자료: 여성가족부 <http://ffm.mogef.go.kr/data/bestPracticesList.do>

<표 III-2-11> 2010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 이유

구분	단위: %(개소)			
	전체	공공부문	대학	상장법인
직장만족도 및 직무몰입도 향상	53.4	58.3	35.4	47.4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 조성	47.4	56.0	36.4	37.1
근로자 생산성 증가	39.5	41.3	23.0	37.4
근로자의 요구	20.3	26.3	12.9	13.0
기업홍보 및 이미지 개선	16.6	13.5	10.5	20.3
법에 의한 강제적 설치	14.4	19.7	15.3	8.1
인력 사내유지 용이성	12.7	10.4	5.3	15.5
모름/해당 없음	27.1	21.3	40.7	33.9
(수)	(1,338)	(731)	(209)	(607)

자료: 여성가족부 <http://ffm.mogef.go.kr/data/bestPracticesList.do>

공공기관, 대학, 상장기업 등 1,338개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가족친화 인증 평가 지표를 이용한 점수는 평균 51.6점으로 집계되었다. 공공부문이 대학이나 상장법인에 비하여 점수가 다소 높았다. 영역별로는 자녀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제도가 가장 점수가 높고 부양가족 지원이 가장 점수가 낮았다(표 III-2-10 참조).

이들 사업장에서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이유로는 직장 만족도 및 직무 몰입도 향상이 가장 응답 비율이 높았고, 다음이 가족과 같은 직장분위기 조성, 생산성 증가, 근로자 요구, 기업 홍보 및 이미지 개선 등이다. 이 응답 이유는 사업장 특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인력 사내유지 용이성을 이유로 든 비율이 다소 높았다(표 III-2-11 참조).

<표 III-2-12>는 가족친화 프로그램을 도입의 성과를 나타낸다. 근로자 만족도 재고 59.4%, 생산성 50.8%, 이직률 38.1%, 근태율 26.7%의 순으로 효과가 큰 것

으로 조사되었다.

〈표 III-2-12〉 2010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 성과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공공부문	대학	상장법인
근태율이 낮아짐	긍정	26.7	29.1	25.2	23.4
	보통	56.1	54.2	55.7	58.7
	부정	11.7	11.2	11.5	12.3
이직율이 낮아짐	긍정	38.1	37.4	31.3	39.1
	보통	47.4	47.8	51.1	46.9
	부정	9.6	9.9	10.7	9.2
근로자 만족도향상	긍정	59.4	62.3	55.7	55.6
	보통	33.9	32.3	38.2	36
	부정	4	3.1	3.8	5.3
근로자 생산성향상	긍정	50.8	54.3	49.6	46.1
	보통	40.9	38.8	41.2	43.7
	부정	4.6	3.4	3.8	6.3
계(수)		100.0(1,338)	100.0(731)	100.0(209)	100.0(607)

자료: 여성가족부 <http://ffm.mogef.go.kr/data/bestPracticesList.do>

〈표 III-2-13〉 2010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의 장애요인

단위: %(개소)

구분	전체	공공부문	대학	상장법인
많은 비용 소요	49.8	49.9	34.4	49.6
더 중요한 경영이슈들 산재	31.1	29.7	28.7	32.8
업무부담과 직무의 요구로 인해 도입 불가	27.1	30.2	23	23.4
제도의 효과성 부족	21.7	22.7	14.4	20.6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 힘들 가능성	19.4	19.8	16.7	18.9
투자한 것에 비교해 효과 미미	15.5	15.3	10	15.8
모름/해당 없음	13.5	11.5	5.7	15.8
(수)	19	15	30.6	23.7
	(1,338)	(731)	(209)	(607)

자료: 여성가족부 <http://ffm.mogef.go.kr/data/bestPracticesList.do>

한편 가족친화 프로그램 도입의 장애 요인으로는 과반수인 49.8%가 많은 비용의 소요를 지적하였고 이외에도 더 중요한 경영 이슈가 있다는 응답이 31.1%로 조사되었다. 업무 부담과 직무상 요구로 인해 도입 불가하다는 응답 27.1%, 제도의 효과성 부족 21.7%이며, 근로자에게 균등한 기회제공이 힘들다는 이유도 19.4%로 조사되었다(표 III-2-13 참조).

3. 지역사회 육아지원제도와 실제

가. 시설보육 서비스

1) 보육서비스 이용

양육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양육비용 지원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 기관 공급이 필요하다. 선호도가 높은 국공립보육시설은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 및 기존 민간시설의 반발 등으로 인해 정부는 농·산·어촌 및 저소득층 지역 등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국공립보육시설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육시설과 유치원을 이용하는 아동을 모두 합하면 영아는 전체 영아 135만 8천명 중 50.5%가 보육시설을 이용한다. 이는 2009년 41.6%에서 증가한 것이다. 유아는 전체 유아 137만 7천여명 중 보육시설 41.6%, 유치원 39.1%로 총 80.7%의 아동이 보육시설 또는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다. 영유아를 합하면 약 273만5천명 중 61.7%가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보육시설은 만2세아 이용률이 70%가 넘는다(표 III-3-1 참조).

〈표 III-3-1〉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 영유아 수(2010)

구분	인구수 ¹⁾ (A)	보육시설 (B)	유치원 (C)	계 (B+C)	비율 (B/A)	비율 (B+C/A)	단위: 명, %
							최연소자녀 기준 모취업률 ²⁾ (2009)
0세	448,516	125,133	-	-	27.9	-	24.7
1세	443,963	229,486	-	-	51.7	-	29.2
2세	465,564	331,637	-	-	71.2	-	39.2
0~2세 소계	1,358,043	686,256	-	-	50.5	-	29.9
3세	493,452	243,264	111,482	354,746	49.3	71.9	44.4
4세	448,200	180,542	181,441	361,983	40.3	80.8	44.8
5세	435,281	149,278	244,654	393,932	34.3	90.5	46.0
3~5세 소계	1,376,933	573,084	537,557	1,110,641	41.6	80.7	44.9
0~5세 전체	2,734,976	1,148,674	537,557	1,686,231	42.0	61.7	35.8

주: 1) 인구수는 2010년 12월 주민등록인수임.

2) 모취업률은 2009년 전국 보육실태조사 결과임.

3) 보육시설 자료는 2010년 12월, 유치원 자료는 2010년 4월 통계로 5세이상아는 제외함.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10). 유치원현황.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최연소자녀 기준 모 취업률과 비교해 보면,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용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여 모취업과 상관없이 기관을 이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정원대비 현원이 어린이집 82%이고, 유치원은 75%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다.

2) 다양한 보육서비스

맞벌이 부부 맞춤형 보육서비스 수요에 대한 대응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시간연장 보육 인건비 지원 확대 및 지원 방식 다양화, 시간연장형 보육료 지원 대상 소득 하위 70%까지 확대, 2012년까지 전체 유치원의 종일반 운영 등을 계획하였다. 또한 맞벌이 가정, 장애아 등 가구 특성에 따라 보육시간을 다양화하여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달리 산정할 계획이다. 일하는 부모를 위한 별도의 서비스로는 시간연장, 휴일 24시간 보육 등 시간연장형 보육을 들 수 있다. 시간연장보육은 현재 10,000여개 시간연장 지정어린이집에서 보육아동의 약 2%의 아동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유치원에서도 시설환경 개선비 지원, 3세대 하모니 인력 지원 등으로 유치원 종일반을 확대하고, 밤10시까지 돌보는 야간 돌봄 전담유치원을 2010년에 175개 운영하였다.

취학아동 역시 방과후 돌봄에 대한 수요를 감안하여 지역아동센터를 확대하고 내실화를 기하며, 초등학교에서 정규수업과 방과 후 활동, 가정 돌봄의 3가지 기능을 야간까지 지원하는 '초등돌봄교실' 확대 운영하고 다양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공적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지역아동센터는 2011년 3,260개소에 월 평균 321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며, 2,700명의 아동복지교사에게 월 103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여 각 센터에 파견한다. '초등돌봄교실'은 2010년에 전국 5,851개 초등학교 중 88.4%인 5,177개소에서 실시하였으며 전체 초등학교생 330만명의 약 3%인 104,496명이 이를 이용하였다.

3) 부모 보육료 지원²³⁾

정부는 취학 전 영유아의 보육과 교육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을 확대하여 왔으나, 지원이 일부 소득계층에 한정됨에 따라 국민체감 정도가 저조한 실정이다. 실제로 영유아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소득의 14.1%를 자녀

23) 정부의 보육비용 지원 구조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서문희 외(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참조

양육비로 지출하고 있으며, 양육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아동가구 비율도 64.2%에 달한다(서문희 외, 2009). 이에 제2차 기본계획에서는 전액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 지원을 강화하였다.

현재 0~5세 아동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은 영유아가구 소득 하위 70%까지 보육료 정부지원단가 전액을 지원한다.²⁴⁾ 이러한 기준의 상한 소득 기준은 4인 가족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480만원이다. 또한 맞벌이 가구는 부부 소득 합산액의 25%를 감액하여 소득인정액을 산정한다. 장애아 무상보육은 2003년부터 실시하고 있고, 2010년부터 도입한 출생순위상 둘째아 이상인 영유아 추가 지원은 소득하위 70%이하 전액 지원 확대에 자동 포함되었다. 또한 2010년부터는 다문화 가정 자녀에게 보육료 전액 지원이 실시되었다.

또한 농림식품수산부에서는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농지 소유규모 5ha 미만으로 농어업의 소득이 1자녀 기준으로 4,000만원 미만인 자의 자녀에 양육비를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보육시설과 유치원 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 미이용시는 정부보육료 지원단가의 45%이다. 단, 5세이는 50%이다. 시설 미이용시 정부보육료 지원단가 45%는 2010년 35%에서 상향조정된 것이다.

이러한 보육료 지원 수혜 아동수는 2010년 말 기준으로 87만 9천여명이다. 2008년까지는 0세아의 비율이 다소 낮았으나, 2009년은 0~5세 중 만5세를 제외하고는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표 III-3-2 참조).

또한 차상위계층 이하 어린이집 미이용 영아에게 지급하는 양육수당을 0~1세 지원에서 2세까지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0만원에서 연령에 따라 0세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으로 지원을 확대하였다.

보육료 지원에서의 과제는 유아 보육료이다.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 영아와 달리 유아는 보육료 상한액, 보육료 지원 단가, 표준보육비용간의 격차가 있다. 만4, 5세아 기준으로 보육료 지원 단가는 177,00원, 보육료 상한액은 24만원 내외이며 표준보육비용 28만원 선이다. 실제 보육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부의 지원 단가간의 격차가 전액지원 정책의 부모 체감도를 낮춘다. 이 문제는 5세 누리과정의 도입과 3, 4세 확대에 따라 지원단가가 증액되면서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

24) 2012년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만5세아 전체가 보육비용 전액 지원대상자가 되며 0~2세 전체에게도 전액지원이 도입됨.

〈표 III-3-2〉 연령별 보육료 지원 아동

구분	단위: 명, %						계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 4세	5세이상	
전체 보육 아동수(A)	125,133	229,486	331,637	243,264	180,542	169,848	1,279,910
보육료 지원 아동수(B)	87,934	160,377	222,257	162,554	124,337	121,421	878,880
보육료 지원 비율(B/A)	70.3	69.9	67.0	66.8	68.9	71.5	68.7

주: 방과후 포함됨. 5세 이상은 2010년의 경우 무상보육 대상 포함됨.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표 III-3-3〉 보육료 지원 건수

구분	단위: 건, %					총계
	차등보육료	만5세 무상	두자녀 이상	장애아		
전체 보육 아동수(A)	1,130,632	149,278	-	-	-	1,279,910
보육료 지원 건수(B)	755,100	94,621	14,221	14,938	-	878,880
비율(B/A)	66.8	63.4	-	-	-	68.7

주: 농림부 지원이 제외됨. 2008년까지 두 자녀는 중복지원임.
 자료: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나. 가정내 보육서비스 지원

1) 가정내 파견보육

중앙정부는 아이돌보미를 가정에 파견하는 파견보육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이는 도우미를 선발, 교육하여 가정에 파견하고 관리하며 소득에 따라 그 비용을 지원 하는 사업으로 시간제 돌보미와 종일 돌보미 있다. 시간제는 480시간 이내가 원칙이나 취업 한부모 및 맞벌이 가정 등 생계 활동으로 양육 공백이 우려되는 가정, 다자녀 가구²⁵⁾, 장애부모, 장애아동을 포함한 아동 2명 이상 양육가정, 장기 질병 가정 등 합리적 사유가 있을 경우 연간 720시간 지원이 가능하고, 취업준비, 교육, 긴급한 양육 공백 등 지원 사유에 해당하나 입증이 곤란한 경우에는 연 240시간 내에서 차등 지원한다. 가격은 시간당 5,000원으로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는 본인부담금이 1,000원이고, 전 국가구 평균소득 50%이상 100%이하는 본인 부담이 4,000원이며 그 이상은 5,000원을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25) 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임.

종일돌봄은 생후 3개월 이상 12개월 이하 0세아를 대상으로 월 120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에 해당된다. 대상은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 장애부모의 경우 등이다. 지원 대상은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이다. 기본요금은 1일 10시간, 주 5일, 한 달 20일, 월 200시간 이용 기준으로 100만원이고, 소득기준에 따라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차등 지원한다. 월 120~200시간 이용 시에는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를 감하며, 월 20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시간은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일반 요금을 적용한다.

2010년의 경우 7,200명의 돌보미가 14만 400여 가정을 대상으로 123만 4500여건의 연계 보육활동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2011년 현재는 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다.

한편 경기도에서는 보육정보센터를 거점으로 보육교사 자격자를 가정에 파견하는 파견보육사업을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비용은 경기도가 아동 연령이나 출생순위 등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2011년 450명을 계획하고 있다.

2) 이용 및 지원 시설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와 아동을 위한 지원 시설은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보육정보센터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다. 이 두 센터의 사업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보육정보센터(육아지원센터)

보육정보센터²⁶⁾는 중앙 및 17개 시도 정보센터 41개 시·구 정보센터 등 총 59개소 설치되어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설치 지역 수준에 따라 역할이 차이가 나지만, 시설 중심의 지원 기능으로부터 점차 지역사회 주민 지원 기능 강화로 역할이 다변화하고 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일반 영유아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상담, 부모교육, 육아지원사업 등 다양한 양육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상담은 영유아와 부모의 전문가 상담이나 진단을 통해 자녀의 발달정도를 확인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영유아가 정상범위에서 벗어난 경우 조기 개입하며, 영유아와 부모의 어려움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상담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모두 가능하다. 육아지원사업은 부모와 아동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 운영으로

26) 보육정보센터와 육아지원센터는 지역에 따라 개념과 역할이 혼용되어 사용하고 있음.

그 유형을 센터마다 매우 다양한데, 크게 ① 자료실 및 놀이실 운영, ② 발달검사, 부모교육, 정보제공 등 육아정보 지원, ③ 센터 주관 가족 참여 활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특히 육아지원 강화하여 '영유아 플라자' 개념을 도입한 서울시의 경우 오프라인의 부모와 자녀의 참여 활동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영유아플라자는 가정내에서 직접 돌보는 아동과 부모 등에게 자녀 출산에서 육아까지 통합적인 육아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육아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자치구별 1개소씩 25개소를 설치하였다. 영유아플라자의 주요 시설은 육아정보 나눔터, 놀이시설, 체험학습장, 어린이 도서관, 교재교구 및 장난감 대여실, 육아상담, 보육정보제공 등을 지원할 정보센터 등이다. 주요 기능으로는 베이비&맘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여 저출산, 양육 보육에 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고, 보건소, 병원, 보육시설, 아동상담소 등과 연계망을 구축한다. 그리고 젊은 부모들의 모임 및 정보교환 장소의 육아카페 기능, 부모들에게 단계별 양육방법이나 놀이를 지도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교육기능, 각종 생활 체험을 통해 아동의 근육발달 등 성장을 지원하는 체험학습 기능, 자녀양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상담 및 해결의 상담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시간제 보육을 실시한다.

나) 건강가정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자녀양육지원은 상담, 교육도 부분적으로 포함되지만 순수한 양육지원은 육아 가족품앗이 사업이며, 공간이 확보된 경우 육아공동나눔터의 운영이 가능하다.

가족 품앗이는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녀 돌봄과 양육을 품앗이 하고 싶어하는 경우 이들을 묶어주고 지원하는 사업이다. 자녀 양육의 어려움과 고통을 나누고, 돌봄의 공백을 해소하며 자녀들에게는 풍부하고 양질의 돌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부모들이 주로 함께 하는 활동은 자녀학습, 체험활동, 나들이, 캠프, 다양한 놀이활동 등이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처음 품앗이 그룹을 정할 수 있도록 돕고, 센터의 여건에 따라 센터내 장소 제공, 부모교육 실시, 교구교재 대여, 나들이 활동 지원, 품앗이 회원 대상 교육 등을 지원해 품앗이 활동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돕는다.

공동육아나눔터는 가족 해체와 소외 등에 대한 사회적 반성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으로 가족품앗이 확대와 지역네트워크를 통한 주민 자치적 돌봄 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나타난 돌봄의 새로운

명칭으로 제시된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간 확보가 요구된다.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기관은 건강가정지원센터 내부에 설치되는 '내부형 공동육아나눔터'와 기업 아파트 등에 조성되는 '외부형 공동육아나눔터'로 나뉘어 운영한다. 또한 이들 운영 기관은 공동육아나눔터의 관리 및 운영을 도와줄 활동가를 모집하고 관리하여 공동육아나눔터 이용 가족들의 활동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교육·상담·문화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이용 가족들의 자녀 양육 지원과 가족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동육아나눔터의 주된 특성으로는 자발성, 자원 나눔성, 협동성(관계성), 지역연계성 등을 들 수 있다. 즉, 공동육아나눔은 자발적인 참여와 소속감을 주요 개념으로 하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역시 자발적인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가 강조된다. 둘째, 참여자들이 자원과 지역공동체의 자원을 서로 나눌 수 있도록 나눔터를 조성하여 자원이 교환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공동으로 육아를 수행함으로써 협동과 관계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고립된 육아가 아닌 참여와 관계형성을 통한 협동에 의해 영위되는 삶을 배워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지역 특수성과 정서를 잘 활용하여 거점인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축으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다섯째, 지역공동체가 함께 협동하여 육아를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육아 수행 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한다.

2010년에 32개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42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확보하였고, 5개 지역에서 공동육아나눔터 및 가족 품앗이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사업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2011년에는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을 42개소에서 50개로 확대할 예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이용자는 13,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IV. 자녀양육 환경과 양육태도

제4장에서는 영유아 가구조사 결과로 자녀양육 환경과 양육 관련 태도를 검토하였다. 제1절은 육아 관련 정보와 지식에 관한 것이며, 제2절은 가족의 양육 지원, 3절은 양육관련 태도와 가족의 양육지원간의 관련성으로 구성하였다.

1. 육아 관련 정보 지원

가. 육아 관련 정보 충분성

육아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의 충분성에 대해서는 충분하다는 의견이 25.0%,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27.3%로 육아 관련 정보에 대하여 불충분하다고 느끼는 비율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다. 5점 만점으로는 평균 2.9점이다(표 IV-1-1 참조).

〈표 IV-1-1〉 육아 관련 지식 및 정보의 충분 여부

							단위: %(명)
구분	매우 불충분	불충분	보통	충분	매우 충분	계(수)	5점 척도
전체	2.6	24.7	47.7	23.0	2.0	100.0(2,003)	2.9
지역							
대도시	3.9	24.7	42.3	27.6	1.5	100.0(738)	2.9
중소도시	1.5	27.1	50.7	18.5	2.2	100.0(850)	2.9
읍·면	2.4	20.0	51.1	24.1	2.4	100.0(415)	3.0
$\chi^2(df=8)/F$		37.8 ^{***}					2.7
모 취업							
취업중	1.6	22.7	46.3	26.1	3.4	100.0(618)	3.0
휴직중	6.5	29.0	38.7	22.6	3.2	100.0(31)	2.8
미취업	2.5	25.7	48.7	21.8	1.3	100.0(1,339)	2.9
$\chi^2(df=8)/F$		20.0 [*]					6.1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특히, 대도시와 중소도시 등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어머니들에게서 육아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28.6%로 읍·면 지역 22.4%보다 더 높았다. 이는 도시 지역이 정보를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접할 수 있다는 일반적인 생각에 비추어 볼 때 특이한 결과라 하겠는데, 이는 육아정보를 접한 어머니일수록 더 많은 정보를 원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휴직 중인 어머니와 미취업모들의 육아정보 불충분성에 대한 응답 비율이 취업모보다 높게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나. 정보 습득 경로

영유아를 둔 어머니들이 육아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는 육아관련사이트 37.7%, 친구·동료 33.75로, 이 두 가지가 주요한 정보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안 어른으로부터 육아 정보를 습득한다가 15.7%로 세 번째를 차지했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여 집안 어른은 감소하고 육아 관련 사이트는 증가하여 최근 인터넷 확산을 반영하였다(표 IV-1-2 참조).

〈표 IV-1-2〉 육아 관련 지식 및 조언의 습득 경로

단위: %(명)

구분	집안 어른	친구 동료	육아 관련 사이트	육아 관련 전문가	관련 서적	기타	없음	계(수)	$\chi^2(df)$
전체	15.7	33.7	37.7	2.5	8.6	-	1.6	100.0(2,003)	
지역									
대도시	19.0	30.6	38.3	2.6	7.6	0.1	1.8	100.0(738)	24.7(12)*
중소도시	14.7	35.9	36.4	1.8	9.9	-	1.4	100.0(850)	
읍·면	11.8	34.9	39.3	4.1	8.0	-	1.9	100.0(415)	
모 취업									
취업중	19.7	33.0	34.0	2.6	9.7	-	1.0	100.0(618)	23.9(12)*
휴직중	16.1	19.4	45.2	3.2	16.1	-	-	100.0(31)	
미취업	13.4	34.6	39.6	2.5	8.1	0.1	1.9	100.0(1,339)	
2009년	24.8	32.1	21.3	3.6	8.2	1.0	3.3	100.0(2,54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지역에 따라 정보 습득의 차이를 보였는데, 대도시에서 오히려 집안어른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높았으며, 인터넷사이트는 읍·면지역이 도시지역보다 조금 더 높았다. 취업모도 미취업모나 휴직 중인 경우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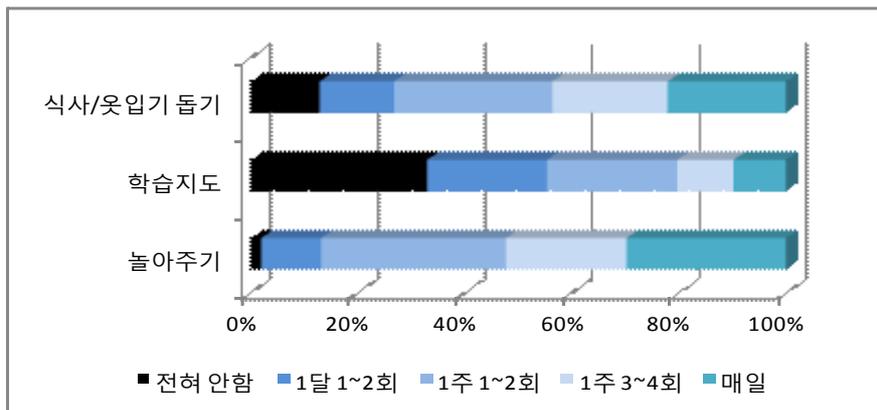
다 집안 어른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 취업으로 인해 조부모 등 집안 어른에게 자녀 양육을 맡기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2.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가. 남편의 양육 참여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를 3가지 문항으로 조사하였다. 이를 보면 남편들은 자녀와 놀아주기와 자녀 식사 및 옷 입기 도와주기는 좀 참여하는 데 비하여 자녀의 학습지도는 전혀 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아서, 자녀교육은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IV-2-1 참조).

자녀와 놀아주기는 일주일에 1~2회가 34.5%로 가장 많고, 매일 29.8%, 일주일에 3~4회 22.5%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자녀 학습지도는 전혀 안한다는 비율이 33.0%이었고, 일주일에 1~2회 24.3%, 한 달에 1~2회 22.4% 순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양육 참여에서 자녀의 식사를 도와주거나 옷 입기를 도와주는 정도는 일주일에 1~2회가 29.5%로 가장 많고, 매일이 22.1%이며 일주일에 3~4회가 21.5%이다(그림 IV-1-1 참조).



[그림 IV-1-1] 남편의 자녀양육참여 정도(종합)

모 취업여부별 차이는 자녀와 놀아주기는 취업모의 남편이 더 많이 하며, 자녀 학습 지도는 차이가 없고, 자녀 식사 및 옷 입기 돕기는 부인이 취업 중이거나 휴직 중인 경우 남편의 참여도가 높았다. 자녀 식사 및 옷 입기와 같은 일상적 자녀 보호에의 남편참여에는 여성취업이 강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남편의 자녀 학습지도는 모 취업여부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표 IV-2-1〉 모 취업여부별 남편의 양육 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1달 1~2회	1주 1~2회	1주 3~4회	매일	계(수)	$\chi^2(df)$
자녀와 놀아주기							
전체	2.0	11.2	34.5	22.5	29.8	100.0(1,946)	25.9(8)**
취업중	1.0	8.5	31.8	25.1	33.6	100.0(590)	
휴직중	-	3.3	50.0	10.0	36.7	100.0(30)	
미취업	2.5	12.6	35.3	21.7	27.9	100.0(1,324)	
학습지도							
전체	33.0	22.4	24.3	10.5	9.8	100.0(1,946)	11.8(8)
취업중	32.8	20.0	24.7	9.8	12.7	100.0(590)	
휴직중	36.7	16.7	30.0	6.7	10.0	100.0(30)	
미취업	33.1	23.6	23.9	10.9	8.5	100.0(1,324)	
식사/옷 입기 돕기							
전체	12.9	13.9	29.5	21.5	22.1	100.0(1,946)	40.9(8)***
취업중	11.2	10.0	28.0	22.4	28.5	100.0(590)	
휴직중	3.3	3.3	53.3	13.3	26.7	100.0(30)	
미취업	13.9	15.9	29.8	21.4	19.1	100.0(1,32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이외 지역과 소득수준별로는 자녀 학습지도는 대도시에 거주하거나 또는 가구소득이 낮은 가정의 남편들이 자녀의 학습지도를 '전혀 안함'이 많았다. 자녀 식사 및 옷 입기 돕기는 읍·면지역의 남편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 항목에서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II-1-2 참조).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는 남편의 장시간 근로와 관련이 있다(표 IV-2-2 참조). 평일 평균 10시간, 주말 평균 56시간의 장시간 근로 하에서 가정에서 자녀양육을 분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이해된다.

<표 IV-2-3>은 남편 근무시간과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 정도의 관련성을 알아본 것인데, 자녀와 놀아주기, 자녀식사 및 옷입기 도와주기, 자녀의 학습지도 모

두 평일 근무시간 10시간, 11~12시간, 13시간 이상이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남편들의 장시간 근무 환경 속에서도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자녀 양육 참여가 어려워짐을 알 수 있다.

〈표 IV-2-2〉 모 취업여부별 남편의 근무 시간(평일, 주간) 평균

단위: 시간(명)

구분	평일 근무시간	표준편차	F	주간 근무시간	표준편차	F	(수)
전체	10.02	1.806		56.41	13.183		(1,874)
취업중	9.82	1.886	5.0**	55.47	13.473	3.8*	(558)
휴직중	9.93	1.889		52.28	10.576		(29)
미취업	10.10	1.763		56.92	13.077		(1,2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표 IV-2-3〉 남편의 평일 근무시간별 양육 참여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1달 1~2회	1주 1~2회	1주 3~4회	매일	계(수)	$\chi^2(df)$
자녀와 놀아주기							
전체	1.9	11.1	34.6	22.5	29.8	100.0(1,814)	
8시간	2.4	8.6	32.2	24.5	32.2	100.0(453)	
9~10시간	1.2	9.7	33.4	22.8	32.9	100.0(803)	55.0(12)***
11~12시간	2.2	13.7	36.6	21.7	25.8	100.0(489)	
13시간 이상	4.3	26.1	50.7	11.6	7.2	100.0(69)	
학습지도							
전체	32.9	23.0	24.2	10.4	9.5	100.0(1,814)	
8시간	28.5	21.6	27.8	11.7	10.4	100.0(453)	
9~10시간	30.8	23.3	22.5	12.0	11.5	100.0(803)	41.9(12)***
11~12시간	39.3	22.5	23.7	8.0	6.5	100.0(489)	
13시간 이상	40.6	33.3	23.2	-	2.9	100.0(69)	
식사/옷 입기 돕기							
전체	12.6	13.8	29.9	21.6	22.1	100.0(1,814)	
8시간	11.9	12.1	28.7	23.2	24.1	100.0(453)	
9~10시간	9.2	13.0	31.6	21.8	24.4	100.0(803)	50.9(12)***
11~12시간	17.0	14.9	28.8	21.5	17.8	100.0(489)	
13시간 이상	26.1	26.1	26.1	8.7	13.0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나. 조부모 양육지원

1) 조부모 양육지원 현황

가) 조부모 특성별 자녀 양육 지원 비율

영유아를 둔 부모가 받는 조부모 자녀양육 지원을 조부모 유형과 동거 여부로 나누어 알아보았다. 지원 받는다는 조부모는 시부모 8.9%, 친정부모 8.6%로 그 비율이 유사하였고, 동거여부는 동거 7.2%, 비동거 10.3%로 비동거형태가 더 많았다. 그런데 시부모는 동거와 비동거 비율이 비슷하였으나 친정부모는 비동거가 동거보다 많았다. 즉, 조부모 양육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는 비동거 친정부모의 경우가 더 많은 특징을 보였다.

지역별 차이는 두드러지지 않았으나, 모의 취업상태별 차이는 커서 취업모는 지원을 받는 비율이 시부모 16.8%, 친정부모 20.7%인데 비하여 미취업모는 각각 4.5%, 3.0%이다(표 IV-2-4 참조).

〈표 IV-2-4〉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구분	동거		비동거		단위: %(명) (수)
	시부모	친정부모	시부모	친정부모	
전체	4.9	4.0	2.3	6.3	(2,003)
지역					
대도시	6.9	3.9	3.0	6.6	(738)
중소도시	3.5	4.6	2.4	6.4	(850)
읍·면	4.3	3.1	1.2	5.8	(415)
모 취업					
취업모	6.1	10.7	4.0	16.7	(618)
휴직중	9.7	9.7	-	6.5	(31)
미취업	3.7	0.8	1.4	1.6	(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IV-2-5>는 조부모의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 조부모의 거주 특성을 나타내는데, 영아와 유아가 모두 비동거 친정부모의 역할이 가장 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시부모와 친정부모의 기여 비율은 유사하다. 이와 같이 조부모 양육은 여성 취업 참여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유아의 어머니 심층면접에 참여한 어머니 중 출산을 전후하여 경력단절을 경험하였거나 또는 현재 미취업 상

태이면서 앞으로도 취업 의사가 없는 어머니들의 대부분은 주변에 자녀 양육을 도와줄 시어른이나 친정부모가 없음을 중요한 이유로 들었다.

〈표 IV-2-5〉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영아·유아

단위: %(명)

구분	동거 시부모	비동거 시부모	동거 친정 부모	비동거 친정 부모	(수)
전체	28.6	23.4	13.6	36.7	(346)
영아	28.5	22.8	12.7	38.6	(228)
유아	28.8	24.6	15.3	33.1	(11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나) 양육 지원 형태

조부모에게 양육 지원을 받는 형태는 62.4%가 정기적으로 조부모의 양육도움을 받는다고 응답하였고, 사정에 생겼을 때 조부모의 도움을 받는 경우도 37.6%이다. 정기적으로 도움을 받은 경우보다는 적지만, 약 38%라는 적지 않은 수치라는 점에서 자녀양육에 있어 조부모의 양육지원은 여러 측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표 IV-2-6 참조).

〈표 IV-2-6〉 조부모 양육지원 방식

단위: %(명)

구분	정기적	일시적	계(수)	$\chi^2(df)$
전체	62.4	37.6	100.0(346)	
연령 구분				
영아	62.7	37.3	100.0(228)	0.02(1)
유아	61.9	38.1	100.0(118)	
지역				
대도시	64.0	36.0	100.0(150)	1.1(2)
중소도시	59.1	40.9	100.0(137)	
읍·면	66.1	33.9	100.0(59)	
모 취업				
취업중	73.6	26.4	100.0(231)	54.8(2)***
휴직중	87.5	12.5	100.0(8)	
미취업	30.9	69.1	100.0(9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정기적·규칙적으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가장 많이 받는 경우는 자녀 연령이 나 지역별로 집단간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모의 취업은 휴직중이거나 취업모가 각각 73.6%, 87.5%이고 미취업이 30.9%로 보고되어 조부모에게 자녀양육을 의존하게 되는 절대적인 변인이 여성의 취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동시에 심층면접에서는 조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직장을 그만 두고 전업주부로 지내게 되었다는 응답도 있어 여성의 취업과 조부모의 양육 참여가 서로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IV-2-7>를 보면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경우, 월~금이 26.0%로 가장 많고, 월~일이 23.7%, 월~토가 8.4% 순으로 나타났고, 간헐적이 34.4%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조부모에게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5일 이상이 58.1%로 가장 많고, 약 40%는 필요시 간헐적으로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통계적 유의성을 없으나 유아보다는 영아일 때 주중과 주말 모두 조부모에게 양육을 맡기는 경우가 많고, 취업모나 휴직중인 경우는 주로 주중에 자녀를 맡기는 경우가 더 많았다.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으며, 모의 취업 여부별로는 취업모는 주말에도 맡기기는 하지만 월~금 지원 비율이 가장 높았고, 간헐적 지원이 미취업모 집단에서 63.9%로 높다(표 IV-2-7 참조).

<표 IV-2-7> 조부모 양육지원 시 자녀를 맡기는 기간

단위: %(명)

구분	월~일	월~토	월~금	주2~3회	간헐적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3.7	8.4	26.0	6.6	34.4	0.9	100.0(346)	
연령 구분								
영아	26.3	8.8	24.1	7.0	32.5	1.3	100.0(228)	5.3(5)
유아	18.6	7.6	29.7	5.9	38.1	-	100.0(118)	
지역								
대도시	24.0	6.7	27.3	8.0	32.7	1.3	100.0(150)	5.5(10)
중소도시	21.9	9.5	24.8	6.6	37.2	-	100.0(137)	
읍·면	27.1	10.2	25.4	3.4	32.2	1.7	100.0(59)	
모 취업								
취업중	20.8	11.7	36.4	6.9	23.8	0.4	100.0(231)	76.6(10)***
휴직중	12.5	12.5	50.0	12.5	12.5	-	100.0(8)	
미취업	24.7	1.0	2.1	6.2	63.9	2.1	100.0(9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정기적으로 조부모가 손자녀를 돌볼 때, 하루 평균 시간은 7.8시간으로 집계되어 하루의 1/3시간 정도가 손자녀 양육에 쓰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아가 평균 8.5시간으로 유아 6.2시간보다 길고, 읍·면지역의 경우 9.8시간으로 도시보다 길며, 출산 후 1년 미만이 대부분일 것으로 추정되는 휴직중인 경우 13.2시간으로 전체보다 양육 지원 시간이 길었다(표 IV-2-8 참조).

〈표 IV-2-8〉 조부모의 하루 평균 양육지원 시간

단위: %,시간(명)

구분	1~5 시간	6~10 시간	11~15 시간	15~24 시간	계(수)	평균	F/t
전체	49.6	29.4	8.8	12.3	100.0(229)	7.8	
연령 구분							
영아	43.9	30.3	11.0	14.8	100.0(155)	8.5	2.6**
유아	61.6	27.4	4.1	6.8	100.0(73)	6.2	
지역							
대도시	53.9	28.4	8.8	8.8	100.0(103)	7.1	2.5
중소도시	45.3	37.2	7.0	10.5	100.0(86)	7.7	
읍·면	47.5	15.0	12.5	25.0	100.0(40)	9.8	
모 취업							
취업중	48.0	32.2	9.0	10.7	100.0(177)	7.8	7.7**
휴직중	-	57.1	14.3	28.6	100.0(7)	13.2	
미취업	77.1	11.4	5.7	5.7	100.0(35)	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다) 비용

조부모에게 양육 지원을 받는 경우에 51.4%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으며, 48.6%는 지불하는데, 그 중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비율이 31.5%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과 지역에 따른 집단 차이는 정기적 지불을 기준으로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영아 33.3%, 유아 28.0%로 영아가 높고, 대도시나 읍·면보다는 중소도시가 높다. 한편 취업여부별로는 취업모나 휴직중은 40.7%, 50.0%가 정기적으로 지불한다고 하였고, 미취업은 단지 8.2%만이 정기적으로 지불한다고 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9 참조).

자녀양육비용으로 조부모에게 지불하는 경우, 그 비용은 평균 약 34만5천원으로 집계되었다. 금액대별로는 10~30만원이 36.0%, 50만원 이상이 30.7% 순이었

다. 정기와 부정기에 따라 차이가 커서 비용 평균은 정기 지불시는 41만원이 넘고 부정기 지불 시는 16만원 정도이다(표 IV-2-10 참조).

〈표 IV-2-9〉 조부모 양육지원 비용 지불 형태

단위: %(명)

구분	정기 지불	비정기 지불	현물로 지불	지불 안함	계(수)	$\chi^2(df)$
전체	31.5	10.7	6.4	51.4	100.0(346)	
연령 구분						
영아	33.3	11.4	5.7	49.6	100.0(228)	1.9(3)
유아	28.0	9.3	7.6	55.1	100.0(118)	
지역						
대도시	34.7	7.3	5.3	52.7	100.0(150)	5.0(6)
중소도시	27.7	13.1	6.6	52.6	100.0(137)	
읍·면	32.3	13.6	8.5	45.8	100.0(59)	
모 취업						
취업중	40.7	13.4	6.1	39.8	100.0(231)	49.1(6)***
휴직중	50.0	12.5	-	37.5	100.0(8)	
미취업	8.2	5.2	8.2	78.4	100.0(9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2-10〉 조부모 양육지원 지불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10만원 미만	10~30만원 미만	30~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계(수)	지불비용 평균	F/t
전체	8.7	36.0	24.7	30.7	100.0(150)	344.9	
정기적	4.6	24.8	29.4	41.3	100.0(109)	415.1	5.8***
비정기적	18.9	64.9	13.5	2.7	100.0(37)	164.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전체적으로 유아보다 영아, 지역규모가 클수록, 미취업모보다 취업모가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 정기적으로 지불한다는 경우에 특성별로 보면 영아가 유아보다 지불비용이 약 12만원 정도 더 많았다. 또한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지불비용 평균이 높으며, 일하는 엄마가 미취업모보다 평균 6만원 정도를 더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1 참조).

〈표 IV-2-11〉 조부모 양육지원 지불 비용 평균 비교

단위: 천원(명)

구분	전체			정기적 지불		
	평균	(수)	F/t	평균	(수)	F/t
전체	344.9	(150)		415.6	(109)	
연령 구분						
영아	364.5	(104)	1.4	438.7	(76)	1.4
유아	300.6	(46)		360.9	(33)	
지역						
대도시	402.4	(67)	0.5	462.5	(52)	2.0
중소도시	306.1	(56)		391.4	(38)	
읍·면	282.5	(27)		333.1	(19)	
모 취업						
취업중	349.5	(128)	3.3*	421.8	(94)	0.2
휴직중	400.0	(5)		375.0	(4)	
미취업	271.4	(14)		362.5	(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라) 애로 사항

조부모의 자녀 양육지원에서 겪는 어려운 정도를 4개 항목에 대하여 그 정도를 5점 척도로 조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어려움이 많음을 뜻한다. 그 결과, 부모님의 건강과 노화부담이 2.7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다음이 부모의 여가시간 부재 등 삶의 질 하락으로 2.2점이며, 양육 방침 갈등이나 비용지불의 경제적 부담은 각각 1.8점, 1.7점으로 낮게 나왔다(표 IV-2-12 참조). 즉, 조부모의 건강에 대한 염려가 다른 이유에 비해 좀 더 많이 조부모 양육지원의 애로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부모는 혈연관계이자 연세가 많기 때문에 어린 손자녀의 양육이 체력적으로 힘들어서 건강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심리적 미안함이 경제적 부담보다 더 크게 작용한다고 볼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조부모에게 경제적 보상이 경제적 가정형편에 따르기 때문에 비혈연 돌보미서비스 이용비용에 비하여 그 비용이 충분하지 않아서 노고나 미안함을 상쇄할 수준이 아니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성별로는 영아 자녀를 맡길 때 부모님의 건강 염려가 2.8점으로 유아의 2.5점보다 조금 더 높았고 그 이외 항목은 차이가 거의 없으며, 지역적 차이도 거의 없다. 모의 취업상태에 따라서는 4가지 문항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양육방침 갈등, 부모의 삶의 질 하락, 건강과 노화 부담은 휴직중, 취업중,

미취업모의 순으로 점수가 높게 차이를 보이며, 비용지불 경제적 부담은 취업모와 휴직중인 집단이 미취업모보다 높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V-2-12〉 조부모 양육지원 애로사항 개요

단위: %(명)

구분	경미					심각 ⑤	5점 척도 (수)
	①	②	③	④			
양육방침 갈등	52.6	21.1	15.9	8.1	2.3	100.0(346)	1.8
부모 삶의 질 하락 우려	41.6	22.3	16.5	10.1	9.5	100.0(346)	2.2
부모 건강과 노화 부담	24.0	18.5	28.3	17.6	11.6	100.0(346)	2.7
비용지불 경제적 부담	63.9	13.9	11.8	7.5	2.9	100.0(346)	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IV-2-13〉 조부모 양육지원 애로 사항: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양육방침 갈등	부모 삶의 질 하락 우려	건강과 노화 부담	비용 부담	(수)
전체	1.8	2.2	2.7	1.7	(346)
연령 구분					
영아	1.8	2.2	2.8	1.7	(228)
유아	1.8	2.1	2.5	1.6	(118)
<i>t</i>	-0.3	0.5	2.0*	0.2	
지역					
대도시	1.9	2.2	2.7	1.7	(150)
중소도시	1.8	2.1	2.7	1.7	(137)
읍·면	1.9	2.3	2.6	1.6	(59)
<i>F</i>	0.3	0.3	0.0	0.0	
모 취업					
취업중	1.8	2.3	2.9	1.9	(231)
휴직중	3.2	3.6	4.3	1.8	(8)
미취업	1.9	1.7	2.1	1.2	(97)
<i>F</i>	5.6**	9.2***	14.4***	7.4***	
조부모 동거					
동거	2.1	2.1	2.5	1.5	(135)
비동거	1.6	2.3	2.8	1.8	(203)
<i>t</i>	4.1***	-1.1	-1.8	-2.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한편 조부모와의 동거여부별로는 동거하는 경우에 양육방침에 대한 갈등이 높고 반대로 비용 지불 부담은 적다. 즉, 조부모와 같이 살면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양육방침의 갈등이 종종 발생할 수는 있는 단점이 있지만, 경제적 비용 면에서는 부담이 덜 되는 장점도 있다(표 IV-2-13 참조).

마) 이용 이유

조부모 양육 지원은 다른 서비스나 기관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가 87.6%로 대부분이고, 혈연 단독지원은 7.5% 정도이다. 즉, 유치원, 어린이집과 같은 반일제 기관을 이용하면서 조부모가 돌보는 비율이 보편적 유형으로 나타났다. 조부모 단독으로 자녀를 양육지원 받는 경우, 유아 1.7%에 비해 영아 10%로 비율이 좀 더 높게 나타났으며, 대도시이며 휴직중인 경우가 다른 지역, 취업, 미취업 중인 경우에 비해 더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4 참조).

〈표 IV-2-14〉 조부모 양육지원과 타 서비스 중복 이용여부

단위: %(명)

구분	혈연 단독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	비혈연 보육	부모 양육지원	기타	계(수)	$\chi^2(df)$
전체	7.5	87.6	-	4.6	0.3	100.0(346)	
연령 구분							
영아	10.5	82.9	-	6.6	-	100.0(228)	17.1(3)**
유아	1.7	96.6	-	0.8	0.8	100.0(118)	
지역							
대도시	11.3	77.3	-	10.7	0.7	100.0(150)	31.5(6)***
중소도시	5.8	94.2	-	-	-	100.0(137)	
읍·면	1.7	98.3	-	-	-	100.0(59)	
모 취업							
취업중	9.5	87.9	-	2.2	0.4	100.0(231)	19.6(6)**
휴직중	25.0	62.5	-	12.5	-	100.0(8)	
미취업	2.1	87.6	-	10.3	-	100.0(9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 양육 및 베이비시터 등 개별 대리양육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적응에 힘들까봐가 82.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는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가 5.4%이고, 4.1%는 비용

부담을 이유로 들었다. 육아지원기관의 지속적인 양적 증가와 평가인증 어린이 집 등 질적 수준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수이지만 보낼만한 기관이 마땅치가 않는다는 응답이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기관의 부재라기보다는 질적으로 우수한 기관, 즉, 부모들의 마음에 드는 마땅한 기관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비용부담 때문도 4.1%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IV-2-15 참조).

〈표 IV-2-15〉 조부모·베이비시터 양육지원 이유

단위: %(명)

구분	어려서 기관 적응 애로	비용 부담	여러 아이 동시보육	환경변화와 정서적 문제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계(수)	$\chi^2(df)$
전체	82.4	4.1	6.8	1.4	5.4	100.0(69)	
지역							
대도시	84.4	-	9.4	3.1	3.1	100.0(32)	9.5(8)
중소도시	82.1	7.1	-	-	10.7	100.0(28)	
읍·면	78.6	7.1	14.3	-	-	100.0(14)	
모 취업							
취업중	74.5	5.9	9.8	2.0	7.8	100.0(51)	7.1(8)
휴직중	100.0	-	-	-	-	100.0(4)	
미취업	100.0	-	-	-	-	100.0(19)	

주: 기타 '원하는 시간이 이용하기 어려워',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등의 문항이 있었으나 응답치 않아 표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2) 취업으로 인한 조부모 지원 경험

다음은 자녀를 키우면서 취업으로 인하여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이다.

가) 지원 경험

자녀를 키우면서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은 경험에 대하여 전체 설문 대상자 중 29.0%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했다(표 IV-2-16 참조). 양육지원 조부모는 시부모 13.7%, 친정부모 15.3%로 시부모보다 친정부모 비율이 높았으며, 동거여부로는 동거 6.6%, 비동거 22.4%로 동거보다 비동거 조부모의 양육 지원을 받는 비율이 높았다. 즉, 조부모 양육 지원 중에서 같이 살지 않는 친정부모로부

터 양육지원을 받은 비율이 13.1%로 가장 높았다.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대도시 거주가 비동거 친정부모 비율이 18.0%로 다른 지역보다 높았으며, 현재 여성이 직업을 갖고 있는 경우 동거나 비동거 형태로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은 경험이 미취업모보다 훨씬 많았다. 이는 조부모 유고 등 조부모 지원 불가로 현재 미취업 상태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반증하며, 여성의 취업이 조부모 양육지원의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나타낸다.

〈표 IV-2-16〉 모 취업으로 인한 양육지원 조부모 동거·비동거 비율

단위: %(명)

구분	동거 시부모	비동거 시부모	동거 친정부모	비동거 친정부모	(수)
전체	4.4	9.3	2.2	13.1	(2,003)
지역					
대도시	5.8	11.1	2.4	18.0	(738)
중소도시	3.5	8.4	2.1	10.5	(850)
읍·면	3.6	8.2	1.9	9.9	(415)
$\chi^2(df)$	5.7(2)	4.3(2)	0.3(2)	24.5(2) ^{***}	
모 취업					
취업중	7.0	19.1	4.7	26.0	(618)
휴직중	16.1	22.6	-	22.6	(31)
미취업	2.3	4.5	1.1	7.1	(1,339)
$\chi^2(df)$	36.0(2) ^{***}	113.5(2) ^{***}	25.6(2) ^{***}	134.7(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지원 유형

다음은 취업으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출생순위별로 어떠한 방식으로 조부모의 양육지원을 받았는지를 알아보았다(표 IV-2-17 참조).

대체로 단독 이용과 기관 이용 병행이 병존하는데, 첫째 자녀는 시부모 양육 시 기관이용 병행이 8.5%로 가장 많았고, 친정부모는 단독 돌봄이 8.0%로 가장 많았다. 둘째아 및 셋째아의 육아를 맡기는 경우 조부모의 단독 돌봄보다는 기관병행 비율이 더 높다. 두 자녀 이상을 조부모가 단독 돌봄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관을 병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2-17〉 모 취업으로 인한 조부모 양육지원 유형: 자녀 출생순위별

단위: %(명)

구분	시부모			친정부모			(수)
	단독 돌봄	기관 이용 병행	비혈연 보육 병행	단독 돌봄	기관 이용 병행	비혈연 보육 병행	
첫째 자녀	6.4	8.5	0.2	8.0	7.9	0.2	(2,003)
둘째 자녀	4.1	6.1	0.1	5.0	5.8	0.1	(1,487)
셋째 자녀	2.5	4.9	-	3.5	5.3	-	(2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3. 자녀양육 태도와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제3절에서는 자녀양육 관련 태도와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과의 관련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자녀양육 관련 태도를 살펴보고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여기에 미치는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가. 자녀양육태도

1) 개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양육태도는 수용적 태도와 거부적 태도라는 일차원적 태도로 조사하였다. 응답자가 어머니이므로 아버지의 태도는 어머니의 인식 결과이다.

자녀 양육에서 수용성을 나타내는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눈다와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두 문항은 어머니는 아니라는 비율이 각각 1.3%, 3.7%로 5점 척도로 평균 4.5점, 4.1점으로 수용적 태도가 높다.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태도도 각각 5점 척도로 4.3점, 3.9점으로 어머니보다는 낮으나 수용적인 태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V-3-1 참조).

한편 거부를 나타내는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치는 것과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데에는 아니라는 응답이 어머니 12.3%, 32.0%이고 아버지도 각각 35.3%, 40.6%이다. 5점 평균으로는 어머니가 3.7점, 3.2점이고 아버지는 3.1점, 2.9점이다.

이를 보며 대체로 자녀에게 거부보다는 대화 등의 수용적 방법으로 자녀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수용과 거부 경향은 모두 어머니가 인식한 바에 따르면 아버지보다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IV-3-1〉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아닌 편	보통	가끔	자주	계(수)	5점평균
어머니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0.2	1.1	16.5	10.6	71.6	100.0(1,988)	4.5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0.1	3.6	28.3	21.3	46.8	100.0(1,988)	4.1
화를 내거나 큰소리침	3.3	9.0	16.5	49.1	22.1	100.0(1,988)	3.7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5.9	26.1	27.5	23.4	17.1	100.0(1,988)	3.2
아버지							
자녀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0.3	3.9	15.7	23.9	56.2	100.0(1,959)	4.3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0.5	6.9	29.1	24.8	38.7	100.0(1,959)	3.9
화를 내거나 큰소리침	7.1	28.2	19.2	37.1	8.4	100.0(1,959)	3.1
잘못된 행동 그냥 넘어가지 않음	8.6	32.0	24.6	24.5	10.4	100.0(1,959)	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응답자 특성별로 차이는, 먼저 어머니는 <표 IV-3-2>와 같이 모든 문항에서 지역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모취업 여부에서는 휴직중인 엄마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높고, 미취업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와 같이 있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별 차이는 자녀입장에서의 생각은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에서 점수가 높으며, 자녀에게 화를 내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집단이 높았다. 잘못된 행동에 대한 반응 차이는 소득수준별로 일관성이 없었다.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 태도도 지역 차이는 어머니 태도와 마찬가지로 유의하지 않고, 어머니의 취업은 엄마가 휴직중인 경우에 아버지가 자녀입장에서 생각한다는 비율이 높으며 일하는 엄마보다 집에 있는 엄마의 경우 아버지가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소득별 차이는 가구소득수준이 높은 집단의 어머니가 아버지가 자녀입장에서의 생각한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IV-3-2〉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태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아버지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자녀의 입장에 서 생각	화를 내거나 큰소리 침	잘못 그냥 넘어가 지 않음	(수)	격의 없이 즐거움 나눔	자녀의 입장에 서 생각	화를 내거나 큰소리 침	잘못 그냥 넘어가 지 않음	(수)
전체	4.5	4.1	3.7	3.2	(1,988)	4.3	3.9	3.1	2.9	(1,959)
지역										
대도시	4.5	4.1	3.7	3.1	(734)	4.2	3.9	3.1	2.9	(717)
중소도시	4.5	4.1	3.7	3.2	(843)	4.3	3.9	3.1	2.9	(832)
읍·면	4.4	4.0	3.7	3.2	(411)	4.3	3.9	3.1	3.0	(409)
F	1.3	0.2	0.1	0.9		0.9	0.3	0.04	0.4	
모 취업										
취업중	4.5	4.1	3.5	3.1	(618)	4.3	4.0	2.9	2.8	(590)
휴직중	4.8	4.3	3.6	3.1	(31)	4.5	4.1	3.1	3.0	(30)
미취업	4.5	4.0	3.8	3.2	(1,338)	4.3	3.9	3.1	2.9	(1,324)
F	3.9*	1.8	17.0***	1.1		1.9	3.9*	5.6**	1.6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5	4.2	3.7	3.0	(145)	4.2	3.9	3.1	2.7	(124)
150~199만원	4.5	4.0	3.9	3.2	(229)	4.3	3.8	3.3	3.0	(219)
200~249만원	4.4	4.0	3.7	3.2	(409)	4.2	3.8	3.2	3.0	(410)
250~299만원	4.4	4.0	3.8	3.1	(348)	4.3	3.9	3.0	2.9	(348)
300~349만원	4.5	4.0	3.8	3.2	(349)	4.3	3.9	3.1	2.9	(348)
350~399만원	4.4	4.1	3.7	3.3	(153)	4.2	3.8	3.1	3.0	(156)
400~449만원	4.5	4.2	3.7	3.1	(148)	4.3	4.0	2.9	2.8	(148)
450만원 이상	4.6	4.2	3.5	2.9	(203)	4.3	4.1	2.9	2.9	(203)
F	1.4	2.5*	2.8**	2.1*		0.6	2.2*	2.6	1.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가족 자녀양육 지원의 영향

아버지의 자녀 양육 참여와 조부모의 자녀 양육 지원이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종속변수는 양육태도이며 독립변수는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조부모 자녀양육 지원, 그리고 이외에 자녀수, 가구소득, 모의 취업여부, 모 학력, 부의 학력을 포함하였다.

종속변수는 1~5점 척도이며 아버지의 양육 참여는 3가지 문항의 1~5점 척도 조사 결과를 합산한 3~15점 연속변수이며, 조부모 지원여부, 모의 취업, 모의 학력, 부의 학력을 더미변수로 처리하였다. 가구 소득은 로그값으로 처리하였다.

<표 IV-3-3>은 회귀분석에 포함된 각 변수들의 특성들을 살펴본 것으로 모 양육태도 중 긍정적 양육태도는 5점 척도 기준으로 4점대로 긍정적 성향이 높은 편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 정서는 5점 척도 기준으로 3~2점대로 다소 부정적인 편으로 나타났다. 더미변수로 처리한 조부모 지원여부, 모의 취업, 모의 학력, 부의 학력은 변수의 평균이 해당 범주가 전체 표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낸다. 다음으로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의 상관성을 살펴본 결과, 모와 부의 학력이 각각 대졸인 경우 피어슨 상관계수 0.505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조부모지원과 모 취업이 0.367로 상관성이 높게 나타났다(표 IV-3-4 참조).

〈표 IV-3-3〉 회귀분석에 포함된 변수들의 특성

문항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수)
긍정적 모 양육태도					
자녀와 격 없이 지냄, 즐거움 나눔	4.53	0.81	1	5	(1988)
자녀의 필요, 관심을 자녀 입장에서 생각, 느낌	4.11	0.94	1	5	(1988)
부정적 모 양육태도					
와락 화를 내거나 큰소리 칩	3.78	0.99	1	5	(1988)
잘못된 행동을 엄격, 용서하지 않음	3.20	1.17	1	5	(1988)
부정적 모 양육정서					
자녀 양육시 자주 혼란스러움	3.86	1.05	1	5	(1988)
자녀가 귀찮거나 짜증스럽	2.85	1.20	1	5	(1987)
자녀 성장 및 장래 걱정	3.80	1.22	1	5	(1987)
가정내 지원					
부 양육참여	9.35	3.02	3	15	(1,946)
조부모지원(1=지원)	0.17	0.37	0	1	(2,003)
가구 특성					
자녀수	1.90	0.65	1	5	(2,003)
가구소득(로그값)	5.56	0.42	3	7	(1,988)
모 취업					
모 취업(1=취업)	0.31	0.46	0	1	(1,988)
모 휴직(1=휴직)	0.02	0.12	0	1	(1,988)
모 학력					
모 전문대(1=전문대)	0.25	0.43	0	1	(1,988)
모 대학(1=대학)	0.27	0.44	0	1	(1,988)
부 학력					
부 전문대(1=전문대)	0.21	0.40	0	1	(1,958)
부 대학(1=대학)	0.35	0.47	0	1	(1,958)
부 대학원(1=대학원)	0.06	0.23	0	1	(1,958)

〈표 IV-3-4〉 회귀분석에 포함된 독립변수들간의 상관계수

구분	부 양육 참여정도	조부모 지원	자녀수	가구 소득	모 취업	모 휴직	모 전문대	모 대학	부 전문대	부 대학	부 대학원
부양육참여	1										
조부모지원	0.068**	1									
자녀수	-0.119***	-0.048*	1								
가구소득	-0.006	0.205***	0.031	1							
모 취업	0.096***	0.367***	-0.079***	0.260***	1						
모 휴직	0.016	0.030	0.031	0.024	-0.085***	1					
모 전문대	0.002	-0.035	-0.065**	0.012	-0.015	0.012	1				
모 대학	0.062**	0.070**	-0.020	0.222***	0.058*	0.060**	-0.349***	1			
부 전문대	0.015	-0.044	-0.060**	-0.042	-0.037	0.038	0.323***	-0.206***	1		
부 대학	0.058*	0.024	-0.018	0.227***	0.022	0.040	-0.079***	0.505***	-0.376***	1	
부 대학원	0.024	0.045*	-0.027	0.152***	0.046*	-0.013	-0.041	0.105***	-0.128***	-0.180***	1

* $p < .05$, ** $p < .01$, *** $p < .001$

<표 IV-3-5>는 긍정적 모의 양육태도, <표 IV-3-6>은 부정적인 모의 양육태도 각 문항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가족의 지원으로 아버지의 자녀 양육 지원이 모의 긍정적 양육 태도에 정적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조부모 양육 지원은 유의하지 않았다. 가구 특성으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긍정적 양육 태도에 부적 방향으로 유의한 관계를 보였다.

〈표 IV-3-5〉 긍정적 모 양육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자녀와 격 없이 즐거움 나눔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4.368***	0.285		3.923***	0.330	
부 양육참여 정도	0.032***	0.006	0.118	0.030***	0.007	0.095
조부모지원(1=유)	0.017	0.053	0.008	0.058	0.062	0.023
자녀수(로그값)	-0.115***	0.028	-0.092	-0.140***	0.033	-0.097
가구소득	-0.002	0.050	-0.001	0.013	0.058	0.006
모 취업(1=취업)	0.015	0.044	0.008	0.002	0.052	0.001
모 휴직(1=휴직)	0.301#	0.149	0.046	0.151	0.173	0.020
모 학력(1=전문대)	0.070	0.048	0.037	0.102#	0.056	0.047
모 학력(1=대학)	0.082	0.053	0.045	0.225***	0.062	0.106
부 학력(1=전문대)	0.001	0.053	0.001	0.008	0.062	0.003
부 학력(1=대학)	0.073	0.052	0.043	-0.010	0.061	-0.005
부 학력(1=대학원)	0.222**	0.085	0.064	0.145	0.099	0.036
수정R ²		0.035			0.032	
F		7.297***			6.772***	
(수)		(1928)			(1928)	

$p < .1$, ** $p < .01$, *** $p < .001$

휴직 중인 모와 대학원 이상의 부 학력인 경우에 자녀와 격 없이 즐거움을 나누는 가능성이 높고, 모의 학력 수준이 높은 경우에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 입장에서 생각한다는 응답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각각 3.5%, 3.2% 수준이다.

모의 부정적 양육 태도에는 아버지의 자녀 양육 지원과 조부모 양육 지원이 모두 부의 방향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부의 자녀 양육 지원과 조부모 양육 지원이 없는 경우에 모의 양육 태도가 더 부정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외에 자녀수가 많을수록 모의 양육 태도가 부정적이며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가 취업한 어머니에 비하여 자녀에게 화를 내거나 큰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다. 이들 독립변수의 설명력은 각각 4.9%, 0.7% 수준이다.

〈표 IV-3-6〉 부정적 모 양육태도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와락 화를 내거나 큰소리 칩			잘못된 행동에 엄격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4.034***	0.345		3.228***	0.416	
부 양육참여 정도	-0.021**	0.007	-0.065	-0.018*	0.009	-0.047
조부모지원(1=유)	-0.123#	0.064	-0.046	-0.206**	0.078	-0.066
자녀수(로그값)	0.249***	0.034	0.165	0.099*	0.041	0.056
가구소득	-0.095	0.061	-0.039	0.001	0.073	0.001
모 취업(1=취업)	-0.182**	0.054	-0.084	-0.021	0.065	-0.008
모 휴직(1=휴직)	-0.112	0.180	-0.014	0.039	0.217	0.004
모학력(1=전문대)	0.096	0.059	0.042	-0.089	0.071	-0.033
모학력(1=대학)	0.031	0.064	0.014	-0.015	0.078	-0.006
부학력(1=전문대)	0.044	0.064	0.018	0.055	0.078	0.019
부학력(1=대학)	0.083	0.063	0.040	0.008	0.076	0.003
부학력(1=대학원)	0.015	0.103	0.004	-0.022	0.125	-0.004
수정R ²		0.049			0.007	
F		10.059***			2.261*	
(수)		(1928)			(1928)	

$p < .1$, * $p < .05$, ** $p < .01$, *** $p < .001$

나. 자녀양육 정서

1) 개요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를 알아보기 위해 3개 부정적 정서를 나타내는 항

목으로 조사하였다. 어머니는 아니라는 응답 비율이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음 45.2%, 장래가 걱정 19.1%, 양육이 혼란스러움이 12.8%로 조사되었다. 5점 척도로 각각 2.8점, 3.8점, 3.8점이다. 장래가 걱정되고 양육이 혼란스러워도 그 만큼 자녀가 귀찮지는 않음이다.

아버지는 어머니에 비하여 아닌 편이라는 응답 비율이 어머니보다 다소 높고 5점 척도로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음 2.8점, 장래가 걱정 3.5점, 양육이 혼란스러움이 3.4점이다. 즉, 어머니보다는 아버지가 덜 부정적인 양육 정서를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가 인식하였다(표 IV-3-7 참조).

〈표 IV-3-7〉 부모의 자녀양육 부정적 정서

구분	단위: %(명)						5점 척도
	전혀 아님	아닌 편	보통	가끔 그렇다	자주 그렇다	(수)	
어머니							
양육이 혼란스러움	2.9	9.9	16.2	40.4	30.6	(1,988)	3.8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움	15.5	29.7	14.1	35.6	5.0	(1,988)	2.8
자녀 장래가 걱정됨	4.8	14.3	14.6	28.8	37.5	(1,988)	3.8
아버지							
양육이 혼란스러움	4.0	20.5	24.7	33.2	17.6	(1,959)	3.4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움	18.7	39.3	17.2	22.0	2.8	(1,959)	2.5
자녀 장래가 걱정됨	5.6	18.2	19.6	28.8	27.9	(1,959)	3.5

주: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정서가 높음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응답자 특성별 차이로 어머니 태도의 지역 차이는 유의하지 않았다. 모의 취업 특성별 차이는 휴직중이나 취업중인 어머니보다 미취업 어머니가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와 자녀장래가 걱정이라는 두 문항에서 부정적 정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역시 자녀와 함께 지내며 돌보아야 하는 시간 변수가 작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양육이 혼란스럽고 자녀장래가 걱정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버지 태도는 모취업이나 지역간 차이가 없다. 그러나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어머니가 인식한 아버지의 정서는 어머니 정서와 같이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이 양육이 혼란스럽고 자녀장래가 걱정이라는 부정적 정서가 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IV-3-8 참조).

〈표 IV-3-8〉 특성별 부모의 자녀양육 정서: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어머니			계(수)	아버지			(수)
	양육이 혼란스러움	귀찮고 짜증스러움	장래가 걱정됨		양육이 혼란스러움	귀찮고 짜증스러움	장래가 걱정됨	
전체	3.8	2.8	3.8	(1,988)	3.4	2.5	3.5	(1,959)
지역								
대도시	3.8	2.8	3.7	(734)	3.3	2.4	3.4	(717)
중소도시	3.9	2.8	3.7	(843)	3.4	2.5	3.5	(832)
읍·면	3.8	2.8	3.8	(411)	3.3	2.4	3.6	(409)
F	0.9	0.4	0.8		0.7	1.8	3.1*	
모 취업 여부								
취업중	3.8	2.7	3.6	(618)	3.3	2.4	3.5	(590)
휴직중	3.9	2.6	3.4	(31)	3.2	2.4	3.3	(30)
미취업	3.8	2.9	3.8	(1,338)	3.4	2.5	3.5	(1,324)
F	1.1	4.2*	5.3**		0.6	2.5	1.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9	2.7	3.9	(145)	3.5	2.5	3.7	(124)
150~199만원	4.0	2.8	3.9	(229)	3.5	2.5	3.7	(219)
200~249만원	3.9	2.8	3.8	(409)	3.4	2.5	3.5	(410)
250~299만원	3.8	2.7	3.7	(348)	3.3	2.4	3.5	(348)
300~349만원	3.8	2.9	3.7	(349)	3.4	2.6	3.5	(348)
350~399만원	3.7	2.9	3.8	(153)	3.2	2.5	3.5	(156)
400~449만원	3.8	2.8	3.9	(148)	3.4	2.4	3.7	(148)
450만원 이상	3.6	2.7	3.4	(203)	3.2	2.4	3.2	(203)
F	2.7**	1.3	2.5*		2.1*	1.2	3.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2) 가족 자녀양육 지원의 영향

부정적인 모의 양육 정서에 대해서도 이를 종속변수로 놓고 양육태도 분석에 서와 동일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IV-3-9>를 보면 아버지 양육 참여 정도는 양육태도에서와 마찬가지로 3 가지 부정적 양육 정서 중 두 가지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양육 참여 정도가 적을수록 어머니가 자녀 양육 시 자주 혼란스럽 고, 자녀가 귀찮거나 짜증스러울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외 가구와 부모 특 성으로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3가지 항목 모두 부정적 양육 정서를 가질 가능성 이 높고 모가 취업하거나 휴직중인 경우에 부정적 양육 태도가 낮을 가능성이

높다. 즉, 전업 주부의 양육 정서가 부정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이를 변수들의 설명력은 각각 20.7%, 0.9%로 낮은 편이다.

〈표 IV-3-9〉 부정적 모 양육정서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자녀 양육시 자주 혼란스러움			자녀가 귀찮거나 짜증스럽			자녀 성장 및 장래 걱정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B	표준오차	β
(상수)	4.904 ^{***}	0.372		2.571 ^{***}	0.423		4.401 ^{***}	0.433	
부 양육참여 정도	-0.020 [*]	0.008	-0.056	-0.042 ^{***}	0.009	-0.106	-0.010	0.009	-0.026
조부모지원(1=유)	0.085	0.070	0.030	-0.120	0.079	-0.037	0.026	0.081	0.008
자녀수(로그값)	0.061 [#]	0.037	0.038	0.193 ^{***}	0.042	0.105	0.082 [#]	0.043	0.044
가구소득	-0.167 [*]	0.066	-0.065	0.061	0.075	0.021	-0.096	0.076	-0.032
모 취업(1=취업)	-0.039	0.058	-0.017	-0.079	0.066	-0.030	-0.118 [#]	0.068	-0.045
모 휴직(1=휴직)	0.109	0.195	0.013	-0.252	0.221	-0.026	-0.398 [#]	0.226	-0.040
모학력(1=전문대)	-0.039	0.063	-0.016	0.007	0.072	0.003	-0.065	0.074	-0.023
모학력(1=대학)	-0.083	0.070	-0.035	-0.095	0.079	-0.035	-0.088	0.081	-0.032
부학력(1=전문대)	-0.096	0.069	-0.037	0.039	0.079	0.013	-0.053	0.081	-0.018
부학력(1=대학)	-0.020	0.068	-0.009	0.081	0.078	0.032	-0.112	0.080	-0.044
부학력(1=대학원)	-0.029	0.112	-0.006	-0.045	0.127	-0.009	0.011	0.130	0.002
수정R ²		0.009		0.027			0.009		
F		2.535 ^{**}		5.775 ^{***}			2.529 ^{**}		
(수)		(1928)		(1928)			(1928)		

$p < .1$, * $p < .05$, ** $p < .01$, *** $p < .001$

다. 자녀양육 가치 및 교육시기

자녀 양육 가치로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중요하다고와 자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다는 두 개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질문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의 65.1%가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대도시나 읍·면보다 중소도시에서 높고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높은 경향을 나타냈다. 나의 인생의 중요성에 대하여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는 50%만이 선택하였으나 400만원 이상 가구소득에서 이 비율은 70% 이상으로 증가하였다(표 IV-3-10 참조).

한편, 자녀에게 글자와 숫자를 언제 가르치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 82.9%의 어머니들은 아이가 관심을 가진 후 가르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해서,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다는 조기교육에 대해선 대다수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는 응답자 특성별 차이도 없었다.

〈표 IV-3-10〉 자녀양육 가치와 방식

단위: %(명)

구분	양육 가치		교육 시기		계(수)
	육아도 중요하지만 인생도	나의 아이 내 인생 희생 위해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다	아이가 관심을 가진 후가 좋다	
전체	65.1	34.9	17.1	82.9	100.0(2,003)
지역					
대도시	61.2	38.8	18.2	81.8	100.0(738)
중소도시	68.0	32.0	16.9	83.1	100.0(850)
읍·면	65.8	34.2	15.7	84.3	100.0(415)
$\chi^2(df)$	8.0(2)*		1.2(2)		
모 취업					
취업중	67.0	33.0	17.4	82.5	100.0(618)
휴직중	71.0	29.0	19.4	80.6	100.0(31)
미취업	64.3	35.7	16.9	83.1	100.0(1,339)
$\chi^2(df)$	1.8(2)		0.2(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0.0	50.0	20.7	79.3	100.0(150)
150~199만원	63.6	36.4	16.5	83.5	100.0(231)
200~249만원	63.1	36.9	17.5	82.5	100.0(412)
250~299만원	66.9	33.1	16.0	84.0	100.0(350)
300~349만원	64.6	35.4	17.1	82.9	100.0(350)
350~399만원	67.3	32.7	14.7	85.3	100.0(156)
400~449만원	73.6	26.4	14.9	85.1	100.0(148)
450만원 이상	71.4	28.6	20.2	79.8	100.0(203)
$\chi^2(df)$	25.1(7)**		4.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라. 출산 관련 태도

1) 이상 자녀수

부모들은 이상적인 자녀수는 2명 62.7%, 3명 이상 30.0%, 1명이 7.3% 순으로 대다수 부모들은 2명 이상 자녀를 갖기를 희망했다. 평균도 2.2명이다(표 IV-3-11 참조). 이는 2009년 조사에서 20-44세 기혼여성의 이상자녀수가 1.98명이고, 자녀수별로는 1명 1.85명, 2명 2.03명, 3명 2.32명이었던 조사결과(이삼식 외, 2010)에 다소 높다.²⁷⁾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거주자가 이상적인 자녀수로 3명 이상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모의 취업별로 보면, 취업 중과 미취업보다는 휴직 중이 1명을 이상적 자녀수로 응답한 비율이 19.4%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휴직중인 어머니들은 대체로 출산을 한 지 1년 미만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된다.

〈표 IV-3-11〉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상 자녀수

단위: %(명)						
구분	1명	2명	3명이상	계(수)	$\chi^2(df)$	평균
전체	7.3	62.7	30.0	100.0(1,998)		2.2
지역						
대도시	7.3	62.7	29.9	100.0(738)	4.0(4)	2.2
중소도시	8.0	63.2	28.7	100.0(846)		2.2
읍·면	5.9	61.6	32.9	100.0(414)		2.3
모 취업						
취업중	7.6	62.6	29.8	100.0(618)	16.4(6)*	2.2
휴직중	19.4	41.9	38.7	100.0(31)		2.2
미취업	6.7	63.0	30.3	100.0(1,334)		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2) 추가 출산 의향 및 이유

향후 추가 출산 의향에 대해서는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는 20.7%이고 79.3%인 대부분은 추가 출산 의사가 없었다. 이를 현재 자녀수별로 구분해 보면 1명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53.1%가 추가 출산의사를 나타낸 반면에 2명은 10.8%, 3명은 5%이다(표 IV-3-12 참조).

추가출산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414명에게 계획하고 있는 출산 자녀수를 질문한 결과, 88.8%가 1명이라고 응답했다. 2명은 10.9%, 3명은 0.2%에 그쳤다.

다음 <표 IV-3-13>은 자녀수 1명인 어머니와 2명인 어머니의 추가출산 의사와 기대자녀수를 지역 및 모의 취업상태별로 알아본 것이다. 자녀수가 1명인 경우를 보면 추가출산 의향은 읍·면지역이 도시지역 보다 높게 나타나나 이는 통계적 유의성은 없고, 추가 출산을 희망한다고 한 경우에 그 자녀수는 지역 차이가 없다. 취업여부별로는 미취업모가 추가출산 의사가 다소 높으나 추가출산을 희망한다고 한 경우에 자녀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27) 이를 이상자녀수의 증가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표 IV-3-12〉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 의사 및 계획하는 자녀 수

단위: %(명)

구분	추가출산의사			추가출산 의사시 자녀수			
	있다	없다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전체	20.7	79.3	100.0(2,003)	88.9	10.9	0.2	100.0(414)
1	53.2	46.8	100.0(506)	87.4	12.6	-	100.0(269)
2	10.8	82.2	100.0(1,215)	90.8	8.4	0.8	100.0(131)
3	5.0	95.0	100.0(282)	100.0	-	-	100.0(14)
$\chi^2(df)$		440.6(2) ^{***}				5.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IV-3-13〉 현 자녀수 및 특성별 추가출산 의사와 계획하는 자녀 수

구분	자녀 1명				자녀 2명				
	출산 의사 있다	추가출산 의사시 계획 자녀수			출산 의사 있다	추가출산 의사시 계획 자녀수			
		1명	2명	계(수)		1명	2명	3명 이상	계(수)
지역									
대도시	53.3	88.7	11.3	100.0(106)	10.6	87.2	12.8	-	100.0(47)
중소도시	48.9	85.5	14.5	100.0(110)	10.3	96.2	3.8	-	100.0(52)
읍·면	64.6	88.7	11.3	100.0(53)	12.1	87.5	9.4	3.1	100.0(32)
$\chi^2(df)$	5.9(2)		0.6(2)	0.6(2)			5.7(4)		
모 취업									
취업중	52.6	89.1	10.9	100.0(101)	8.3	93.1	6.9	-	100.0(29)
휴직중	50.0	100.0	-	100.0(3)	29.4	80.0	20.	-	100.0(5)
미취업	54.1	86.1	13.9	100.0(165)	11.6	90.7	8.2	1.0	100.0(97)
$\chi^2(df)$	0.1(2)		0.9(2)	8.9(2) [*]			1.3(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자녀수가 2명인 모는 추가출산 의사는 읍·면이 도시보다 다소 높고 휴직중인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다. 추가출산을 희망할 경우 자녀수는 대도시와 읍·면이 중소도시보다 많은 경향이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다.

한편, 추가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한 이유로는 취학자녀 교육비 부담을 지적한 비율이 42.4%로 가장 많고, 다음이 현재 자녀수 만족이 27.0%, 미취학자녀 양육비 부담 19.8% 순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사유는 자녀수 특성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첫 자녀를 낳으면 기저귀, 분유 등 신규 지출 항목이 늘어나면서 지출 비용이 평균 40만원 정도가

증가하는데(서문희 외, 2010), 이러한 증가가 부담으로 느껴지지만, 자녀수가 많아지면서 미취학 자녀 양육비 부담보다는 취학자녀 양육비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다. 긍정적으로는 그동안 정부가 많은 재정투입을 해서 추진한 다양한 영유아의 양육지원정책이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다른 관점으로는 초등학생 방과후 정책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정책과제임을 나타낸다.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할수록 사교육비가 많이 발생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추가 출산을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표 IV-3-14〉 현 자녀수별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이유

단위: %(명)

구분	미취학 자녀 양육비 용	취학 자녀 교육비 부담	바쁜 직장 생활	건강 문제	현재 자녀 만족	부모 나이	기타	계(수)	$\chi^2(df)$
전체	19.8	42.4	2.4	2.8	27.0	5.1	0.4	100.0	
1명	23.6	35.9	6.8	7.2	18.1	7.2	1.3	100.0(237)	
2명	21.2	45.5	1.7	1.8	24.3	5.3	0.2	100.0(1,083)	119.7(12) ***
3명	10.8	35.4	1.5	3.0	45.9	2.6	0.7	100.0(26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다음은 자녀수가 1명과 2명인 경우를 나누어서 특성별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먼저 자녀수가 1명인 경우는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취학자녀 교육비 부담 38.3%, 미취학 자녀 양육비 비용부담 26.1%로 각각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차이를 보였다. 또 취업여부별로 보면, 휴직중인 경우 미취학 양육비용과 취학 비용이 각각 1/3로 응답했다. 가구소득은 350~399만원에서 미취학자녀 교육비 부담이 47.1%로 추가 출산을 막는 가장 큰 이유이지만, 450만원 이상 고소득 가구는 그 비율이 낮았다. 이는 미취학 영유아 양육지원 비용이 하위 70%로 상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가정 중심으로 지원되다 보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위 30% 중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서 양육비 부담을 상대적으로 크게 인식하는데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표 IV-3-15 참조).

자녀수가 2명인 경우는 지역별로는 읍·면과 중소도시에서 취학자녀 교육비 부담이 높고 도시가 읍·면보다 미취학자녀 양육비 부담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 또 취업여부별로 보면, 휴직 중이 미취학 양육비용을 이유로 든 비율이 높고, 미취업모가 취학자녀 교육비를 이유로 든 비율이 높다(IV-3-16 참조). 가구

소득별로는 일관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²⁸⁾

〈표 IV-3-15〉 추가출산 의사가 없는 이유: 자녀수 1명

단위: %(명)

구분	미취학 자녀 양육비	취학 자녀 교육비	바쁜 직장생 활	건강문 제	현재 자녀 만족	부모 나이	기타	계(수)
지역								
대도시	24.7	33.3	7.5	4.3	24.7	4.3	1.1	100.0(93)
중소도시	26.1	38.3	7.0	7.8	13.0	7.0	0.9	100.0(115)
읍·면	10.3	34.5	3.4	13.8	17.2	17.2	3.4	100.0(29)
모 취업								
취업중	26.4	29.7	16.5	6.6	16.5	3.3	1.1	100.0(91)
휴직중	33.3	33.3	-	-	33.3	-	-	100.0(3)
미취업	22.1	38.6	0.7	7.9	19.3	10.0	1.4	100.0(1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IV-3-16〉 추가출산 의사 없는 이유: 자녀수 2명

단위: %(명)

구분	미취학 자녀 양육비	취학 자녀 교육비	바쁜 직장생 활	건강문 제	현재 자녀 만족	부모 나이	기타	계(수)
지역								
대도시	24.4	38.0	2.0	2.0	27.2	6.3	-	100.0(397)
중소도시	21.8	48.9	1.5	1.3	22.2	3.7	0.4	100.0(454)
읍·면	14.7	51.7	1.3	2.6	23.3	6.5	-	100.0(232)
모 취업								
취업중	20.5	40.7	5.3	1.6	25.2	6.5	0.3	100.0(322)
휴직중	33.3	41.7	-	-	25.0	-	-	100.0(12)
미취업	21.6	48.0	0.1	2.0	23.2	4.9	0.1	100.0(7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3) 추가출산의사와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

자녀 추가출산 의향에 대해서도 이를 종속변수로 두고 양육 태도 및 양육 정서 분석에서와 동일한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특히 가족의 자녀양육 지원이 추가출산 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았다.

<표 IV-3-17>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부의 자녀양육 참여

28) 가구소득별 교차분석 결과 제시는 생략함.

정도가 높을수록 자녀 추가 출산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특성 변수로는 자녀수와 가구소득이 부적인 관계를 보였고, 휴직 상태와 부모의 학력이 정적 관계를 보였다.

그러나 자녀수별로 나누어 보면 한 자녀일 경우에는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나 조부모의 지원을 비롯한 모든 변수가 추가출산 의사와 관련성을 보이지 않고 예측 정확도는 2.3%, 5.2%로 낮았다. 자녀가 2명인 경우에는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모가 휴직상태일수록, 아버지가 대학 학력이 아닐수록 추가출산 의사가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표 IV-3-17〉 추가출산 계획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전체		자녀 1명인 경우		자녀 2명인 경우	
	B	S.E	B	S.E	B	S.E
상수	-1.321 ^{***}	0.056	0.233 ^{**}	0.092	-2.112 ^{***}	0.094
부 양육참여	0.039 [#]	0.022	0.046	0.032	0.024	0.032
조부모지원	-0.043	0.187	-0.097	0.260	0.122	0.299
자녀수	-2.098 ^{***}	0.121				
가구소득	-0.551 ^{**}	0.176	-0.364	0.247	-0.991 ^{***}	0.277
모 취업	0.067	0.157	0.177	0.228	-0.113	0.249
모 휴직	0.855 [#]	0.492	0.094	0.933	1.396 ^{**}	0.561
모 전문대	-0.049	0.165	0.086	0.242	-0.052	0.242
모 대학	4.904 ^{***}	0.996	1.567	1.355	3.169	1.526
부 전문대	0.295 [#]	0.178	0.432	0.263	0.300	0.260
부 대학	-0.013	0.183	0.090	0.261	-0.014 ^{**}	0.280
부 대학원	0.008	0.299	0.118	0.398	0.085	0.520
-2Log likelihood	1557.101		644.004		774.480	
χ^2	427.680 ^{***}		8.103		30.836 ^{**}	
Nagelkerke R ²	0.309		0.023		0.052	
분류표에 의한 예측 정확도	82.2%		57.9%		89.2%	
(수)	(2003)		(506)		(1215)	

$p < .1$, ** $p < .01$, *** $p < .001$

4. 소결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양육 관련 정보제공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육아 관련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지원의 충분성은 5점 만점에 평균 2.9점이며, 현재 수준으로 충분

하다는 응답은 25.0%로, 불충분하다는 응답 27.3%보다 낮게 나타나 육아정보 제공이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육아 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로는 육아관련사이트 37.7%, 친구·동료 33.7%, 집안 어른 15.7%로 육아관련사이트의 활용도가 높게 나타나므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육아정보포털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정내 남편의 양육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근로시간의 감축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남편의 양육 참여 정도는 평일 남편의 근로시간과 부적 관계를 보이기 때문이다. 남편의 양육 참여는 어머니의 자녀 양육 태도와 정서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그 정도가 크지는 않으나 추가 출산의 사에도 영향을 준다.

셋째, 조부모의 자녀 양육지원, 특히 취업모의 자녀 양육에서 조부모 지원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모의 양육 태도와 정서에도 영향을 준다. 그러나 조부모의 건강 등 부담이 커서 조부모 지원이나 대안적 서비스의 모색이 요구된다. 취업하고 자녀를 키우면서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를 질문한 결과, 전체 설문대상자 중 29.0% 정도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은 부모님의 건강과 노화 부담이 크고, 손자녀의 양육으로 부모님의 여가 시간 부족으로 인한 삶의 질 하락에 대한 염려가 2.2점으로 2순위를 차지하였다. 특히 영아 손자녀를 맡길 때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된다가 2.8점으로 유아인 경우 2.5점에 비해 약간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염려에도 불구하고 조부모의 손자녀 양육 시 비용은 62.4%가 정기적으로 지불하고, 37.6%는 필요 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87.6%는 기관 이용 자녀를 돌보는 것이며, 기관 미이용 자녀 단독 지원은 7.5%에 불과하였다.

넷째, 가정내 보육 지원 강화가 요구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 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조부모나 베이비시터를 통해 양육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 적응에 힘들까봐가 82.4%로 지배적이어서 가정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려는 수요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미취업모도 자녀의 보육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즉, 어머니의 양육 스트레스와 양육 부담을 고려하면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보육서비스 제공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부모의 자녀양육 태도 조사에서 휴직 중인 엄마가 자녀와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눈다는 응답이 높고, 미취업모가 자녀를 키우면서 큰 소리를 치거나 화를 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 중이나 취업 중인 어머니보다 미취업 어머니가 자녀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있다와 자녀 장래가 걱정이라는 두 문항에서 부정적 정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와 함께 지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나타나는 차이로 볼 수 있다.

여섯째, 출산을 제고와 관련하여 미취학, 취학아동의 기관 이용 비용의 부담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 응답자의 79.3%는 추가 출산 계획이 없다고 답하였는데, 그 이유로는 취학 자녀 교육비 부담이 42.4%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미취학 자녀 양육비 부담 19.8%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미취학일 경우 보육·교육비 부담보다 취학 중 사교육비 부담이 더 크다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나 생애주기상 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부모의 소득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고, 자녀가 어릴수록 보육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취학 아동의 보육비용 지원은 일차적인 정책 과제라고 할 수 있다.

V. 아동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

제5장에서는 보육·교육기관 이용과 요구를 분석하였다. 제1절에서는 일반 보육서비스 이용에 대하여 서술하였으며, 제2절은 취약보육, 제3절에서는 서비스의 수준과 만족도를 다루었고 제4절은 보육서비스 관련 정책의 인지, 수혜 경험, 정책 효과 그리고 요구를 분석하였다.

1. 보육·교육기관의 이용 현황

가. 이용 기관과 빈도

1) 이용 기관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물론 이외의 다양한 보육·교육기관 이용 현황을 조사하였다. 전체적으로 민간개인어린이집²⁹⁾ 이용률이 41.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는 가정어린이집 21.1%, 사립유치원 18.6% 순으로 나타났다(표 V-1-1참조).

기관 이용은 자녀 연령, 지역, 모의 취업여부, 가구소득별로 차이를 보였다. 우선 연령별로는 영아의 경우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이용률이 각각 42.9%, 40.8%로 높고, 유아는 민간어린이집 39.2%, 다음으로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35%로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 지역은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44.7%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사립유치원 이용률 14.7%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모의 취업 여부별로는 미취업 모는 취업 중인 모에 비해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40.1%로 낮은 반면 사립유치원 이용률 20.7%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는 민간어린이집 이용률이 높고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사립유치원 이용률이 더 높은 경향을 보였으며, 이외에도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직장어린이집 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29) 부모협동어린이집을 포함함.

〈표 V-1-1〉 아이가 다니는 기관 유형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계(수)
	국 공립	사회 복지 법인	기타 법인· 단체	민간 개인 등	가정	직장	국 공립	사립		
전체	4.5	7.1	3.8	41.0	21.1	0.5	2.3	18.6	1.2	100.0(1,971)
연령										
영아	4.5	6.1	2.4	42.9	40.8	0.4	-	1.8	1.1	100.0(987)
유아	4.5	8.1	5.1	39.2	1.3	0.5	4.6	35.4	1.3	100.0(984)
지역										
대도시	4.0	8.6	6.3	39.5	20.0	0.4	2.6	17.1	1.4	100.0(719)
중소도시	4.9	3.6	1.7	40.6	24.1	0.2	1.8	21.7	1.5	100.0(838)
읍·면	4.3	11.6	3.6	44.7	16.9	1.0	2.7	14.7	0.5	100.0(414)
모 취업										
취업중	5.4	6.1	4.7	43.5	22.2	0.8	1.5	14.6	1.2	100.0(594)
휴직중	-	3.7	3.7	37.0	48.1	-	-	7.4	-	100.0(27)
미취업	4.1	7.7	3.2	40.1	20.0	0.2	2.7	20.7	1.3	100.0(1,33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7	14.2	2.7	43.2	20.3	-	0.7	14.2	-	100.0(148)
150~199만원	4.4	9.2	2.6	48.7	23.2	0.4	2.6	7.9	0.8	100.0(228)
200~249만원	4.2	5.1	4.4	43.5	22.7	-	1.5	17.4	1.2	100.0(409)
250~299만원	4.9	6.1	2.9	44.4	21.6	-	0.9	18.4	0.9	100.0(347)
300~349만원	4.1	6.1	4.3	38.6	21.2	0.3	2.3	21.4	0.8	100.0(345)
350~399만원	3.3	9.2	3.3	39.2	17.0	1.3	5.2	20.9	0.7	100.0(153)
400~449만원	6.3	7.0	4.9	30.1	17.5	0.7	2.8	30.1	0.7	100.0(143)
450만원 이상	4.6	5.6	4.6	32.8	21.0	2.1	4.6	21.5	3.1	100.0(19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2) 이용 빈도

자녀의 기관 이용 빈도를 조사한 결과, 월~금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95.5%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 연령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영아의 월~금 이용률은 유아에 비해 약간 낮고, 월~토³⁰⁾ 이용률이 3.3%로 유아 2.5%보다 다소 높았다. 주 5일 미만이 영아 2.9%이다. 이는 모의 취업 여부와 관련이 있어서, 취업 중인 모의 경우는 월~토 이용률은 미취업모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 연령이나 모의 취업 여부와 상관없이 기관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부모들은 매일 자녀를 기관에 보내고 있으며, 취업 중인 모는 근무시

30) 토요일 매주 및 토요일 격주 포함.

간에 따라 토요일에 자녀를 보내는 비율이 7.7% 정도이다(표 V-1-2 참조).

〈표 V-1-2〉 아이가 기관에 가는 횟수

단위: %(명)

구분	월~토 (토요일 매주)	월~토 (토요일 격주)	월~금 매일	1주 3~4번	1주 1~2번	계(수)	$\chi^2(df)$
전체	1.1	1.9	95.5	1.0	0.6	100.0(1,971)	
연령							
영아	1.2	2.1	93.7	1.8	1.1	100.0(987)	25.1(4)***
유아	0.9	1.6	97.3	0.1	0.1	100.0(984)	
지역							
대도시	1.3	1.7	96.0	1.0	0.1	100.0(719)	9.1(8)
중소도시	0.7	1.6	95.8	1.0	1.0	100.0(838)	
읍·면	1.4	2.9	94.0	1.0	0.7	100.0(414)	
모 취업							
취업중	2.7	5.0	91.3	0.8	0.2	100.0(595)	127.5(8)***
휴직중	-	-	85.2	14.8	-	100.0(27)	
미취업	0.3	0.5	97.6	0.7	0.8	100.0(1,33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나. 이용 이유

자녀가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사회성 발달이 가장 높은 비율인 40.4%이고, 다음으로는 아이의 전인적 발달 27.8%,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17.4%의 순이다(표 V-1-3 참조).

이는 자녀 연령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취업으로 인한 기관 이용이 영아 25.1%로 유아 9.7%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경우는 전인적 발달을 위한 기관 이용이 32.4%로 영아 23.1%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같이 놀 아이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9% 내외이고,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 중인 모는 취업으로 인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은 비율인 45.6%를 보인 반면, 미취업인 모와 휴직 중인 모는 사회성 발달을 기관 이용의 가장 주된 이유로 지적하였다. 소득계층은 소득계층이 높아질수록 직접 자녀를 돌보기 어렵다는 비율이 증가한다.

〈표 V-1-3〉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

단위: %(명)

구분	전인적 발달	초등학교 준비	특기 교육	돌보기 어려워서	사회성 발달	같이 놀 아이 없어서	기타	계(수)	$\chi^2(df)$
전체	27.8	5.3	1.7	17.4	40.4	7.1	0.3	100.0(1,971)	
연령									
영아	23.1	0.3	1.2	25.1	39.9	9.9	0.4	100.0(987)	201.8(6)***
유아	32.4	10.3	2.2	9.7	41.0	4.3	0.2	100.0(984)	
지역									
대도시	28.5	6.4	1.7	17.7	42.0	3.6	0.1	100.0(719)	28.2(12)**
중소도시	28.5	4.5	1.7	17.2	38.7	9.2	0.2	100.0(838)	
읍·면	24.9	4.8	1.9	17.4	41.3	8.9	0.7	100.0(414)	
모 취업									
취업중	20.0	4.9	1.5	45.6	25.6	2.2	0.2	100.0(594)	511.4(12)***
휴직중	18.5	3.7	-	29.6	44.4	3.7	-	100.0(27)	
미취업	31.5	5.4	1.9	4.3	47.2	9.4	0.4	100.0(1,33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9.1	8.8	2.0	12.8	39.2	8.1	-	100.0(148)	100.1(42)***
150~199만원	28.9	7.0	1.3	11.4	43.4	7.0	0.9	100.0(228)	
200~249만원	29.6	3.4	2.4	12.0	44.5	8.1	-	100.0(409)	
250~299만원	30.0	3.7	1.4	15.3	41.8	7.8	-	100.0(347)	
300~349만원	26.4	3.8	1.2	18.6	43.5	6.1	0.6	100.0(345)	
350~399만원	20.3	7.8	2.6	21.6	37.9	9.2	0.7	100.0(153)	
400~449만원	29.4	7.7	0.7	21.7	33.6	7.0	-	100.0(143)	
450만원 이상	24.6	5.6	2.1	34.9	28.7	3.6	0.5	100.0(1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 등하원 동반자

기관을 이용하는 부모의 경우 평소 자녀를 기관을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은 대부분인 91% 정도가 엄마이고, 조부모 및 친인척이 4.8%로 일부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1-4 참조).

이는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 취업 중인 모의 경우는 전체 평균에 비해 해당 역할을 수행하는 비율이 77.6%로 비교적 낮고, 조부모 또는 친인척이 12.3%, 아빠 7.7%로 수행하는 비율은 높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가구소득이 350만원 이상인 경우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고소득가구가

맞벌이 가구임을 반영한다.

〈표 V-1-4〉 아이를 기관에 데려다 주고 데려오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주로 엄마	주로 아빠	주로 조부모 및 친인척	주로 비혈연 보육도 우미	아이 혼자 등/ 하원	기타	계(수)	$\chi^2(df)$
전체	90.6	3.1	4.8	0.3	1.1	0.1	100.0(1,971)	
연령								
영아	91.1	3.6	4.9	0.2	0.1	0.1	100.0(987)	19.9(5)**
유아	90.1	2.5	4.8	0.4	2.0	0.1	100.0(984)	
지역								
대도시	89.7	3.2	5.6	0.6	0.8	0.1	100.0(719)	7.2(10)
중소도시	91.2	3.3	4.3	0.1	1.0	0.1	100.0(838)	
읍·면	91.1	2.4	4.6	0.2	1.7	-	100.0(414)	
모 취업								
취업중	77.6	7.7	12.3	0.5	1.5	0.3	100.0(594)	229.2(10)***
휴직중	81.5	3.7	14.8	-	-	-	100.0(27)	
미취업	97.5	0.8	0.6	0.1	0.9	-	100.0(1,33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91.9	1.4	3.4	0.7	2.0	0.7	100.0(148)	147.8(35)***
150~199만원	93.4	4.8	0.9	0.4	0.4	-	100.0(228)	
200~249만원	94.6	2.0	2.9	0.2	0.2	-	100.0(409)	
250~299만원	94.5	2.6	2.0	-	0.9	-	100.0(347)	
300~349만원	93.3	1.4	3.8	0.3	0.9	0.3	100.0(345)	
350~399만원	88.2	2.6	5.9	0.7	2.6	-	100.0(153)	
400~449만원	86.7	4.2	7.7	-	1.4	-	100.0(143)	
450만원 이상	71.3	8.2	17.9	0.5	2.1	-	100.0(19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라. 시간 초과보육

부모 사정으로 원래 평소 이용시간보다 더 길게 기관을 이용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이에 월 1회 이하 더 이용한다는 응답이 17.9%, 월 2~4회가 7.7%, 주 2회 이상이 2%로 나타났고, 전체의 73.3%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였다(표 V-1-5 참조).

영아에게서 유아에 비해 초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대도시 거주자가 중소도시에 비해, 중소도시 거주자가 읍·면지역 거주자에 비해 초과 이용 빈도가 더 잦고, 당연한 결과이겠으나 취업 중인 어머니가 그렇지 않은 어머니에 비해 높다.

〈표 V-1-5〉 부모사정으로 평소 이용시간 초과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정도

단위: %(명)

구분	시간 초과 없음	월 1회 이하	월 2~4회	주 2회 이상	계(수)	$\chi^2(df)$
전체	73.3	17.0	7.7	2.0	100.0(1,958)	
연령						
영아	69.9	18.2	9.2	2.7	100.0(976)	14.9(3)**
유아	76.8	15.7	6.1	1.4	100.0(982)	
지역						
대도시	70.0	20.1	7.9	2.0	100.0(717)	
중소도시	74.2	15.4	8.1	2.3	100.0(829)	-
읍·면	77.4	14.6	6.3	1.7	100.0(412)	
모 취업						
취업중	69.6	14.8	11.3	4.4	100.0(595)	
휴직중	77.8	14.8	7.4	-	100.0(27)	-
미취업	74.9	18.1	6.1	1.0	100.0(1,3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초과보육시 주요 사유는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42.5%로 가장 높고 취업부모의 시간연장 근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30.8%, 부모의 여가활동 때문인 경우도 24.7% 응답되었다(표 V-1-6 참조).

유아보다는 영아, 대도시나 읍·면보다는 중소도시에서 취업모 시간연장 근무 사유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미취업모의 35.8%가 여가활동 때문에 어린이집 정규시간을 초과하여 아이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시간연장 근무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가족의 긴급한 상황 때문이라는 응답이 높다. 이는 고소득자일수록 맞벌이로 어머니의 시간연장 근무가 잦다는 것과 소득수준이 낮은 가정의 경우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이 생기는 등 생활이 불안정하고 이러한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이용 가능한 지원받을 수 있는 사회적 자원이 부족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표 V-1-6〉 초과보육시 부모의 가장 빈번한 사정

단위: %(명)

구분	취업부모 시간연장근무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	부모의 여가활동	기타	계(수)
전체	30.8	42.5	24.7	1.9	100.0(522)
연령					
영아	32.3	41.2	23.8	2.7	100.0(294)
유아	28.9	44.3	25.9	0.9	100.0(228)
지역					
대도시	27.4	50.2	22.3	-	100.0(215)
중소도시	36.9	33.2	26.6	3.3	100.0(214)
읍·면	24.7	46.2	25.8	3.2	100.0(93)
모 취업					
취업중	79.6	14.4	5.0	1.1	100.0(181)
휴직중	83.3	-	16.7	-	100.0(6)
미취업	2.7	59.0	35.8	2.4	100.0(33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1.1	60.5	18.4	-	100.0(38)
150~199만원	21.9	57.5	20.5	-	100.0(73)
200~249만원	18.0	51.4	26.1	4.5	100.0(111)
250~299만원	22.1	43.2	31.6	3.2	100.0(95)
300~349만원	34.2	35.4	27.8	2.5	100.0(79)
350~399만원	48.8	31.7	19.5	-	100.0(41)
400~449만원	42.9	31.4	25.7	-	100.0(35)
450만원 이상	68.0	14.0	18.8	-	100.0(5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마. 비용

1) 부모 비용과 지원

조사대상자의 보육료·교육비 지원 비율은 85%이고³¹⁾, 지원액은 평균 259,200원으로 조사되었다(표 V-1-7 참조).

유아보다는 영아보다 지원 비율이 높고 지원액도 각각 327,500원, 183,100원으로 차이를 보인다³²⁾. 또한 도시보다는 읍·면에서 수혜율이 높는데, 지원 비율의 차이는 거의 없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차이가 없으나 휴직 중인 경우에는 수

31) 소득하위 70%가 현재 보육료 지원 대상임을 고려해 볼 때, 본 조사 대상자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과소 표집되었음.

32) 실제 지원금은 연령별로 0세, 1세, 2세, 3~4세 5세가 다름.

혜비율이 낮다. 소득계층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혜택을 받는 비율이 함께 낮아지는데, 소득 149만원 이하는 95.9%가 지원 받고 소득 450만원 이상은 50%가 지원 받는다고 응답하였다. 소득계층별 지원금액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

〈표 V-1-7〉 월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여부 및 지원 금액

단위: %, 천원(명)

구분	감면 여부				지원액	
	전액 면제	일부 감면	혜택 없음	계(수)	평균	(수)
전체	85.5	0.3	14.3	100.0(1,971)	259.2	(1,690)
연령						
영아	90.0	0.2	9.8	100.0(987)	327.5	(890)
유아	81.0	0.3	18.7	100.0(984)	183.1	(800)
$\chi^2(df)/t$			32.0(2) ^{***}		83.5 ^{***}	
지역						
대도시	82.9	0.7	16.4	100.0(719)	256.1	(601)
중소도시	85.3	-	14.7	100.0(838)	260.4	(715)
읍·면	90.3	-	9.7	100.0(414)	261.4	(374)
$\chi^2(df)/F$			18.9(4) ^{**}		0.6(2)	
모 취업						
취업중	83.0	0.3	16.7	100.0(595)	262.8	(496)
휴직중	77.8	-	22.2	100.0(27)	338.7	(21)
미취업	86.7	0.2	13.0	100.0(1,335)	256.3	(1,161)
$\chi^2(df)/F$			6.1(4)		11.7(2)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95.9	0.7	3.4	100.0(148)	268.6	(143)
150~199만원	97.4	0.4	2.2	100.0(228)	266.6	(223)
200~249만원	93.6	0.5	5.9	100.0(409)	262.3	(385)
250~299만원	93.4	-	6.6	100.0(347)	259.3	(324)
300~349만원	84.9	-	15.1	100.0(345)	255.7	(293)
350~399만원	80.4	-	19.6	100.0(153)	244.2	(123)
400~449만원	67.8	-	32.2	100.0(143)	248.7	(97)
450만원 이상	50.3	0.5	49.2	100.0(195)	257.3	(99)
$\chi^2(df)/F$			322.8(14) ^{***}		1.5(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다음은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 부담 비용을 살펴보았다. 이 비용은 우선 영아와 유아의 차이가 크고 비용지원이 전액지원이므로 그 여부별로 차이가 크다.

〈표 V-1-8〉 연령구분 및 지원여부별 월 추가 납부 비용

단위: 천원(명)

구분	월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총계	(수)	t
전체	57.7		65.4	123.1	(1,971)	
영아						
전체	32.6		41.8	74.5	(987)	
전액지원	4.3		40.7	45.0	(888)	-52.3***
일반	292.3		51.6	343.9	(970)	
유아						
전체	82.9		89.1	171.9	(984)	
전액지원	44.4		87.7	131.9	(797)	-28.8***
일반	249.5		95.3	344.9	(18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V-1-9〉 제 특성별 월 보육료·유아교육비 및 추가 납부액 차이

단위: 천원(명)

구분	전액 면제				혜택 없음				총계 (수)
	영아		유아		영아		유아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보육료 교육비	추가 비용	
전체	4.3	40.7	44.4	87.7	292.3	51.6	249.5	95.3	123.1 (1,971)
지역									
대도시	2.7	45.9	39.0	98.7	312.1	75.7	257.4	109.6	137.7 (719)
중소도시	6.3	41.0	53.3	84.4	278.6	44.6	251.9	82.3	124.7 (838)
읍·면	2.7	32.0	36.5	75.8	296.3	33.5	205.7	80.3	94.3 (414)
F	4.5*	8.1***	8.0***	10.6***	1.2	3.4*	1.8	3.2*	16.5(2)***
모 취업									
취업중	5.9	40.4	48.7	89.7	318.4	50.9	271.6	100.8	136.7 (594)
휴직중	7.7	27.4	-	140.0	378.3	23.3	242.0	94.6	113.2 (27)
미취업	3.4	41.3	42.8	86.7	268.1	53.7	238.9	92.6	117.3 (1,335)
F	2.2	1.3	1.3	0.6	5.3**	0.3	1.7	0.2	5.1(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5	26.1	45.3	75.6	287.0	41.50	175.0	24.0	75.5 (148)
150~199만원	6.9	37.4	30.2	79.4	-	-	205.0	120.0	76.2 (228)
200~249만원	2.7	45.3	46.4	90.2	182.4	37.8	205.5	79.7	98.5 (409)
250~299만원	4.8	41.8	40.9	84.3	270.0	54.5	244.0	63.2	99.5 (347)
300~349만원	3.8	45.2	49.6	88.4	289.4	61.7	229.2	103.8	130.4 (345)
350~399만원	4.1	35.2	48.1	99.0	315.8	38.0	273.5	79.3	150.3 (153)
400~449만원	3.2	30.4	53.8	106.4	311.2	36.0	243.3	95.8	180.9 (143)
450만원 이상	8.1	49.4	40.6	80.5	306.5	59.7	278.3	108.2	230.9 (195)
F	1.4	3.6**	1.5	2.3*	2.3*	0.4	1.6	1.4	44.8(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영아는 전액지원은 월 보육료 및 교육비는 32,600원이고 추가납부 금액이 41,800원이다. 이에 비하여 일반 영아는 각각 292,300원, 51600원으로 추가비용도 약간 높게 차이가 난다. 유아는 전액지원은 보육료 및 교육비는 월 44,400원이고 추가납부 금액이 87,700원이다. 이에 비하여 비용 지원대상이 아닌 일반 유아는 일정 월 납부액은 249,000원이고 추가납부 금액이 95,300원이다(표 V-1-8 참조).

특성별 차이는 먼저 지역별로는 면제 대상 영유아의 추가 비용이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읍·면, 중소도시, 대도시 순으로 비용이 높아진다. 일반아동은 지역 차이가 거의 없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영아의 월 보육료만 취업중이나 휴직중이 미취업모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영아 보육료 상한선이 지역별 차이가 없음을 고려하면 이는 다소 특이한 현상으로 이용시간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득계층에 따른 차이는 전반적으로 소득이 높아지면서 비용이 증가하는 경향인데,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분은 면제 대상 영아 추가 비용과 일반 영아 보육료이다(표 V-1-9 참조).

2) 비용 부담 인식

이러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2.5%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부담 정도는 5점 척도로 평균 3.6점이다. 비용 지원여부별로 보면 면제자는 응답자의 58.6%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고, 미지원자는 82.5%가 부담된다고 보고하였다. 5점 척도로 전액지원은 평균 3.5점이며, 미지원자는 4.1점이다. 영유아의 차이는 집단간 차이는 영아 부모보다는 유아 부모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많다(표 V-1-10 참조).

<표 V-1-11>은 특성별 평균 점수를 제시하였는데, 읍·면보다는 도시에서 비용에 대하여 느끼는 부담 정도가 더 크다. 모의 취업여부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휴직 중인 부모가 부담된다는 응답이 낮은 경향이다. 가구 소득수준별로는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에서 부담된다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기는 하였으나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V-1-10〉 자녀 연령과 지원여부별 보육·교육비용의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부담 안됨	부담 안됨	적당함	부담됨	매우 부담	계(수)	평균
전체							
전체	3.5	8.7	25.2	41.5	21.0	100.0(1,697)	3.6
영아	5.5	12.8	32.0	36.6	13.0	100.0(724)	3.3
유아	2.0	5.7	20.1	45.2	27.0	100.0(973)	3.9
$\chi^2(df=4)/t$			109.5***				-10.6***
전액면제							
전체	3.6	9.8	28.0	42.3	16.3	100.0(1,413)	3.5
영아	6.1	14.2	35.3	36.9	7.5	100.0(626)	3.2
유아	1.7	6.2	22.1	46.6	23.4	100.0(787)	3.8
$\chi^2(df=4)/t$			124.8***				-11.4***
미지원							
전체	2.9	3.6	11.1	38.4	44.1	100.0(279)	4.1
영아	2.1	4.2	9.4	35.4	49.0	100.0(96)	4.2
유아	3.3	3.3	12.0	39.9	41.5	100.0(183)	4.1
$\chi^2(df=4)/t$			1.9				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표 V-1-11〉 특성별 생활수준 대비 매월 보육·교육비용의 부담 정도

단위: %(명)

구분	평균	전액면제	미지원	구분	평균	전액면제	미지원
지역				가구소득			
대도시	3.7	3.6	4.2	149만원 이하	3.9	3.9	4.7
중소도시	3.7	3.6	4.1	150~199만원	3.6	3.6	4.4
읍·면	3.5	3.4	4.0	200~249만원	3.7	3.7	4.2
<i>F</i>	4.6(2)*	2.9(2)	0.3(2)	250~299만원	3.5	3.5	4.2
모 취업 여부				300~349만원			
취업중	3.6	3.5	4.1	350~399만원	3.6	3.4	4.3
휴직중	3.4	3.0	4.1	400~449만원	3.8	3.6	4.2
미취업	3.6	3.5	4.1	450만원 이상	3.6	3.2	4.0
<i>F</i>	0.5(2)	1.9(2)	0.02(2)	<i>F</i>	3.9(7)***	6.8(7)***	0.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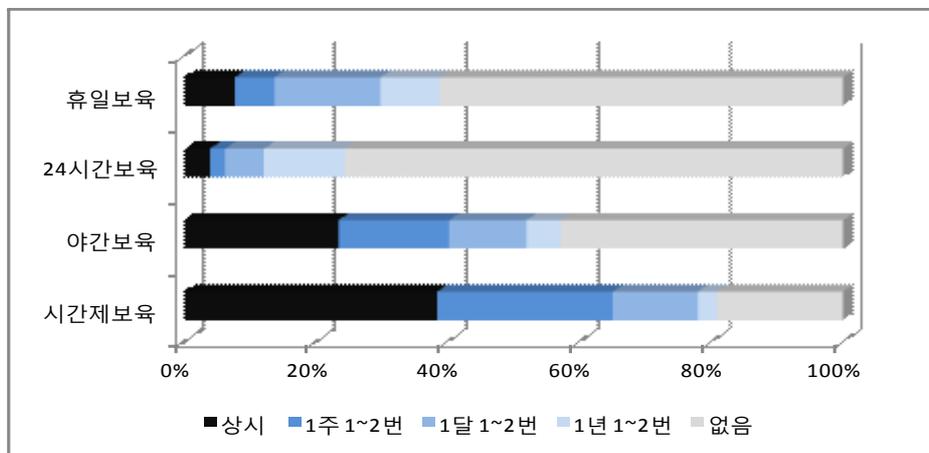
* $p < .05$, *** $p < .001$

2. 취약보육 이용과 수요

맞벌이 부부 등 수요자 보육 중심의 맞춤형 보육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오전 연장보육, 24시간 보육, 토요일 보육, 일요일 및 기타 휴일보육의 필요성과 이용, 그리고 해당 보육의 접근성에 관하여 질문하였다.

1) 필요성

먼저 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상시 필요 38.4%, 1주 1~2번 26.7%, 1달 1~2번 순이며 필요 없다는 응답은 19.1%로 조사되었다. 야간보육은 상시 필요 23.4%, 1주 1~2번 16.8% 순이다. 24시간 보육은 상시 필요가 3.9%이고, 1년 1~2번 12.3%이다. 토요일 보육은 상시 19.2%, 1주 1~2번 17.0%, 1달 1~2번 26.5%로 나타났다. 휴일보육은 상시 필요 7.7%이다. 일요일 및 휴일보육의 수요는 전반적으로 이외의 맞춤형 보육에 비해 가장 낮게 나타나므로 어린이집의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해당 서비스의 보편적 적용에 신중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그림 V-2-1 참조).



[그림 V-2-1] 취약보육 서비스별 필요성

다음은 부모의 특성별로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시간제보육은 대도시가 이외의 지역에 비해 시간제 보육의 필요성이 높고, 모의 취업은 취업 중인 모가 상시 필요성은 미취업모보다 다소 높으나 필요없다는 응답은 미취업모가 높았다. 이는 전일제 노동을 하는 취업모인 경우 시간제 보육에 대한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되며, 미취업모인 경우에도 시간제 보육이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37.0%에 달한다는 점은 보육서비스 지원이 보편적 지원이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구소득별로는 25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의 경우 시간제 보육에 대한 상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저소득층의 시간제 노동 비율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V-2-1 참조).

〈표 V-2-1〉 보육서비스 필요성: 시간제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38.4	26.7	12.9	2.9	19.1	100.0(2,003)
지역						
대도시	45.5	20.7	10.6	2.6	20.6	100.0(738)
중소도시	34.2	31.3	14.2	3.4	16.8	100.0(850)
읍·면	34.5	27.7	14.2	2.7	21.0	100.0(415)
$\chi^2(df)$			41.8(8) ^{***}			
모 취업						
취업중	41.2	22.8	10.4	2.9	22.7	100.0(616)
휴직중	41.9	16.1	12.9	-	29.0	100.0(31)
미취업	37.0	28.8	14.2	3.1	17.0	100.0(1,339)
$\chi^2(df)$			23.2(8)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7.3	32.0	10.7	2.0	8.0	100.0(150)
150~199만원	40.7	29.0	8.2	1.3	20.8	100.0(231)
200~249만원	41.7	27.7	12.6	1.9	16.0	100.0(412)
250~299만원	38.0	25.4	12.3	2.3	22.0	100.0(350)
300~349만원	35.4	25.4	17.1	2.9	19.1	100.0(350)
350~399만원	36.5	18.6	19.9	6.4	18.6	100.0(156)
400~449만원	29.7	29.1	10.8	8.1	22.3	100.0(148)
450만원 이상	36.0	27.1	110.3	2.5	24.1	100.0(202)
$\chi^2(df)$			74.0(2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야간보육은 필요성은 모의 취업여부가 주된 변수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조사

결과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상시 필요는 취업 중인 모 25.9%, 휴직 중인 모 29.0%로 미취업모 21.9%보다 높다. 미취업인 모가 야간보육이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9%라는 점은 보육서비스는 물론 야간보육의 목표가 일·가정 양립지원이라는 그 간의 믿음과는 다른 결과로, 이러한 수요의 반영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또한 가구소득별로는 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수요는 저소득층의 야간근로 비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V-2-2 참조).

〈표 V-2-2〉 보육서비스 필요성: 야간보육

구분	단위: %(명)					전체(수)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	23.4	16.8	11.7	5.2	42.8	100.0(2,003)
지역						
대도시	29.4	15.9	10.3	4.2	40.2	100.0(738)
중소도시	18.5	18.8	13.6	5.6	43.4	100.0(850)
읍·면	22.7	14.5	10.4	6.3	46.3	100.0(415)
$\chi^2(df)$			33.7(8)***			
모 취업						
취업중	25.9	20.1	11.5	5.2	37.4	100.0(619)
휴직중	29.0	22.6	9.7	-	38.7	100.0(31)
미취업	21.9	15.2	11.9	5.5	45.6	100.0(1,339)
$\chi^2(df)$			18.6(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1.3	16.7	14.0	4.0	34.0	100.0(150)
150~199만원	28.1	15.2	12.1	3.9	40.7	100.0(231)
200~249만원	24.3	18.7	10.2	6.8	40.0	100.0(412)
250~299만원	23.7	16.9	13.4	5.7	40.3	100.0(350)
300~349만원	22.6	17.7	9.1	3.7	46.9	100.0(350)
350~399만원	20.5	14.1	12.2	5.8	47.4	100.0(156)
400~449만원	12.8	14.9	11.5	5.4	55.4	100.0(148)
450만원 이상	21.2	17.2	13.8	5.9	41.9	100.0(203)
$\chi^2(df)$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24시간보육 역시 취업모에게서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지만 조사 결과는 이와 다르게 별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중소도시가 대도시나 읍·면보다 높고, 소득계층별로 소득 149만원 이하에서 상시 필요 비율이 6.7%로 다소 높고 필요없다는 비율은 68%로 가장 낮다(표 V-2-3 참조).

〈표 V-2-3〉 보육서비스 필요성 : 24시간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3.9	2.3	5.9	12.3	75.5	100.0(2,003)
지역						
대도시	2.7	1.6	4.6	8.4	82.7	100.0(738)
중소도시	5.6	2.9	7.8	16.9	66.7	100.0(850)
읍·면	2.4	2.4	4.6	9.6	81.0	100.0(415)
$\chi^2(df)$			64.6(8)***			
모 취업						
취업중	3.2	2.6	7.0	10.4	76.7	100.0(618)
휴직중	6.5	3.2	12.9	22.6	54.8	100.0(31)
미취업	4.1	2.2	5.2	13.0	75.5	100.0(1,339)
$\chi^2(df)$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6.7	5.3	5.3	14.7	68.0	100.0(150)
150~199만원	3.0	1.7	6.1	12.6	76.6	100.0(231)
200~249만원	3.9	1.9	7.0	13.1	74.0	100.0(412)
250~299만원	4.0	2.9	3.4	15.4	74.3	100.0(350)
300~349만원	4.6	2.3	8.3	8.6	76.3	100.0(350)
350~399만원	3.2	1.3	4.5	12.2	78.8	100.0(156)
400~449만원	2.7	2.7	2.7	11.5	80.4	100.0(148)
450만원 이상	3.0	1.5	7.9	10.3	77.3	100.0(203)
$\chi^2(df)$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토요일보육은 필요 없다는 응답이 대도시에 비하여 읍·면이나 중소도시에서 더 높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그러나 필요한 정도는 대도시에서 상시 필요하다는 비율이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구소득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 300만원 미만인 경우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20% 이상이고 그 이하는 20% 미만으로 차이가 있다. 특히 가구소득 150만원 미만은 29% 정도가 상시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토요일보육이 필요없다는 응답도 소득 수준별로 22.7%에서부터 43.9%까지로 정의 관계를 보인다. 그러나 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토요일 보육에 대한 수요는 단순한 모의 취업 여부가 아니라 어머니의 일자리 특성이나 근무형태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표 V-2-4 참조).

〈표 V-2-4〉 보육서비스 필요성: 토요일 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19.2	17.0	26.5	6.5	30.8	100.0(2,003)
지역						
대도시	22.9	13.6	28.2	6.1	29.3	100.0(738)
중소도시	16.8	19.1	25.5	7.1	31.5	100.0(850)
읍·면	17.6	18.8	25.5	6.0	32.0	100.0(415)
$\chi^2(df)$			19.2(8)*			
모 취업						
취업중	18.8	18.9	29.6	4.4	28.3	100.0(618)
휴직중	19.4	16.1	25.8	3.2	35.5	100.0(31)
미취업	19.3	16.1	25.1	7.6	31.8	100.0(1,339)
$\chi^2(df)$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8.7	16.0	30.0	2.7	22.7	100.0(150)
150~199만원	23.8	20.8	27.7	4.3	23.4	100.0(231)
200~249만원	21.1	17.0	25.5	6.8	29.6	100.0(412)
250~299만원	21.1	16.9	28.0	6.3	27.7	100.0(350)
300~349만원	16.0	18.6	25.1	8.9	31.4	100.0(350)
350~399만원	17.3	12.2	30.1	10.3	30.1	100.0(156)
400~449만원	6.8	18.9	23.0	7.4	43.9	100.0(148)
450만원 이상	16.3	13.3	24.1	3.9	42.4	100.0(203)
$\chi^2(df)$			75.69(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일요일 및 기타 휴일보육의 수요는 필요없다는 응답이 대도시나 읍·면에 비해서 중소도시에서 더 높다. 가구소득별로는 앞에서 살펴본 취약보육들과 마찬가지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서 소득계층별 대응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보면, 상시 필요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소득 450만원 집단을 제외하고는 소득계층별로 정적 관계를 보이고 필요없다는 응답비율과는 부적 관계를 보인다. 소득수준 150만원 미만은 14%가 상시 필요성은 제시하였다. 이는 저소득층 어머니의 근로 형태가 비정형 근로로 정규 노동시간 이외의 다양한 시간에 근무하는 비율이 높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표 V-2-5 참조).

〈표 V-2-5〉 보육서비스 필요성: 휴일보육

단위: %(명)

구분	상시	1주 1~2번	1달 1~2번	1년 1~2번	없음	전체(수)
전체	7.7	6.0	16.1	9.0	61.2	100.0(2,003)
지역						
대도시	7.2	3.1	15.3	6.9	67.5	100.0(738)
중소도시	9.3	8.2	16.9	12.0	53.5	100.0(850)
읍·면	5.5	6.5	15.9	6.5	65.5	100.0(415)
$\chi^2(df)$		52.9(8) ^{***}				
모 취업						
취업중	6.5	7.3	17.3	7.4	61.5	100.0(618)
휴직중	9.7	6.5	16.1	6.5	61.3	100.0(31)
미취업	8.1	5.4	15.4	9.9	61.2	100.0(1,339)
$\chi^2(df)$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4.0	8.7	18.7	4.0	54.7	100.0(150)
150~199만원	8.2	6.5	20.3	5.6	59.3	100.0(231)
200~249만원	9.7	5.1	15.0	10.9	59.2	100.0(412)
250~299만원	7.4	6.0	16.9	9.4	60.3	100.0(350)
300~349만원	6.6	5.7	15.7	8.6	63.4	100.0(350)
350~399만원	4.5	5.1	14.1	15.4	60.9	100.0(156)
400~449만원	3.4	6.1	12.2	9.5	68.9	100.0(148)
450만원 이상	6.9	6.4	15.8	7.4	63.5	100.0(203)
$\chi^2(df)$		44.5(28)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취약보육 이용 및 이용 이유

어린이집 취약보육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야간보육 5.2%이고 토요일보육이 5.8%이며 이외는 모두 이용자가 극히 소수이다.

이용 이유로는 야간보육은 직장, 근로상의 이유가 62.7%로 다수이고 23.5%가 여가 등 기타이며, 그 이외는 다른 자녀보호, 가족 간호, 경조사 등으로 분산되었다. 토요일보육도 74.8%가 일하는 엄마의 수요이며 이외 경조사가 11.3%이고 여가 등이 7.8%이다. 24시간과 휴일보육은 이용자수가 소수이기는 하지만 상당 부분 취업 여부와 관계없는 수요로 나타났다(표 V-2-6 참조).

이처럼 보육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취약보육도 부모 중심의 보편화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다.

〈표 V-2-6〉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여부 및 이용시 사유

단위: %(명)

구분	이용 여부				이용시 사유						
	상시 이용	가끔 이용	이용한 적 없음	계(수)	직장, 근로	다른 자녀 보호	가족 간호	경조사	여가 등 기타	기타	계(수)
야간보육	1.3	3.9	94.8	100.0(1,957)	62.7	6.9	3.9	2.9	23.5	-	100.0(102)
오전연장보육	1.6	3.0	95.5	100.0(1,957)	48.9	13.6	8.0	5.7	22.7	1.1	100.0(88)
24시간보육	-	0.2	99.8	100.0(1,957)	-	-	33.3	66.7	-	-	100.0(3)
토요일보육	1.4	4.4	94.1	100.0(1,957)	74.8	5.2	0.9	11.3	7.8	-	100.0(115)
휴일보육	-	0.5	99.5	100.0(1,957)	55.6	-	-	33.3	11.1	-	100.0(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다.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한편 앞서 살펴본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접근성 즉, 이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높다와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비율은 시간제보육 58.2%로 가장 높고, 토요일 보육이 50.1%이며 오전 및 야간 연장보육이 43.3%, 37.8%이며 24시간과 휴일보육은 6.8%, 7.6%로 10% 미만으로 나타났다(표 V-2-7 참조).

〈표 V-2-7〉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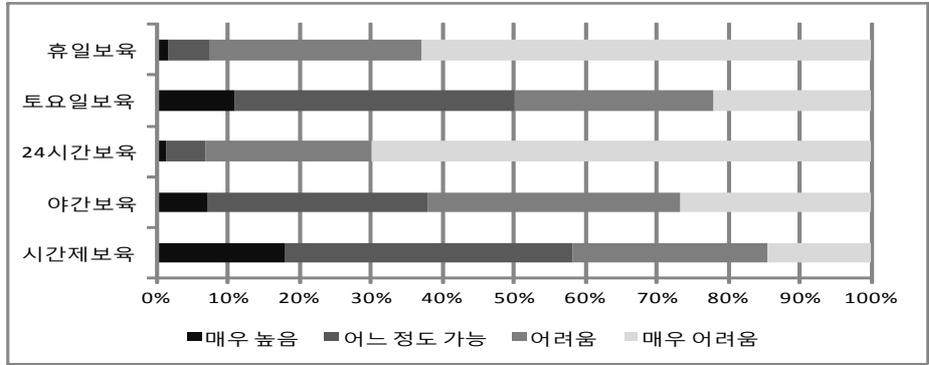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시간제보육	17.9	40.3	27.1	14.7	100.0(2,003)
야간보육	7.2	30.6	35.3	26.9	100.0(2,003)
24시간보육	1.4	5.4	23.4	69.7	100.0(2,003)
토요일보육	10.9	39.2	27.8	22.2	100.0(2,003)
휴일보육	1.6	6.0	29.3	63.0	100.0(2,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취약보육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을 4점 척도로 환산하면 24시간 보육과 일요일 및 기타 휴일 보육이 각각 3.6점, 3.5점이고, 시간제 보육이 2.4점, 토요일 2.6점으로 다른 서비스에 비해 이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각 서비스별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을 지역별로 보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대도시에서 24시간 보육과 휴일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기 가장 어렵고, 중소도시에서는 야간보육, 오전연장 보육, 토요일보육 이용가능성이 낮으며, 읍·면 지역에서는 토요일보육이 다른 지역에 비해 이용 가능성이 낮다(그림 V-2-2 참조).



[그림 V-2-2]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가능성

<표 V-2-8> 어린이집 취약보육서비스 이용 어려움 정도: 4점 척도

단위: %(명)

구분	시간제 보육	야간보육	24시간 보육	토요일 보육	휴일 보육	(수)
전체	2.4	2.8	3.6	2.6	3.5	(2,003)
지역						
대도시	2.2	2.6	3.7	2.5	3.6	(738)
중소도시	2.4	2.9	3.5	2.7	3.4	(850)
읍·면	2.4	2.8	3.6	2.4	3.5	(415)
F	5.8(2)**	17.7(2)***	25.9(2)***	16.3(2)***	21.9(2)***	
모 취업						
취업중	2.3	2.7	3.5	2.5	3.5	(618)
휴직중	2.5	2.7	3.4	2.7	3.5	(31)
미취업	2.3	2.8	3.6	2.6	3.5	(1,339)
F	0.5(2)	4.7(2)**	2.0(2)	4.7(2)*	0.7(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3	2.6	3.6	2.4	3.6	(150)
150~199만원	2.3	2.7	3.8	2.6	3.6	(231)
200~249만원	2.3	2.8	3.5	2.5	3.5	(412)
250~299만원	2.3	2.7	3.5	2.5	3.4	(350)
300~349만원	2.4	2.7	3.5	2.5	3.5	(350)
350~399만원	2.4	2.9	3.5	2.6	3.5	(156)
400~449만원	2.4	3.0	3.5	2.7	3.5	(148)
450만원 이상	2.4	2.9	3.6	2.7	3.5	(203)
F	0.8(7)	2.8(7)**	4.2(7)***	1.9(7)	1.6(7)	

주: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하기 어려움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모의 취업별로는 미취업모가 야간보육을, 취업중인 모가 토요일보육 이용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하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소득수준별로는 야간보육은 소득수준이 350만원 이상이 그 이하보다 높은 차이를 보였고, 24시간보육은 소득이 200만원 미만과 450만원 이상이 점수가 높은 차이를 보여서 일관성은 없다(표 V-2-8 참조)³³⁾.

맞춤형 보육서비스의 접근성은 앞서 살펴본 해당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시간제보육과 토요일보육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높고,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미약한 24시간보육과 야간보육의 접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맞춤형 보육의 수요와 해당 서비스 접근성간의 괴리는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취약보육서비스 유형 선호도

야간보육, 토요일보육, 휴일보육에 대하여 서비스 장소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를 보면 야간보육 장소로 응답자의 60.7%가 현재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가장 좋다고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30.3%는 보육도우미가 아동의 집에서, 6.7%는 거점형 보육장소에서 돌보는 것을 선호하였다.

토요일보육도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69.2%로 가장 많고, 보육도우미가 아이의 집에서 보육하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가 21.1%이다. 거점형 보육장소는 8.0%가 선택하였다.

휴일보육 역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응답자의 64.5%가 선호하였고, 아이의 집에서 돌보는 것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23.4%이다. 거점형 보육장소에서 돌보는 것은 10.1%로 야간보육과 토요일보육에 비해서는 높게 나타났다(표 V-2-9 참조).

〈표 V-2-9〉 취약보육서비스 선호 장소

구분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거점형 전담 장소	계(수)
야간보육	30.3	2.3	60.7	6.7	100.0(2,003)
토요일보육	21.1	1.7	69.2	8.0	100.0(2,003)
휴일보육	23.4	2.0	64.5	10.1	100.0(2,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33) 교차분석 결과는 <부표 V-2-1> ~ <부표 V-2-6> 참조.

이 같은 경향은 지역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3가지 서비스 모두 거점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어머니 취업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부표 V-2-7, V-2-8, V-2-9 참조).

3. 보육·교육서비스의 수준과 효과

가. 질 높은 서비스의 충분성

어린이집의 접근성 즉 어린이집 설치의 충분성과 보낼만한 어린이집의 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반적인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82.2%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낼만한 어린이집 여부에 대해서는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3.4%이고 12.7%는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V-3-1 참조).

지역별로 살펴보면, 특히 읍·면 지역의 경우는 이외의 지역들에 비해 시설 설치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21.5%로 상대적으로 높고, 보낼만한 어린이집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 역시 16.9%로 도시보다 높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대부분 영아를 양육하며 비교적 안정된 직장을 가진 휴직중인 엄마들이 믿고 보낼 곳이 없다는 비율이 높고,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믿고 보낼 곳이 많다는 줄어들고 1-2군데라는 응답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일반적 설치는 물론, 보낼만한 곳에 대한 비율도 2009년에 비하여 비율이 높아져서, 최근 몇 년간의 양적 확대와 질적 수준 개선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보육시설의 양적 확충과 지난 정부 시절 이후 본격화된 저출산 대응에 따른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제고 노력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용가능 어린이집 여부와 믿고 맡길만한 어린이집 여부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접근성 측면에서 보다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단적인 예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대기아동수를 들 수 있다. 2009년 3월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아동은 1831개 시설에 118,478명으로 시설당 약 65명으로 집계된 바 있다(서문희·최혜선, 2010: 32~33).

〈표 V-3-1〉 어린이집 설치 충분성 및 보낼만한 곳 유무

단위: %(명)

구분	일반적 설치			보낼만한 곳				계(수)
	불충분	충분	잘 모름	없음	1~2곳	많음	잘 모름	
전체	15.5	82.2	2.3	12.7	66.2	17.2	3.9	100.0(2,003)
지역								
대도시	17.5	80.4	2.2	15.9	59.3	21.4	3.4	100.0(738)
중소도시	11.2	86.5	2.4	7.9	73.9	13.5	4.7	100.0(850)
읍·면	21.0	76.6	2.4	16.9	62.7	17.3	3.1	100.0(415)
$\chi^2(df)$		23.9(4) ^{***}			57.4(6) ^{***}			
모 취업								
취업중	15.9	81.2	2.9	12.0	67.0	15.5	5.5	100.0(618)
휴직중	9.7	83.9	6.5	19.4	67.7	12.9	-	100.0(31)
미취업	15.6	82.7	1.6	12.9	66.0	18.0	3.1	100.0(1,339)
$\chi^2(df)$		-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2.0	86.0	2.0	11.3	58.7	27.3	2.7	100.0(150)
150~199만원	16.0	81.8	2.2	13.0	63.2	20.3	3.5	100.0(231)
200~249만원	15.0	81.8	3.2	15.3	61.2	18.9	4.6	100.0(412)
250~299만원	15.1	83.7	1.1	13.7	66.0	16.6	3.7	100.0(350)
300~349만원	15.1	82.9	2.0	10.9	71.4	15.1	2.6	100.0(350)
350~399만원	17.9	80.8	1.3	10.3	72.4	14.7	2.6	100.0(156)
400~449만원	11.5	83.8	4.7	13.5	68.2	12.8	5.4	100.0(148)
450만원 이상	21.2	76.8	2.0	10.8	70.0	12.8	6.4	100.0(203)
$\chi^2(df)$		-			35.1(21) ^{**}			
2009년 조사	36.7	44.9	7.4	20.7	57.2	11.9	10.2	100.0(2,5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유치원의 경우도 일반적 설치에 대해서는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이며, 보낼만한 유치원 여부에 대해서는 1~2곳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4%, 많다는 응답이 11.0%로 모두 65.4%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앞서 살펴본 어린이집에 비해 유치원의 접근성이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표 V-3-2 참조).

유치원 접근성은 어린이집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읍·면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 불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48.2%로 도시보다 높으며, 보낼만한 곳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34.7%로 역시 도시보다 높았다. 특히 대도시에서는 15.2%가 보낼만한 곳이 많다고 응답하였다. 면 지역에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이 설치되어 있으나 접근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3-2〉 유치원 설치 충분성 및 보낼만한 곳 유무

단위: %(명)

구분	일반적 설치			보낼만한 곳				전체(수)
	불충분	충분	모름	없음	1~2곳	많음	모름	
전체	38.0	54.8	7.2	23.8	54.4	11.0	10.8	100.0(2,003)
지역								
대도시	38.3	53.8	7.9	24.3	48.6	15.2	11.9	100.0(738)
중소도시	32.7	60.7	6.6	18.0	63.2	8.6	10.2	100.0(850)
읍·면	48.2	44.6	7.2	34.7	46.7	8.7	9.9	100.0(415)
$\chi^2(df)$		31.9(4) ^{***}			73.4(6) ^{***}			
모 취업								
취업중	35.4	55.2	9.4	23.0	53.9	9.9	13.2	100.0(618)
휴직중	12.9	80.6	6.5	25.8	64.5	9.7	-	100.0(31)
미취업	40.0	54.1	5.8	24.3	54.7	11.4	9.6	100.0(1,339)
$\chi^2(df)$		19.2(4) ^{**}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1.3	60.7	8.0	24.0	44.7	20.0	11.3	100.0(150)
150~199만원	43.3	48.5	8.2	33.3	42.9	11.7	12.1	100.0(231)
200~249만원	36.4	55.8	7.8	23.5	52.9	11.7	11.9	100.0(412)
250~299만원	41.1	52.3	6.6	23.7	55.4	9.7	11.1	100.0(350)
300~349만원	34.3	58.6	7.1	22.0	58.9	10.3	8.9	100.0(350)
350~399만원	35.3	58.3	6.4	17.9	65.4	9.6	7.1	100.0(156)
400~449만원	41.2	52.7	6.1	23.6	58.8	7.4	10.1	100.0(148)
450만원 이상	40.4	52.7	6.9	20.7	56.7	9.9	12.8	100.0(203)
$\chi^2(df)$		-			45.4(21) ^{**}			
2009년 조사	41.0	47.6	11.4	19.9	53.3	11.1	15.7	100.0(2,54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유치원에 대한 인식은 2009년 조사 결과와 비교하여 일반적 설치는 좀 인식이 개선되었으나 보낼만한 곳에 대한 응답은 거의 달라지지 않아 인식 변화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유치원 설치에 대한 응답은 미취업 모 40.0%, 취업중 35.4%, 휴직중 12.9%로 휴직중인 엄마의 응답비율이 낮다. 이는 취업 중인 모에 비해 미취업모의 유치원 교육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더 높다는 것을 말해 주며, 휴직중인 모는 아직 자녀가 어려서 유치원에 대한 고려가 적은 데서 나온 결과로도 볼 수 있다. 소득수준별로는 어린이집처럼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믿고 보낼 곳이 많다는 줄어들고 1~2군데라는 응답은 늘어나는 양상이다.

나. 평가인증 인식

부모들이 어린이집 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인식으로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를 아는 지를 알아본 결과³⁴⁾,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에 보낸다는 비율이 72.2%이고, 7.7%는 안 받았다고 하였고 18.3%는 평가인증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모르며, 2.0%는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으로 조사되어, 20% 정도의 부모들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인지부족을 보여준다(표 V-3-3 참조).

〈표 V-3-3〉 이용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

단위: %(명)

구분	평가인증 받음	평가인증 안받음	평가인증 여부 모름	평가인증 자체를 모름	계(수)	$\chi^2(df)$
전체	72.0	7.7	18.3	2.0	100.0(1,530)	
연령						
영아	71.8	9.2	17.1	1.9	100.0(958)	9.4(3)*
유아	72.2	5.2	20.3	2.3	100.0(572)	
지역						
대도시	75.6	7.0	15.3	2.1	100.0(561)	7.7(6)
중소도시	69.3	8.1	20.8	1.7	100.0(629)	
읍·면	70.9	8.2	18.5	2.4	100.0(340)	
모 취업						
취업중	74.0	9.8	15.0	1.2	100.0(492)	-
휴직중	80.0	4.0	16.0	-	100.0(25)	
미취업	71.2	6.9	19.6	2.3	100.0(1,000)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66.7	9.5	23.0	.8	100.0(126)	38.4(21)*
150~199만원	69.0	6.0	21.5	3.5	100.0(200)	
200~249만원	64.2	8.9	23.2	3.7	100.0(327)	
250~299만원	76.1	8.0	14.5	1.4	100.0(276)	
300~349만원	77.8	7.8	12.8	1.6	100.0(257)	
350~399만원	67.6	8.1	22.5	1.8	100.0(111)	
400~449만원	77.7	4.3	17.0	1.1	100.0(94)	
450만원 이상	79.6	7.3	13.1	-	100.0(1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여부는 지역과 모의 취업상태는 관련이 유의하지 않고 아동연령과 가구소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가구소득

34) 이는 부모의 인식이므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임.

은 소득수준이 높아지면서 받았다는 응답비율과 대체로 정적 양상을 나타냈고, 저소득층이 평가인증여부 및 그 자체를 모른다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여서, 저소득층의 정보 소외 경향을 반영하였다. 또한 자녀 연령별로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은 어린이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응답이 영아 9.2%, 유아 5.2%로 조사되었다.

다. 서비스 만족도

자녀가 이용하는 기관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만족도를 5개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미흡이라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운영시간으로 13.2%이고 이외는 모두 6% 미만이다. 5점 척도로는 위생·건강관리가 가장 높은 3.8점, 다음으로는 급·간식과 안전한 보호, 교육프로그램 3.7점으로 나타난 반면 운영시간은 3.5점으로 낮았다(표 V-3-4 참조).

〈표 V-3-4〉 이용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구분	매우 미흡	미흡	보통	만족	매우 만족	단위: %(명)
						계(수)
위생, 건강관리	0.4	3.4	25.7	53.6	16.9	100.0(1,958)
급·간식	0.4	5.4	28.4	49.0	16.8	100.0(1,957)
안전한 보호	0.3	3.7	29.8	51.8	14.4	100.0(1,958)
교육프로그램 내용	0.3	4.8	29.0	48.1	17.9	100.0(1,958)
운영시간	1.8	11.4	26.1	47.0	13.6	100.0(1,95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3-5>는 응답자 특성별로 5점 척도를 제시한 것인데, 영유아별로는 영아 모가 급간식과 운영시간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지역적으로는 대도시에 서 위생·건강관리와 교육프로그램 내용 만족도가 이외의 지역들에 비해 높다. 모취업 여부별로는 교육프로그램 만족도 차이가 유의한데, 휴직중인 모가 다른 모에 비하여 만족도가 낮다. 휴직 중인 모의 상대적으로 높은 기대수준을 갖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³⁵⁾. 소득수준 차이는 안전한 보호에서 200만원 미만이 그 이상에 비하여 만족 정도가 낮다.

35) 어머니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것 자체가 정규직 등 안정된 좋은 일자리를 나타내므로 소득수준 등 사회경제적 특성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됨.

〈표 V-3-5〉 특성별 이용 보육·교육기관의 서비스 만족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위생, 건강관리	급·간식	안전한 보호	교육프로 그램	운영시간	(수)
전체	3.8	3.7	3.7	3.7	3.5	(1,957)
연령						
영아	3.8	3.8	3.7	3.7	3.6	(976)
유아	3.8	3.7	3.7	3.7	3.5	(982)
<i>t</i>	0.7	2.5*	0.01	-0.3	2.7**	
지역						
대도시	3.9	3.8	3.7	3.8	3.6	(717)
중소도시	3.7	3.7	3.7	3.7	3.5	(829)
읍·면	3.7	3.7	3.7	3.7	3.5	(412)
<i>F</i>	8.2(2)***	2.7(2)	0.3(2)	3.3(2)*	2.7(2)	
모 취업						
취업중	3.8	3.8	3.7	3.8	3.5	(594)
휴직중	3.8	3.5	3.7	3.4	3.6	(27)
미취업	3.8	3.7	3.7	3.7	3.6	(1,322)
<i>F</i>	0.008(2)	2.7(2)	0.01(2)	3.1(2)*	0.2(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8	3.7	3.6	3.7	3.6	(148)
150~199만원	3.7	3.6	3.6	3.6	3.5	(227)
200~249만원	3.8	3.8	3.7	3.7	3.6	(405)
250~299만원	3.8	3.7	3.7	3.8	3.6	(345)
300~349만원	3.8	3.7	3.8	3.7	3.5	(341)
350~399만원	3.7	3.7	3.7	3.6	3.5	(152)
400~449만원	3.9	3.7	3.7	3.8	3.6	(142)
450만원 이상	3.9	3.7	3.8	3.8	3.5	(195)
<i>F</i>	1.1(7)	0.6(7)	2.6(7)*	1.7(7)	0.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라. 효과성 인식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으로 가정이나 부모에게 도움이 된 부분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항목은 업무 능력 향상 3.9점, 양육스트레스 해소 3.8점, 가족 갈등 완화·해소 3.3점, 육아기술·지식 확대 3.2점, 여가 취미 활동 3.0점이다. 반면에 직장에서의 안정감이나 취업 및 구직 관련 도움 정도에 대해서는 2.3~2.4점으로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V-3-6 참조).

〈표 V-3-6〉 보육·교육기관 이용이 가정·부모에게 도움된 부분: 5점 척도

구분	취업 및 구직 (신규)	직장에서 안정감 증대	업무 (가사) 능률 향상	학업 및 취업 훈련	여가 취미 활동	육아 기술· 지식 확대	육아 고민 해결	양육 스트레 스 해소	단위: 점(명)	
									가족 갈등 완화 (해소)	(수)
전체	2.3	2.2	3.9	2.4	3.0	3.2	3.4	3.8	3.3	(1,958)
연령										
영아	2.4	2.3	4.0	2.5	3.1	3.2	3.4	3.9	3.4	(976)
유아	2.2	2.0	3.7	2.4	3.0	3.1	3.3	3.7	3.2	(982)
t	3.3**	3.3**	5.2***	2.2*	1.8	2.1*	2.0*	4.3***	3.5***	
지역										
대도시	2.3	2.3	4.0	2.3	2.9	3.2	3.5	4.0	3.3	(717)
중소도시	2.1	2.1	3.8	2.6	3.2	3.1	3.3	3.6	3.2	(829)
읍·면	2.1	2.1	3.7	2.3	2.9	3.1	3.3	3.8	3.3	(412)
F	1.5(2)	2.9(2)	22.9(2)***	11.2(2)***	7.9(2)***	4.3(2)*	6.4(2)**	22.0(2)***	0.7(2)	
모 취업										
취업중	3.5	3.8	3.8	2.7	2.7	3.1	3.4	3.7	3.3	(595)
휴직중	2.8	3.4	3.7	2.6	3.2	3.1	3.4	3.9	3.5	(27)
미취업	1.7	1.4	3.9	2.3	3.2	3.2	3.4	3.8	3.3	(1,322)
F	415.0(2)***	1287.6(2)***	3.1(2)*	22.5(2)***	35.8(2)***	1.4(2)	0.1(2)	7.7(2)***	0.7(2)	
가구소득										
149만원이하	2.1	1.8	3.9	2.2	2.7	3.2	3.5	3.9	3.3	(148)
150~199만원	2.1	1.8	3.9	2.3	2.9	3.3	3.4	3.8	3.3	(227)
200~249만원	2.1	1.8	3.9	2.3	3.1	3.2	3.4	3.8	3.3	(405)
250~299만원	2.3	2.1	3.9	2.5	3.2	3.3	3.3	3.9	3.3	(345)
300~349만원	2.2	2.2	3.9	2.5	3.1	3.1	3.3	3.7	3.2	(341)
350~399만원	2.5	2.4	3.8	2.5	3.2	3.0	3.3	3.7	3.2	(152)
400~449만원	2.4	2.5	3.9	2.5	3.1	3.1	3.4	3.7	3.3	(142)
450만원이상	2.7	3.1	3.8	2.6	2.9	3.1	3.4	3.7	3.3	(195)
F	4.5(7)***	19.7(7)***	1.1(7)	3.0(7)**	3.7(7)***	2.5(7)*	1.0(7)	1.5(7)	1.2(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이는 현행 보육서비스가 어머니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근로시 자녀양육 지원 등 노동정책과 유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영아의 경우는 업무 능률 향상, 양육 스트레스 해소, 가족갈등 완화 등 긍정적인 인식 항목은 물론 구직 등 상대적으로 도움 인식 정도가 낮은 항목에서도 유아에 비해 그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취업 및 학업 훈련과 여가 취미활동이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높고 업무 능률 향상, 지식정보 확대, 육아고민, 양육스트레스 해소는 대도시에서 점수가 높았다.

모의 취업 특성별로는 9개 문항 중 7개 문항에서 집단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그 방향이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취업모에게는 취업 및 구직, 직장에서의 안정감 증대, 취업 훈련 등의 효과도 있으나 여가활동이나 업무(가사) 능률 향상, 양육스트레스에의 기여는 미취업모가 취업모보다 높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이용 자체와도 관련하여 보편화된 보육을 다시 드러내는 결과로 볼 수 있다. 가구소득별로는 가구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는 특히 취업 및 구직, 학업 및 취업 훈련 등에 대한 도움 인식 정도가 높은 경향을 보였고, 소득 300만원 미만은 육아 기술·지식 확대, 소득 200~449만원은 여가활동이 도움된다는 비율이 높다.

4. 비용 지원에 대한 인식

제4절에서는 정부의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취업모 추가 지원, 양육수당 등 육아비용 지원정책에 대한 인지, 수혜경험과 효과, 요구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 비용지원정책의 인지 및 경험

1) 개요

정부의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하여 알고 있는지,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인지를 보면 보육료 교육비 지원은 잘 안다가 79.1%이고 대략 안다를 포함하면 인지율은 98.3%이고, 영아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은 대략 안다와 잘 안다는 합한 인지율이 80.8%이다.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잘 안다 39.9%, 대략 안다 21.2%로 61.1% 정도가 인지하고 있고, 어린이집 이용과 무관한 양육수당은 14.0%가 잘 안다, 14.8%가 대략 안다고 응답하여 28.8%의 인지율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연 300만원까지 해 주는 보육료·학원비 소득공제의 경우 인지율은 79.3%이다.

현재 수혜는 보육료 지원은 84%, 영아 기본보육료 67.0%이고, 양육수당은 5.1%, 지방정부 양육수당 과거 0.6%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육료 교육비 공제는 31.4%가 현재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과거 경험 비율은 양

육수당만 26.7%로 높고 그 이외는 낮다(표 V-4-1 참조).

보육·유아교육 비용 지원정책인지와 수혜경험을 함께 보면 수혜경험이 높은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정책과 보편적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등이 인지율도 높아서 지원정책 수혜경험과 인지간에 관계가 있음을 입증한다고 할 수 있다.

<표 V-4-2>는 2009년 조사 결과인데 이 두 가지 보육료 지원정책 인지 및 경험 비율은 이번 조사와 비교해 보면 최근 2년간 인지와 경험 비율이 모두 매우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서 그간의 정책적 성과로 볼 수 있다.

<표 V-4-1>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인지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경험 있음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79.1	19.2	1.6	84.0	2.6	13.4	100.0(2,003)
영아 기본보육료	58.4	22.4	19.2	40.3	26.7	33.0	100.0(2,003)
양육수당(중앙정부)	39.9	21.2	38.9	5.1	4.8	90.0	100.0(2,003)
양육수당(지방정부)	14.0	14.8	71.2	-	0.6	99.4	100.0(2,003)
소득공제	57.1	22.2	20.7	31.4	5.1	63.6	100.0(2,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4-2>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인지 및 수혜 여부(2009)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경험 있음	
보육료/유아교육비 감면	52.4	39.6	8.0	31.0	11.0	57.9	100.0(2,548)
영아 기본보조금	28.7	34.9	36.4	6.0	7.7	86.3	100.0(2,548)

자료: 서문희 외(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보건복지부·육아정책연구소

2) 특성별 차이

다음은 정부 정책 인지와 수혜의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나타낸다.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정책 인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대략 안다, 중소도시는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모의 취업이나 가구소득별로는 일관성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수혜는 지역에 따라서는 읍·면지역이 90.1%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은 중소도시 84.1%, 대도시 80.5%순으로 응답해 지역의 규모가 작을수록 수혜경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는 소득이 낮을수록 수혜경험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 수준에 따른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정책이기에 소득이 낮을수록 수혜를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표 V-4-3 참조).

〈표 V-4-3〉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보육료·유아교육비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경험 있음	
전체	79.1	19.2	1.6	84.0	2.6	13.4	100.0(2,003)
지역							
대도시	85.8	12.9	1.4	80.5	1.6	17.9	100.0(738)
중소도시	71.3	26.8	1.9	84.1	3.4	12.5	100.0(850)
읍·면	83.4	14.9	1.7	90.1	2.7	7.2	100.0(415)
$\chi^2(df)$		57.3(4) ^{***}			31.2(4) ^{***}		
모 취업							
취업중	77.7	21.3	1.0	79.9	2.8	17.3	100.0(618)
휴직중	83.9	16.1	-	67.7	3.2	29.0	100.0(31)
미취업	79.8	18.2	2.0	86.3	2.5	11.2	100.0(1,339)
$\chi^2(df)$		5.9(4)			20.6(4)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83.3	16.0	0.7	95.3	1.3	3.3	100.0(150)
150~199만원	84.4	13.9	1.7	96.1	1.3	2.6	100.0(231)
200~249만원	76.7	21.4	1.9	92.7	1.9	5.3	100.0(412)
250~299만원	78.6	18.9	2.6	92.6	1.4	6.0	100.0(350)
300~349만원	82.6	16.3	1.1	83.4	3.1	13.4	100.0(350)
350~399만원	73.1	26.3	0.6	78.2	3.8	17.9	100.0(156)
400~449만원	81.8	17.6	0.7	64.9	4.1	31.1	100.0(148)
450만원 이상	72.4	25.1	2.5	48.8	5.4	45.8	100.0(203)
$\chi^2(df)$		24.8(14) [*]			325.7(1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두 번째로 영아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은 인지는 지역에 따라서는 소득수준에 따른 차이와 마찬가지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대략 안다, 중소도시는 잘 안다는 응답 비율이 높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휴직중이 안다는 비율이 높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낮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안다는 비율은 거의 차이가 없으나 소득수준 200만원 이하에서 잘 안다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 기본보육료가 소득 제한이 없이 지원됨에도 저소득층 인지율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것은 가정경제에 대한 민감성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표 V-44 참조).

〈표 V-4-4〉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영아 기본보육료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경험 있음	
전체	58.4	22.4	19.2	40.3	26.7	33.0	100.0(2,003)
지역							
대도시	62.5	16.4	21.1	36.9	20.2	42.9	100.0(737)
중소도시	52.6	29.1	18.4	43.3	31.3	25.4	100.0(850)
읍·면	63.1	19.3	17.6	40.2	28.7	31.1	100.0(415)
$\chi^2(df)$		41.4(4) ^{***}			60.0(4) ^{***}		
모 취업							
취업중	58.2	22.8	19.1	40.9	29.3	29.8	100.0(618)
휴직중	80.6	12.9	6.5	71.0	9.7	19.4	100.0(31)
미취업	57.9	22.3	19.8	39.4	25.6	35.0	100.0(1,339)
$\chi^2(df)$		6.7(4)			18.1(4) ^{**}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68.7	18.0	13.3	43.3	26.7	30.0	100.0(150)
150~199만원	63.6	18.2	18.2	50.2	23.8	26.0	100.0(231)
200~249만원	58.3	23.3	18.4	43.6	29.2	27.3	100.0(412)
250~299만원	58.0	24.3	17.7	41.7	29.7	28.6	100.0(350)
300~349만원	58.6	21.7	19.7	39.1	28.6	32.3	100.0(350)
350~399만원	49.4	30.1	20.5	33.3	28.2	38.5	100.0(156)
400~449만원	56.1	18.2	25.7	25.7	25.0	49.3	100.0(148)
450만원 이상	54.7	23.2	22.28	36.5	16.3	47.3	100.0(203)
$\chi^2(df)$		23.5(14)			65.8(1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정책수혜는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읍·면보다 유의하게 낮고,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휴직중이 현재 받는다는 비율이 71.0%로 높고 미취업모의 수혜경험 비율이 가장 낮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150~199만원 집단이 가장 높은 수혜경험비율을 나타냈고, 소득 400~499만원이 경험률이 가장 낮아서, 소득이 낮을수록 수혜경험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경험이 낮음을 나타냈다.

양육수당 인지는 읍·면에서 잘 안다는 비율이 가장 높고, 역시 휴직 중인 부모들의 인지도가 높으며, 가구소득은 낮을수록 인지도가 높고 반대로 소득이 높을수록 인지도가 낮은 것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정책 수혜경험은 대도시와 읍·면이 중소도시보다 높고,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미취업모가 취업 중과 휴직

중인 모보다 높다. 이는 취업모인 경우 자녀들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기에 본 정책에 해당되는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이 없어 낮은 응답률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휴직 중, 미취업의 경우도 수혜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6% 대로 그리 높지 않다. 소득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경험이 높고 소득이 높을수록 수혜경험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V-4-5 참조).

〈표 V-4-5〉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양육수당(중앙정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경험 있음	
전체	39.9	21.2	38.9	5.1	4.8	90.0	100.0(2,003)
지역							
대도시	43.0	18.2	38.9	5.8	6.7	87.5	100.0(738)
중소도시	32.7	24.1	43.2	3.9	2.8	93.3	100.0(850)
읍·면	49.2	20.5	30.4	6.5	5.8	87.7	100.0(415)
$\chi^2(df)$	40.1(4)***			19.5(4)**			
모 취업							
취업중	36.2	22.7	41.1	1.8	5.5	92.7	100.0(618)
휴직중	48.4	25.8	25.8	6.5	-	93.5	100.0(31)
미취업	41.7	20.2	38.1	6.7	4.7	88.6	100.0(1,337)
$\chi^2(df)$	7.6(4)			23.0(4)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2.0	20.7	37.3	13.3	16.7	70.0	100.0(150)
150~199만원	53.7	17.7	28.6	11.7	8.7	79.7	100.0(231)
200~249만원	41.7	23.5	34.7	5.6	6.3	88.1	100.0(412)
250~299만원	39.1	19.1	41.7	3.4	2.6	94.0	100.0(350)
300~349만원	40.6	20.0	39.4	3.1	2.3	94.6	100.0(350)
350~399만원	35.3	26.3	38.5	2.6	2.6	94.9	100.0(156)
400~449만원	33.1	20.9	45.9	2.0	2.0	95.9	100.0(148)
450만원 이상	27.1	22.7	50.2	1.0	1.0	98.0	100.0(203)
$\chi^2(df)$	45.4(14)***			139.8(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지방정부 정책인 어린이집 이용과 무관한 양육수당은 인지도가 30% 정도인데, 인지상태는 읍·면이나 중소도시보다 대도시에서 낮았다. 이는 이러한 정책이 주로 시보다는 도에서 실시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모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대부분이 영아 모로 추정되는 휴직중이 가장 높았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정적인 일관성은 없고 소득 300~349만원이 가장 높은 인지비율을 보였고, 149원

이하가 가장 낮은 인지비율을 보였다. 수혜 비율은 매우 낮아서 집단 간 차이 분석이 의미가 없다(표 V-4-6 참조).

〈표 V-4-6〉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양육수당(지방정부)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경험 있음	
전체	14.0	14.8	71.2	-	0.6	99.4	100.0(2,003)
지역							
대도시	13.0	11.7	75.3	-	0.4	99.6	100.0(738)
중소도시	13.9	17.5	68.6	-	1.1	98.9	100.0(850)
읍·면	15.9	14.9	69.2	-	0.2	99.8	100.0(415)
$\chi^2(df)$		13.6(4)**			3.9(2)		
모 취업							
취업중	15.4	16.5	68.1	-	0.2	99.8	100.0(618)
휴직중	25.8	25.8	48.4	-	-	100.0	100.0(31)
미취업	13.1	13.6	73.3	-	0.9	99.1	100.0(1,337)
$\chi^2(df)$		13.5(4)			3.7(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6.7	14.0	79.3	-	1.3	98.7	100.0(150)
150~199만원	14.7	11.7	73.6	-	1.3	98.7	100.0(231)
200~249만원	13.3	17.2	69.4	-	1.0	99.0	100.0(411)
250~299만원	13.7	13.1	73.1	-	-	100.0	100.0(350)
300~349만원	17.7	12.0	70.3	-	0.9	99.1	100.0(350)
350~399만원	15.4	17.9	66.7	-	-	100.0	100.0(156)
400~449만원	15.5	14.2	70.3	-	0.7	99.3	100.0(148)
450만원 이상	11.3	20.2	68.5	-	-	100.0	100.0(202)
$\chi^2(df)$		24.4(14)*			8.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마지막으로 보육료·학원비 공제의 경우 인지율은 지역에 따라서는 안다는 비율은 지역 차이가 약한데 잘 안다는 비율은 도시가 읍·면보다 더 높다. 이 역시 휴직 중인 부모가 가장 잘 알며, 소득수준이 높아지면 인지율도 올라가는 정적 관계를 뚜렷하게 보였다. 수혜경험은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높게 나타났고, 휴직중인 모가 높으며, 소득수준은 인지율과 마찬가지로 높아지면 인지율도 올라가는 정적 관계가 뚜렷하였다(표 V-4-7 참조).

〈표 V-4-7〉 정부 지원 인지 및 수혜 경험: 소득공제

단위: %(명)

구분	인지			수혜경험			계(수)
	잘 앎	대략 앎	잘 모름	현재 받음	과거 경험	경험 없음	
전체	57.1	22.2	20.7	31.4	5.1	63.6	100.0(2,003)
지역							
대도시	55.6	22.0	22.5	25.7	5.9	68.4	100.0(738)
중소도시	55.5	24.5	20.0	36.1	5.5	58.4	100.0(850)
읍·면	63.1	17.8	19.0	31.6	2.7	65.8	100.0(415)
$\chi^2(df)$		10.7(4)*			26.3(4)***		
모 취업							
취업중	58.4	22.2	19.4	33.2	5.7	61.1	100.0(618)
휴직중	67.7	25.8	6.5	45.2	9.7	45.2	100.0(31)
미취업	56.4	22.0	21.6	30.2	4.6	65.2	100.0(1,339)
$\chi^2(df)$		5.1(4)			8.3(4)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3.3	18.7	38.0	7.3	7.3	85.3	100.0(150)
150~199만원	46.3	25.5	28.1	13.0	3.9	83.1	100.0(231)
200~249만원	51.7	23.8	24.5	23.9	5.6	70.5	100.0(412)
250~299만원	55.4	23.1	21.4	32.7	2.0	65.3	100.0(350)
300~349만원	62.3	20.6	17.1	40.0	3.1	56.9	100.0(350)
350~399만원	67.3	23.7	9.0	47.4	4.5	48.1	100.0(156)
400~449만원	70.9	16.9	12.2	45.3	8.8	45.9	100.0(148)
450만원 이상	66.0	21.7	12.3	45.3	9.9	44.8	100.0(203)
$\chi^2(df)$		84.6(14)***			182.7(1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나. 비용 지원 정책의 만족도와 효과

1) 만족도

다음 <표 V-4-8>는 전반적인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에 대한 어머니의 만족도를 나타낸다. 2011년에는 전 연령 소득하위 70%까지 지원단가의 전액을 지원하고, 차상위계층 이하 0~2세 자녀에게 연령별로 20~10만원을 차등하여 양육수당을 지원하였다.

만족 16.0%, 매우 만족 1.1%로 17.1%가 만족한다는 응답이고, 매우 불만

10.0%, 불만 32.1%로 42.1%가 불만이다. 즉, 만족한다는 비율보다 불만 비율이 더 높아서 5점 평균으로 2.6점이다.

육아지원정책 만족도의 집단간 차이는 지역별로는 읍·면이 도시보다 만족하는 정도가 높고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별 차이가 없으나 휴직중인 모가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다. 소득계층별 차이는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만족도는 낮아지고 불만족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다.

〈표 V-4-8〉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계(수)	평균
전체	10.0	32.1	40.5	16.0	1.1	0.2	100.0(2,003)	2.6
지역								
대도시	10.3	32.2	34.7	20.3	1.9	0.5	100.0(738)	2.6
중소도시	10.9	32.6	43.4	12.6	05	-	100.0(850)	2.5
읍·면	7.7	30.6	45.1	15.4	1.0	0.2	100.0(415)	2.7
$\chi^2(df=10)/F$		40.3***						3.5(2)*
모 취업								
취업중	10.8	31.9	38.7	17.5	0.6	0.5	100.0(618)	2.6
휴직중	22.6	32.3	22.6	19.4	3.2	-	100.0(31)	2.4
미취업	9.3	32.2	41.8	15.5	1.1	0.1	100.0(1,339)	2.6
$\chi^2(df=10)/F$		15.3						0.7(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6.7	22.7	44.7	22.7	3.3	-	100.0(150)	2.9
150~199만원	6.5	26.4	45.9	20.8	0.4	-	100.0(231)	2.8
200~249만원	6.8	30.3	43.9	16.5	1.9	0.5	100.0(412)	2.7
250~299만원	8.3	31.4	44.6	14.6	0.6	0.6	100.0(350)	2.6
300~349만원	12.3	31.1	42.3	13.7	0.6	-	100.0(350)	2.5
350~399만원	12.2	34.0	35.3	17.9	0.6	-	100.0(156)	2.6
400~449만원	17.6	37.2	28.4	15.5	0.7	0.7	100.0(148)	2.4
450만원 이상	15.3	46.8	27.1	9.9	1.0	-	100.0(203)	2.3
$\chi^2(df=3)/F$		102.2***						9.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다음 <표 V-4-9>은 정부의 지원여부별 만족도 차이를 분석한 것으로, 방향성의 차이가 나지만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냈다.

〈표 V-4-9〉 정부지원여부별 만족도

단위: %(명)

구분	매우 불만	불만	보통	만족	매우 만족	잘 모름	계(수)	$X^2(df)$
전체	10.0	32.1	40.5	16.0	1.1	0.2	100.0(2,003)	
보육료·유아교육비								
지원	6.9	28.6	44.9	18.1	1.3	0.2	100.0(1,683)	224.9(5)***
미지원	26.6	50.3	17.8	5.0	-	0.3	100.0(320)	
기본보육료								
지원	8.8	27.6	40.9	20.9	1.6	0.1	100.0(807)	34.8(5)***
미지원	10.9	35.0	40.3	12.7	0.8	0.3	100.0(1,196)	
양육수당(중앙정부)								
지원	2.9	30.1	40.8	25.2	1.0	-	100.0(103)	11.6(5)*
미지원	10.4	32.2	40.5	15.5	1.1	0.3	100.0(1,900)	
소득공제								
지원	11.5	35.7	41.0	11.0	0.6	0.2	100.0(627)	22.2(5)***
미지원	9.4	30.4	40.3	18.3	1.3	0.3	100.0(1,37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표 V-4-10〉 정부지원 정책 만족도 종다회귀분석 결과

구분	B	표준오차	β
(상수)	3.043***	0.342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1=지원)	0.698***	0.059	0.282
기본보육료(1=지원)	0.076#	0.042	0.041
양육수당(중앙정부)(1=지원)	0.236*	0.093	0.057
소득공제(1=지원)	-0.038	0.044	-0.019
부 양육참여 정도	-0.001	0.007	-0.004
조부모지원(1=유)	-0.119*	0.058	-0.049
자녀수	-0.131***	0.032	-0.094
가구소득(로그값)	-0.130*	0.058	-0.058
모 취업(1=취업)	0.125**	0.048	0.063
모 휴직(1=휴직)	0.039	0.161	0.005
모 학력(1=전문대)	-0.037	0.053	-0.018
모 학력(1=대학)	0.004	0.057	0.002
부 학력(1=전문대)	0.010	0.058	0.004
부 학력(1=대학)	-0.059	0.057	-0.031
부 학력(1=대학원)	-0.010	0.093	-0.003
수정R ²		0.112	
F		17.246***	
(수)		(1925)	

$p < .1$, * $p < .05$, ** $p < .01$, *** $p < .001$

구체적으로 보면, 보육료·유아교육비, 기본보육료, 소득공제가 지원 받는 경우가 지원 안 받는 부모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도 .001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고, 양육수당은 지원 받는 경우가 지원 안 받는 부모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도 .05 수준으로 만족도가 높게 분석되었다. 그러나 소득공제는 다른 지원과는 반대로 지원 받는 경우가 지원 안 받는 부모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도 .05 수준으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V-4-10>은 정부의 지원이 정부 지원정책에 대한 포괄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중다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이 표를 보면,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과 양육수당이 만족도에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기본보육료는 영향을 주는 경향을 보였으나, 소득공제는 유의하지 않았다. 정부 지원 이외의 변수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조부모 지원이 없을수록, 취업모일수록 정부 정책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변수의 설명력은 11% 정도이다.

2) 효과

가) 가정경제 도움 효과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정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수혜받은 지원 정책이 가정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각 지원정책별 가정경제 도움 비율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94.1%, 영아 기본보육료 90.2%, 중앙정부 양육수당 88.0%, 지방정부 양육수당 84.6%, 소득공제 62.8%이다(표 V-4-11 참조).

〈표 V-4-11〉 정부 지원의 가정경제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보육료 유아교육비 지원	5.9	39.5	54.6	100.0(1,735)
기본보육료	9.8	46.9	43.3	100.0(1,341)
양육수당(중앙정부)	12.0	53.0	35.0	100.0(200)
양육수당(지방정부)	15.4	61.5	23.1	100.0(13)
소득공제	37.2	48.4	14.4	100.0(728)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에 대한 가정경제 도움 평가는 2009년 보육실태조사에서는 각각 92.1%, 87.2%로 조사되어서 본 조사에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V-4-12>는 다섯 가지 지원 정책에 대한 경제적 지원효과의 지역, 모취업 및 소득수준별 차이를 제시한 것이다.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은 지역과 소득수준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대도시가 중소도시나 농촌보다 높고, 소득수준은 소득 400만원 이상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은 나타났다. 영아보육료 지원은 소득수준에서만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는데, 149만원 이하 150~249만원, 350~399만원, 400만원 이상으로 각각 효과성 평가가 낮아지는 경향이다.

<표 V-4-12> 정부 지원 수혜시 가정경제 도움 정도: 3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영아 기본보육료		양육수당 (중앙정부)		양육수당 (지방정부)		소득공제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2.4	(1,735)	2.3	(1,341)	2.2	(200)	2.0	(13)	1.7	(728)
지역										
대도시	2.5	(606)	2.3	(421)	2.2	(92)	2.6	(3)	1.8	(232)
중소도시	2.4	(744)	2.3	(634)	2.1	(57)	1.8	(9)	1.7	(354)
읍·면	2.4	(385)	2.3	(286)	2.3	(51)	2.0	(1)	1.6	(142)
F	5.4(2)**		1.5(2)		1.1(2)		1.9(2)		5.2(2)**	
모 취업										
취업중	2.4	(511)	2.3	(434)	2.1	(45)	2.0	(1)	1.7	(240)
휴직중	2.7	(22)	2.4	(25)	1.5	(2)	-	-	1.9	(17)
미취업	2.4	(1,189)	2.3	(870)	2.2	(153)	2.0	(12)	1.7	(465)
F	1.7(2)		1.2(2)		1.5(2)		0.01(2)		1.4(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6	(145)	2.5	(105)	2.4	(45)	2.00	(2)	1.8	(22)
150~199만원	2.5	(225)	2.3	(171)	2.2	(47)	2.33	(3)	1.9	(39)
200~249만원	2.5	(390)	2.3	(299)	2.2	(49)	1.75	(4)	1.7	(121)
250~299만원	2.4	(329)	2.3	(250)	1.9	(21)	-	-	1.8	(121)
300~349만원	2.5	(303)	2.3	(237)	2.1	(19)	2.33	(3)	1.7	(151)
350~399만원	2.4	(128)	2.2	(96)	2.0	(8)	-	-	1.6	(81)
400~449만원	2.3	(102)	2.1	(75)	2.1	(6)	2.00	(1)	1.7	(80)
450만원 이상	2.2	(110)	2.1	(107)	2.5	(4)	-	-	1.7	(112)
F	5.2(7)***		3.8(7)***		1.3(7)		0.4(4)		0.7(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대상이 소수인 중앙정부나 지방정부 양육수당은 집단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고, 소득공제는 지역별로만 유의하여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 순으로 경제적 효과가 높은 것으로 응답하였다.

나) 출산을 제고 효과

다음은 영유아 자녀를 둔 가구의 정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수혜 경험이 있는 경우 수혜 받은 지원 정책이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나타낸다.

각 지원정책별 출산수준 제고에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58.9%, 영아 기본보육료 53.8%, 중앙정부 양육수당 46.9%, 지방정부 양육수당 43.5%, 소득공제 35.4%이다(표 V-4-13 참조).

〈표 V-4-13〉 정부 지원의 출산 제고 효과

단위: %(명)

구분	전혀 없음	없음	어느 정도	많음	잘 모름	전체(수)
보육료 유아교육비	15.9	23.9	43.0	15.9	1.2	100.0(2,003)
기본보육료	14.6	24.3	42.3	11.5	7.3	100.0(2,003)
양육수당(중앙정부)	12.4	26.6	39.4	7.5	14.1	100.0(2,003)
양육수당(지방정부)	11.9	22.8	33.9	9.6	21.9	100.0(2,003)
소득공제	23.7	32.4	29.6	5.8	8.6	100.0(2,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4-14〉 정부 지원의 출산 제고 효과: 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영아 기본보육료		양육수당 (중앙정부)		양육수당 (지방정부)		소득공제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2.6	(2,003)	2.7	(2,003)	2.8	(2,003)	3.0	(2,003)	2.4	(2,003)
대도시	2.7	(728)	2.7	(677)	2.5	(667)	2.7	(619)	2.1	(674)
중소도시	2.5	(843)	2.4	(796)	2.4	(700)	2.4	(616)	2.2	(774)
읍·면	2.4	(407)	2.4	(384)	2.3	(354)	2.3	(330)	2.1	(383)
F	18.5(2) ^{***}		19.8(2) ^{***}		10.2(2) ^{***}		27.0(2) ^{***}		3.1(2)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이러한 다섯 가지 지원 정책의 출산 수준 제고 효과의 지역 차이는 유의하다. 집단별 차이내용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영아 기본보육료, 중앙정부 양육수당, 지방정부 양육수당은 모두 대도시에서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높다. 그

러나 소득공제는 중소도시가 읍·면이나 대도시보다 높았다(표 V-4-14 참조).

모취업 및 소득수준별 차이는 다섯 개 정책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부표 참조).

<표 V-4-15>는 현재 지원이 추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이다. 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을 보면 기본보육료와 양육수당이 추가 출산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외 특성변수로는 자녀수가 적을수록,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모가 대학 학력, 부가 전문대 학력일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V-4-15> 추가출산 의사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구분	전체		자녀1명 경우		자녀2명 경우	
	B	SE	B	SE	B	SE
상수	-1.323 ^{***}	0.056	0.229 [*]	0.092	-2.111 ^{***}	0.094
보육료 유아교육비(1=지원)	0.169	0.196	0.176	0.262	0.099	0.343
기본보육료(1=지원)	0.611 ^{***}	0.134	0.875 ^{***}	0.204	0.437 [*]	0.198
양육수당(중앙정부)(1=지원)	0.712 [*]	0.309	1.555	1.227	0.348	0.373
소득공제(1=지원)	-0.112	0.156	0.104	0.256	-0.208	0.221
부 양육참여 정도	0.022	0.022	0.024	0.033	0.015	0.032
조부모지원(1=유)	-0.003	0.189	0.003	0.268	0.122	0.300
자녀수(로그값)	-2.135 ^{***}	0.128	-	-	-	-
가구소득	-0.365 [#]	0.190	-0.251	0.268	-0.793 ^{**}	0.302
모 취업(1=취업)	0.037	0.159	0.112	0.235	-0.129	0.250
모 휴직(1=휴직)	0.663	0.490	-0.069	1.012	1.216 [*]	0.569
모학력(1=전문대)	-0.065	0.166	0.096	0.248	-0.071	0.243
모학력(1=대학)	3.638 ^{**}	1.108	0.539	1.528	1.922	1.752
부학력(1=전문대)	0.345 ³	0.181	0.482 [#]	0.272	0.330	0.262
부학력(1=대학)	0.050	0.185	0.182	0.269	0.033	0.282
부학력(1=대학원)	0.080	0.306	0.257	0.421	0.103	0.527
-2Log likelihood	1525.195		620.969		766.456	
X ²	455.524 ^{***}		29.970 ^{**}		38.632 ^{***}	
Nagelkerke R ²	0.328		0.082		0.065	
분류표에 의한 예측 정확도	82.8%		62.7%		89.2%	
(수)	(2003)		(506)		(1215)	

$p < .1$,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한 자녀와 두 자녀 이상으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정부 지원은 모두 기본 보육료가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었고,³⁶⁾ 이외 변수로는 한자녀

36) 이는 자녀 연령과도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정됨.

시에는 부의 학력, 두 자녀 경우에는 가구소득의 부적 방향으로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표 V-4-15 참조).

다.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

1) 정책 인지

취업모의 일·가정 양립에서의 어려움에 이어서 취업모를 위한 보육정책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와 보육료 교육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 공제에 대해 인지정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2011년 현재 입소 우선순위 1순위(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9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법정),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의 자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의 자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장애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장애부모),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중인 영유아, 부모가 모두 취업중인 영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며 2순위는 기타 한부모·조손가족, 입양된 영유아, 차등 보육료 지원대상 영유아 중 기타 지원층의 영유아(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이하)이다. 2011. 4월부터 동일 입소신청자가 1, 2순위 항목에 중복 해당되는 경우, 1순위 항목당 100점, 2순위 항목당 50점으로 산정하여 점수순으로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2순위 항목만 있는 경우 점수합계가 같거나 높더라도 1순위보다 우선순위가 될 수 없으며 1순위 항목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2순위 항목이 해당될 경우 추가 합산한다.

이러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에 대해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33.3%는 알고, 66.7%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보육료 교육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 공제에 대한 인지정도도 전반적으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정책과 마찬가지로 33.1%가 알고 66.9%가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 특성별 차이로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는 지역별로는 대도시가 잘 안다는 비율이 22.3%로 다른 지역에 비해 인지율이 높다.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휴직중이 22.6%로 다른 집단보다 잘 아는 비율이 높고,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소득 450만원은 좀 예외이지만 그전까지는 소득이 높아지면서 정책 인지 정도도 높아졌다. 통계적으로는 지역과 가구 소득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다(표 V-4-16 참조).

보육료 교육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를 공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도 인지도 지역 차이는 없고,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휴직중인 어머니가 인지도가 높으며,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400~449만원이 24.3%, 300~349만원이 19.5%, 450만원 이상이 17.2%, 350~399만원의 15.4%가 잘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여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본 지원 정책을 잘 인지하고 있다. 모의 취업여부와 가구 소득에 따라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유의하다.

〈표 V-4-16〉 취업모를 위한 보육지원 정책 인지

단위: %(명)

구분	어린이집 입소 우선			소득산정시 추가 공제			계(수)
	잘 압	대략 압	잘 모름	잘 압	대략 압	잘 모름	
전체	18.7	14.6	66.7	14.9	18.2	66.9	100.0(2,002)
지역							
대도시	22.3	11.0	66.8	14.4	17.8	67.8	100.0(737)
중소도시	16.9	16.4	66.7	14.9	17.8	67.3	100.0(850)
읍·면	16.1	17.1	66.7	15.7	20.0	64.3	100.0(415)
$\chi^2(df=4)$		18.0**			1.7		
모 취업							
취업중	18.4	16.7	64.8	16.7	18.9	64.4	100.0(619)
휴직중	22.6	19.4	58.1	29.0	25.8	45.2	100.0(31)
미취업	18.9	13.4	67.7	13.8	17.8	68.4	100.0(1,338)
$\chi^2(df)$		4.7			10.9*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5.3	13.3	71.3	7.3	20.0	72.7	100.0(150)
150~199만원	16.9	11.7	71.4	9.1	15.6	75.3	100.0(231)
200~249만원	12.9	15.0	72.1	12.4	18.0	69.7	100.0(412)
250~299만원	17.5	17.5	65.0	14.3	19.7	66.0	100.0(350)
300~349만원	23.4	14.0	62.6	19.5	15.8	64.8	100.0(349)
350~399만원	23.7	16.7	59.6	15.4	19.9	64.7	100.0(156)
400~449만원	28.4	11.5	60.1	24.3	14.9	60.8	100.0(148)
450만원 이상	18.7	14.3	67.0	17.2	23.6	59.1	100.0(203)
$\chi^2(df=14)$		34.0**			4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 $p < .001$

2) 정책의 적절성

다음으로는 취업모를 위한 지원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살펴보면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은 유사하게 적절하다는 응답이 각각 72.7%, 74.4%이고 부적절이

24.2%, 25.6%이다. 4점 척도로 환산하면 평균 2.7점으로 동일하다.

구체적으로 세부 구분한 집단별 차이와 그 이유를 살펴보았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에 대한 적절성 응답은 지역 차이는 유의하지 않고 모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는데, 휴직중과 취업중인 엄마들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서, 모 취업여부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정책이 부적절하다는 이유로는 취업모 지원으로 실효성 부족이 20.9%이고 취업모 우대로 형평성 결여가 71.4%이다. 부적절하다는 이유는 지역규모가 클수록 형평성 결여를 지적한 비율이 높다. 취업모는 정책의 실효성 부족과 형평성 결여가 비슷한 수준으로 응답하였고, 미취업모는 취업모 우대로 형평성 결여를 선택한 비율이 77.9%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미취업모들도 15.4%는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표 V-4-17 참조).

〈표 V-4-17〉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의 적절성 및 이유: 입소 우선순위

단위: %(명)

구분	정책의 적절성					4점 척도	부적절 응답 이유			계(수)
	매우 부적절	부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수)		실효성 부족	형평성 결여	특별한 이유 없음	
전체	4.0	23.2	66.9	5.8	100.0(667)	2.7	20.9	71.4	7.7	100.0(182)
지역										
대도시	4.1	22.0	65.9	8.1	100.0(246)	2.7	17.2	76.6	6.3	100.0(64)
중소도시	4.2	26.9	64.7	4.2	100.0(283)	2.6	21.6	70.5	8.0	100.0(88)
읍·면	3.6	18.1	73.2	5.1	100.0(138)	2.8	26.7	63.3	10.0	100.0(30)
$\chi^2(df)/F$			8.0(6)			2.0			1.8(4)	
모 취업										
취업중	2.3	11.9	74.3	11.5	100.0(218)	2.9	45.2	41.9	12.9	100.0(31)
휴직중	-	7.7	84.6	7.7	100.0(13)	3.0	100.0	-	-	100.0(1)
미취업	5.1	29.3	62.6	3.0	100.0(433)	2.6	15.4	77.9	6.7	100.0(149)
$\chi^2(df)/F$			44.9(6) ^{***}			0.206 ^{***}			20.5(4) ^{***}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두 번째로 보육료·교육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 공제에 대해서도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데, 적절하다는 응답은 미취업 88.2%, 취업중 81.5%이고 미취업의 경우 71.2%가 응답하여 모 취업

여부에 따라 본 정책의 적절성에 대해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V-4-18 참조).

본 정책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업모 우대로 형평성 결여가 50.3%, 다음으로 취업모 지원으로 실효성 부족이 34.9%, 특별한 이유 없음 14.8%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이 형평성 결여를 지적한 비율이 54.5%로 가장 높고 그 다음 중소도시와 대도시 순으로 나타났으며, 모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취업모가 실효성과 형평성을, 미취업모가 형평성 결여를 지적한 비율이 가장 높았다.

〈표 V-4-18〉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의 적절성 및 이유: 소득공제

단위: %(명)

구분	정책의 적절성					4점 적도	부적절하다는 응답 이유			
	매우 부적 절	부 적절	적절	매우 적절	계(수)		실효성 부족	형평성 결여	특별한 이유 없음	계(수)
전체	4.2	21.4	67.3	7.1	100.0(664)	2.7	34.9	50.3	14.8	100.0(169)
지역										
대도시	2.9	20.2	70.6	6.3	100.0(238)	2.8	38.9	44.4	16.7	100.0(54)
중소도시	5.8	23.7	62.6	7.9	100.0(278)	2.7	34.1	52.4	13.4	100.0(82)
읍·면	3.4	18.9	70.9	6.8	100.0(148)	2.8	30.3	54.5	15.2	100.0(33)
$\chi^2(df)$			6.1(6)						1.2(4)	
모 취업										
취업중	4.5	15.8	67.9	11.8	100.0(220)	2.8	45.5	40.9	13.6	100.0(44)
휴직중	-	11.8	70.6	17.6	100.0(17)	3.0	50.0	50.0	-	100.0(2)
미취업	4.2	24.5	67.0	4.2	100.0(424)	2.7	30.6	54.5	14.9	100.0(121)
$\chi^2(df)$			21.5(6)**						3.6(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라. 양육수당 지원 시 시설 이용 의향

다음은 영아 비용 지원으로 어린이집 미이용시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어린이집 이용을 대체하는 효과를 갖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먼저 <표 V-4-19>는 현재와 같이 0세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 10만원을 지원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인데, 단지 4.5%만이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보내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별로는 중소도시에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이 유의한 수준으로 높고, 휴직 중 어머니가 그러한 응답비율이 높은 경향이다.

〈표 V-4-19〉 양육수당 지원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계속 보냄	집에서 돌봄	다른 곳 보냄	모르겠음	계(수)	$\chi^2(df)$
전체	93.8	4.5	.20	1.6	100.0(964)	
지역						
대도시	96.4	2.4	0.3	0.9	100.0(338)	16.4(6)*
중소도시	90.3	6.8	0.2	2.7	100.0(412)	
읍·면	96.3	3.3	-	0.5	100.0(214)	
모 취업						
취업중	97.0	2.0	-	1.0	100.0(229)	11.8(6)
휴직중	87.0	13.0	-	-	100.0(23)	
미취업	92.5	5.3	0.3	1.9	100.0(63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표 V-4-20〉 양육수당의 상향 조정 시 어린이집 이용 의향

단위: %(명)

구분	계속 보냄	집에서 돌봄	다른 곳 보냄	모르겠음	계(수)
전체	70.7	23.9	1.0	4.4	100.0(904)
지역					
대도시	77.0	19.9	0.9	2.1	100.0(326)
중소도시	65.3	27.2	1.3	6.2	100.0(372)
읍·면	70.4	24.3	0.5	4.9	100.0(206)
모 취업					
취업중	82.8	13.1	0.7	3.4	100.0(290)
휴직중	80.0	15.0	-	5.0	100.0(20)
미취업	64.3	29.6	1.2	4.9	100.0(588)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9.7	33.8	-	6.5	100.0(77)
150~199만원	73.2	23.6	0.8	2.4	100.0(127)
200~249만원	68.7	25.3	-	6.1	100.0(198)
250~299만원	66.7	24.4	3.8	5.1	100.0(156)
300~349만원	69.0	27.7	0.6	2.6	100.0(155)
350~399만원	75.4	21.3	-	3.3	100.0(61)
400~449만원	83.0	10.6	2.1	4.3	100.0(47)
450만원 이상	81.9	13.5	-	4.8	100.0(8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다음 <표 V-4-20>은 앞에서 어린이집에 계속 보내겠다는 응답자에게 만약에 양육수당 금액을 보육료 지원단가와 같이 0세 월 39만원, 1세 35만원, 2세 28만원으로 올려서 지원할 경우에 어린이집을 계속 이용하겠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이를 보면, 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1.0%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다른 곳에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응답은 지역별로는 중소도시, 읍·면, 대도시 순으로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낮을수록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보겠다는 응답이 많아서, 소득 150만원 미만은 1/3 이상이 이러한 응답을 하였고, 가구소득 150~399만원은 20%대이며 400만원 이상이 10%대로 낮아졌다.

마. 육아지원정책 요구

다음은 영유아 아동을 둔 가구를 중심으로 정부에게 가장 바라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가 44.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양육비 현금 지원이 21.5%이며, 보육의 다양성 확대 11.3%, 국·공립기관의 확충이 10.1%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이외에 서비스의 질 향상, 육아휴직제도 정착 및 확대, 탄력근무 실시 등의 의견도 각각 5.9%, 3.6%, 2.6%이다(표 V-4-21 참조).

<표 V-4-21> 가장 바라는 육아지원정책

단위: %(명)

구분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서비스 질 향상	육아 정보· 상담 제공	보육 다양성 확대	육아 휴직 제도 정착	탄력 근무제 실시	기타	계(수)
전체	10.1	44.3	21.5	5.9	0.5	11.3	3.6	2.6	0.1	100.(2,003)
지역										
대도시	13.0	37.9	24.3	5.8	0.4	11.5	3.9	3.0	0.1	100.(738)
중소도시	7.8	50.1	19.1	5.8	0.5	11.2	3.1	2.5	0.1	100.(850)
읍·면	9.9	43.6	21.4	6.5	0.7	11.3	4.1	2.4	-	100.(415)
모 취업										
취업중	10.3	44.9	17.0	6.5	0.3	14.5	3.1	3.2	0.2	100.(619)
휴직중	9.7	48.4	9.7	3.2	-	12.9	6.5	9.7	-	100.(31)
미취업	10.2	43.8	23.7	5.8	0.6	9.7	3.8	2.2	0.1	100.(1,339)

(표 V-4-21 계속)

구분	국공립 기관 확충	보육· 교육비 지원 확대	양육비 현금 지원	서비스 질 향상	육아 정보· 상담 제공	보육 다양성 확대	육아 휴직 제도 정착	탄력 근무제 실시	기타	계(수)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5.3	45.3	32.7	3.3	1.3	8.0	2.0	2.0	-	100.0(150)
150~199만원	10.4	42.4	24.2	3.9	0.4	12.6	4.8	1.3	-	100.0(231)
200~249만원	9.5	42.0	25.7	4.6	0.7	11.9	3.6	1.9	-	100.0(412)
250~299만원	8.9	48.6	20.3	5.1	0.6	10.6	2.9	2.9	0.3	100.0(350)
300~349만원	10.9	45.4	20.3	6.0	-	10.6	3.4	3.4	-	100.0(350)
350~399만원	9.6	44.2	20.5	10.3	0.6	9.6	2.6	1.9	0.6	100.0(156)
400~449만원	13.5	43.9	13.5	6.1	-	15.5	3.4	4.1	-	100.0(148)
450만원 이상	13.8	40.9	11.8	10.8	0.5	12.3	5.9	3.9	-	100.0(2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국·공립기관의 확충 및 양육비 현금 지원 요구가 높고, 중소도시에서 보육·유아교육비 지원 확대 요구가 높았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취업부모들이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요구하는 비율이 높고, 미취업 모가 양육비 현금 지원을 요구하는 비율이 23.7%로 높다. 소득계층별 차이는 양육비 현금 지원은 저소득 집단과 고소득집단이 요구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낮은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냈고, 또한 고소득계층이 보육의 다양성 확대와 국·공립기관의 확충을 요구하는 경향을 보였다.

5. 소결

위에서 살펴본 영유아의 육아지원기관 이용과 요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행태는 토요일 보육에 대한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아동이 월~금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95.5%이고 매주는 1.1%, 격주는 1.9%이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이 모두 토요일에 문을 여는 것이 비효율적이므로 별도의 효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둘째, 보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대한 기본적 성찰과 이에 따른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자녀가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사회성 발달이 40.4%, 전인적 발달이 27.8%이고,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는 17.4%

이다. 영아의 경우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25.1%로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동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업 중인 모도 취업으로 인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라는 응답은 45.6% 정도이다. 그러나 우리의 보육은 여전히 취업모를 위한 12시간 보육에 맞추어져 있다. 또한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으로 가정이나 부모에게 도움이 된 부분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가장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항목은 업무 능력 향상과 양육스트레스 해소로 3.8~3.9점이고, 다음이 가족 갈등 완화·해소, 육아기술·지식 확대, 여가·취미활동가 3.0~3.3점)이며, 반면 직장에서의 안정감, 취업 및 구직 관련 도움, 학업 및 취업 훈련은 2.2~2.4점으로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보육서비스가 영유아 어머니의 취업지원을 위한 노동정책과 유리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영아와 유아는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셋째, 일정한 월 보육료 및 교육비는 평균 57,700원이고 추가납부 금액이 65,400원으로 영아 41,800원, 유아 89,100원이다. 이 비용이 소득수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이러한 비용 부담에 대하여 62.5%가 부담된다고 응답하였다. 전액 지원대상자도 부담을 느끼는 비율은 50% 이상이다. 이는 상당 부분 특별활동 비용으로 추정되므로 이러한 추가 부담 감소를 위한 조치가 요구된다.

넷째, 취약보육 실시 어린이집 수 증가 정책이 바람직한 지 검토가 필요하다. 조사에서 취약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즉 이용 가능성에 대해 질문한 결과, 높다고 하는 정도 가능하다는 비율은 시간제보육 58.2%로 가장 높고, 토요일보육이 50.1%이며 오전 및 야간 연장보육이 각각 43.3%, 37.8%이며 24시간과 휴일보육은 6.8%, 7.6%로 10% 미만이다. 모의 취업여부별로 필요성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서 취약보육 조차도 어머니의 취업과 무관한 보편성이 확보되고 있다고 하겠다.

다섯째, 가정내 보육에 대한 정책적 검토 필요성을 나타냈다. 취약보육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 아이 집에서 도우미가 보는 게 좋다는 비율이 야간보육 30.3%, 토요일보육 21.1%, 휴일보육 23.4%이다.

여섯째, 질 높은 보육시설,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질적 수준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특히 유치원의 접근성 인식은 2009년과 비교하여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일곱째, 어린이집 정보 공개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평가인증 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18.3%, 평가인

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는 2.0%로 조사되었다.

여덟째, 보육료 교육비 지원 정책 홍보 강화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각 지원정책에 대하여 잘 안다는 비율은 가장 높은 것이 보육료·교육비 지원 79.1%이고 이외는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아 기본보육료 지원 58.4%,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39.9%, 학원비 공제 57.1%이다.

아홉째,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은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홍보가 필요함을 나타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에 취업중의 64.8% 휴직중인 58.1%, 보육료·교육비 지원 기준 소득인정액 산정시 부부 합산소득의 25% 공제에 취업모 64.4%, 휴직 중 45.2%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열번째, 정책 효과 제고 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포괄적 비용 지원 정책만족도는 만족한다는 비율보다 불만 비율이 더 높아서 5점 평균으로 2.6점이다. 각 지원정책별로는 가정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비율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 94.1%, 영아 기본보육료 90.2%, 중앙정부 양육수당 88.0%, 지방정부 양육수당 84.6%, 소득공제 62.8%이다. 그러나 각 지원정책별 출산수준 제고에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보육료 및 교육비 지원과 영아 기본보육료가 50%대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양육수당은 40%대이며 소득공제는 35.4%이다.

열한번째, 양육수당 관련 정책 접근의 어려움을 나타냈다. 현재 지원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영아만 4.5%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하면 23.9%가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아이를 돌보겠다고 하였다. 특히 소득수준별로 33.8%~13.5%로 나타나, 지원 수준을 올릴 경우에 저소득층 아동의 기관 이용 기회 박탈 가능성이 우려된다.

VI. 부모와 자녀 이용기관 이용과 요구

제6장은 지역사회 자녀양육 지원 이용기관인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이용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였고, 관계자 심층면담 자료를 기초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과 요구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1. 보육정보센터 이용과 요구

가. 인지 및 이용

보육정보센터에서는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하여 인지하는 비율은 낮다. 가구조사에서 일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지율을 사업별로 보면, 장난감 도서관이 29% 수준으로 가장 높고 정보제공 서비스 26%, 상담, 진단 및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20%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17% 정도이다. 해당 서비스를 이용해 본 부모는 극소수이다(표 VI-1-1 참조).

〈표 VI-1-1〉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 인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인지		이용 경험				계(수)
	안다	모른다	자주	가끔	1~2번	없음	
정보제공	26.0	74.0	1.1	3.2	1.9	93.7	100.0(2,003)
상담, 진단	20.4	79.6	0.4	0.7	0.5	98.3	100.0(2,003)
아이와 함께 하는 프로그램	21.1	78.9	0.3	1.3	0.7	97.6	100.0(2,003)
장난감 도서관	28.8	71.2	1.0	1.9	1.1	95.9	100.0(2,003)
공동육아나눔터	16.7	83.3	0.1	0.5	0.2	99.2	100.0(2,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지역규모별 인지율 차이는 다섯 개 사업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었다. 도시에 비해 읍·면에서 인지율이 낮다. 이는 접근성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인지율이 가장 높은 장난감 도서관은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이 각각 27.9%, 32.4%, 22.9%의 인지율을 보였다. 도에서 인지율이 높은 것은 시·도 정보센터는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으나 시·군·구 보육정보센터는 서울, 인천 등 수도권 도시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당연한 결과로 풀이된다.

모의 취업상태별로는 휴직중이 가장 인지율이 낮고, 취업중과 미취업모는 별 차이가 없다. 휴직중이 가장 인지율이 낮은 것은 대부분 아직 아이가 어려서 보육정보센터 이용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다(표 VI-1-2 참조).

〈표 VI-1-2〉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사업 인지

단위: %(명)

구분	정보제공	상담, 진단	부모-자녀 프로그램	장난감 도서관	공동 육아나눔터	(수)
전체	26.0	20.4	21.1	28.8	16.7	(2,003)
지역						
대도시	28.5	22.9	24.3	27.9	20.1	(738)
중소도시	26.9	20.5	20.7	32.4	15.1	(850)
읍·면	19.5	15.7	16.4	22.9	14.2	(415)
$\chi^2(df)$	11.7(2)**	8.5(2)*	10.0(2)**	12.5(2)**	9.4(2)**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6.3	21.8	22.9	31.0	19.1	(619)
휴직중	16.1	9.7	12.9	25.8	12.9	(31)
미취업	26.2	20.2	20.7	28.1	15.9	(1,339)
$\chi^2(df)$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나. 이용자의 이용과 요구

다음은 각 보육정보센터에서 방문 이용자 1,10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로 이용자의 이용과 요구를 알아보고자 한다.

1) 이용 특성

가) 이용 빈도

보육정보센터 이용자의 이용 빈도는 전체적으로 주중 1~2회가 48.0%,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가 33.7%로 높게 응답하여 주로 보육정보센터를 주중에 1~2회 또는 필요시 간헐적으로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어쩌다 한 번이 8.2%, 주말이 4.5%, 주중 3~4회가 4.4% 순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는 자녀 연령별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표 VI-1-3 참조).

〈표 VI-1-3〉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주중 1~2회	주중 3~4회	거의 매일	주말 (토, 일)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어쩌다 한번	계(수)
전체	48.0	4.4	1.2	4.5	33.7	8.2	100.0(1,109)
만 0세	46.5	3.1	0.8	3.9	36.2	9.4	100.0(127)
만 1세	52.5	4.3	1.2	3.1	33.1	5.8	100.0(257)
만 2세	56.8	5.4	0.5	3.2	28.1	5.9	100.0(185)
만 3세	46.7	6.7	0.7	4.0	33.3	8.7	100.0(150)
만 4세	41.8	4.7	1.8	5.3	35.9	10.6	100.0(170)
만 5세	47.1	1.5	0.0	7.4	37.5	6.6	100.0(136)
만 6세 이상	44.7	6.4	2.1	8.5	25.5	12.8	100.0(47)
미상	18.9	2.7	8.1	5.4	45.9	18.9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2) 접근성

보육정보센터 이용수단으로는 주로 걸어서가 40.7%이지만, 택시·자가용 33.8%, 대중교통이 24.5%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특징은 자녀의 연령이 만 0~1세의 영아일 경우 택시나 자가용을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보육정보센터에 오는데 걸리는 시간의 경우 각 이용 수단별로 걸어서는 평균 10.6분이 걸리고, 대중교통의 경우 평균 17.0분, 택시/자가용의 경우 평균 14.6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1-4 참조).

〈표 VI-1-4〉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방문 시 이용 수단 및 오는 시간 평균

단위: %, 분(명)

구분	방문시 이용수단					평균 소요시간			
	걸어서	대중 교통	택시/ 자가용	무응답	계(수)	걸어서	대중 교통	택시/ 자가용	(수)
전체	40.7	24.5	33.8	1.0	100.0(1,109)	10.6	17.0	14.6	(1,109)
만 0세	29.1	21.3	48.8	0.8	100.0(127)	9.4	17.9	16.0	(127)
만 1세	37.7	23.7	38.1	0.4	100.0(257)	10.5	18.6	12.6	(257)
만 2세	45.9	25.4	27.6	1.1	100.0(185)	10.1	19.3	13.9	(185)
만 3세	47.3	26.0	26.0	0.7	100.0(150)	11.2	15.2	14.2	(150)
만 4세	38.8	30.0	30.6	0.6	100.0(170)	11.1	12.5	13.7	(170)
만 5세	52.2	20.6	27.2	-	100.0(136)	11.4	17.3	14.1	(136)
만 6세 이상	48.9	25.5	25.5	-	100.0(47)	10.0	17.9	13.7	(47)
무응답	2.7	18.9	64.9	13.5	100.0(37)	20.0	25.0	24.0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3) 이용 이유

보육정보센터 이용 이유는 장난감 대여가 60.5%로 가장 높다. 그 다음으로 영유아 프로그램 11.5%, 각종 행사 7.2%, 부모교육 등 양육정보 획득 5.2% 순으로 나타났다(표 VI-1-5 참조).

〈표 VI-1-5〉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이용 이유: 1순위

단위: %(명)

구분	장난감 대여	영유아 프로 그램	각종 행사	보육 정보 (부모 교육)	집에 있기 무료 해서	엄마들과 교류 및 스트레스 해소	시간제 보육	상담 조언	기타	계(수)
전체	60.5	11.5	7.2	5.2	2.8	2.4	2.0	1.7	6.6	100.0(1,109)
만 0세	81.9	4.7	0.8	4.7	3.9	1.6	0.8	0.8	0.8	100.0(127)
만 1세	72.4	9.3	2.3	3.9	4.3	1.6	1.9	0.8	3.5	100.0(257)
만 2세	58.9	17.8	5.4	4.9	3.2	2.7	1.6	1.6	3.8	100.0(185)
만 3세	57.3	15.3	7.3	2.7	2.0	2.7	2.7	1.3	8.7	100.0(150)
만 4세	57.1	7.6	11.8	4.1	1.8	2.9	2.4	1.8	10.6	100.0(170)
만 5세	42.6	10.3	15.4	5.9	1.5	4.4	0.7	5.9	13.2	100.0(136)
만 6세 이상	36.2	14.9	17.0	8.5	2.1	2.1	8.5	-	10.6	100.0(47)
무응답	37.8	21.6	8.1	27.0	-	-	-	-	5.4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가장 자주 동반하는 자녀 연령별로 살펴보면 장난감 대여를 이용 이유로 응답한 경우 그 비율이 어린 영아인 만 0~1세와 유아를 비교하면 거의 2배 이상 차이가 나서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을 더 많이 이용하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반대로 각종 행사나 다른 엄마들과 교류 및 스트레스 해소의 경우 동반 외출이 어려운 어린 영아보다는 만 3~4세 이상의 유아를 자녀를 둔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엄마들과 교류 및 스트레스 해소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6세 이상일 경우 자녀가 초등학교에 가면서 그 비율이 낮아졌다. 양육이나 상담, 조언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이용 이유로 응답한 비율도 높아져 만 5세가 5.9%로 다른 연령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자녀가 성장할수록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있어 상담이나 조언을 더 필요로 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VI-1-6>은 보육정보센터 이용 이유 2순위를 1순위와 합한 것인데, 이를 보아도 장난감 대여가 73.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영유아 프로그램 20.6%, 각종행사 18.4%, 양육정보획득 17.9%, 집에만 있기 무료해서 12.5% 순이다. 연

령별로 살펴보면 위의 1순위와 동일하게 장난감 대여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반대로 집에만 있기 무료해서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만 4~6세가 높게 응답하였다. 그리고 다른 엄마들과 교류 및 스트레스 해소는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VI-1-6〉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이용 이유: 1+2순위

단위: %(명)

구분	장난감 대여	영유아 프로그램	각종 행사	보육 정보 (부모 교육)	집에 있기 무료해서	엄마들과 교류 및 스트레스 해소	시간제 보육	상담 조언	기타	(수)
전체	73.0	20.6	18.4	17.9	12.5	6.9	5.6	3.1	14.8	(1,109)
만 0세	89.0	13.4	18.9	15.7	4.7	-	5.5	0.8	12.6	(127)
만 1세	83.7	21.0	23.3	17.5	6.6	6.2	2.7	3.5	10.1	(257)
만 2세	74.6	28.6	18.4	16.8	12.4	7.6	7.6	3.8	13.0	(185)
만 3세	75.3	20.0	16.0	20.7	10.0	9.3	5.3	4.7	12.7	(150)
만 4세	69.4	15.3	18.2	20.6	18.2	8.2	5.9	2.9	20.0	(170)
만 5세	56.6	17.6	12.5	22.1	23.5	13.2	8.8	0.7	24.3	(136)
만 6세 이상	40.4	27.7	23.4	10.6	23.4	-	-	8.5	23.4	(47)
미상	45.9	32.4	8.1	2.7	10.8	-	10.8	-	16.2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4) 프로그램별 이용

가) 프로그램별 이용 빈도 등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빈도는 프로그램별로 다르지만 대체로 간헐적으로 55.1%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주중 1~2회 이용이 31.8%로 꾸준히 이용하는 이용자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시간제 보육, 장난감 도서관,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자녀 검사와 상담, 맘카페 등은 간헐적 이용이 빈도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주중 1~2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행사, 부모교육의 경우 간헐적 이용이 주를 이룬다(표 VI-1-7 참조).

보육정보센터 이용시간대는 주로 오후 3~6시, 오전 10~12시, 오후 1~3시 순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그램별로는 시간제 보육, 장난감 도서관, 부모교육의 경우 주로 오전 10~12시가 가장 많고, 문헌 및 자료도서관, 체험활동실, 자녀검사·상담, 맘카페의 경우 오후 3~6시대에 이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은 오전 10~12시와 오후 3~6시대가 이용률이 비슷하고, 다양한 가족행사는 대부분 오후에 진행됨을 알 수 다(표 VI-1-8 참조).

〈표 VI-1-7〉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빈도

단위: %(명)

구분	주중 1~2회	주중 3~4회	거의 매일	주말 (토, 일)	간헐적 으로	이용하지 않음	계(수)
전체	31.8	3.6	0.8	8.2	55.1	0.4	100.0(2,669)
장난감 도서관	46.9	4.4	0.5	6.5	41.6	0.1	100.0(882)
문헌 및 자료 도서관	39.1	3.6	0.0	10.9	46.2	0.2	100.0(504)
체험 활동실	27.7	3.2	0.4	14.4	53.3	1.1	100.0(285)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25.8	2.8	0.7	5.7	65.0	-	100.0(283)
자녀 검사, 상담	29.1	3.8	1.3	0.0	62.0	3.8	100.0(79)
다양한 가족행사	5.2	2.9	-	16.2	75.2	0.5	100.0(210)
부모교육	5.5	1.0	-	3.0	89.9	0.5	100.0(199)
맘카페	18.4	5.7	2.5	5.7	67.1	0.6	100.0(158)
시간제보육	18.8	2.9	14.5	1.4	62.3	-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표 VI-1-8〉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간대

단위: %(명)

구분	오전 10~12시	점심 시간 대	오후1시 ~3시	오후3시 ~6시	오후6시 이후	기타	무응답	계(수)
전체	30.3	4.3	27.7	31.4	4.1	0.1	2.0	100.0(2,669)
장난감 도서관	34.2	4.5	29.8	27.9	2.3	0.1	1.1	100.0(882)
문헌 및 자료 도서관	26.4	4.2	31.2	33.7	2.6	-	2.0	100.0(504)
체험 활동실	24.6	5.6	29.8	35.4	2.5	-	2.1	100.0(285)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37.8	2.8	23.3	33.6	1.4	-	1.1	100.0(283)
자녀 검사, 상담	25.3	2.5	26.6	39.2	1.3	-	5.1	100.0(79)
다양한 가족행사	21.4	4.3	30.5	37.6	3.3	0.5	2.4	100.0(210)
부모교육	41.7	2.0	21.1	28.1	3.5	-	3.5	100.0(199)
맘카페	15.2	8.2	14.6	30.4	27.8	-	3.8	100.0(158)
시간제보육	37.7	4.3	26.1	18.8	8.7	-	4.3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보육정보센터 1회 이용 시간은 1시간 이내가 67.1%로 가장 많다. 그러나 시간제 보육은 1시간 이내 39.1%, 2~3시간 미만 39.1%로 같은 비율로 나타났고, 가족행사는 2~3시간 미만과 1시간 이내가 비슷한 수준이었다(표 VI-1-9 참조).

〈표 VI-1-9〉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1회 이용 시간

단위: %(명)

구분	1시간 이내	2~3시간 미만	3~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비해당	무응답	계(수)
전체	67.1	27.6	1.2	0.8	1.3	2.0	100.0(2,669)
장난감 도서관	77.6	17.5	0.9	0.8	1.4	1.9	100.0(882)
문헌 및 자료 도서관	67.5	28.4	0.8	0.6	1.2	1.6	100.0(504)
체험 활동실	51.9	46.0	0.4	-	0.7	1.1	100.0(285)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72.1	24.4	1.1	-	0.7	1.8	100.0(283)
자녀 검사, 상담	81.0	12.7	1.3	-	1.3	3.8	100.0(79)
다양한 가족행사	44.8	47.1	5.2	0.5	0.5	1.9	100.0(210)
부모교육	59.3	36.2	-	1.0	1.0	2.5	100.0(199)
맘카페	70.9	19.6	1.3	-	3.8	4.4	100.0(158)
시간제보육	39.1	39.1	4.3	11.6	2.9	2.9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나) 프로그램 선호도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 부모들이 자녀양육에 가장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다음 <표 VI-1-10>와 같이 장난감 대여를 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 54.7%로 가장 유용하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는 문헌 및 자료 도서관 12.1%, 부모들이 자녀들과 놀이를 할 수 있는 체험활동실 10.5% 순이다.

자녀연령별로 보면 이용 이유와 같이 연령이 어릴수록 장난감 도서관을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자녀의 연령이 어릴수록 부모들이 장난감 도서관을 유용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문헌 및 자료 도서관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만 2~6세 이상의 경우 만 0~1세 영아 시기보다 유용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아 자녀의 연령이 만 2세 이후부터는 부모들이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문헌 및 자료들을 유용하게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가족지원 행사는 동반 외출이 어려운 영아보다는 연령이 유아로 올라갈수록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특징을 보였다.

<표 VI-1-11>는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선호도 1, 2순위를 합한 것인데, 비율은 변동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순위는 차이가 없다.

〈표 VI-1-10〉 연령별 자녀양육에 유용한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1순위

단위: %(명)

구분	장난감 도서관	문헌· 자료 도서관	체험 활동실	육아 지원 프로 그램	시간제 보육	자녀상담 치료	가족지원 행사	기타	계(수)
전체	54.7	12.1	10.5	9.3	7.1	3.0	2.7	0.6	100.0(1,109)
만 0세	76.4	3.9	1.6	7.1	7.1	3.1	-	0.8	100.0(127)
만 1세	70.4	3.9	8.2	8.9	7.0	0.8	-	0.8	100.0(257)
만 2세	51.9	11.9	14.1	11.4	6.5	2.2	1.6	0.5	100.0(185)
만 3세	46.7	16.7	9.3	11.3	10.0	4.0	2.0	-	100.0(150)
만 4세	48.8	15.9	12.4	7.1	6.5	3.5	5.3	0.6	100.0(170)
만 5세	40.4	14.7	15.4	8.8	7.4	5.9	7.4	-	100.0(136)
만 6세 이상	29.8	34.0	12.8	4.3	8.5	4.3	6.4	-	100.0(47)
무응답	29.7	24.3	13.5	18.9	-	2.7	5.4	5.4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표 VI-1-11〉 연령별 자녀양육에 유용한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1+2순위

단위: %(명)

구분	장난감 도서관	문헌· 자료 도서관	체험 활동실	육아 지원 프로 그램	시간제 보육	자녀상담 치료	가족지원 행사	기타	(수)
전체	69.7	34.9	27.7	25.7	11.5	8.7	8.2	1.2	(1,109)
만 0세	87.4	27.6	28.3	12.6	13.4	3.9	10.2	0.8	(127)
만 1세	81.7	27.2	29.6	24.5	11.7	4.7	4.7	1.6	(257)
만 2세	76.8	32.4	27.6	29.2	12.4	8.6	5.4	0.5	(185)
만 3세	65.3	38.0	28.0	26.7	13.3	7.3	8.0	1.3	(150)
만 4세	62.9	38.8	24.7	30.6	9.4	10.0	10.6	0.6	(170)
만 5세	51.5	44.1	24.3	33.1	12.5	16.9	8.8	0.7	(136)
만 6세 이상	42.6	57.4	27.7	19.1	8.5	19.1	8.5	2.1	(47)
무응답	40.5	32.4	37.8	16.2	-	8.1	27.0	5.4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다) 불편 사항

부모들이 보육정보센터 이용시 가장 불편한 사항은 이용 가능 요일 및 시간 제한 18.1%, 장비 및 재료 불충분 17.9%, 공간, 환경 미비 16.4%, 소규모로 이용 기회 부족 12.7%, 접근성 부족 11.1%로 응답하였다.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시간제 보육, 육아지원 프로그램, 가족행사, 부모교육에 대해선 이용 가능 요일 및 시간 제한이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고, 장난감

도서관, 문헌 및 자료 도서관에 대해선 장비와 재료 불충분을 가장 불편하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체험활동실, 자녀 검사와 상담에 대해선 공간 및 환경 미비를 가장 불편한 사항으로 응답하였다(표 VI-1-12 참조).

〈표 VI-1-12〉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

단위: %(명)

구분	접근성 부족	소규모로 이용 기회 부족	인력 규모/ 전문성 부족	공간, 환경 미비	장비, 재료 불충분	이용 비용 부담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제한	무응답	계(수)
전체	11.1	12.7	8.5	16.4	17.9	1.9	18.1	13.4	100.0(2,669)
장난감 도서관	13.9	10.3	6.2	16.3	25.9	0.9	18.0	8.4	100.0(882)
문헌 및 자료 도서관	11.7	10.1	7.7	15.9	29.6	0.8	14.1	10.1	100.0(504)
체험 활동실	9.1	17.9	10.2	26.0	10.9	1.8	13.0	11.2	100.0(285)
각종 유아지원 프로그램	9.5	17.7	13.1	16.6	8.1	4.2	20.8	9.9	100.0(283)
자녀 검사, 상담	10.1	10.1	10.1	21.5	11.4	6.3	11.4	19.0	100.0(79)
다양한 가족행사	7.1	20.0	9.0	14.3	6.7	2.4	31.9	8.6	100.0(210)
부모교육	10.6	15.1	10.1	10.6	4.5	3.0	28.6	17.6	100.0(199)
맘카페	6.3	7.0	7.0	10.1	6.3	0.6	5.1	57.6	100.0(158)
시간제보육	10.1	8.7	11.6	11.6	8.7	5.8	24.6	18.8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라) 미이용 이유

보육정보센터 미이용 이유로는 시간 안 맞음이 31.2%이며,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프로그램 없음이 27.3%이고 낮은 프로그램 수준 6.7%이며, 장비 및 재료 불충분 7.3%, 비용 부담이 4.5%, 인력에 대한 불만 2.5% 순이다(표 VI-1-13 참조).

프로그램별로도 장난감 도서관과 문헌 및 자료 도서관에 대해선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응답과 프로그램이 없다는 이유와 함께 장비·재료 불충분을 미이용 이유로 응답한 비율이 약 1/4이다.

이는 위의 보육정보센터 이용시 가장 불편한 사항에서 응답한 것과 동일한 내용으로 불편이 미이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표 VI-1-13〉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 미이용 이유(중복 응답)

단위: %(명)

구분	프로그램 없음	낮은 프로그램 수준	비용 부담	시간 안 맞음	장비· 재료 불충분	인력에 대한 불만	기타	계(수)
전체	27.3	6.7	4.5	31.2	7.3	2.5	20.4	100.0(7,312)
장난감 도서관	17.6	6.2	1.8	12.8	24.2	2.6	34.8	100.0(227)
문헌 및 자료 도서관	15.7	6.8	5.5	25.0	26.6	1.7	18.8	100.0(605)
체험 활동실	28.5	7.2	5.2	29.2	8.3	1.6	20.0	100.0(824)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24.2	8.8	5.1	33.2	6.1	3.3	19.4	100.0(826)
자녀 검사, 상담	25.9	8.3	6.2	29.0	6.0	4.1	20.5	100.0(1,030)
다양한 가족행사	22.9	6.8	4.7	37.7	6.3	2.3	19.2	100.0(899)
부모교육	19.1	4.8	3.0	50.8	2.1	1.6	18.6	100.0(910)
맘카페	36.0	8.4	1.4	31.3	2.8	1.3	18.8	100.0(951)
시간제보육	42.0	3.5	5.7	18.4	3.1	3.8	23.6	100.0(1,040)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마) 프로그램 유용성

보육정보센터의 육아 도움정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다음 <표 VI-1-14>와 같이 매우 도움 46.2%, 조금 도움 45.6%로 총 91.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여 대부분의 보육정보센터 이용자들이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육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1-14〉 보육정보센터 프로그램의 육아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로 도움 안됨	보통	조금 도움됨	매우 도움	무응답	비해당	계(수)
전체	0.1	0.4	5.5	45.6	46.2	1.9	0.2	100.0(2,669)
장난감 도서관	-	0.5	5.4	44.2	48.5	1.4	-	100.0(882)
문헌 및 자료 도서관	-	0.6	6.9	45.8	45.0	1.6	-	100.0(504)
체험 활동실	-	0.4	4.6	49.5	43.9	1.4	0.4	100.0(285)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	-	4.2	41.3	53.0	1.1	0.4	100.0(283)
자녀 검사, 상담	-	-	8.9	41.8	45.6	3.8	-	100.0(79)
다양한 가족행사	-	0.5	5.7	53.8	37.6	2.4	-	100.0(210)
부모교육	-	-	2.5	54.8	38.7	3.0	1.0	100.0(199)
맘카페	0.6	1.3	8.9	39.9	43.7	4.4	1.3	100.0(158)
시간제보육	1.4	-	1.4	29.0	62.3	5.8	-	100.0(6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2009년 전국보육실태로 소수이지만 가구조사에서도 지역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해 본 적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서비스가 자녀양육에 도움을 주는 정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상담, 진단 서비스가 3.1점으로 가장 높고,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장난감 도서관이 각각 3.0점, 정보제공 2.9점, 공동육아나눔터 2.8점의 순이었다(표 VI-1-15 참조).

〈표 VI-1-15〉 지역 보육정보센터 육아지원의 자녀양육 도움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계(수)	4점 척도
정보제공	2.4	21.3	59.8	16.5	100.0(127)	2.8
상담, 진단	-	20.6	44.1	35.3	100.0(34)	3.1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4.2	16.7	45.8	33.3	100.0(48)	3.0
장난감 도서관	-	19.5	58.5	22.0	100.0(82)	3.0
공동육아 나눔터	-	25.0	62.5	12.5	100.0(16)	2.8

자료: 2009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

5) 온라인 서비스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 빈도를 조사한 결과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가 33.1%로 가장 많이 응답하고 방문하지 않음 26.6%, 주중 1~2회 19.5%, 어쩌다 한번 11.9%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VI-1-16 참조).

〈표 VI-1-16〉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 빈도

단위: %(명)

구분	거의 매일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주중 3~4회	주중 1~2회	주말 (토, 일)	어쩌다 한번	방문하지 않음	무응답	계(수)
전체	3.2	33.1	3.5	19.5	1.9	11.9	26.6	0.4	100.0(1,109)
만 0세	3.9	23.6	1.6	16.5	2.4	20.5	30.7	0.8	100.0(127)
만 1세	2.7	33.9	2.3	23.3	0.8	12.8	23.7	0.4	100.0(257)
만 2세	3.8	34.1	6.5	20.0	2.2	8.1	24.9	0.5	100.0(185)
만 3세	2.0	32.0	6.0	16.7	4.0	8.7	30.7	-	100.0(150)
만 4세	1.8	34.7	2.9	18.2	2.9	14.1	25.3	-	100.0(170)
만 5세	3.7	37.5	0.7	19.1	0.7	8.1	30.1	-	100.0(136)
만 6세 이상	4.3	29.8	2.1	14.9	-	21.3	27.7	-	100.0(47)
무응답	8.1	40.5	8.1	24.3	-	-	16.2	2.7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표 VI-1-17〉 자녀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 목적

단위: %(명)

구분	정보 검색	맘 카페	상담	예약	장난감 대여	기타	무응답	계(수)
전체	82.7	12.4	1.1	0.9	0.5	1.7	0.7	100.0(814)
만 0세	80.7	12.5	-	-	3.4	2.3	1.1	100.0(88)
만 1세	79.6	16.8	1.5	0.5	-	1.0	0.5	100.0(196)
만 2세	82.0	10.8	0.7	2.9	0.7	2.2	0.7	100.0(139)
만 3세	86.5	10.6	1.9	1.0	-	-	-	100.0(104)
만 4세	82.7	12.6	2.4	-	-	2.4	-	100.0(127)
만 5세	87.4	10.5	-	-	-	1.1	1.1	100.0(95)
만 6세 이상	88.2	8.8	-	2.9	-	-	-	100.0(34)
무응답	77.4	6.5	-	-	-	9.7	6.5	100.0(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방문 목적으로는 정보 검색이 82.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외 맘 카페가 12.4%이다. 보육정보센터 이용이 많은 자녀 연령별로는 연령이 많아질수록 정보검색 비율이 증가하고 맘 카페는 감소하는 경향이지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표 VI-1-17 참조).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얻는 자녀 양육 정보의 충분 정도는 69.2%와 4.5%가 각각 충분한 편, 매우 충분이라고 응답하여 73.7%가 충분하다고 응답해 3/4 부모들이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얻는 자녀 양육 정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4.6%는 불충분한 편이라고 응답하여 충분하지 않다고 느끼는 부모들도 상당수 있다(표 VI-1-18 참조).

〈표 VI-1-18〉 자녀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 정보 충분 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충분	충분한 편	불충분한 편	매우 불충분	무응답	계(수)
전체	4.5	69.2	24.6	1.1	0.6	100.0(814)
만 0세	5.7	64.8	27.3	1.1	1.1	100.0(88)
만 1세	9.2	63.3	26.0	1.0	0.5	100.0(196)
만 2세	1.4	74.1	23.7	-	0.7	100.0(139)
만 3세	3.8	70.2	25.0	1.0	-	100.0(104)
만 4세	4.7	70.9	22.8	1.6	-	100.0(127)
만 5세	2.1	70.5	25.3	1.1	1.1	100.0(95)
만 6세 이상	-	76.5	20.6	2.9	-	100.0(34)
무응답	-	74.2	19.4	3.2	3.2	100.0(3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6) 만족도 및 개선점

보육정보센터 이용 부모들은 60.1%가 비교적 매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하여 부모들이 비교적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준이 아쉽다는 의견도 28.1%가 응답하여 앞으로 보다 충분한 육아 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의 내용이나 수준에 대한 검토 및 보완이 이루어져야 함을 나타냈다(표 VI-1-19 참조).

〈표 VI-1-19〉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제공 프로그램의 충분성 인식정도

단위: %(명)

구분	매우 충분	비교적 충분	내용과 수준 미흡	전혀 유용하지 않음	무응답	계(수)
전체	6.0	60.1	28.1	5.1	0.6	100.0(1,109)
만 0세	7.9	55.1	28.3	7.1	1.6	100.0(127)
만 1세	6.6	59.1	29.6	4.3	0.4	100.0(257)
만 2세	5.4	62.2	25.9	4.9	1.6	100.0(185)
만 3세	6.0	56.7	30.7	6.7	-	100.0(150)
만 4세	2.9	62.4	29.4	5.3	-	100.0(170)
만 5세	5.1	64.0	27.9	2.2	0.7	100.0(136)
만 6세 이상	-	68.1	25.5	6.4	-	100.0(47)
무응답	21.6	54.1	16.2	8.1	-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표 VI-1-20〉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개선점: 1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정보 센터 공간확대	설비 및 교재교구 개선	종사자 수 확충	보육정보 센터설립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주차 공간	프로그램 부족	기타	계(수)
전체	31.5	31.2	11.9	11.3	10.6	1.5	0.5	1.4	100.0(1,109)
만 0세	24.4	34.6	18.9	15.0	3.1	-	-	3.9	100.0(127)
만 1세	26.5	29.6	10.9	14.0	14.8	1.2	0.8	2.3	100.0(257)
만 2세	35.1	27.0	10.8	11.9	10.3	-	1.6	3.2	100.0(185)
만 3세	33.3	34.0	16.0	9.3	5.3	-	0.7	1.3	100.0(150)
만 4세	33.5	36.5	7.1	7.6	13.5	0.6	-	1.2	100.0(170)
만 5세	39.7	27.2	11.8	6.6	14.0	0.7	-	-	100.0(136)
만 6세 이상	31.9	38.3	4.3	12.8	10.6	-	-	2.1	100.0(47)
무응답	24.3	21.6	16.2	16.2	5.4	2.7	-	13.5	100.0(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표 VI-1-21〉 연령별 보육정보센터 개선점: 1+2순위

단위: %(명)

구분	보육정보 센터 공간 확대	설비 및 교재교구 개선	종사자 수 확충	보육정보 센터 설립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주차 공간	프로 그램 부족	기타	(수)
전체	61.2	56.3	21.1	24.6	19.4	0.2	0.7	4.4	(1,109)
만 0세	56.7	56.7	25.2	28.3	8.7	0.8	0.8	6.3	(127)
만 1세	63.0	51.0	19.5	24.9	24.1	1.6	1.2	3.5	(257)
만 2세	65.4	54.1	22.2	22.7	18.9	-	3.8	3.8	(185)
만 3세	63.3	58.7	26.7	27.3	15.3	-	0.7	2.0	(150)
만 4세	58.2	68.2	17.1	19.4	25.3	0.6	-	1.8	(170)
만 5세	64.7	55.1	21.3	25.0	21.3	0.7	1.5	0.7	(136)
만 6세 이상	57.4	63.8	12.8	27.7	19.1	-	-	2.1	(47)
무응답	40.5	32.4	18.9	27.0	8.1	2.7	-	13.5	(3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정보」 자료임.

이용자가 생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개선점 1순위는 보육정보센터 공간 확대와 설비 및 교재교구 개선이 각각 31% 정도로 가장 높다(표 VI-1-20 참조). 1, 2순위를 합해도 동일하게 두 가지 이유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외, 접근성 제고인 보육정보센터 설립 확충이 24.6%이고 종사자 수 확충이 21.1%이다(표 VI-1-21 참조).

2.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과 요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가족정책의 주요 전달체계로 중앙과 시·도, 시·군·구별로 설치되어 다양한 가족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시간제,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중심으로 영유아 부모의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고, 특히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검토하였다.

가. 인지 및 이용 경험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시간제,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을 중심으로 영유아 부모의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여부 및 이용 경험에 대해 조사하였다(표 VI-2-1 참조).

〈표 VI-2-1〉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인지		이용 경험				계(수)
	안다	모른다	자주	가끔	1~2번	없음	
시간제 아이돌보미	50.8	49.2	0.3	0.7	0.6	98.3	100.0(2,003)
영아 종일 돌봄	37.0	63.0	-	0.2	-	99.7	100.0(2,003)
공동 육아나눔터	24.7	75.3	-	0.1	-	99.9	100.0(2,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일반 부모 대상 조사에서 우선 시간제 아이돌보미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50.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이용해 본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1.7%만이 이용해 본 것으로 나타나, 실질적인 수혜자는 많지 않다. 이는 홍보는 되었으나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낸다(표 VI-2-2 참조).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에 대해서는 37%만이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실제 이용한 적이 있다는 응답도 0.2%에 불과하다.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에 대한 부모의 인지도는 대도시에서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에서보다 높다(표 VI-2-3 참조).

〈표 VI-2-2〉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시간제 아이돌보미

단위: %(명)

구분	인지		이용 경험				계(수)
	안다	모른다	자주	가끔	1~2번	없음	
전체	50.8	49.2	0.3	0.7	0.6	98.3	100.0(2,003)
지역							
대도시	51.9	48.1	0.5	0.5	0.7	98.2	100.0(738)
중소도시	49.8	50.2	0.2	0.9	0.6	98.2	100.0(850)
읍·면	51.1	48.9	0.2	0.5	0.7	98.6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50.2	49.8	0.3	1.0	0.5	98.2	100.0(619)
휴직중	54.8	45.2	-	-	-	100.0	100.0(31)
미취업	51.4	48.6	0.3	0.6	0.7	98.4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2-3〉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영아 종일 돌봄

단위: %(명)

구분	인지		이용 경험				계(수)
	안다	모른다	자주	가끔	1~2번	없음	
전체	37.0	63.0	-	0.2	-	99.7	100.0(2,003)
지역							
대도시	42.8	57.2	-	0.1	-	99.9	100.0(738)
중소도시	34.1	65.9	0.1	0.4	0.1	99.4	100.0(850)
읍·면	32.8	67.2	-	-	-	100.0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38.3	61.7	-	0.3	-	99.7	100.0(619)
휴직중	41.9	58.1	-	-	-	100.0	100.0(31)
미취업	36.7	63.3	0.1	0.1	0.1	99.7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2-4〉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인지 여부 및 이용 경험: 공동육아나눔터

단위: %(명)

구분	인지		이용 경험				계(수)
	안다	모른다	자주	가끔	1~2번	없음	
전체	24.7	75.3	-	0.1	-	99.9	100.0(2,003)
지역							
대도시	32.5	67.5	-	-	0.1	99.9	100.0(738)
중소도시	20.0	80.0	-	0.2	-	99.8	100.0(850)
읍·면	20.2	79.8	-	-	-	100.0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6.0	74.0	-	0.2	0.2	99.7	100.0(619)
휴직중	32.3	67.7	-	-	-	100.0	100.0(31)
미취업	24.1	75.9	-	0.1	-	99.9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공동육아나눔터는 전체의 24.7%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대도시는 약 3명 중 1명 꼴이 32.5%가 알고 있으며, 중소도시나 읍·면 지역은 20% 전후이다. 실제 이용경험자는 0.1%로 매우 적다(표 VI-2-4 참조).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자녀양육에 도움이 되는지를 조사한 결과, 시간제, 영아 종일제 아이돌보미 사업이 각각 4점 척도에서 3.3 점, 공동육아나눔터 3.0점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하였다. 그러나 이용 경험이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응답하여 극소수가 응답하였으므로, 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표 VI-2-5〉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시 자녀양육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도움 안됨	별 도움 안됨	어느 정도 도움	많은 도움	(수)
시간제 아이돌보미	-	5.9	50.0	44.1	100.0(34)
영아 종일 돌봄	-	-	66.7	33.3	100.0(6)
공동 육아나눔터	-	-	100.0	-	100.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나. 육아공동나눔터

육아공동나눔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 담당자와 이용자 심층면접을 실시하여 실시 현황과 애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을 위한 요구를 수렴하였다.

1) 참여 실태

육아품앗이 이용 실태는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⁷⁾. 우선 참여 동기는 부모간 자녀 양육의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부모-자녀간 공유 시간을 늘리며, 가족간에 육아 관련 품을 나누는 공동체의 실현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사업 참여의 실질적인 계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이용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육아 품앗이 이용 부모들에 의하면,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양육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고 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육아품앗이 사업에 대해서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육아품앗이 활동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영유아 보육 품앗이, 역사동아리 등 문화 관련 활동, 도서관 방문, 부모 교육, 각종 란트, 물품 교환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특히 육아 품앗이 이용은 자녀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한 부모-자녀간에 공동체 의식을 나눌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 육아지원기관과 차별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이에 따라 육아품앗이 활동의 주된 효과로는 육아품앗이를 통한 사회 참여의 증대로 부모의 자아성취감을 높이고, 나아가 해당 참여 활동이 취업 활동으로 이어지기도 하며, 자녀와의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는 점 등이다.

37) 이하 내용은 서울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육아품앗이 이용 부모 6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임.

한편 2009년 가족품앗이 사업 만족도 조사에 의하면³⁸⁾, 육아품앗이 이용자는 주로 전업주부 72.2%와 취학전 아동 71.7%이며, 활동시간대는 평일 오후와 평일 오전이 가장 많아 평일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운영상 애로사항³⁹⁾

관계자 심층면접을 통하여 파악한 육아품앗이 사업 운영상 애로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육아품앗이 사업의 정체성이 모호한 측면이 있다. 품앗이 사업은 그 성격상 지역사회내의 자발적 참여를 주된 특징으로 하므로 정부 차원의 사업으로 시행될 경우 지원 대상 범위 및 내용 등에서 혼란이 야기 될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백한 인식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명료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내 육아를 모색하는 부모들에 대한 명확한 수요를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간 제공의 문제도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를 장소를 제공해줄 수 있는 센터가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

둘째, 육아품앗이의 특성상 모임 구성원간의 신뢰를 전제하므로 빠른 시간 내에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즉 육아관련 품을 나누기 위해서는 품을 공유할 이들 간의 이해와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이를 위한 일정 시간의 탐색기간이 요구되며, 이후 사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셋째, 사업 지원 범위가 한정적이라는 점이다. 육아품앗이 이용은 주로 전업주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특히 주말 참여를 희망하는 취업 주부나 아버지들의 참여가 어려울 수 있다. 사업 담당자는 실제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평일 미취학 아동들 위주로 하는 활동들 조금 많다고 평가하였다.

넷째, 체계적인 사업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즉 육아 품앗이 관련 수요가 지나치게 다양하므로 표준화된 매뉴얼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사업별 매뉴얼을 마련하는 일도 용이하지 않다. 기본 매뉴얼은 있으나, 주민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각각 적용하는데 있어서도 다를 수 밖에 없고, 가족 품앗이하고 육아 품앗이는 실은 커다랗게 보면 모두 품으로 특성상은

38) 이는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2009년 10월 20일~10월 30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로서 조사대상은 가족품앗이 사업 담당자와 가족품앗이 활동 회원임.

39) 이하 내용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담당자 3인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결과임.

동일하지만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매뉴얼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된 상태로 사업을 하다 보니 시작도 어렵지만 시작을 해도 도중에 와해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한다.

다섯째, 정책 결정자의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사업 안정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사업을 같이 했던 파트너가 이직을 하거나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을 때 사업이 흔들리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 한다.

여섯째, 인력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우리나라 부모들의 특성 상 육아품앗이 사업이 안정화되기까지 사업 지원을 담당하는 봉사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들에게 최소한의 비용 지원이 이루어져야 안정적인 품앗이 사업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곱째,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가 제기된다. 최소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씨앗 정도의 예산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여덟째, 품앗이 모임 지원을 위한 공간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품앗이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호소하는 애로가 함께 모일 수 있는 공간 미확보이다. 가능할 경우에 사무실에 조그마한 공간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지하철에 주민 센터 같은 데를 얻은 경우도 있었는데, 공간 확보는 어려운 상황이다

3. 소결

첫째, 이용시설은 접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보육정보센터는 서울 및 일부 경기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시·도에 설치되어 있고 시·군·구에는 공급 자체가 매우 부족한 편이다. 모든 시·군·구에 균형된 확충이 필요하다. 실제 보육정보센터에 방문하여 서비스를 이용 중인 부모가 요구하는 개선사항에서도 접근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24.6%로 이로 인한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영유아 동반시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으므로 보육정보센터 확충 외에도 이미 설치되어 있는 센터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책이 필요하다.

건강가정지원센터도 접근성을 확대하여 이용 기회를 늘려야 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용경험률은 취업 여부, 지역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1% 전후로 매우 낮다. 특히,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의 경우 인지율은

50.8%이나 실제 이용률은 1.6%에 불과한데, 심층면접 결과 이용 비용이 부담된다는 의견이었다. 물리적 확충을 통한 접근성 제고 뿐 아니라,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둘째,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에서 하는 5가지 사업의 인지율은 육아정보나눔터가 16.7%로 가장 낮고, 장난감 도서관이 28.8%로 가장 높게 나타난다.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는 시간제 아이돌보미 사업은 50.8%로 상당히 높은 편이나, 영아 종일 돌봄과 공동 육아나눔터는 37.0%, 24.7%로 낮다. 또한 심층면접 결과 대체로 보육정보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존재조차 모르고 있는 부모가 대부분이다. 특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서비스를 실제 이용 중인 부모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나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실제 이용으로 이어진다면 영유아 부모의 양육을 돕는 실질적인 지원책이 될 것이다.

셋째, 설비 개선이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부모의 개선요구사항이 보육정보센터 공간 확대 31.5%, 설비 및 교재교구 개선 31.2%로 가장 높고, 불편사항 역시 장비나 재료 불충분 17.9%, 공간, 환경 미비가 16.4%로 가장 많이 응답하여 이용 중인 부모들이 좁은 공간과 불충분한 장비 등 물리적 환경의 낙후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이용률과도 직결되는 문제이고 부모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설비 개선 및 장비 확충 등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수요자 중심의 운영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대부분의 센터가 휴일에 운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취업 중인 어머니의 참여가 어렵고 가족 단위의 활동도 매우 어렵다. 실제로 조사에서도 이용 시 불편한 사항으로 이용가능 요일 및 시간 제한이 18.1%로 가장 높으며 미 이용 사유에서도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31.2%로 이용 시간에 불편함으로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도서관처럼 휴일에 운영하고 평일에 휴관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다.

다섯째, 장난감도서관의 확대 필요성을 나타냈다. 장난감도서관의 경우 보육정보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인지도와 이용률이 가장 높은 성공적인 사업이나 부족한 장비 및 재료 등으로 인해 이용 시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 조사결과에서도 불편한 점으로 이용 시 장비, 재료가 불충분하다는 의견이 25.9%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미이용 사유에서도 장비나 재료가 불충분하다는 24.2%로 응답되는 등 이용자의 수요를 공급이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섯째, 육아품앗이 사업은 자생적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

로 해당 품앗이 사업이 구성원들에 의한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한 수준에 이르도록 정부의 일정 지원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특히 지원 인력, 공간 제공, 비용 지원이 수반되어야 한다.

VII. 취업부모 육아 지원과 요구

제7장에서는 취업부모의 자녀 양육 시 애로점과 지원에 관하여 서술하였다. 앞 장에서도 관련 자료를 모의 취업여부별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장에서는 어머니를 중심으로 취업 특성, 일·가정 양립 애로, 취업모 지원 보육정책 인지 및 의견, 사업장에서의 취업부모 지원과 요구 등을 중심으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취업모의 근로 특성

본 조사에서 영유아를 둔 어머니는 32.7%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취업률은 2009년도 보육실태조사에서 파악된 33.7%와 유사한 수준이다. 이들 어머니의 근로 특성을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가. 직위 및 사업체 특성

취업 중인 영유아 모는 43.4%가 상용근로자이고 23.8%가 일용근로자이며 16% 정도가 자영업자나 고용주이고 6.7%가 무급가족종사자이다. 지역별로는 대도시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높고, 중소도시에서 임시근로자 비율이 높으며, 읍·면에서 무급종사자 비율이 높다(표 VII-1-1 참조).

〈표 VII-1-1〉 지역별 취업모 종사상 위치

단위: %(명)

구분	자영업자	고용주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무급가족 노동자	계(수)	$\chi^2(df)$
전체	14.0	2.1	43.4	23.8	10.0	6.7	100.0(652)	
대도시	19.4	2.4	41.9	20.2	9.7	6.5	100.0(248)	
중소도시	10.5	2.2	42.9	28.0	8.7	7.6	100.0(275)	15.3(10)
읍·면	10.9	1.6	47.3	21.7	13.2	5.4	100.0(1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취업 중인 영유아 모가 근무하는 사업체의 규모는 57%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고 10~30인이 9.8% 등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체이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15.5%에 불과하다. 지역규모 차이는 지역규모가 작을수록 사업체 규모도 작았다(표 VII-1-2 참조).

〈표 VII-1-2〉 지역별 취업모 직장 사업체 규모

단위: %(명)

구분	10인 미만	10~30인	30~50인	50~100인	100~300인	300~500인	500~1000인	1000인 이상	계(수)	$\chi^2(df)$
전체	57.1	9.8	4.0	8.3	5.2	2.6	3.1	9.8	100.0(651)	
대도시	55.9	6.1	4.5	9.7	5.7	2.4	4.0	11.7	100.0(247)	
중소도시	55.6	13.1	3.3	8.0	4.7	2.9	3.3	9.1	100.0(275)	14.2(14)
읍·면	62.8	10.1	4.7	6.2	5.4	2.3	0.8	7.8	100.0(1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나. 근로 특성

취업한 영유아 모 중에서 23.3%는 규칙적으로 출퇴근하고 5.0%는 불규칙하게 출퇴근하며 2.8%가 재택근무 중이고, 1.6%가 휴직 중이었다. 지역별 차이는 크지 않다(표 VII-1-3 참조).

〈표 VII-1-3〉 지역별 취업모 근로 특성

단위: %(명)

구분	규칙적으로 출퇴근	불규칙하게 출퇴근	재택근무	농어민	휴직중	무직	계(수)	$\chi^2(df)$
전체	23.3	5.0	2.8	0.1	1.6	67.3	100.0(1,989)	
대도시	24.0	5.7	2.6	-	1.2	66.5	100.0(734)	
중소도시	22.6	4.6	3.2	0.1	2.0	67.4	100.0(844)	5.9(10)
읍·면	23.4	4.4	2.4	-	1.2	68.6	100.0(411)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취업한 영유아 모는 90% 정도는 정시 퇴근한다고 하였으나 그 이외는 약 반 정도는 주당 1주일에 1~2회 야근을 하고 2.6%는 거의 매일 야근을 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적으로 다소 차이가 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표 VII-1-4 참조).

〈표 VII-1-4〉 지역별 취업모 야근 유형

단위: %(명)

구분	정시퇴근	주당 1~2회 야근	주당 3~4회 야근	거의 매일 야근	계(수)	$\chi^2(df)$
전체	90.0	5.8	1.5	2.6	100.0(652)	
대도시	92.8	3.6	1.6	2.0	100.0(249)	
중소도시	87.2	8.4	1.5	2.9	100.0(274)	6.5(6)
읍·면	90.7	4.7	1.6	3.1	100.0(1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주말에 근무 형태를 보면 토요일에는 59.4%가 휴무이고 18% 정도는 전일, 7.1%는 반일 근무하며 15.4%는 격주 근무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역시 지역 차이가 유의하지 않다. 일요일은 89.4%가 휴무하고 7.4%가 전일근무, 2.6%가 격주 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요일 근무도 지역차이는 유의하지 않다(표 VII-1-5 참조).

〈표 VII-1-5〉 지역별 취업모 주말 근무 특성

단위: %(명)

구분	전일 근무	반일 근무	격주 근무	휴무	계(수)	$\chi^2(df)$
토요일						
전체	18.1	7.1	15.4	59.4	100.0(651)	
대도시	20.6	4.8	13.7	60.9	100.0(248)	
중소도시	15.7	10.6	15.7	58.0	100.0(274)	11.2(6)
읍·면	18.6	3.9	17.8	59.7	100.0(129)	
일요일						
전체	7.4	0.6	2.6	89.4	100.0(651)	
대도시	8.1	1.2	1.2	89.5	100.0(248)	
중소도시	7.3	0.4	3.3	89.1	100.0(274)	6.0(6)
읍·면	6.2	-	3.9	89.9	100.0(1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근무시간은 평일에는 평균 7.4시간이고 주당 평균은 39.5시간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으로는 법으로 정한 근로시간 범주에 들어간다. 그러나 표준편차가 각각 2.27시간, 14.01시간으로 개인간의 격차가 길다. 월평균 급여는 113만원에 표준 편차는 77만원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근무시간 차이는 거의 없으나 급여는 다소 차이가 난다(표 VII-1-6 참조).

〈표 VII-1-6〉 지역별 취업모 근로시간 및 급여

단위: 시간(명)

구분	평일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월 급여		(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전체	7.42	2.27	39.54	14.01	113.74	77.19	(651)
대도시	7.37	2.36	38.98	14.03	121.99	83.40	(248)
중소도시	7.50	2.09	39.87	12.57	113.48	75.58	(274)
읍·면	7.34	2.47	39.88	16.72	98.77	65.87	(12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2. 일·가정 양립의 애로점

가. 일·가정 양립 시 애로점

1) 직장생활에서의 어려움

직장생활을 하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취업모의 애로사항에 대해 8개 문항으로 살펴보았다. 각 항목에 대해서는 전혀 아님, 별로 아님,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여덟 가지 항목을 보면 대체로 일하는 여성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여 애로를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긍정적 방향으로 한 질문에 전혀 아니라는 응답이 긴급 상황 발생 시 보육자 있음이라는 직장 외적 요인이 31.9%로 가장 낮고 양육문제로 근무 시간 쉽게 조정으로 36.9%이며 직장에서 자녀양육문제로 도움 요청시 지원은 48.5%이고, 다음이 양육문제로 재택근무 신청 가능은 76.1%이다. 점수가 높으면 긍정을 나타내는 4점 척도로는 1.48~2.45점이다.

또한 부정적 방향으로 물어본 질문에는 매우 그러하다는 응답이 직장에서 아이 걱정을 하느라 근무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가 19.1%, 양육문제로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해 본 적에 12.9%가 매우 그러하다고 응답하였고, 지난 1년간 아이 문제로 정시 출퇴근 못한 경험에 8.2%, 자녀양육 문제로 이직이나 퇴직 고려 경험에 16.5%가 매우 그러하다고 응답하였다. 점수가 높으면 애로가 많음을 나타내는 4점 척도로는 2.02~2.71점이다

즉, 여덟가지 문항에서 긍정적 평가가 가장 낮은 문항은 아이 양육문제로 필요시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와 양육문제로 어려워 도움을 요청하면 이를 지원해 준다이다. 즉, 직장내 육아지원 여건이 뒷받침 되지 않아 취업모들이 자녀양육을 하며 자녀 관련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모가 일과 자녀 양육 병행시 탄력적 근무형태로의 조정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표 VII-2-1〉 일-가정 양립의 지원과 애로 사항(4점 척도)

단위: %(명), 점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약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평균
지원						
양육문제로 근무 시간 쉽게 조정	36.9	21.2	26.6	15.2	100.0(650)	2.20
양육문제로 재택근무 신청 가능	76.2	8.3	7.4	8.2	100.0(650)	1.48
직장에서 자녀양육문제로 도움 요청시 지원	48.5	24.5	19.7	7.4	100.0(650)	1.86
긴급 상황 발생시 보육자 있음	31.8	16.8	26.2	25.2	100.0(650)	2.45
애로점						
직장에서 아이 걱정으로 근무 지장	13.4	21.2	46.3	19.1	100.0(650)	2.71
아이 때문에 야간근무와 회의참석 어려움	40.8	26.2	20.2	12.9	100.0(650)	2.05
지난 1년간 아이 문제로 정시 출퇴근 못한 경험	39.5	26.6	25.7	8.2	100.0(650)	2.02
자녀양육 문제로 이직이나 퇴직 고려 경험	32.2	25.1	26.3	16.5	100.0(650)	2.27

주: 긍정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부정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다음 <표 VII-2-2>는 사업체 규모별 4점 척도 점수를 나타낸다. 근무시간 조정은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긍정적으로 점수가 낮아지다가 1,000인 이상에서는 다시 높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재택근무가 가능한 지는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일관성 있는 경향을 파악되지 않는다. 직장에서 아이 걱정으로 근무 지장, 아이 때문에 야간근무와 회의 참석 어려움은 사업 규모가 큰 사업체 근로자가 어려움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VII-2-2〉 사업체 규모별 지원과 애로정도: 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지원				애로				(수)
	시간 조정 가능	재택 근무 가능	직장에 서 도움	긴급시 보육	근무 지장	야간 근무 어려움	정시 출퇴근 애로	이직, 퇴직 고려	
전체	2.20	1.48	1.86	2.45	2.71	2.05	2.02	2.27	(652)
10인 미만	2.42	1.64	1.84	2.38	2.56	1.84	1.94	2.23	(372)
10~30인	2.14	1.28	2.05	2.36	2.73	2.16	2.14	2.42	(64)
30~50인	1.88	1.35	1.54	2.69	2.88	2.08	1.85	2.19	(26)
50~100인	1.87	1.11	1.98	2.67	2.78	2.39	2.28	2.09	(54)
100~300인	1.68	1.41	1.68	2.35	3.09	2.47	1.94	2.24	(34)
300~500인	1.65	1.18	1.94	2.94	3.06	2.06	1.94	2.41	(17)
500~1000인	1.55	1.30	1.80	2.20	2.95	2.55	2.15	2.10	(20)
1000인 이상	2.03	1.30	1.90	2.60	3.05	2.49	2.25	2.54	(63)
F	6.5***	3.9***	1.1	1.3	4.2***	6.1***	1.7	1.7	

주: 긍정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이고, 부정적 문항은 점수가 높을수록 애로가 많음을 나타냄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2) 육아지원

가)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

다음으로는 일하며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살펴보았다. 취업모들이 일하며 자녀 양육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믿고 맡길 곳이 마땅히 없음이 25.2%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직장일로 아이와 시간을 못 보냄 18.4%, 근로시간과 맞지 않는 시설의 시간 17.8%, 아이를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듦 15.8%, 긴급 상황 시 도움 받을 곳 없음 11.8%, 어려움 없음 11.0%이었다(VII-2-3 참조).

사업체규모별로 살펴보면 믿고 맡길 곳이 마땅히 없다는 응답은 1,000인 이상 36.5%, 300~500인 35.3%, 50~100인 29.6%로 많았다. 30~50인 사업체의 취업모들은 근로 시간과 맞지 않는 시설의 운영 시간 34.6%, 500~1000인 사업체의 35.0%, 100~300인 사업체의 29.4%의 취업모들은 직장일로 아이와 시간을 못 보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갖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VII-2-3〉 사업체 규모별 일하며 자녀 양육을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

단위: %(명)

구분	비용이 많이 듦	믿고 맡길 곳이 없음	시간이 맞지 않음	아이와 시간을 못 보냄	긴급 상황시 도움 없음	어려움 없음	계(수)
전체	15.8	25.2	17.8	18.4	11.8	11.0	100.0(652)
10인 미만	16.4	23.4	16.1	16.4	12.6	15.1	100.0(372)
10~30인	14.1	25.0	20.3	15.6	10.9	14.1	100.0(64)
30~50인	3.8	19.2	34.6	26.9	11.5	3.8	100.0(26)
50~100인	11.1	29.6	20.4	20.4	14.8	3.7	100.0(54)
100~300인	11.8	20.6	11.8	29.4	20.6	5.9	100.0(34)
300~500인	23.5	35.3	17.6	17.6	-	5.9	100.0(17)
500~1000인	15.0	20.0	20.0	35.0	5.0	5.0	100.0(20)
1000인 이상	22.2	36.5	19.0	17.5	4.8	-	100.0(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나) 기관 이용시 애로

취업모에게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애로를 5개 문항에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매우 심각과 심각을 합한 비율이 아이가 아플 때가 23.6%로 가장 높고, 기관에서 부모 역할을 요구할 때가 24.6%이며 이른 출근, 야간근무, 늦은 퇴근은 15~19% 수준이었다. 즉 갑작스러운 야간보육은 15% 정도, 비상시는 25% 정도가 애로를 겪는다고 하겠다.

〈표 VII-2-4〉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 시 겪는 애로 정도

단위: %(명)

구분	거의 없음	경미	약간 심각	심각	매우 심각	(수)	5점 척도
이른 출근 시간	46.7	17.4	21.4	7.5	7.0	100.0(627)	2.1
늦은 퇴근 시간	43.4	17.2	23.4	8.3	7.7	100.0(627)	2.2
예상치 못한 야간근무	45.0	18.5	17.2	9.4	9.9	100.0(627)	2.2
아이가 아플 때	31.7	17.5	27.1	12.9	10.7	100.0(627)	2.5
기관에서 부모역할을 요구	32.1	19.6	23.8	15.0	9.6	100.0(627)	2.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5점 평균으로는 아이가 아플 때 기관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점과 기관에서 부모 역할을 요구할 때가 2.5점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는 2.1~2.2점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애로는 지역적으로는 이른 출근과 예상치 못한 야간근무에서 중소도시가 다른 지역보다 애로 정도가 심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지역 차이는 유의미 하다(표 VII-2-5 참조).

그러나 자녀가 영아와 유아에 따른 차이나 소득계층별 차이는 유의하지 않다(부표 VII-2-1 참조).

〈표 VII-2-5〉 지역별 취업모의 기관 이용 시 겪는 애로 정도: 5점 척도

구분	단위: 점(명)					
	이른 출근 시간	늦은 퇴근 시간	예상치 못한 야간근무	아이가 아플 때	기관에서 부모역할을 요구	(수)
전체	2.1	2.2	2.2	2.5	2.5	(627)
대도시	1.9	2.0	1.9	2.3	2.4	(231)
중소도시	2.2	2.3	2.3	2.5	2.5	(267)
읍·면	2.0	2.1	2.2	2.6	2.5	(129)
F	4.3(3)*	2.2(2)	5.4(2)**	2.0(2)	0.1(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1$

다음으로는 아이가 아플 때에 누가 주로 돌봐주는 지를 알아보았다. 이는 매우 심각과 심각을 합한 비율이 23.6%로 가장 애로가 많은 사항의 하나로 파악되었다.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직장에 양해 얻고 직접 돌본다는 비율이 40.8%이고, 조부모 등 친인척이 37.4%로 나타났다. 사업체 규모별로 살펴보면 10인 미만 50.0%, 10~30인 42.2%로 소규모 사업체 근로 여성은 직장에 양해를 얻고 직접 돌보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30인 이상 규모의 사업체의 취업모는 조부모 등 친인척 등이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가 휴가를 사용하여 아이를 돌보는 경우 1,000인 이상의 사업체는 27.0%, 10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 6.5%로 응답하여 이 부분에서도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아이를 돌보는 사람이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VII-2-6 참조).

즉, 대규모 사업체 근로자는 휴가제도를 통하여 자녀를 돌보는 시간을 내지만, 소규모 사업체 근로자는 고용주의 허락 등을 통하여 아이를 돌볼 시간을 확보한다는 것이다.

〈표 VII-2-6〉 사업체 규모별 아이가 아플 때 주로 돌봐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직장 양해로 직접	부모 휴가 사용	교사가 병원 진료	다니는 기관	조부모 등 친인척	보육 도우미	기타	전체
전체	40.8	10.1	5.4	2.3	37.4	0.9	3.1	100.0(652)
10인 미만	50.0	6.5	6.7	1.6	29.8	1.1	4.3	100.0(372)
10~30인	42.2	9.4	6.3	6.3	32.8	-	3.1	100.0(64)
30~50인	38.5	11.5	-	-	46.2	-	3.8	100.0(26)
50~100인	24.1	13.0	-	1.9	61.1	-	-	100.0(54)
100~300인	20.6	8.8	5.9	5.9	55.9	2.9	-	100.0(34)
300~500인	23.5	17.6	-	-	58.8	-	-	100.0(17)
500~1000인	25.0	15.0	-	5.0	55.0	-	-	100.0(20)
1000인 이상	22.2	27.0	6.3	1.6	41.3	-	1.6	100.0(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다) 토요일 및 휴일보육 애로

토요일이나 휴일에 보육이 필요시에 돌보아 주는 사람에 대해 살펴본 결과 조부모 등 친인척이 47.1%, 데리고 감 37.6%로 응답하여 토요일이나 휴일 보육이 필요시 주로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보아 주거나 부모가 직접 데리고 가서 돌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2-7〉 사업체 규모별 토요일·휴일보육 필요시 주로 돌봐주는 사람

단위: %(명)

구분	조부모 등 친인척	보육도우미	어린이집	데리고 감	기타	전체
전체	47.1	0.5	8.1	37.6	6.7	100.0(652)
10인 미만	42.2	0.3	7.5	43.8	6.2	100.0(372)
10~30인	37.5	-	12.5	39.1	10.9	100.0(64)
30~50인	46.2	-	15.4	30.8	7.7	100.0(26)
50~100인	48.1	3.7	9.3	27.8	11.1	100.0(54)
100~300인	64.7	-	11.8	20.6	2.9	100.0(34)
300~500인	64.7	-	5.9	23.5	5.9	100.0(17)
500~1000인	65.0	-	5.0	25.0	5.0	100.0(20)
1000인 이상	63.5	-	3.2	28.6	4.8	100.0(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사업체규모에 따라서는 10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조부모 등 친인척이 돌봐 주는 경우가 60% 이상을 차지해 토요일이나 휴일 근무 시에는 조부모 등 친인척 보육에 주로 의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나. 임신 및 출산으로 취업모의 일 중단 경험

1) 경험

다음은 일·가정 양립 애로 때문에 임신 및 출산으로 일을 중단한 경험을 알아보았다.

자녀 출산 순위별로 자녀의 임신과 출산 후 1년 동안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첫째는 25.4%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전체의 12.6%가 일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셋째아에 대해서는 전체의 10.9%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VII-2-8 참조).

〈표 VII-2-8〉 출산·자녀양육을 이유로 일 중단 경험

단위: %(명)

구분	첫째자녀		둘째자녀		셋째자녀	
	있음	(수)	있음	(수)	있음	(수)
전체	25.4	(2,003)	12.6	(1,500)	10.9	(284)
지역						
대도시	28.3	(738)	11.1	(542)	9.4	(96)
중소도시	25.1	(850)	14.4	(625)	12.6	(119)
읍·면	20.7	(415)	11.7	(333)	10.1	(69)
$\chi^2(df)$	8.1(2)*		11.1(4)*			
모 취업						
취업중	28.2	(618)	17.3	(428)	19.5	(77)
휴직중	35.5	(31)	32.0	(25)	50.0	(8)
미취업	24.1	(1,339)	10.3	(1,036)	6.0	(199)
$\chi^2(df)$	10.4(3)*		21.7(2)*		23.2(2)***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출산순위에 따라 임신 및 출산으로 일 중단 경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은 응답 자에는 임신과 출산 당시 미취업 상태였던 사람들이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 같은 맥락에서 보면 대도시에서의 일 중단 비율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바꿔 말해, 많은 수의 대도시 거주자가 그 앞 자녀 출산 후 일을 그만 두고 다시 일터로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될 수 있다.

일 중단 비율은 지역규모가 클수록 더 많다. 임신이나 출산 당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단 경험이 없는 경우가 포함이 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에서 일 중단 경험이 더 많을 수 있다. 현재 어머니의 취업 여부에 따라서는 휴직 중인 어머니 중 일 중단 경험이 있는 어머니 비율이 35.5%로 가장 많고, 취업 중인 28.2%, 미취업 24.1%이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별로는 출산 순위 모두에서 휴직 중인 어머니의 일 중단 경험이 가장 높고, 다음이 취업 중, 미취업의 순이다.

2) 일 중단 이유

일 중단 사유는 자녀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47~5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라는 응답 28~30%의 순으로 나타났다. 직장과 육아 병행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출산순위에 따라 6.5%, 7.9%, 16.1%로 셋째 이상에게서 가장 많아 자녀 수가 많아질 수록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출산순위별로 응답자 특성별 차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가 첫째아인 경우 일 중단 사유는 지역규모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진 않지만 맡길 곳이 없다는 응답이 읍·면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읍·면 지역의 육아지원 기관 부족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짐작된다. 둘째 자녀의 경우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가 중소도시 55.6%로 읍·면지역 53.8%와 대도시 51.7%보다 약간 높고, 직장과 육아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도 중소도시 11.1%로 대도시 6.7%, 중소도시 2.6%보다 높았고, 대도시의 경우 아이를 직접 키우고자 하는 이유가 33.3%로 중소도시 13.3%, 읍·면지역 20.5%보다 높게 응답하였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에 대해선 읍·면지역이 10.3%로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셋째 자녀의 경우도 둘째 자녀와 크게 다르지 않은 이유들로 응답하였다. 자녀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다는 이유는 둘째 자녀와 같이 중소도시가 60%, 읍·면 57.1%로 대도시 33.3%보다 훨씬 높고, 이외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 직장과 아이를 병행할 자신이 없어서, 산전·산후 등 건강문제 등은 대도시가 높게 응답하였다(표 VII-2-9 참조).

〈표 VII-2-9〉 출산·자녀양육으로 일 중단 사유

단위: %(명)

구분	직접 키우려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	경제적 여유 없어서	육아 병행 자신 없어서	성장 가능성 없어서	해고 되어서	불이익 받아서	눈치가 보여서	건강 문제	기타	계(수)
첫째자녀											
전체	28.7	46.9	2.6	6.5	0.4	0.6	0.6	2.4	11.2	0.2	100.0(508)
대도시	29.7	46.4	1.9	6.2	1.0	-	0.5	2.4	11.5	0.5	100.0(209)
중소도시	27.7	44.1	2.8	9.4	-	1.4	0.5	2.3	11.7	-	100.0(213)
읍·면	29.1	54.7	3.5	-	-	-	1.2	2.3	9.3	-	100.0(86)
둘째자녀											
전체	21.2	54.0	3.7	7.9	0.5	1.1	1.1	0.5	9.5	0.5	100.0(189)
대도시	33.3	51.7	-	6.7	-	-	3.3	-	5.0	-	100.0(60)
중소도시	13.3	55.6	3.3	11.1	1.1	2.2	-	1.1	11.1	1.1	100.0(90)
읍·면	20.5	53.8	10.3	2.6	-	-	-	-	12.8	-	100.0(39)
셋째자녀											
전체	16.1	51.6	3.2	16.1	-	-	-	-	12.9	-	100.0(31)
대도시	22.2	33.3	-	22.2	-	-	-	-	22.2	-	100.0(9)
중소도시	13.3	60.0	6.7	13.3	-	-	-	-	6.7	-	100.0(15)
읍·면	14.3	57.1	-	14.3	-	-	-	-	14.3	-	100.0(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3) 미취업모의 취업계획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들의 취업계획 여부를 보면,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이 67.7%, 현재 구직 중 9.6%, 취업교육, 훈련 중 3.4%로 취업 계획이 없다는 19.3%를 제외하고 80.7%가 취업을 기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재 미취업 상태인 대부분의 영유아 어머니가 취업을 생각하고 있다.

가구소득에 따라서는 월 평균 350~399만원, 200~249만원 소득수준의 어머니들이 아이가 더 크면 일자리를 알아볼 생각이 다른 집단들보다 좀 더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현재 구직중은 가구소득 200만원 이하가 14~16%로 가구 소득이 낮을수록 취업을 위해 구직활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취업 계획이 없다는 비율은 소득 400만원 이상이 30% 정도에 근접하였다(표 VIII-2-10 참조).

〈표 VII-2-10〉 미취업모의 취업 계획

단위: %(명)

구분	현재 구직중	취업교육, 훈련중	아이가 더 크면 알아볼 생각	계획 없음	계(수)	$\chi^2(df)$
전체	9.6	3.4	67.7	19.3	100.0(1,337)	
지역						
대도시	8.0	1.9	69.8	20.4	100.0(486)	10.2(6)
중소도시	9.7	4.0	67.3	19.0	100.0(569)	
읍·면	12.1	5.0	64.9	18.1	100.0(28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6.1	4.5	58.9	20.5	100.0(112)	38.7(21)*
150~199만원	14.3	4.2	68.3	13.2	100.0(189)	
200~249만원	9.8	2.8	70.0	17.4	100.0(327)	
250~299만원	7.3	5.3	68.2	19.2	100.0(245)	
300~349만원	7.8	4.3	68.1	19.8	100.0(232)	
350~399만원	5.7	-	73.6	20.7	100.0(87)	
400~449만원	6.4	1.3	64.1	28.2	100.0(78)	
450만원 이상	7.7	-	61.5	30.8	100.0(65)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3. 사업체 육아지원과 요구

가. 육아지원제도 운영

1) 휴직 및 탄력근무

취업부모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선 국가 차원에서의 육아정책의 지원도 필요하지만, 이와 함께 사업체에서도 부모들이 일을 하며 편히 양육을 할 수 있는 사업체 내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국가 지원 정책에 이어 사업체 내 자녀양육 지원 제도의 실시 현황을 살펴보았다. 총 12가지 지원제도들에 대해 실시, 미실시, 모름, 비해당 4가지로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사 결과, 실시한다는 비율은 출산휴가제 40.8%, 육아휴직 29.5%, 아버지 출산휴가 15.6%, 유사산 휴가 13.6%로 10% 이상이고 나머지 7가지 제도는 실시한다는 응답이 10% 미만이다. 즉, 아버지 육아휴직은 9.6%, 가족간호휴가(휴직)은 9.0%, 태아검진 휴가 8.0%이고, 출퇴근 시차제 7.0%,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6.6%, 휴가적립제 6.1%, 원격·재택근무 4.4%, 임금삭감 단축근로제 2.0% 순으로 실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휴가 제도에 비하여 단축근로나 근무 유연제 관련 제도의 실시 비율이 크게 낮다(표 VII-3-1 참조).

〈표 VII-3-1〉 사업체 내 자녀양육지원제도 실시 현황

구분	단위: %(명)				계(수)
	실시	미실시	모름	비해당	
출산휴가	40.8	31.7	2.3	25.2	100.0(652)
아버지 출산휴가	15.6	54.0	5.0	25.4	100.0(654)
육아휴직	29.5	42.0	3.1	25.4	100.0(654)
아버지 육아휴직	9.6	57.8	7.2	25.4	100.0(654)
가족간호휴가(휴직)	9.0	55.2	10.4	25.4	100.0(654)
태아검진 휴가	8.0	55.2	11.5	25.4	100.0(654)
유·사산 휴가	13.6	52.3	8.7	25.4	100.0(654)
원격·재택근무	4.4	61.9	8.3	25.4	100.0(654)
출퇴근 시차제	7.0	59.5	8.1	25.4	100.0(654)
휴가적립제	6.1	58.4	10.1	25.4	100.0(6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6.6	59.2	8.9	25.4	100.0(654)
임금삭감 단축근로제	2.0	62.5	10.1	25.4	100.0(6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I-3-2〉 사업체 규모별 자녀양육지원제도 실시 비율

구분	단위: %(명)												
	출산휴가	아버지 출산휴가	육아휴직	아버지 육아휴직	가족간호휴가(휴직)	태아검진휴가	유·사산휴가	원격·재택근무	출퇴근 시차제	휴가적립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삭감 단축근로제	(수)
전체	40.8	15.6	29.5	9.6	9.0	8.0	13.6	4.4	7.0	6.1	6.6	2.0	(652)
10인 미만	17.5	3.2	9.1	1.1	1.6	0.8	1.6	1.6	1.6	1.3	2.2	0.5	(372)
10~30인	50.0	12.5	26.6	7.8	10.9	7.8	14.1	1.6	9.4	4.7	6.3	3.1	(64)
30~50인	53.8	34.6	38.5	15.4	11.5	11.5	19.2	3.8	7.7	7.7	15.4	3.8	(26)
50~100인	74.1	31.5	61.1	18.5	22.2	16.7	31.5	9.3	13.0	9.3	24.1	3.7	(54)
100~300인	85.3	32.4	70.6	26.5	5.9	23.5	32.4	8.8	14.7	17.6	8.8	-	(34)
300~500인	70.6	52.9	70.6	23.5	29.4	29.4	52.9	5.9	23.5	17.6	17.6	5.9	(17)
500~1000인	85.0	30.0	70.0	25.0	25.0	15.0	25.0	10.0	10.0	-	5.0	-	(20)
1000인이상	88.9	47.6	76.2	34.9	30.2	25.4	42.9	15.9	22.2	23.8	11.1	0.7	(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I-3-2>는 사업체 규모별로 실시한다는 비율을 나타낸다.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도 실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다음으로 사업체 내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정도에 대해 살펴본다. 결과는 다음 <표 VII-3-3>과 같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제도는 출산휴가가 34.0%, 육아휴직이 19.5% 순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아버지 출산휴가가 11.0%, 유·사산 휴가 10.2%이며 나머지 제도는 실제 사용 가능성 10%이하로 이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두 가지 제도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10개의 지원 제도는 사용불가가 50.0% 이상이다.

사업체 규모별로 사업체 내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정도 역시 대체로 사업체 규모가 증가하면서 제도 실시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표 VII-3-4 참조).

<표 VII-3-3> 사업체 내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실제 사용 가능성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높은편	낮은편	매우 낮음	사용 불가	모름	비해당	계(수)
출산휴가	25.9	8.1	4.1	2.8	31.6	2.1	25.3	100.0(652)
아버지 출산휴가	7.3	3.7	2.3	3.5	52.6	5.0	25.5	100.0(654)
육아휴직	13.8	5.7	4.4	4.4	43.0	3.4	25.4	100.0(654)
아버지 육아휴직	2.1	0.8	2.4	3.7	58.4	7.0	25.5	100.0(654)
가족간호휴가(휴직)	2.3	2.0	3.4	3.1	53.8	10.1	25.4	100.0(654)
태아검진 휴가	3.7	2.8	1.2	2.1	54.1	10.7	25.4	100.0(654)
유·사산 휴가	6.4	3.8	1.7	2.6	52.0	8.1	25.4	100.0(654)
원격·재택근무	1.4	1.4	1.1	2.1	60.6	8.1	25.4	100.0(654)
출퇴근 시차제	2.4	2.1	1.7	2.6	58.0	7.8	25.4	100.0(654)
휴가적립제	2.8	1.8	1.2	1.5	57.2	10.1	25.4	100.0(6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4	2.1	1.2	1.8	58.1	8.9	25.4	100.0(654)
임금삭감 단축근로제	0.6	0.8	0.5	2.1	60.4	10.2	25.4	100.0(6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다음 <표 VII-3-5>는 사업체 내 자녀양육 지원제도의 사용경험 정도를 나타낸다. 사용경험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출산 휴가 29.4%, 육아휴직 13.5%로 앞에서 살펴본 지원 제도의 이용 가능성과 같이 두 제도만이 사용 경험이 다른 제도들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나머지 10가지 지원 제도의 경우 2% 내외의 낮은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VII-3-4〉 사업체 규모별 직장 내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사용 가능성

단위: %(명)

구분	출산 휴가	아버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아버지 육아 휴직	가족 간호 휴가 (휴직)	태아 검진 휴가	유·사 산 휴가	원격· 채택 근무	출퇴 근 시차 제	휴가 적립 제	육아 기 근로 시간 단축	임금 삭감 단축 근로 제	(수)
전체	40.8	15.6	29.5	9.6	9.0	8.0	13.6	4.4	7.0	6.1	6.6	2.0	(652)
10인 미만	14.5	14.5	4.8	-	0.5	1.1	1.1	1.9	1.6	1.1	1.9	1.3	(372)
10~30인	35.9	35.9	15.6	4.7	7.8	6.3	9.4	1.6	6.3	4.7	6.3	1.6	(64)
30~50인	38.5	38.5	26.9	-	7.7	7.7	11.5	-	-	-	3.8	-	(26)
50~100인	63.0	63.0	42.6	3.7	9.3	11.1	24.1	5.6	9.3	3.7	16.7	-	(54)
100~300인	67.6	67.6	44.1	5.9	-	17.6	23.5	2.9	5.9	17.6	5.9	-	(34)
300~500인	70.6	70.6	47.1	11.8	11.8	23.5	29.4	-	17.6	11.8	11.8	-	(17)
500~1000인	75.0	75.0	40.0	5.0	10.0	10.0	25.0	5.0	5.0	-	-	-	(20)
1000인 이상	78.1	78.1	57.8	14.1	15.6	21.9	35.9	7.8	14.1	18.8	7.8	4.7	(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I-3-5〉 사업체 자녀양육지원제도의 사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있음	없음	비해당	전체
출산휴가	29.4	45.2	25.3	100.0(652)
아버지 출산휴가	2.4	72.2	25.4	100.0(654)
육아휴직	13.5	61.0	25.5	100.0(654)
아버지 육아휴직	-	74.6	25.4	100.0(654)
가족간호휴가(휴직)	0.8	73.5	25.7	100.0(654)
태아검진 휴가	2.9	71.3	25.8	100.0(654)
유·사산 휴가	0.8	73.5	25.7	100.0(654)
원격·채택근무	0.9	73.2	25.8	100.0(654)
출퇴근 시차제	1.7	72.5	25.8	100.0(654)
휴가적립제	0.9	73.2	25.8	100.0(6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2.1	72.0	25.8	100.0(654)
임금삭감 단축근로제	0.2	74.0	25.8	100.0(6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사업체 규모별로는 사용경험이 있다는 비율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사업체 규모가 증가하면서 비율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VIII-3-6 참조). 그러나 그 이외 유연근로 관련 제도들은 사업체 규모에 따라 일관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표 VII-3-6〉 사업체 규모별 직장 내 자녀양육지원제도 사용 경험

단위: %(명)

구분	출산 휴가	아버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아버지 육아 휴직	가족 간호 휴가	태아 검진 휴가	유· 사산 휴가	원격· 재택 근무	출퇴 근시차 제	휴가 적립 제	육아 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단축 제	(수)
전체	29.4	2.4	13.5	-	0.8	2.9	0.8	0.9	1.7	0.9	2.1	0.2	(652)
10인 미만	10.5	0.3	2.7	57.5	0.3	0.5	-	0.8	0.8	0.3	0.8	0.3	(372)
10~30인	31.3	3.1	9.4	96.9	1.6	1.6	-	1.6	4.7	3.1	3.1	-	(64)
30~50인	34.6	3.8	15.4	96.2	-	-	-	-	-	-	-	-	(26)
50~100인	57.4	5.6	25.9	96.3	-	5.6	-	-	1.9	1.9	13.0	-	(54)
100~300인	67.6	5.9	38.2	100.0	-	8.8	-	5.9	2.9	-	-	-	(34)
300~500인	58.8	5.9	23.5	100.0	-	11.8	5.9	-	5.9	5.9	5.9	-	(17)
500~1000인	70.0	5.0	45.0	100.0	-	5.0	5.0	-	-	-	5.0	-	(20)
1000인이상	73.0	7.9	44.4	100.0	4.8	11.1	4.8	-	3.2	1.6	-	-	(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사업체내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37.2%가 눈치가 보여서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돈을 벌려고,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각각 15.9%이고, 경력관리 때문이 5.3%이다(표 VIII-3-7 참조). 심층면접에서도 셋째 자녀를 낳은 취업모의 경우 한번도 육아휴직을 써본 적이 없고, 사용할 분위기도 아니었다고 하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회사를 그만 둘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아니고는 대체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대체인력 활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업무 성격상 어렵다고 하였다.

〈표 VII-3-7〉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유

단위: %(명)

구분	돈을 벌려고	눈치가 보여서	경력 관리 때문에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	일하는 게 좋아서	불필요	기타	전체
비율	15.9	37.2	5.3	15.9	-	19.5	6.2	100.0(11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여기에서는 사업체 내 자녀양육 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은 41.8%가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퇴근 시차제, 원격·재택근무, 아버지 육아휴직, 아버지 출산 휴가는 영향을 준다는 응답이

20%대이며, 임금삭감 단축근로제, 가족간호휴가(휴직), 유·사산 휴가, 태아검진 휴가 13~15%가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표 VII-3-8 참조).

〈표 VII-3-8〉 직장 자녀양육지원 이용 가능성이 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구분	전혀 영향 없음	별로 영향 안 미침	어느 정도 영향을 줌	많은 영향을 줌	비해당	계(수)
출산휴가	21.1	12.0	20.6	21.3	25.2	100.0(652)
아버지 출산휴가	36.1	16.4	15.1	7.2	25.2	100.0(654)
육아휴직	23.9	9.0	19.6	22.2	25.4	100.0(654)
아버지 육아휴직	35.3	13.8	17.1	8.6	25.2	100.0(654)
가족간호휴가(휴직)	40.8	18.7	11.8	3.4	25.4	100.0(654)
태아검진 휴가	42.4	19.4	10.1	2.8	25.4	100.0(654)
유·사산 휴가	39.3	20.8	10.9	3.7	25.4	100.0(654)
원격·재택근무	38.1	10.1	13.0	13.5	25.4	100.0(654)
출퇴근 시차제	36.1	11.9	17.4	9.2	25.4	100.0(654)
휴가적립제	38.7	19.0	13.3	3.7	25.4	100.0(65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36.1	11.3	16.2	11.1	25.4	100.0(654)
임금삭감 단축근로제	41.1	18.0	12.5	2.9	25.4	100.0(654)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I-3-9〉 사업체 규모별 직장 자녀양육지원 이용 가능성이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비율

단위: %(명)

구분	출산 휴가	아버지 출산 휴가	육아 휴직	아버지 육아 휴직	가족 간호 휴가	태아 검진 휴가	유·사산 휴가	원격·재택 근무	출퇴근 시차제	휴가 적립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임금 삭감 단축 근로제	(수)
전체	41.9	22.3	41.8	25.7	15.2	12.9	14.6	26.5	26.6	17.0	27.3	15.4	(650)
10인 미만	27.4	16.1	28.2	19.9	9.4	7.5	8.3	21.2	19.9	12.9	22.0	12.9	(372)
10~30인	45.3	14.1	42.2	25.0	12.5	12.5	14.1	28.1	28.1	15.6	34.4	20.3	(64)
30~50인	50.0	42.3	57.7	50.0	19.2	23.1	15.4	42.3	42.3	15.4	42.3	19.2	(26)
50~100인	63.0	33.3	66.7	38.9	25.9	20.4	25.9	37.0	35.2	31.5	42.6	25.9	(54)
100~300인	70.6	26.5	70.6	32.4	20.6	26.5	26.5	35.3	44.1	32.4	32.4	23.5	(34)
300~500인	58.8	35.3	58.8	35.3	41.2	29.4	47.1	23.5	35.3	11.8	29.4	17.6	(17)
500~1000인	70.0	35.0	50.0	25.0	30.0	10.0	10.0	15.0	20.0	10.0	10.0	-	(20)
1000인 이상	71.9	39.1	70.3	32.8	25.0	21.9	26.6	39.1	40.6	25.0	32.8	14.1	(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휴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는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탄력근무나 유연근로 관련 제도는 사업체 규모별로 일관성을 보이지 않아서 이런 제도가 대기업에서조차 수용되고 있지 않음을 나타냈다(표 VII-3-9 참조).

나. 양육 및 보육서비스 지원

다음으로 사업체 내 자녀 보육비용 지원 및 직장보육시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먼저 지원이나 시설 유무에 대하여는 보육비용 지원은 10.2%가 있다고 응답하고 89.8%가 없다고 응답하였고,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 시설 설치는 5.1%, 직장어린이집은 3.7%만이 있다고 응답하여 사업체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 자녀 양육 지원 시설의 설치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표 VII-3-10 참조).

〈표 VII-3-10〉 사업체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과 시설 유무 및 수혜 여부

단위: %(명)

구분	유무		수혜/이용 경험			계(수)
	있음	없음	현재 혜택	과거 혜택	경험 없음	
보육비용 지원	10.2	89.8	5.6	2.8	91.6	100.0(646)
직장어린이집	3.7	96.3	0.8	0.6	98.6	100.0(646)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5.1	94.9	1.1	1.6	97.4	100.0(646)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따라서 실제 혜택도 낮을 수 밖에 없다. 사업체내 보육비용 지원에 대해 현재와 과거를 포함해 8.4%만이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고, 직장어린이집과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 시설은 2.7%, 1.4%의 낮은 비율만이 혜택을 보았다고 응답해, 사업체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의 혜택을 받고 있는 비율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었다(표 VII-3-11 참조).

사업체내 자녀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의 혜택 여부에 응답한 사람 중 직장내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이 있는 경우만 따로 모아 살펴본 결과, 보육비용 지원은 27.3%에서 54.5%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12.5%에서 20.8%로 과거에 비해 현재 혜택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 시설 설치를 제외하고 보육비용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의 지원은 과거에 비해 현재 혜택을 받는 비율이 늘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표 VII-3-12 참조).

〈표 VII-3-11〉 사업체 규모별 직장내 양육 지원 시설 실시와 수혜

단위: %(명)

구분	실시비율			수혜경험			(수)
	보육비용 지원	직장 어린이집	산모휴게실 및 수유 편의시설	보육비용 지원	직장 어린이집	산모휴게실 및 수유 편의시설	
전체	10.2	3.7	5.1	5.6	0.8	1.1	(646)
10인 미만	0.8	0.5	-	0.8	-	0.3	(372)
10~30인	4.7	4.7	1.6	3.1	3.1	-	(64)
30~50인	7.7	-	-	7.7	-	-	(26)
50~100인	20.4	1.9	7.4	11.1	1.9	1.9	(54)
100~300인	20.6	5.9	14.7	14.7	2.9	8.8	(34)
300~500인	35.3	11.8	29.4	35.3	-	17.6	(17)
500~1000인	30.0	15.0	-	30.0	10.0	-	(20)
1000인 이상	44.4	17.5	28.6	37.5	4.7	14.1	(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I-3-12〉 혜택 여부(직장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이 있는 경우)

단위: %(명)

구분	현재 혜택	과거 혜택	경험 없음	계(수)
보육비용 지원	54.5	27.3	18.2	100.0(66)
직장어린이집 설치	20.8	12.5	66.7	100.0(24)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21.2	27.3	51.5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표 VII-3-13〉 직장어린이집 이용 안하는 이유

단위: %(명)

구분	거리가 멀어서	이용 가능 시간이 부적절	서비스 질이 별로	교육이 더 필요	보육료 비싸서	아이가 싫어해서	직장 일에 방해	대기자 많아서	기타	계(수)
비율	36.8	15.8	21.1	-	-	-	5.3	10.5	10.5	100.0(1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다음으로는 직장어린이집이 있어도 이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살펴본다. <표 VII-3-13>과 같이 거리가 멀어서가 36.8%로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차지하였고, 그밖에 이유들에 대해서는 서비스 질이 별로가 21.1%, 이용가능시간 부적절이 15.8%, 대기자 많아서가 10.5%, 기타 10.5% 순으로 응답하였다. 직장

어린이집이 직장 근처에 위치해 있어 직장내와 집과의 거리가 멀 경우 어린 자녀를 보내기 어렵고 이런 이유로 충족률이 낮다.

2) 출산과 자녀양육에 도움 주는 정도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직장 내 자녀 보육비용 지원 및 이용시설이 부모의 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긍정적으로 답하는 비율은 크지 않다. <표 VIII-3-14>와 같이 일하는 어머니 전체로 보면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비율은 보육비용 지원 18%, 직장어린이집 17.2%, 산모 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13.7%로 모두 20% 미만이다.

<표 VII-3-14> 직장 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의 자녀 출산 결정에 미친 영향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계(수)
전체					
보육비용 지원	76.6	5.4	11.0	7.0	100.0(645)
직장어린이집 설치	81.4	1.4	10.5	6.7	100.0(645)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80.8	5.6	9.5	4.2	100.0(645)
해당 사업체 근로자					
보육비용 지원	16.7	36.4	28.8	18.2	100.0(66)
직장어린이집 설치	16.7	16.7	50.0	16.7	100.0(24)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15.2	33.3	36.4	15.2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그러나 이러한 시설이나 제도가 있는 경우에는 긍정적 평가 비율이 높아서 직장어린이집은 66.7%가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산모 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에는 51.6%, 보육비용 지원은 47%가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직장 내 자녀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 수혜자만 모아서 자녀 양육지원 제도 및 시설이 자녀 양육에 도움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다음 <표 VII-3-15>와 이, 보육비용 지원이 53.1%,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37.5%, 산모 휴게실 및 수유 편의시설 설치는 36.3%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표 VII-3-15〉 직장 보육비용 지원 및 시설의 자녀양육 도움 정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아님	별로 아님	어느 정도 그러함	매우 그러함	비해당	계(수)
보육비용 지원	6.1	22.7	36.4	16.7	18.2	100.0(66)
직장어린이집 설치	-	8.3	16.7	20.8	54.2	100.0(24)
산모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설치	3.0	9.1	24.2	12.1	51.5	100.0(3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다. 정책의 효과성 인식

다음은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에 대한 일하는 엄마들의 생각을 나타낸다.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보육비 지원이 29.8%,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25.9%로 높은 비율로 효과적인 제도라고 응답하였고, 그 다음으로 육아휴직 1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12.1%, 원격·재택근무 8.9%로 응답하였다(표 VII-3-16 참조).

〈표 VII-3-16〉 직장 내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의 효과성 인식

단위: %(명)

구분	시차 출근계	육아 휴직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원격 재택 근무	보육비 지원	직장 어린이집 설치	산모 수유실 설치/ 수유시간 부여	계(수)
전체	6.0	17.2	12.1	8.9	29.8	25.9	0.2	100.0(652)
10인 미만	6.5	17.2	10.2	9.4	34.1	22.6	-	100.0(372)
10~30인	3.1	10.9	18.8	7.8	32.8	26.6	-	100.0(64)
30~50인	-	26.9	11.5	11.5	23.1	26.9	-	100.0(26)
50~100인	3.7	22.2	9.3	9.3	20.4	33.3	1.9	100.0(54)
100~300인	8.8	14.7	11.8	8.8	17.6	38.2	-	100.0(34)
300~500인	5.9	5.9	23.5	5.9	23.5	35.3	-	100.0(17)
500~1000인	5.0	15.0	20.0	5.0	35.0	20.0	-	100.0(20)
1000인 이상	9.5	20.6	12.7	7.9	19.0	30.2	-	100.0(6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사업체 규모에 따른 차이는 일관성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30인 미만 사업체 근로자와 500~1,000명 이상 사업체 근로자가 보육비 지원을 선택한 비율이 30%가 넘고, 육아휴직은 30~50인 사업체, 50~500인 사업체, 500~1000인 사업체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가장 효과적이라고 응답하였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300~1000인 이상 사업체에서 요구가 20%가 넘었다.

4. 소결

위에서 살펴본 취업부모 육아지원 실태와 요구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정책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부모에 대한 육아 지원은 보다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후 1년 동안 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이유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첫째 25.4%, 둘째 12.6%, 셋째 10.9%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단 사유는 자녀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아이를 직접 키우고 싶어서라는 응답의 순이었다. 이는 여전히 질 높은 서비스에 대한 미충족 욕구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직장과 육아 병행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셋째아 이상에게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여서 자녀수가 많아질수록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둘째, 사업체에서 일과 자녀 양육 병행 시 탄력적 근무형태로의 조정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취업모들은 아이 양육 문제로 필요 시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는 평균 1.48점에 불과하여 취업모들이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낮음을 나타냈다. 또한 자녀 양육 문제로 재택근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84.5%, 근무시간 조정의 어려움이 58.1%로 나타나 취업모가 일과 자녀 양육 병행 시 탄력적 근무형태로의 조정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연근로, 탄력근무 관련 제도는 대규모 사업체조차도 실시 비율은 낮다.

셋째, 취업모를 위한 기능을 수행하는 보육서비스가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자녀가 아플 때, 기관에서 부모님 오라고 할 때, 늦은 퇴근 또는 예상치 못한 야간 근무 때가 가장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었다.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아이가 아플 때 기관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점과 기관에서 부모 역할을 요구할 때가 4점 만점에 2.5점, 저녁 시간 돌봄에의 어려움으로 늦은 퇴근 또는 예상치 못한 야간 근무로 인한 저녁 시간 돌봄 어려움이 2.2점으로 조사되었다.

넷째, 사업체 중심의 지원제도가 소규모 사업체에서도 실현되도록 노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휴가와 휴직제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여성근로자가 상당수임이 고려되어야 한다.

다섯째,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풍토 개선, 소득 대체 수준 확대 필요함을 나타냈다. 휴직 사업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37.2%가 눈치가 보여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돈을 벌려고,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각각 15.9%, 경력관리 때문에 5.3% 순으로 응답하였다. 사업체 내 자녀양육 지원이 자녀 출산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 출산 휴가 41.9%, 육아휴직은 41.8%로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비율이 가장 높다.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에서도 보육비 지원이 29.8%,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25.9%로 가장 높은 비율로 효과적인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그 다음이 육아휴직이 17.2%,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12.1%, 원격·재택근무가 8.9%로 응답하였다.

여섯째, 사업체에서의 보육비용 지원 강화 요구가 크다.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 보육비 지원이 29.8%로 가장 높았다.

일곱째, 직장에서는 비용지원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도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보육지원정책 중 두 자녀 출산 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66.7%, 산모 휴게실 및 수유 편의시설 51.6%, 보육비용 지원은 47%로 나타났다.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본 결과에서도 보육비 지원이 29.8%에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25.9%로 가장 높은 비율로 효과적인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VIII. 정책제언

제8장에서는 정책제언을 앞에서 논의한 내용에 따라서 가정내 자녀양육 지원 강화, 보육·교육기관 운영 개선, 근로자 양육 지원 활성화로 구분하여 서술하였다.

1. 가정내 자녀 양육지원 강화

가. 보육 정보 제공 및 상담 기능 강화

자녀를 보육하는 부모가 필요한 정보를 얻고 상담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이러한 기능은 부분적으로 보육시설이나 보육정보센터, 아이사랑 포털 등 여러 기관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부모들의 인지도나 체감도는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러한 역할을 통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육아와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에 대한 지원에 대한 충분성 평가는 5점 만점에 평균 2.9점으로 나타났다. 비율로도 충분하다는 25.0%로 불충분하다 27.3%보다 낮아서 육아정보 제공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육아정보를 습득하는 경로로는 육아관련사이트가 37.7%, 친구·동료가 33.7%, 집안 어른 15.7%로 육아관련사이트가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 건전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육아정보포털 구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는 기존의 여러 온라인 사이트를 연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하나의 거대한 가상 공간을 구축하고 서울시의 다산콜센터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널리 홍보하여 원스톱으로 부모의 자녀양육 관련 정보, 상담 욕구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나. 이용시설 확대

조사 결과 이용시설에 대한 인지 정도는 비교적 높으나 실제 이용률은 매우

낮다. 따라서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보육정보센터 등 이용시설 이용자 만족도는 비교적 높다.

1) 접근의 형평성 제고

서울특별시의 육아 플라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 휴게실의 기능을 포함하되 공간을 보다 확보하여 부모 상담은 물론 부모와 아동이 함께 와서 다양한 놀이 활동 등을 할 수 있는 오프라인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소한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도록 한다. 이는 미취업모를 지원할 뿐 아니라 자녀를 기르는 모든 부모와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우선은 각 시·군·구에 보육정보센터를 모두 설치하여 오프라인 서비스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고, 부모와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이러한 사업은 그 동안 중앙정부 예산 당국에서는 지방정부의 사업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1년에 처음으로 중앙정부가 시·군·구 보육정보센터 3곳의 설치 예산을 확보하였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의 재정적 상태를 반영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은 지원을 해줌으로써 지역간 격차가 완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수요자 중심 운영 및 내실화

이용시설은 대부분 일반 사업체와 같이 운영되는데, 이보다는 수요자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이 도모되어야 한다. 일하는 부모들의 요구를 감안하여 야간이나 휴일 운영을 고려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력의 배치 등의 여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부모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질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며, 홍보 등으로 부모들에게 정보가 전달될 수 있도록 능동적 활동이 필요하다.

다. 영아 양육수당 개선

양육수당 관련 정책은 유의할 사항이 많은 정책이다. 현재 지원 수준으로 확대할 경우 영아만 4.5% 어린이집 이용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보육료 수준으로 확대하면 영아 25%, 유아 11%가 어린이집 이용 중단효과가 있을 것으

로 추정되는데, 특히 소득수준별로 33.8%~13.5%로 나타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기관 이용 기회 박탈 가능성이 우려된다. 또한 과도한 지원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축소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으로의 정책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단기적으로는 이용 대상 소득기준은 보육비용 지원 수준과 동일하게 통일하고, 지원 금액은 영아보육에 대한 기본철학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결정한다. 영아는 부모권을 존중하여 어머니가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무게를 두고 또한 선택권을 존중한다면 지원 수준을 조정하여야 한다. 지원 수준이 어떠한든 이는 영아에 한정하는 제도로 한정하여 아동 보육기회 박탈 및 어머니 취업 중단을 촉진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보육과 분리하여 아동 보편적 수당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강구한다. 특히 유아로의 확대 시에는 근본적 정책 변화를 요한다. 이 경우에 보육서비스 비용 지원은 철저하게 이를 필요로 하는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선별적 접근이 되어야 한다.

라. 가정내 보육서비스의 개선

본 조사에서 미취학자녀 양육에는 조부모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 육아지원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비공식보육을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적응에 힘들까봐가 82.4%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두 번째로 한 사람이 여러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불안해서이다. 또한 취약보육의 가장 바람직한 유형으로도 아이 집에서 도우미가 보는 게 좋다는 비율이 야간보육 30.3%, 토요일 보육 21.1%, 휴일보육 23.4%이다.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가정내 보육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공공형 파견보육의 접근성과 이용가능성 제고

공공형 파견보육 사업자 수를 늘려서 접근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본 조사에서도 아이돌보미는 인지율에 비하여 이용률은 매우 낮았다. 아이돌보미 사업자는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심으로 실시되고 일부 비영리 기관이 포함되고 있으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수가 제한되어 있으므로 보다 적극적으로 비영리단체를 포함하는 정책으로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서비스도 예산 지원 중심 사업과 병행하여 다형인 일반 가정 파견사업을 확대하여 질 높은 인력의 파견을 희망하는 중산층의 요구에 부응한다.

2) 파견 보육인력 자격제 실시와 관리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의 자격기준, 교육, 관리에 대하여 방안을 마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먼저 자격 기준을 마련한다. 현재,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 인력에게는 적성과 인성, 육아경험이 학력이나 자격과 같은 객관적 요소에 비해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들도 베이비시터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성을 꼽고 있다. 그러므로 가정내 보육서비스 인력은 높은 자격 기준보다는 시설보육과 차별화된 보호 중심의 자격 기준이 제시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실습에 초점을 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는 영리사업체마다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교육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표준화된 교재도 없다. 가정내 보육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내용 구성이 필요하고, 여기서 실습과정이나 실무와 관련된 내용을 비중 있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자격자는 등록을 통해 관리하고, 아울러 정기 보수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자격등록 유효기간을 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3) 민간 사업 주체 연계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사업 수행 체계가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으로 서로 다른 목적으로 이분화되어 있는데, 나름대로 장점을 살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관리 부처는 하나로 하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체는 현행과 같이 비영리 부문과 영리 부문의 양 체계를 유지하도록 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가정내 양육지원서비스 제공자 소개업과 관련한 법으로 부가가치세법과 직업안정법이 있으나, 이는 세금 납부, 사업 신고, 물적·인적 기준 등에 대한 것으로 서비스 제공자를 관리하고 이들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영리 부문은 일반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에 맡기되, 시터 교육, 관리 등은 비영리부분과 협력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단체와 같은 조직을 통하는 방안이 가장 적절하다.

4) 파견보육 지침 제시

가정내 보육서비스 이용이나 파견에 대한 지침서를 적성하여 영리 및 비영리 기관에서 활용하도록 지원한다. 파견보육은 보육이 제공되는 상황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알정한 공통기준을 마련하고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준수하여야 할 사항, 아동과 파견자의 안전 보장 관련 조건 등을 포함하는 지침을 만들어서 파견보육 제공자, 관련 사업자, 부모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는 파견보육 제공자가 전문 직업인으로 경력을 쌓아나가게 하고 질 높은 서비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영리·영리 부문 모두 같이 사후관리 체계의 개발과 정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가정내 보육서비스 비용의 지원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또는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부모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뿐 아니라 가정내 보육서비스를 받는 아동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 등 소요 비용에 대한 지원을 고려한다.

조부모에 의한 가정내 양육지원도 아동 모의 취업과 조부모의 기여가 인정되면 보육비용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조사에서 약 30% 정도의 영유아 어머니들은 일·가정 양립을 위하여 조부모로부터 양육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자녀가 이플 때와 토요일 보육에 각각 37.4%, 47.1%가 조부모에게 자녀를 맡기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조부모 보육지원 은 어머니 경제활동 지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라. 세제지원의 개선

현재 우리나라는 보육시설, 유치원 및 미술학원, 태권도 학원 등에 다니는 아동의 보육·교육 비용에 대해서는 연 300만원까지 조세 적용 소득을 공제하는 세제 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그 지원방식이 소득공제로 실질적으로 많은 혜택을 주는 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된다.

그렇지만 현금 지원은 소득공제뿐이므로, 보육시설이나 유치원 이외에 이웃 탁아모, 조부모 등 비공식분야의 보육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취업을 위한 자녀 양육임이 증명되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모색을 검토하여야 한다.

마. 육아품앗이 활동 확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한 부모 육아품앗이 활동은 저출산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고, 일부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자생적으로는 활성화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기관의 개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공간 제공, 전담인력이나 어느 정도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한다.

1) 지원사업으로 정립

육아품앗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체계적인 대응 능력이 요구된다. 즉 육아품앗이 사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부모들의 다양하고 산발적인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대상의 우선 순위, 지원 범위와 지원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는 등 체계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울러 육아품앗이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실제 어떤 방식으로 참여할 지에 대한 정보가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해당 사업의 홍보를 강화한다.

무엇보다 사업 성격 및 목표를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비용 절감 차원에서 도입된 사업일 경우 사업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품앗이 사업은 우리 지역사회의 특성상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최소 1~2년이 소요되므로 이 기간 동안 비용 지원, 인력 지원, 공간 지원, 프로그램 지원 등이 필요하다. 첫째, 대상 범위와 수준에 대한 일관된 기준에 의한 비용 지원 요구된다. 이는 사업의 주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의 문제와 직결된다. 둘째, 관리 인력으로는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 관리 담당자, 봉사자, 강사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모의 사업 관리자와 이들 인력에 대한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육아 품앗이 모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용 부모들의 모임 장소로서 공간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데, 해당 지역 여건에 따라 공간 지원 가능 여부가 차별적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프로그램 지원의 경우는 획일화된 매뉴얼 제공으로는 한계를 지니므로 다양한 접근이 요구된다. 즉 모임의 성격에 따라 수요가 매우 다양하므로 이 같은 수요에 맞는 유연한 적용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전달체계 다양화

육아품앗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달체계의 다양화를 모색해볼 수 있다. 현재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업을 주도하고 있으나, 접근성이 높은 다양한 공공기관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면 부모들의 관심과 참여가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이용 부모들의 주된 참여 계기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 이용 경험이므로 이외의 전달체계를 구축하여 참여 의지에 부응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외의 지역사회 가족지원 프로그램과의 체계적인 연계를 통해 사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연계를 통해 공간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2. 아동 보육·교육기관 운영 개선

가. 보육시설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 도입

1) 보육의 필요성과 목적 재편성

본 조사 결과는 보육서비스 제공 목적에 대한 기본적 성찰과 이에 따른 체제 개편의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자녀가 현재 기관을 이용하는 이유로 사회성 발달이 40.4%, 전인적 발달이 27.8%이고,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는 17.4%이다. 영아의 경우는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가 25.1%로 높기는 하지만 여전히 아동 발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취업 중인 모도 취업으로 인해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는 라는 응답은 45.6% 정도이다. 또한 보육 및 교육기관 이용으로 가정이나 부모에게 도움이 된 부분을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3점 이상의 긍정적인 평가를 보인 항목은 업무 능력 향상, 양육스트레스 해소, 가족 갈등 완화, 육아기술·지식 확대, 여가 취미 활동이고, 반면 직장에서의 안정감이나 취업 및 구직 관련 도움, 학업 및 취업 훈련은 상대적으로 그 효과를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현행 보육서비스가 어머니의 노동시장 진입이나 취업상태 유지 등을 위한 노동정책과 별개로 유리되고 있음을 암시한다. 영아와 유아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 경향은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보육은 보편적인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이면서 동시에 선별성을 반영하여 노동정책과의 관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 방향을 정립해 가는 것이 적절하다. 외국처럼 근로를 기준으로 비용지원 시간에 차이를 두는 방안 도입을 검토할 시점이다.

2) 운영시간(일)에 대한 개념 재정립

보편적인 부모의 자녀양육 지원정책이면서 동시에 노동정책과의 관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육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현재 보육정책이 부모 자녀양육 지원정책이고 어머니의 근로활동과 유리되고 있음에도, 우리의 보육은 여전히 일하는 여성을 위한 12시간 보육에 맞추어져 있어서 이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이용 시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제시된 최소한의 대안은 이용시간을 이원화한다는 것이다. 여성의 취업이 상근 종일제보다는 비정규나 시간제 형태의 부정형적인 취업이 많고, 또한 집에 조부모 등 다른 가족이 있을 경우가 있으므로 취업모라고 하여도 모두 자녀의 종일제를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 입장에서 종일 보육시설에 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용 이유에서도 대리 양육 비율은 연령이 많아지면서 비율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현재 인천 남동구에서 부모 선택에 의하여 3시간 귀가 기준의 단축형반을 두는 이용시간 이원화 시범사업을 소규모로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여 확대하고 장기적으로는 모의 취업여부 등 필요성에 의하여 연장되는 이용시간에 따른 지원 차등화를 고려해야 한다.

향후, 이용시간 다양화 이외에 어린이집 평일 운영시간 자체를 현실화하고, 6시30분 이후로 시간연장 개념을 강화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또한 어린이집 등 기관 이용 행태는 토요일 보육에 대한 정책의 변화 필요성을 시사하였다. 아동이 월~금 매일 이용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높은 95.5%이고 토요일 이용은 매주 1.1%, 격주 1.9%이다. 따라서 모든 어린이집이 모두 토요일에 문을 여는 것이 비효율적 운영이므로 별도의 효율적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나타냈다. 즉, 평일보육을 월~금으로 설정하고 토요일보육을 평일보육보다는 휴일보육 범주에 넣는 방안이 현실적이다.

나. 취약보육의 효율적 추진

취업한 어린이집 이용 부모들은 아이가 아플 때 기관의 돌봄 지원이 어려운 점, 기관에서 부모 역할을 요구할 때, 그리고 늦은 퇴근 또는 예상치 못한 야간 근무로 인한 저녁 시간 돌봄에 어려움을 겪는다. 정책대안은 다음과 같다.

1) 시간연장보육 보육

조사에서 취약보육 서비스의 접근성 즉 이용 가능성이 높거나 어느 정도 가능하다는 비율은 시간제보육 58.2%, 토요일 보육이 50.1%이며 오전 및 야간 연장보육이 각각 43.3%, 37.8%이며 24시간과 휴일보육은 6.8%, 7.6%로 10% 미만이다. 수요를 고려해 보면, 취약보육도 어느 정도는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시간연장형보육은 현재 희망하는 모든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 방식에서 탈피하여 국공립보육시설 등을 거점형 시설로 육성하여 일정 규모를 정하여 이들 시설을 중심으로 역량은 모으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이는 인건비 등 운영비용, 프로그램 운영 등 서비스의 질적 수준, 아동과 교사의 정서면에서도 바람직하다. 아동수가 일정 규모가 되어야 연령별 반 편성 및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다. 연령이 다른 복수의 아동 보육은 교사에게도 큰 부담을 준다. 거점형 어린이집을 일정 아동 인구 규모마다 지역별로 균형 배치할 경우 접근성 문제도 해소된다.

시간연장형 보육과 관련하여 몇 가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7시 30분부터 적용되는 시간연장보육은 현실화를 필요로 한다. 연장보육 시작시간을 6시반 정도로 한 시간 정도 단축하는 것이 적절하다. 둘째, 현재 교사 연장근무 수당 제도는 점차 개선하여 단시간 보육교사라도 상시 교사를 배치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 연장근무가 제도화되는 것은 부적절한 조치이다.

본 조사에서 요구가 크게 부각되지는 않았으나 시간제 보육도 일반 보육시설에 별도반을 두거나 거점형 시설, 특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현재 YMCA에서 실시하는 '아가야 열린보육센터'이나 서울시 보육정보센터의 시간제반과 같이 별도의 공간을 갖춘 시간제 전문 보육시설을 생각할 수 있다.

2) 아픈 아동 보육 지원

취업모의 경우 자녀가 아프게 되면 일에 많은 지장을 받게 되는데, 현재 보육시설의 인력 구조로 보육시설에서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취업모의 아픈 아동을 보살필 수 있는 별도의 체계 마련이 검토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기존 일부 보육시설에서 별도의 설비와 간호사 등 전문인력을 갖추고 아픈 아동을 돌볼 수 있도록 하거나, 아니면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여 병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⁴⁰⁾

다. 지원과 질적 수준 연계

보육서비스 수준이나 최근의 서비스 수준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와 시설장이 많은 차이를 나타냈고, 부모들의 평가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과 부모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를 위하여 재정지원이 평가인증 등 수단을 통하여 서비스 질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 높은 보육시설, 유치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질적 수준 개선 노력은 필요하다. 일반적인 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82.2%가 충분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보낼만한 어린이집 여부에 대해서는 1~2곳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6.2%로 가장 높다. 유치원의 접근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설이 충분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54.8%이며, 보낼만한 유치원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54.4%이다.

이에, 첫째, 재정 지원이 교사 인건비에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정부 지원의 정도를 정부 인건비 지원 시설과 비교하여 그 정도를 잘 따져서 거기에 상응하는 금액이 교사 급여로 책정되도록 연계하여 지도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로서 보육시설에 대한 가장 강력한 질적 수준 제고 수단인 평가인증제도와 정부지원은 하루 빨리 연계되어야 한다. 일정 조건을 두어 이에 미달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제도를 도입한다. 서비스 기준을 평가인증과 영아 기본보조금과 차등보육료와도 연계시켜야 한다.

40)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별도의 보육시설을 설치하여 병원에 위탁하여 운영함.

라. 정보공개 및 홍보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 도입으로 어린이집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72.2%가 그렇다고 하였으나, 평가인증 여부를 모르는 경우는 18.3%,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르는 경우는 2.0%로 조사되었다. 어린이집 정보공시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유치원은 학부모들에게 자녀교육에 관한 유용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2008년도부터 시행 중인 초·중·고·특수학교의 정보공시를 2012년 4월 1일부터 유치원으로 확대·시행한다. 지난 2011년 12월 31일자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유치원에서도 정보공시가 의무화 된 것이다.⁴¹⁾

또한 보육료·교육비 지원 정책 등 정부 정책도 제대로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각 지원정책에 대하여 잘 안다는 비율은 보육료·교육비 지원은 79.1%가 잘 앎이라고 응답하고, 19.2%가 대략 앎, 1.6%가 잘 모름이라고 응답하여 본 정책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98.3%로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영아 민간가정어린이집 기본보육료 지원정책은 58.4%가 잘 앎 안다고 한 응답한 비율이 50%이고,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인지율은 61.1%이나 잘 앎은 39.9%이다 어린이집 이용과 무관한 양육수당도 인지율은 28.8%, 14.0% 잘 앎, 보육료, 학원비 공제의 경우 인지율 79.3%이나 잘 앎은 57.1%이다.

마. 추가비용 부담 최소화

소득아휘 70%에게 보육료·교육비를 전액지원함에도 불구하고 부모 체감도가 낮은 이유는 추가부담에 있다. 육아지원 정책에 대해서는 17.1%가 만족한다는 응답이고, 42.1%가 불만이다. 이러한 이유는 여러 이유가 있겠으나 전액지원 확대에도 불구하고 특별활동 등으로 여전히 부모 부담 때문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중기적으로 보육료·교육비 지원단가를 조정하고, 누리과정 실시와 더불어 충실한 표준보육과정의 운영이 가능하도록

41) 시행될 공시정보는 유치원 규칙·시설 등 기본현황, 유아 및 유치원 교원에 관한 사항, 유치원 교육과정 및 종일제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유치원 원비 및 예·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유치원의 급식·보건관리·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유아교육법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등 총 7개 항목임.

교사 지원 등을 강화하여 부모와 기관의 특별활동 요구를 줄여나가야 한다.

3. 근로자 자녀양육 지원 활성화

취업 부모 지원의 필요성은 여전하다. 자녀의 임신과 출산 후 1년 동안 출산이나 자녀양육을 이유로 일을 중단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첫째 25.4%, 둘째 12.6%, 셋째 10.9%가 중단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중단사유는 자녀 출생 순위에 관계없이 아이를 맡길 곳이 마땅치 않아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다. 직장과 육아 병행에 대한 자신이 없어서라는 응답은 셋째 이상에게서 가장 많아 자녀 수가 많아질 수록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의 근로자 양육지원 방안은 탄력적 근무, 육아휴직, 직장의 보육 지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가. 선택적·탄력적 근무 등 확산

사업체에서 일과 자녀 양육 병행시 탄력적 근무형태로의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조사 결과, 자녀 양육문제로 재택근무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84.5%, 근무시간 조정의 어려움이 58.1%로 나타나 취업모가 일과 자녀 양육 병행시 탄력적 근무형태로의 조정이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OECD 국가들처럼 자녀를 둔 부모들이 다양한 형태의 근무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이를 허용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가정친화 기업 등 탄력적 근무제도의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보급하여 근무형태의 다양화와 유연성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이 제도는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여성의 근로 조건을 악화시키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나. 육아휴직의 활성화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직장에서의 풍토 개선, 소득대체 수준 확대가 요구된다. 이번 조사에서 휴직 사업체내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사용한 이유에 대해선 37.2%가 눈치가 보여서라고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으로 돈을 벌려고, 동료들에게 업무 부담이 각각 15.9%, 경력관리 때문에 5.3% 순으로

응답하였다.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로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이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또한 직장 내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효과적 제도에 대한 조사에서도 보육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설치와 더불어 육아휴직이 제시되었다.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하고 육아휴직이 동료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하다.

1) 육아휴직 대상

육아휴직에서는 출산전후휴가와 마찬가지로 가장 문제가 되는 대상은 비정규직과 자영업자 등이다. 특히 여성 취업의 특성 상 육아휴직 사용이 허용되는 대상은 한정적이다. 육아휴직 급여 지급요건 피보험 단위 기간 180이상은 완화하여 방안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출산휴가 급여도 마찬가지이다.

2) 육아휴직 소득대체율

본 조사에서도 제시된 것처럼 육아휴직이 가능한데도 전혀 또는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는 수당이 적기 때문인 경우도 많다. 육아휴직급여가 2011년부터 통상급여의 40%로 최소 50만원, 최고 100만원까지 확대되었으나 OECD들 다른 나라들의 기준에는 아직 못 미친다.

3) 남성 참여

남성의 육아휴직도 육아휴직 대상이 배우자로 확대되어 있으나 아직 남자휴직자는 소수이다. 이는 아직 육아를 여성의 책임으로 보는 사회적, 일반적 분위기 때문인데 자녀양육을 남녀공동 책임으로 도모하기 위해서는 남녀가 육아휴직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육아휴직기간의 부모 할당제와 같은 제도를 통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또한 이를 실행하는 사업체에 대한 우대 등의 지원 방안도 필요하다.

4) 고용주 지원

현재 월 2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 장려금과 현재 월 20만원(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월 30만원) 수준인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원 수준을 현실화한다. 동료에게 부담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체 인력의 활용이 중요하다.

라. 직장의 보육지원 확대

보육지원정책 중 자녀 출산 결정에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치는 정책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66.7%로 산모 휴게실 및 수유편의시설 51.6%, 보육비용 지원은 47%보다 높다. 한편, 직장 내 근로자의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로는 보육비 지원이 29.8%에 이어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25.9%로 높은 비율로 효과적인 제도라고 응답하였다.

1) 어린이집 설치, 운영

이처럼 취업모들이 가장 많이 희망하는 보육지원제도가 직장보육시설의 설치이다. 그러나 직장보육 지원 의무사업체에서의 시설 설치 비율은 37.4%이다. 정부는 설치의무 미이행 기업에 대한 명단 공표 법률 개정안이 7월에 시행됨에 따라, 상반기에는 설치를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명단을 공표한다는 계획인데, 의무 사업장에서 노사 협력 등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직장보육 의무를 이행하도록 유도하여야 하고, 직장에서의 보육지원, 직장에서 담당하여야 할 보육의 비중과 역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의무이행 방법이 다양하므로 어린이집 설치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

현재 직장보육 활성화로 기업체 밀집지역 등에 기업체가 부지를 제공하고 국공립보육시설로 설치, 운영하는 방안 제안한다. 고용주는 설치도 어렵지만 이보다 운영을 위하여 지속적인 지원 필요 때문에 설치를 어려워한다. 따라서 설치 후에 무상임대 등의 형태로 국공립화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직장보육 시설은 공공성이 강한 보육시설이다. 스웨덴 등 외국의 경우 기업이나 부모협동 등 비영리 민간이 설치한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국가가 설치한 보육시설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또한, 직장보육시설이 이용 아동 부모의 고용보험 미가입 등의 이유로 고용보험기금에 의한 인건비 지원을 못 받는 경우 국공립보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인건비 지원을 부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2) 보육비용 지원

시설 설치 이외에 수당 지원 등 의무 이행률은 68.1%에 머물고 있는데, 모든 대상 사업장에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여력

과 의지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영유아 수가 소수이거나 사업장 소재지 특성 상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는 인근 보육시설에의 위탁을 유도하거나 보육수당 지급을 적극 권장한다.

일부 직장보육 미이행 사업장에서 직장보육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를 보면, 보육 대상 아동이 소수이기 때문이라는 응답, 사업장의 외곽이나 아동 보육에 적절하지 않은 장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응답 등으로 미설치 사유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

4. 맺는말

본 보고서는 출산수준 제고와 일·가정 양립 관점에서 영유아를 둔 부모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양육지원 제도와 국내외 자녀양육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시설보육, 가정내 양육지원, 근로자를 위한 양육지원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대안을 제시하였다.

일과 가정 양립이 아니면 출산 자체가 어려워진 사회에서 자녀 양육지원은 여성취업률과 출산력이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도구이다. 자녀양육환경의 개선은 결국 여성이 직장에서의 일뿐 아니라 가정에서의 출산 및 자녀양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1990년대부터 자녀 양육지원정책을 추진하여 왔으나 보육정책에 중점을 두었고 이외의 정책은 이제 시작 단계에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볼 때 포괄적 통합 정책을 추진한 국가들이 그렇지 않은 국가들에 비하여 여성취업률이나 출산율에서 모두 성공을 거두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보육부분은 사실 그 동안의 시설보육 중심의 보육정책에 주력하여 왔다. 그러나 저출산 대책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혈연, 비혈연 등 개인에 의한 가정내 양육지원, 이용시설 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고,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부모에 대한 수당 등 보편적 지원 등에 대한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다. 근로자를 위한 다양하고도 탄력적인 지원도 핵심적 양육지원 정책이다. 여성근로자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사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대상 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 또한 기업주를 지원하여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 휴가 급여 수준을 높여서 제도 사용의 장애 요인을 줄여야 할 것이며, 자녀양육이 부모의 공동책임임을 분명히 하고, 영아기에 시간단축근무제도 등 탄력 근무제로 자녀를 돌보면서 취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육아 휴직자는 일정 기간이 끝나면 직장으로 아무런 불이익 없이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을 단기 및 중장기 과제로 구분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양육수당은 확대가 예상되는 과제이지만, 보육·교육 시간 및 비용의 이원화, 가정내 보육 인력관리 등은 아직 정책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서 구체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도 또한 꾸준히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은 아직 제시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정책은 적지 않은 예산의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하는데, 일과 가정 양립이 보편적 가치인 저출산 사회에서 자녀 양육지원 정책은 현재와 미래의 성장동력 확보의 기초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강문희·김매희·이경희·정정옥(2000). 야간 및 24시간보육 실태 및 요구도 조사 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22, 27-56.
- 교육과학기술부(2010). 유치원 현황.
- 권미량(2006). 직장보육시설의 의미에 관한 문화기술적 사례 연구 - 취업모의 삶을 중심으로. 아동학회지, 27(1), 31-44.
- 김교성·김경희(2003). 직장보육시설과 일반보육시설 이용하는 여성 근로자의 보육의 질에 대한 평가와 만족도 및 격리불안정도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영유아보육학, 33, 1-22.
-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 연구: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전문직, 사무직 및 생산직 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154, 47-58.
- 김유경·서문희·임유경(2003). 직장보육시설의 규제순응도 제고 및 운영개선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주미(1995). 보육서비스가 취업모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진이(2001). 직장보육서비스의 개선방안. 한국영유아보육학, 26, 113-136.
- 김태홍·홍승아·주재선·이강성·이상은·조준모(2010). 근무유형별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 및 분석 연구. 고용노동부.
- 김현주(2004). 직장보육시설 이용 만족도가 취업모의 직무성과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 국공립 직장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선(1997). 성차별의식이 여성의 직업의식에 미치는 영향: 금융사무직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김혜원(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방안 연구. 노동부·한국노동연구원.
- 김혜원·김경희·이주희·최은영(2007).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한국노동연구원.

- 대한민국정부(2006).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대한민국정부(2010).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민희철·우석진·김현숙·김혜원·류덕현(2007). 저출산 극복 및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가족친화정책. 한국조세연구원.
- 박수미(2008). 둘째 출산 계획의 결정요인과 가족내 성 형평성. 한국인구학, 31(1), 55-73.
- 박재규(2007). 취업여성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 경기도의 사례. 경기가족·여성, 2, 126-154.
- 백선희·송다영·이성희(2008). 가정 내 보육지원 제도화 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서울신학대학교 산학협력단.
- 보건복지부(2010). 보육통계.
- 보건복지부(2011). 보육통계.
- 서문희·김은설·장혜경·박수연(2008). 일하는 여성 보육지원 강화 방안. 노동부·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김은설·최진·안재진·최혜선·김유경 외(2009). 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 보고서. 보건복지가족부·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유해미·이세원(2011). 저소득 가구 보육서비스 사업 효과 연구. 한국여성재단·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임유경·김명순·윤선영·이옥·정미라 외(2002). 영아 보육활성화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임윤옥·이세원(2008).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한국여성노동사회·육아정책개발센터.
- 서문희·조애저·김유경·최은영·박지혜(2005). 2004년 전국 보육·교육 이용 및 육구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서문희·최윤경·김문정(2011). 2011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최혜선(2010). 2010 보육정책의 성과와 과제. 육아정책연구소.
- 서문희·홍승아·박소연·권영인(2007). 취약보육 대안 마련을 위한 저소득가정 영유아보육 실태조사 보고. 한국여성노동사회·육아정책개발센터.

- 서원경·최석란(2005). 보육교사와 영아의 애착 증진을 위한 야간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영유아보육학, 42, 253-277.
- 석종석(2007). 독일 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에 관한 법률 소개. 한국법제연구원.
- 성영혜·손지미(1999). 직장보육의 부모양육 보충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1), 61-78.
- 성지미·김우영·어수봉·안주엽(2005). 여성 친화적 사회적 기업 설치 및 양질의 단시간 일자리에 관한 연구. 노동부.
- 손지미(1991). 우리나라 직장탁아사업의 효과에 관한 조사연구: 경영주 및 근로자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기숙·김희진·박은혜(2003). 직장보육시설 활성화 방안. 이화교육총서, 2003(6), 1-106.
- 이삼식(2006). 저출산 원인구조와 정책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11, 5-17.
- 이삼식·유계숙·윤홍식·최효진(2008). 저출산 대응 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신인철·조남훈·김희경·정운선·최은영 외(2005). 저출산 원인 및 종합대책 연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2007). 출산 및 양육 친화적 가족문화 및 직장문화 조성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정경희 외(2010). 저출산 원인과 파급효과 및 정책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삼식·최효진·오영희·서문희·박세경·도세록(2009). 전국결혼 및 출산동향조사 보고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이옥(2004). 영아보육 대책으로서의 가정보육시설 활용방안 연구. 아동권리연구, 8(2), 275-298.
- 임양미(2011). 경기도 가정보육교사제도 성과분석. 경기도여성가족연구원.
- 임재택(1993). 우리나라 직장보육시설의 운영 실태와 효과의 분석. 유아교육논총, 3, 5-39.

- 장혜경(2007). 돌봄노동에 대한 이해와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장혜경(2007). 일·가족 양립 정책의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혜경·김영란·김필숙(2008). 돌봄노동의 분야별 제도화 방안 연구(I)(A Study for Systematising Plans of Carework in Childcare within Families)(가족내 아동돌봄도우미를 중심으로). 한국여성개발원.
- 정민자·김영주·박초아·이진숙·홍금자(2006).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 최선자·서문희·정민자(2010). 자녀돌봄 지원법의 제정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 최숙희·김정우(2006). 획기적 출산을 제고 방안. Issue Paper. 삼성경제연구소.
- 최은영(2006). 취업 여성의 일·가족 양립지원 정책방향. 보건복지포럼, 111, 18-32.
- 통계청(2011). 경제활동인구조사.
- 통계청(2011). 통계포털.
- 하정희(2001). 기혼 직업여성의 야간보육 필요성에 관한 조사 연구. 중앙대학교 국제여성연구소 연구논총, 10, 305-324.
- 한유미·곽혜경(2004). 현대 한국사회의 출산율저하와 여성사회참여. 한국생활과학회지, 13(1), 29-40.
- 홍승아(2010). 맞벌이가족의 일·가족양립 지원. 복지동향, 137, 18-21.
- Adserà, A. (2004). Changing fertility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The impact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1), 17-43.
- Boca, D. D. (2002). *Low fertility and labour force participation of Italian women: Evidence and interpretations* (OECD Labour Market and Social Policy-Occasional Papers No. 61). Retrieved from OECD website: <http://dx.doi.org/10.1787/263482758546>
- Chesnais, J. C. (2005). *Population movement and policy in France*.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 Centre des Liaisons Européennes et Internationales de Sécurité Sociale. (2011). Schedule 1: Summary of family benefits. provided under Section L511-1 of The French Social Security Code as of 1st February 2011.

Retrieved from http://www.cleiss.fr/docs/regimes/regime_france/an_a1.html

Cleveland G., Gunderson, M., & Hyatt, D. (1996). Child care costs and the employment decision of women: Canadian evidence. *Canadian Journal of Economics*, 29(1), 132-151.

Cleveland G., & Krashinsky, M. (2003, January). *Financing ECEC Services in OECD Countries*. Paper presented at an OECD Early Child Care Education and Care Workshop in Rotterdam, Netherlands.

Caisse Nationale des Allocations Familiales (2011). *Vos presentation 2011*

D'Addio, A. C., & D'Ercole, M. M. (2005). *Trends and determinants of fertility trends: The role of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7), Retrieved from OECD website: <http://www.oecd.org/dataoecd/7/33/35304751.pdf>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2009). *Childcare and early years survey of parents 2008*. Research Report DCSF-RR136. National Centre for Social Research

Der Paritatische Berlin (2010). *Rechtsvorschriften und Vereinbarungen*

European Commission (2011). *Organisation of the education system in Germany 2009/2010*

Gauthier, A. H., &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 295-306.

Guttaman, M. S. (1994). *Common Sense for Uncommon Times*. COS Books.

Hilgeman, C., & Butts, C. T. (2009).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 welfare regime paradox. *Social Science Research*, 38, 103-117.

HM Revenue & Customs. (2006). *Choice for parents, the best start for children: A ten year strategy for childcare*.

HM Revenue & Customs. (2011). *Tax credit technical manual*. Retrieved from <http://www.hmrc.gov.uk/calcs/ccin.htm>

Immervoll, H., & Barber, D. (2005). *Can parents afford to work?: Child care*

- costs, tax-Benefit policies and work incentives*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 No. 31). Retrieved from <http://dx.doi.org/10.1787/312744260654>
- Kalwij, A. (2010). The impact of family policy expenditures on fertility in Western Europe. *Demography*, 47(2), 503-519.
- Laroque, G., & Salanie, B. (2004). *Fertility and Financial Incentives in France*. CEPR Discussion paper, DP4064.
- Luci, A., & Thévenon, O. (2011). *Does Economic Development Drive the Fertility Rebound in OECD Countries?*, INED Working Paper, No. 167, retrieved from www.ined.fr/fichier/t_publication/1514/publi_pdf1_dt_167.pdf.
- Meyer, M. K., & Gornick, J. C. (2003). Public or private responsibility?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inequality, and the Welfare States. *Journal of Comparative Family Studies*, 34(3), 379-411.
- Meyer, M. K., Gornick, J. C., & Ross, K. E. (1999). Public childcare, parental leave, and employment. In D. Sainsbury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 Press.
- Korpi, B. M. (2007). The politics of preschool: Intentions and decisions underlying the emergence and growth of the Swedish pre-school.
- OECD(2003). OECD Employment Outlook
- OECD(2011a). Doing Better for families.
- OECD(2011b). OECD Employment Outlook.
- OECD(2011c). OECD Family Database.
- Ruhm, C. J. & Teague, J. L.(1998). Parental leave policies in Europe and North America. In Francine D. Blau and Ronald G. Ehrenberg (Eds.), *Gender and Family Issues in the Workplace* (pp. 133-156).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ainsbury, D. (Ed.) (1999).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 Sleeboos, J. E. (2003). *Low fertility rate in OECD countries: Facts and policy*

responses. Paris: OECD.

Torr, B. M. & Short, S. E.(2004). Second births and the second shift: A research note on gender equity and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0(1), 109-130.

Tougas, J. (2002). La restructuration des services éducatifs et de garde à l'enfance au Québec: Les cinq premières années. Toronto: Childcare Resource and Research Unit, University of Toronto.

Whittington, L. A. (1992). Taxes and the family: The impact of the tax exemption for dependents on marital fertility. *Demography*, 29(2), 215-226.

[웹사이트]

<http://www.mfa.gouv.qc.ca/fr/publication/Documents>

<http://www.spiegel.de/international/germany>

<http://ffm.mogef.go.kr/data/bestPracticesList.do>

부 록

부록 1. 부표

부록 2. 부모 조사표

부록 3. 취업모 심층면접 질문지

부록 4.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조사표

부록 1. 부표

〈부표 II-1-1〉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와 놀아주기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1달 1~2회	1주 1~2회	1주 3~4회	매일	계(수)	$\chi^2(df)$
전체	2.0	11.2	34.5	22.5	29.8	100.0(1,946)	
지역							
대도시	2.0	10.5	33.8	21.7	32.0	100.0(715)	8.0(8)
중소도시	2.3	12.6	35.2	21.7	28.2	100.0(826)	
읍·면	1.5	9.6	34.1	25.7	29.1	100.0(40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4.2	11.7	20.8	22.5	40.8	100.0(120)	50.3(28)**
150~199만원	3.7	12.9	28.6	18.9	35.9	100.0(217)	
200~249만원	1.7	11.8	31.9	24.1	30.5	100.0(407)	
250~299만원	2.6	10.4	38.9	20.7	27.4	100.0(347)	
300~349만원	0.9	10.6	33.9	26.1	28.4	100.0(348)	
350~399만원	0.7	12.4	43.1	19.0	24.8	100.0(153)	
400~449만원	3.4	12.2	39.9	20.9	23.6	100.0(148)	
450만원 이상	0.5	8.4	36.9	24.1	30.0	100.0(2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II-1-2〉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 학습 지도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1달 1~2회	1주 1~2회	1주 3~4회	매일	계(수)	$\chi^2(df)$
전체	33.0	22.4	24.3	10.5	9.8	100.0(1,946)	
지역							
대도시	37.9	18.0	22.9	12.0	9.1	100.0(715)	24.6(8)**
중소도시	29.8	25.3	24.3	10.5	10.0	100.0(826)	
읍·면	31.1	24.2	26.4	7.7	10.6	100.0(40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36.7	15.0	20.8	12.5	15.0	100.0(120)	33.8(28)
150~199만원	39.2	22.1	20.7	8.8	9.2	100.0(217)	
200~249만원	33.9	21.6	23.8	11.3	9.3	100.0(407)	
250~299만원	30.0	25.1	27.4	8.1	9.5	100.0(347)	
300~349만원	31.3	23.9	22.1	14.1	8.6	100.0(348)	
350~399만원	31.4	25.5	26.8	9.8	6.5	100.0(153)	
400~449만원	34.5	19.6	26.4	10.8	8.8	100.0(148)	
450만원 이상	31.5	21.2	25.1	7.9	14.3	100.0(2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II-1-3〉 남편의 양육 참여: 자녀 식사 및 옷입기 도와주기

단위: %(명)

구분	전혀 안함	1달 1~2회	1주 1~2회	1주 3~4회	매일	계(수)	$\chi^2(df)$
전체	12.9	13.9	29.5	21.5	22.1	100.0(1,946)	
지역							
대도시	18.6	12.6	26.2	21.0	21.7	100.0(715)	39.8(8)***
중소도시	9.3	15.9	31.1	22.5	21.2	100.0(826)	
읍·면	10.1	12.1	32.3	20.5	24.9	100.0(405)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7.5	13.3	24.2	19.2	25.8	100.0(120)	33.6(28)
150~199만원	14.7	12.9	25.8	19.8	26.7	100.0(217)	
200~249만원	11.5	17.0	27.3	24.1	20.1	100.0(407)	
250~299만원	10.7	13.3	35.7	21.0	19.3	100.0(347)	
300~349만원	12.9	14.4	28.7	21.8	22.1	100.0(348)	
350~399만원	12.4	11.8	33.3	23.5	19.0	100.0(153)	
400~449만원	16.2	14.2	24.3	23.6	21.6	100.0(148)	
450만원 이상	12.3	10.3	33.0	17.2	27.1	100.0(2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V-2-1〉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시간제보육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chi^2(df)$
전체	17.9	40.3	27.1	14.7	100.0(2,003)	
지역						
대도시	18.0	44.9	27.0	10.2	100.0(738)	26.2(6)***
중소도시	18.2	37.3	26.0	18.5	100.0(850)	
읍·면	16.9	38.6	29.6	14.9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17.3	41.8	27.0	13.9	100.0(619)	-
휴직중	12.9	35.5	35.5	16.1	100.0(31)	
미취업	18.4	39.7	26.8	15.1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V-2-2〉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야간보육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chi^2(df)$
전체	7.2	30.6	35.3	26.9	100.0(2,003)	
지역						
대도시	8.7	36.2	33.7	21.4	100.0(738)	50.2(6) ***
중소도시	5.1	28.1	33.6	33.2	100.0(850)	
읍·면	9.2	25.5	41.4	23.9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8.6	34.6	31.9	24.9	100.0(618)	13.5(6)*
휴직중	12.9	25.8	35.5	25.8	100.0(31)	
미취업	6.4	28.8	36.7	28.1	100.0(1,339)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12.7	31.3	38.0	18.0	100.0(150)	34.8(21)*
150~199만원	9.1	30.3	34.6	26.0	100.0(231)	
200~249만원	6.1	32.8	35.0	26.2	100.0(412)	
250~299만원	8.3	28.3	39.7	23.7	100.0(350)	
300~349만원	7.7	34.0	30.0	28.3	100.0(350)	
350~399만원	5.8	27.6	37.8	28.8	100.0(156)	
400~449만원	3.4	27.0	35.1	34.5	100.0(148)	
450만원 이상	4.9	28.6	34.0	32.5	100.0(2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표 V-2-3〉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오전 연장보육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chi^2(df)$
전체	8.8	35.5	33.6	22.1	100.0(2,003)	
지역						
대도시	10.8	37.3	34.4	17.5	100.0(738)	40.5(6) ***
중소도시	6.0	34.0	31.9	28.1	100.0(850)	
읍·면	11.1	35.4	35.7	17.8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9.7	34.1	34.6	21.6	100.0(619)	13.8(6)*
휴직중	6.5	51.6	22.6	19.4	100.0(31)	
미취업	8.4	35.8	33.3	22.5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5$, *** $p < .001$

〈부표 V-2-4〉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24시간보육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chi^2(df)$
전체	1.4	5.4	23.4	69.7	100.0(2,003)	
지역						
대도시	1.2	4.5	14.9	79.4	100.0(738)	71.6(6)***
중소도시	2.1	6.9	30.2	60.7	100.0(850)	
읍·면	0.5	4.1	24.3	71.1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1	6.0	23.1	68.8	100.0(618)	-
휴직중	-	16.1	22.6	61.3	100.0(31)	
미취업	1.2	5.0	23.2	70.6	100.0(1,339)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0.7	4.7	20.0	74.7	100.0(150)	46.3(21)**
150~199만원	0.4	1.7	14.7	83.1	100.0(231)	
200~249만원	1.2	7.3	26.0	65.5	100.0(412)	
250~299만원	1.7	7.4	25.1	65.7	100.0(350)	
300~349만원	2.3	5.4	23.7	68.6	100.0(350)	
350~399만원	2.6	2.6	28.8	66.0	100.0(156)	
400~449만원	0.7	4.7	29.7	64.9	100.0(148)	
450만원 이상	1.5	5.9	18.2	74.4	100.0(203)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 $p < .001$

〈부표 V-2-5〉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토요일보육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chi^2(df)$
전체	10.9	39.2	27.8	22.2	100.0(2,003)	
지역						
대도시	12.7	39.7	27.5	20.1	100.0(738)	40.9(6)***
중소도시	7.2	38.4	27.2	27.3	100.0(850)	
읍·면	15.2	40.0	29.4	15.4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13.2	41.5	24.6	20.7	100.0(619)	-
휴직중	6.5	38.7	25.8	29.0	100.0(31)	
미취업	10.0	38.2	29.1	22.6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V-2-6〉 어린이집 이용 가능성: 일요일 및 기타 휴일보육

단위: %(명)

구분	매우 높음	어느 정도 가능	어려움	매우 어려움	계(수)	$\chi^2(df)$
전체	1.6	6.0	29.3	63.0	100.0(2,003)	
지역						
대도시	1.1	4.7	21.0	73.1	100.0(737)	62.9(6) ^{***}
중소도시	2.5	7.9	33.1	56.6	100.0(850)	
읍·면	0.7	4.6	36.4	58.3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1	5.7	31.2	61.0	100.0(619)	
휴직중	-	12.9	22.6	64.5	100.0(31)	-
미취업	1.4	6.0	28.5	64.1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V-2-7〉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야간보육

단위: %(명)

구분	보육도우미 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 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지역 내 거점형 전담 보육 장소	계(수)	$\chi^2(df)$
전체	30.3	2.3	60.7	6.7	100.0(2,003)	
지역						
대도시	30.6	2.2	63.4	3.8	100.0(738)	18.7(6) ^{**}
중소도시	30.8	2.4	57.9	8.9	100.0(850)	
읍·면	28.4	2.7	61.7	7.2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30.4	1.1	61.9	6.6	100.0(619)	
휴직중	32.3	-	64.5	3.2	100.0(31)	-
미취업	30.2	3.0	60.0	6.8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V-2-8〉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토요일보육

단위: %(명)

구분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지역 내 거점형 전담 보육 장소	계(수)	$\chi^2(df)$
전체	21.1	1.7	69.2	8.0	100.0(2,003)	
지역						
대도시	24.3	2.0	69.1	4.6	100.0(738)	25.8(6) ^{***}
중소도시	20.1	1.4	67.9	10.6	100.0(850)	
읍·면	17.6	1.7	72.0	8.7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0.0	1.3	70.3	8.4	100.0(619)	
휴직중	22.6	3.2	67.7	6.5	100.0(31)	-
미취업	21.6	1.9	68.7	7.8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01$

〈부표 V-2-9〉 보육서비스별 좋은 형태: 일요일 등 휴일보육

단위: %(명)

구분	보육도우미가 아이 집에서	보육도우미가 자기 집에서	현재 다니는 어린이집	지역 내 거점형 전담 보육 장소	계(수)	$\chi^2(df)$
전체	23.4	2.0	64.5	10.1	100.0(2,003)	
지역						
대도시	25.6	2.3	65.9	6.2	100.0(738)	21.6(6) ^{**}
중소도시	22.6	1.9	62.8	12.7	100.0(850)	
읍·면	21.2	1.7	65.3	11.8	100.0(415)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2.6	1.5	66.7	9.2	100.0(619)	
휴직중	22.6	3.2	67.7	6.5	100.0(31)	-
미취업	23.8	2.2	63.3	10.7	100.0(1,339)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 $p < .01$

〈부표 V-2-10〉 정부지원금의 출산 제고 효과 정도(4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		영아 기본보육료		양육 수당 (중앙정부)		양육수당 (지방정부)		소득공제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평균	(수)
전체	2.6	(2,003)	2.7	(2,003)	2.8	(2,003)	3.0	(2,003)	2.4	(2,003)
모 취업 여부										
취업중	2.5	(613)	2.5	(564)	2.4	(519)	2.5	(469)	2.2	(574)
휴직중	2.7	(31)	2.8	(30)	2.5	(30)	2.5	(28)	2.0	(31)
미취업	2.6	(1,320)	2.5	(1,249)	2.5	(1,162)	2.5	(1,059)	2.1	(1,213)
F	0.9(2)		2.1(2)		1.4(2)		0.07(2)		0.4(2)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7	(149)	2.7	(146)	2.5	(136)	2.7	(126)	2.2	(133)
150~199만원	2.6	(230)	2.6	(222)	2.4	(204)	2.5	(196)	2.2	(206)
200~249만원	2.6	(406)	2.5	(387)	2.5	(362)	2.5	(327)	2.1	(365)
250~299만원	2.6	(346)	2.5	(322)	2.5	(300)	2.5	(269)	2.2	(324)
300~349만원	2.5	(344)	2.4	(327)	2.4	(304)	2.4	(272)	2.1	(329)
350~399만원	2.4	(155)	2.4	(140)	2.3	(130)	2.5	(117)	2.2	(147)
400~449만원	2.5	(146)	2.5	(131)	2.5	(117)	2.5	(107)	2.2	(136)
450만원 이상	2.5	(203)	2.7	(203)	2.9	(203)	3.1	(203)	2.4	(203)
F	1.7(7)		0.5(7)		0.9(7)		0.8(7)		0.6(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부표 VII-2-1〉 취업모의 경우 기관 이용 시 겪는 애로 정도: 5점 척도

단위: 점(명)

구분	이른 출근 시간	늦은 퇴근 시간	예상치 못한 야간근무	아이가 아플 때	기관 부모역할 요구	(수)		
전체	2.1	2.2	2.2	2.5	2.5	(627)		
연령								
영아	2.1	2.2	2.2	2.6	2.5	(327)		
유아	2.1	2.1	2.1	2.4	2.4	(300)		
t	0.05	0.8	1.0	1.8	0.3			
가구소득								
149만원 이하	2.0	2.2	2.2	3.0	2.6	(33)		
150~199만원	2.0	2.2	2.3	2.4	2.5	(38)		
200~249만원	1.9	2.1	2.0	2.3	2.2	(79)		
250~299만원	2.0	1.9	1.9	2.4	2.5	(104)		
300~349만원	2.0	2.1	2.2	2.5	2.4	(114)		
350~399만원	2.0	2.2	2.1	2.4	2.4	(64)		
400~449만원	2.3	2.1	2.2	2.6	2.4	(64)		
450만원 이상	2.3	2.5	2.4	2.6	2.6	(130)		
F	2.1(7)		3.1(7)		3.2(7)		1.7(7)	1.1(7)

자료: 본 연구를 위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결과임.

부록 2. 영유아 부모 조사표

2011년도 영유아부모 조사

지역 번호	지역 구분	가구조사 일련번호

주 소	____ 시/도 ____ 구/시/군 ____ 동/읍/면 ____ 통/리 ____ 번지 ____ 호 (____ 아파트 ____ 동 ____ 호)		
가구주성명		응답자성명	상품권수령 확인
전화번호	집: _____ 핸드폰: _____		
방문횟수	방문일시	방문결과	지도원 검토결과
1	__월 __일 __시 __분~ __시 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2	__월 __일 __시 __분~ __시 __분	<input type="checkbox"/> ① 완료 <input type="checkbox"/> ④ 응답거절 <input type="checkbox"/> ② 외출 <input type="checkbox"/> ⑤ 기타(____) <input type="checkbox"/> ③ 장기출타	<input type="checkbox"/> 양호 <input type="checkbox"/> 약간 수정 <input type="checkbox"/> 재방문 지시
조사원 성명	(인)		지도원 성명 (인)

육 아 정 책 연 구 소

1. 가구 및 부모 특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1. 현재 살고 있는 가구의 가구원 수를 기입하십시오. 가구원수 ()명
2. 이 닥의 보육대상 아동 수를 아동 구분별로 각각 기입하십시오. (* 2011년 1월 1일 기준, 대상이 없는 경우는 0을 기입하십시오.)

구분	① 영아 (36개월 미만)	② 유아 (만3세 이상 미취학)	③ 초등학교 1, 2학년	④ 초등학교 3학년 이상	⑤ 전체
명수	명	명	명	명	명
생년월일 1)					/
2)					
3)					

1

2

① ② ③ ④ ⑤

3. 가족유형을 기입하십시오.
- ① 부부+자녀 ② 한부모+자녀 ③ 3세대 이상 가족 ④ (한)조부모+손자녀
⑤ 친인척+자녀 ⑥ 기타

3

4. 조부모 동거여부를 기입하십시오.(※ 예는 1, 아니오는 0을 기록하십시오.)
- ① 친조부 동거 ② 친조모 동거 ③ 외조부 동거 ④ 외조모 동거
5. 지난 3개월 간 귀댁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얼마나 되는지요?(소득은 세금 공제전의 금액, 금융소득, 기타소득 포함)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만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4

5

5-1. 가구소득 총계 월 _____ 만원

5-1 만원

6. 귀댁의 지난 3개월 동안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저축제외)
- 월 _____ 만원

6 만원

7. 귀댁은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받고 계십니까?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② 차상위 ③ 일반

7

8. 아동의 부모에 관한 질문입니다.(※ 부재는 비해당 8,88입니다)

	부	모
1) 부모의 혼인상태 ① 유배우(사실혼포함) ② 이혼 ③ 사별 ④ 별거(이혼전제 별거) ⑤ 기타()		
2) 학력 ① 고등학교 이하 ② 전문대 졸업 ③ 4년제 대학 졸업 ④ 대학원 졸업		
3) 근로형태 ① 규칙적으로 출퇴근 ② 불규칙하게 출퇴근 ③ 재택근무 ④ 농어민 ⑤ 휴직 중 ⑥ 무직(학생, 주부, 군인포함) ⑦ 모름		
4) 직업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준전문가 포함) ③ 사무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직 종사자 ⑥ 농·임·어업숙련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⑧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 종사자 ⑩ 기타() ⑪ 무직(학생, 주부, 군인포함)		

8

1)

2)

3)

4)

II. 자녀 양육 및 지원 관련 질문입니다.

1. 귀하는 몇 명의 자녀를 두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명 1

2. 앞으로 자녀를 더 낳을 계획이 있으십니까?
 ① 있다 (☞ 2-1번 질문으로) ② 없다(☞ 2-2번 질문으로)
 2-1 몇 명의 자녀를 더 두실 계획입니까?(※ 현재 임신 중인 자녀도 포함합니다)
 ()명 (☞ 3번 질문으로) 2-1 명
 2-2 자녀를 낳을 계획이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미취학 자녀)양육비용 부담 때문에 ② (취학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에
 ③ 직장생활로 바빠서 ④ 건강이 안 좋아서
 ⑤ 현재 자녀로 충분해서 ⑥ 부모 나이가 많아서
 ⑦ 기타() 2-2

- 2-3. 영유아 보육비·유치원비를 모두 지원 한다면 자녀를 더 낳으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① 전혀 없다 ② 거의 없다 ③ 조금 있다 2-3
 ④ 매우 많다 ⑤ 잘 모르겠다

3. 출산장려금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① 없다(☞ 4번 질문으로) ② 있다(금액: 총 만원)
 3-1. 출산장려금 제도가 자녀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쳤습니까?
 ① 전혀 아니다 ② 아니다 ③ 어느 정도 그렇다 ④ 매우 그렇다 3-1
 ⑤ 비해당

4. 육아 관련 지식이나 조언이 필요할 경우 주로 누구(어디)의 도움을 받으십니까?
 ① 집안어른 ② 친구 동료 ③ 육아관련 사이트 ④ 육아관련 전문가 4
 ⑤ 관련 서적 ⑥ 기타() ⑦ 없음

5. 아이를 기르면서 육아 관련 지식이나 정보는 충분히 얻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불충분 ② 불충분 ③ 보통 ④ 충분 ⑤ 매우 충분 5

6. 귀하는 보육정보(지원)센터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활동을 한다는 것을 알고 이용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용해 보았다면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었습니까?
 (※ 보육정보(지원)센터: 시·도 또는 구에서 운영하며, 영·유아기 자녀 양육 및 보육에 대한 정보와 놀이, 체험공간을 제공함.)

구분	6-1) 인지	6-2) 이용경험	6-3) 이용시 자녀양육에 도움
		① 안다 ② 모른다	① 자주 이용 ② 가끔 이용 ③ 1-2번 이용 경험 ④ 이용 경험 없음 (☞7번 문항으로)
1) 정보제공			
2) 상담, 진단			
3) 아이와 함께하는 프로그램			
4) 장난감 도서관			
5) 공동육아나눔터			

6

	6-1	6-2	6-3
1)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2)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3)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4)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5)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input type="text"/>

17. 평소 자녀들보기(밥 먹고 옷 입는 것 도와주기, 함께 놀아주기, 이플 때 돌보아 주기, 등 학교 도와주기 등)에 남편이 어느 정도 참여하십니까?(한 부모, 결손 3세대인 경우 비 해당 8)

구분	① 전혀 안 함	② 1달에 1~2회	③ 1주일에 1-2회	④ 1주일에 3~4회	⑤ 매일
놀아주기					
공부 봐 주기					
밥먹고 옷입기 도와주기					

17

18. 다음은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 및 정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항을 읽고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에 해당하는 번호를 써 주십시오.

구분	어머니		아버지	
	① 전혀 아님 ③ 보통 ⑤ 자주 그렇다	② 아닌 편 ④ 가끔 그렇다 ⑧ 비해당		
1) 자녀와 격의 없이 지내며 즐거움을 나누는 편이다				
2) 자녀의 필요와 관심을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고 느끼시는 편이다				
3) 무엇을 참으려다가 외락 화를 내거나 큰 소리를 치는 때가 있다				
4)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엄격하게 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편이다				
5) 아이 양육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혼란스러울 때가 많다				
6) 아이가 귀찮고 짜증스러울 때가 많다				
7) 아이가 장래에 잘 성장할 지 걱정된다				

18

1)		
2)		
3)		
4)		
5)		
6)		
7)		

19. 자녀 양육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제시된 두 보기(①, ②) 중 귀하의 생각과 더 일치하는 것 하나를 선택해 주십시오.

구분	보기
육아와 나의 인생의 중요성	<input type="checkbox"/> ① 육아도 중요하지만 나의 인생도 소중히 여기고 싶다. <input type="checkbox"/> ② 아이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내 인생을 희생할 수 있다.
글자와 숫자 가르치기	<input type="checkbox"/> ① 글자나 숫자는 빨리 가르치는 것이 좋다. <input type="checkbox"/> ② 글자나 숫자는 아이가 관심을 가진 후에 가르치는 것이 좋다.

19

III. 미취학 아동 중 보육·교육 기관 이용 아동에 대한 질문입니다.

※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선교원, 미술 학원, 영어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있다면 가장 나이가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하루 중 가장 오랜 시간 동안 다니고 있는 기관을 중심으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대상 아동 연령(1월1일 기준)을 기록합니다 ()세 성명 :

()세

1. 현재 이 아이가 다니고 있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어린이집·유치원명:)
- ① 국·공립어린이집 ②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③ 기타법인·단체어린이집
 ④ 민간어린이집(부모협동) ⑤ 가정어린이집(놀이방) ⑥ 직장어린이집
 ⑦ 국공립유치원 ⑧ 사립유치원 ⑨ 반일제이상 학원
 ⑩ 특기 및 보습학원, 문화센터 ⑪ 기타()

1

--

2. 이 아이가 현재 이용하는 기관에 다니는 가장 큰 이유(1가지)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서 ② 초등학교 준비를 위하여
- ③ 특기교육을 위하여 ④ 취업 등으로 부모가 돌보기 어려워서
- ⑤ 사회성 발달을 위하여 ⑥ 같이 놀 아이들이 없어서
- ⑦ 기타()

2

3. 현재 이 아이는 이용하는 기관에 매일 갑니까?

- 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토요일 매주) ②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토요일 격주)
- ③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④ 일주일에 3~4번 ⑤ 일주일에 1~2번

3

4. 평소 아이를 기관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일을 주로 누가 하십니까?(기관차량 이용자인 경우는 집에서 차량으로, 차량에서 집으로 데려오는 사람)

- ① 주로 엄마 ② 주로 아빠
- ③ 주로 조부모 및 친인척 ④ 주로 비혈연 보육도우미
- ⑤ 아이 혼자서 등/하원 ⑥ 기타(무엇:)

4

5. 평상시에 이 아이가 보육 또는 교육기관을 이용하는 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 이용시간은 집에서 출발하는 시간부터 집에 도착하는 시간을 작성합니다.)

예: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인 경우, 07시 30분 ~ 19시 30분
()시 ()분 ~ ()시 ()분

등원시간	
하원시간	

6. 매월 순수 보육료 또는 교육비는 얼마입니까? 또한 이외에 추가로 납부한 금액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조사원은 년 1회 또는 분기별로 낸 경우 월 평균 값으로 환산하여 기재하고, 오른쪽 칸에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입학금(입소료)는 제외합니다)

항목	금액
일정한 월 보육료 및 교육비	()천원
기타 납부 금액(특별활동비 포함)	()천원
총계	()천원

6

				천원
				천원
계				천원

7. 이 아이는 국가로부터 월 보육료나 교육비를 감면받고 있습니까?

(* 영아 기본보육료, 방문학습도우미는 제외합니다)

- ① 전액 면제 →
- ② 일부 감면
- ③ 아무런 혜택 없음

7-1. 월 지원액은 얼마입니까? (* 조사원은 오른쪽 칸에 천원 단위로 기입하십시오.)
월 ()천원

7

7-1 천원

8. 귀댁의 생활수준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이 아이를 위해서 매월 보육 또는 교육 기관에 내는 비용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비용을 전혀 안 내는 아동은 비해당)

- ① 매우 부담된다 ② 부담되는 편이다 ③ 적당하다
 - ④ 부담되지 않는다 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⑥ 비해당
- (☞ 특기·보습학원 이용자는 본 문항 응답 후 IV. 가정내 보육 질문으로)

8

9. 현재 이 자녀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이용하십니까? 이용한다면, 사유는 무엇입니까?

구분	이용 여부	이용 시 사유	
	① 상시 이용 ② 가끔 이용 ③ 이용한적 없음	① 직장, 근로 ③ 가족간호 ⑤ 여가 등 기타	② 다른 자녀 보호 ④ 경조사 ⑥ 기타 () ⑧ 비해당
1) 오전 연장보육			
2) 야간보육			
3) 24시간 보육			
4) 토요일보육			
5) 일요일 등 휴일보육			

9

1)		
2)		
3)		
4)		
5)		

10. 부모사정으로 이 아이가 평소 이용하는 시간을 초과하여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① 시간을 초과하여 이용하지 않음 ② 월 1회 이하
- ③ 월 2~4회 이하 ④ 주 2회 이상

10

10-1 초과보육시 부모의 가장 빈번한 사정은 무엇입니까?

- ① 취업부모 시간연장 근무 ② 가족에게 긴급한 상황
- ③ 부모의 여가활동 ④ 기타(무엇:)

10-1

11. 보육 또는 교육기관 이용으로 다음과 같은 일에 가정이나 부모가 도움을 받았습니까?

변화내용	① 전혀 그렇지 않음	② 그렇지 않음	③ 보통	④ 그러함	⑤ 매우 그러함
1) 취업 및 구직(신규)					
2) 직장에서 안정감 증대					
3) 업무(가사)능력 향상					
4) 학업 및 취업훈련					
5) 여가·취미활동					
6) 육아기술·지식 확대					
7) 육아 고민 해결					
8) 양육 스트레스 해소					
9) 가족갈등 완화(해소)					

11

1)
2)
3)
4)
5)
6)
7)
8)
9)

12. 이 아이가 이용하는 기관의 다음의 항목의 서비스 수준에 대해 만족합니까?.

변화내용	① 매우 미흡	② 미흡	③ 보통	④ 만족	⑤ 매우 만족
1) 위생, 건강관리					
2) 급·간식					
3) 안전한 보호					
4) 교육프로그램 내용					
5) 운영시간					

11

1)
2)
3)
4)
5)

13. (어머니가 취업 중인 경우) 기관 이용시 겪는 애로의 정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표시해 주세요. (전업모일 경우 비해당 ⑥)

구분	① 거의 없음	② 경미	③ 약간	④ 심각	⑤ 매우 심각
1) 회사가 일찍 시작하기 때문에 아침시간 육아지원기관 이용 애로					
2) 회사가 퇴근시간이 늦기 때문에 저녁시간 육아지원기관 이용 애로					
3) 예상치 못했던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 겪는 어려움					
4) 아이가 아플 때 육아지원기관에서 돌봄 지원이 어려워서 겪는 애로					
5) 육아지원기관에서 부모참여 등 부모역할을 요구할 때 참여하지 못하는 애로					

13

1)
2)
3)
4)
5)

※ 현재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는 경우 조사하지 않습니다.)

1. 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 평가인증을 받았습니까?
 ① 평가인증을 받았다 ② 평가인증을 안 받았다
 ③ 평가인증 받았는지 아닌지 잘 모른다 ④ 평가인증이 무엇인지 모른다 1
2. (2011. 1. 1 기준 35개월 이하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에게만 질문) 만약에 이 자녀가 어린이집을 안 다니는 경우 정부에서 0세는 월 20만원, 1세 15만원, 2세아 10만원씩을 가정에 양육수당으로 준다면 이 자녀를 어린이집을 계속 보내시겠습니까?
 ① 계속 보냄(→2-1번 문항으로) ②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봄
 ③ 다른 곳에 보냄 ④ 모르겠음 ⑤ 비해당 2
- 2-1. (계속 보내겠다는 경우) 만약에 양육수당을 보육료(0세 39만원, 1세 35만원, 2세 28만원)으로 늘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① 그래도 계속 보냄 ② 어린이집 이용을 중단하고 집에서 돌봄
 ③ 다른 곳에 보냄 ④ 모르겠음 ⑤ 비해당 2-1

IV. 가정내 보육에 대한 질문입니다.

※ 조부모가 돌봐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현재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자녀를 돌보아 주고 계십니까? 다음 중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모두 표시해 주세요(예는 1, 아니오는 0을 기입합니다)
 ① 동거 시부모 ② 비동거 시부모 1

--	--

 ③ 동거 친정부모 ④ 비동거 친정부모 2

--	--

세
2. 해당 자녀는 몇 살이고, 주로 조부모님 댁에 살고 있습니까? ()세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3
3. 기관이나 다른 개인 서비스를 중복으로 이용하고 있습니까?
 ① 혈연 단독 ②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보완
 ③ 비혈연(파출부 등) 보육을 보완 ④ 부모 양육을 지원
 ⑤ 기타() 4
4. 조부모가 자녀를 정기적으로 돌보아 줍니까? (비해당은 8)
 ① 예, 1주일에 며칠을 정기적으로 돌보아 줍니다.
 ② 아니오, 사정이 있을 시에만 일시적으로 돌보아 줍니다. 5
5. 일주일 동안 보통 어떻게 아이를 맡기십니까?
 ① 월요일~일요일 ② 월요일~토요일
 ③ 월요일~금요일 ④ 주당 2-3회
 ⑤ 불규칙적으로(간헐적으로) → 6번 문항으로 ⑥ 기타() ⑧ 비해당 5-1

--	--

시간
- 5-1. 규칙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 평일에 이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약 ()시간 정도 (비해당은 88)

6. 조부모에게 비용을 지불하십니까?

- ① 정기적으로 지불
- ② 부정기적으로 지불
- ③ 현물로 지불
- ④ 지불 안 함

6-1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얼마입니까?
(* 천원 단위로 기입, 비해당은 8888)

월 () 천원

6						
6-1						천원

7. 조부모 보육에서 겪는 다음의 애로는 1-5점 중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① 경미	②	③	④	⑤ 심각
1) 양육방침 갈등					
2) 부모의 여가시간 부재 등으로 삶의 질 하락					
3) 부모의 건강과 노화에 부담					
4) 비용 지불로 경제적 부담					

7	
1)	
2)	
3)	
4)	

*** 친척이나 비혈연인이 대가를 받고 돌봐주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현재 비혈연에게 보육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자녀를 맡기고 있습니까?
있다면 누구입니까?

- ① 동거 비혈연(주5일 이상) ② 아이돌보미 ③ 베이비시터 ④ 가정보육교사
- ⑤ 파출부·가사도우미 ⑥ 이웃 ⑦ 기타()

1	
---	--

2. 해당 자녀는 몇 살이고, 주로 돌봐주는 사람의 집에서 살고 있습니까? ()세

- ① 예 ② 아니오 ③ 비해당

2		세

3. 일주일동안 보통 어떻게 아이를 맡기십니까?

- ① 월요일~일요일 ② 월요일~토요일
- ③ 월요일~금요일 ④ 주 당 2-3회
- ⑤ 불규칙적으로(간헐적으로) ⑥ 기타()

3	
---	--

3-1 규칙적으로 아이를 맡기는 경우, 평일 이용하는 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비해당 88)
평일 ()시간 정도

3-1			시간
-----	--	--	----

4. 기관이나 다른 개인 서비스와의 중복입니까?

- ① 비혈연 단독 ② 반일제 이상 기관 이용을 보완
- ③ 조부모·친인척 보육을 보완 ④ 부모 양육을 지원 ⑤ 기타()

4	
---	--

5. 이 아이를 돌보는 비혈연인에게 지불하는 돈은 월평균 모두 얼마나 됩니까?

월 ()천원

5						천원
---	--	--	--	--	--	----

6. 이 아이를 돌봐 주는 분의 자격 여부는 어떠한지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보육교사 ② 유치원교사 ③ 아이돌보미(건강가정지원센터)
- ④ 사설업체 파견 베이비시터 ⑤ 없음 ⑥ 기타()

6	
---	--

7. 비혈연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 ① 보육서비스인력 자질 향상 ② 보육비용 지원(소득공제 포함)
- ③ 교육 내용 보강 ④ 기타()

7	
---	--

8. 비혈연 이용에서 만족하는 비는 1~5점 중 각각 어느 정도 입니까?

구분	① 약간 만족	②	③	④	⑤ 매우 만족
1) 부모 사정에 따라 시간 조정이 가능					
2) 다른 장소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것					
3) 우리 아이만 돌보는 것					
4) 병원가기 등 필요한 일을 대신해 주는 것					
5) 가사 일을 해 주는 것					

8

1)

2)

3)

4)

5)

※ 조부모나 비혈연인이 (기관에 안 보내고) 전적으로 돌봐주는 경우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1. 주변에 있는 기관에 아이를 보내지 않고 조부모나 베이비시터가 돌보는 가장 큰 이유 (1가지)는 무엇입니까?

- ① 아이가 너무 어려서 기관에 적응하기 힘들까봐
- ② 비용이 부담되어서
- ③ 원하는 시간에 이용하기 어려워서
- ④ 매일 데리고 다니기 번거로워서
- ⑤ 시설 환경이 열악하여서
- ⑥ 한사람이 여러 아이를 같이 돌보는 것이 불안하여서
- ⑧ 환경이 바뀌면 정서적으로 안 좋을 것 같아서
- ⑨ 이용 희망 기관에 대기자가 많아서
- ⑩ 주변에 마땅한 기관이 없어서
- ⑪ 기타()
- ⑫ 비해당

1)

VIII. 초등학생 1, 2학년 아동에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 해당아동 학년과 연령 ()학년 ()세
(초등학생 1, 2학년 아동이 둘 이상인 경우, 어린 자녀를 기준으로 합니다)

학년 나이

1. 이 초등학생 자녀가 학교가 끝난 후에 주로 다니는 곳은 어디입니까?

- ① 유치원, 어린이집 방과후 프로그램
- ② 학원
- ③ 학교 방과후 보육
- ④ 학교 방과후 특기·적성 프로그램
- ⑤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복지관, 주민센터, 청소년 아카데미 등 구립/시립기관
- ⑥ 문화센터 등 사설 기관
- ⑦ 다니는 곳 없음

1)

2. 평일 낮동안 이 초등학생 자녀가 집에 있을 때는 주로 누가 돌보니까?

- ① 부모
- ② 조부모
- ③ 형제자매
- ④ 친인척
- ⑤ 비혈연인(파출부, 가정부 등)
- ⑥ 돌보는 사람 없이 혼자 지냄
- ⑦ 낮에 집에 있지 않음

2)

3. 부모 취업, 외출 등으로 초등학생 자녀가 평일 집에서 성인 보호자 없이 혼자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평균 ()시간

3) 시간

4. (취업도 경우) 초등학교 저학년생 양육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무엇입니까?

(1순위: , 2순위:)

- 1) 학부모 모임 참여 어려움
- 2) 학교 방문 요구 시 어려움
- 3) 준비물 등 요구 들어주기
- 4) 토요일, 재량 휴일 등에 대처하기
- 5) 아이 공부 봐 주기
- 6) 아이의 부적응 및 또래 집단 소외
- 7) 기타()
- 8) 비해당(미취업 등)

1순위 2순위

4)

2-1. (직장어린이집이 있는데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거리가 너무 멀어서
- ② 이용 가능 시간이 적절하지 않아서
- ③ 보육서비스의 질이 맘에 안 들어서
- ④ 학교준비로 교육이 더 필요해서
- ⑤ 보육료가 비싸서
- ⑥ 아이가 싫어해서
- ⑦ 직장 일에 방해 받을 것 같아서
- ⑧ 대기자가 많아서
- ⑨ 기타()
- ⓧ 비해당

2-1

3. 일·가정 양립 및 애로사항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문항에 표시해 주세요.

구분	① 전혀 아님	② 별로 아님	③ 약간 그려함	④ 매우 그려함
1) 직장에서 아이 걱정을 하느라 근무에 지장을 받은 적이 있다				
2) 아이 양육문제로 필요시 근무 시간을 쉽게 조정할 수 있다				
3) 아이 양육문제로 필요시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 있다				
4) 직장에서 직원이 자녀양육문제로 어려워서 도움을 요청하면 이를 지원해준다				
5) 직장에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아이를 돌봐줄 보육자가 있다				
6) 아이 때문에 야간근무와 회의참석을 거의 못한다				
7) 지난 3개월 동안 아이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겨 직장에 정시 출퇴근을 못한 경우가 있다				
8) 자녀양육 문제로 인해서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해 본 적이 있다				

3
1)
2)
3)
4)
5)
6)
7)
8)

4. 아이가 아플 때 이 아이를 주로 어디에서 누가 돌봐줍니까?

- ① 부모가 직장에서 양해를 얻고 직접 돌본다
- ② 부모의 휴가(연차)를 사용하여 아이를 돌본다
- ③ 교사가 병원에 데리고 간다
- ④ 다니는 기관 특정장소에서 보호한다
- ⑤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부탁한다
- ⑥ 보육도우미를 이용한다
- ⑦ 기타()

4

5. 일 하면서 이동을 양육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아이 맡기는 비용이 많이 들
- ②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음
- ③ 근로시간과 아이를 맡기는 시설의 시간이 맞지 않음
- ④ 과도한 직장일로 인하여 아이와 시간을 보낼 수 없음
- ⑤ 긴급상황 시 도움을 받을 곳이 없음
- ⑥ 어려움이 없음
- ⑦ 기타()

5

6. 토요일이나 휴일에 보육이 필요할 때 주로 어디에서 누가 돌봐줍니까?

- ① 조부모 등 친인척에게 부탁한다
- ② 보육도우미를 이용한다
- ③ 어린이집을 이용한다
- ④ 데리고 간다
- ⑤ 기타(적용 것 :)

6

7. 직장에서 근로자 출산 양육 지원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제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시차출근제
- ② 육아휴직
-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④ 원격·재택근무
- ⑤ 보육비 지원
- ⑥ 직장어린이집 설치
- ⑦ 산모수유실 설치 및 수유시간 부여
- ⑧ 기타()

7

◆ 질문에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일·가정 양립, 자녀양육 지원에 대한 질문입니다

영역		질문 내용
자녀양육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자녀는 어떻게 양육하고 계십니까? - 부모 도움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형태로 받고 있나요? - 남편의 양육 부담 분담은 어느 정도 인가요? - 취업시 일, 가사 자녀 양육 시간 사용은 어떠한가요?
일·가정 양립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가정 양립에서 가장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세요 - 취업 중단 경험이 있습니까? - 취업 중단 고비를 넘긴 경험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보육 서비스 이용 애로 사항	제도 전반	- 공식, 비공식 보육, 이용시설 등 서비스 이용 지원에 대한 전반적 애로와 불만을 질문합니다.
	보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업모를 지원하는 보육제도의 한계점 및 애로사항은 무엇인가요?. - 노동시간 대비 보육서비스 이용 가능 시간이 적절합니까? - 시설보육서비스가 만족한 수준인가요? - 보육비용 지원은 만족합니까? - 보육서비스에서 개선 희망 사항은 무엇입니까?
	비용 관련	- 전체적 자녀 양육 비용 부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직장내 양육 지원 현황, 수혜 및 수요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자 인식 등 사업장내 가족 친화 문화는 어떠한가요? - 직장내 자녀양육 지원제도 도입, 실시 등 전반적 수준은 어떠한지? 비정규직의 적용 문제는 어떠한지? - 사용자는 이러한 제도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 근로자 관점에서 성과는 무엇이고 또 아쉬운 점은 무엇입니까?
	보육 서비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장에 보육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까? - 사업장에서 보육서비스 지원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업장 보육서비스의 장단점을 말씀해 주세요
	육아 휴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육아휴직 제도 사용이 원활합니까? - 아버지 휴가나 휴직은 어떠한지? - 육아휴직 활성화 조건은 무엇인지? - 육아휴직 기간, 급여, 대상 자녀 연령은 적절한가요? - 육아휴직 경험으로, 장단점, 애로 등을 말씀해 주세요.

영역		질문 내용
직장내 양육 지원 현황, 수혜 및 수요	유연 근로 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까? - 도입시 어떤 제도가 실시되고 있습니까? 각 유연근로제 사용자 중 자녀양육 목적은 어느 정도 인가요? - 바라는 유연근로제는 무엇입니까? 실시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고, 실시를 위하여 정부에 바라는 바는 무엇입니까? - 귀 사업장에서 육아기 단축 근로는 어떠합니까? 청구한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정책 수요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반적 자녀 양육 지원정책 만족도 - 자녀 양육과 관련하여 출산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보육서비스, 휴직제도, 근로유연제 중 정책 선호도, 정책 패키지, 출산 의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 향후 정부정책 중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질문합니다.

부록 4. 보육정보센터 이용자 조사표

응답내용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자료 작성의 목적 외에는 사용되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됩니다.

ID 번호				
----------	--	--	--	--

출산수준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조사 (보육정보센터 방문 이용자 대상) -영유아플라자, 보육지원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이용-

안녕하십니까?

육아정책연구소(www.kicce.re.kr)는 육아관련 정책연구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산하 국가 연구기관입니다.

본 연구소에서는 2011도 연구과제로 「출산수준제고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의 일환으로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 방문 이용 부모를 대상으로 보육정보센터 이용 실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하게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협조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 10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조복희

조사 및 질문지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사 담당> (주)코리아리서치센터 오미영 부장 02-3415-5170
<연구 담당>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육아정책연구소 출산제고 연구팀
문의처: 송신영 연구원 ☎ 02) 398 - 7709 FAX 02) 730-3319 song@kicce.re.kr

SQ1. 지역	1) 중앙	2) 서울	3) 인천	4) 경기	5) 강원	6) 충청	7) 경상
SQ2. 센터명	() 보육정보센터						
SQ3. 막내 자녀 연령	1) 만 0세(1~11개월)			2) 만 1세(12~23개월)			
	3) 만 2세(24~35개월)			4) 만 3세(36~47개월)			
	5) 만 4세(48~59개월)			6) 만 5세(60~71개월)			
SQ4. 조사 시간	1) 평일 오전 (시 분)		2) 평일 오후 (시 분)		3) 평일 야간 (시 분)		4) 주말 (시 분)
	시·도		시·군·구		동·읍·면		
SQ5. 주소							
SQ6. 이름							
SQ7. 연락처							

본 조사는 면접 지침 사항을 준수하여 진행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면접원 성명	S/V확인	검증원	코딩원

육아정책연구소

A7. 다음은 보육정보센터(영유아블리자)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해당 번호를 빈칸에 적어주세요.

보기	이용 사항							A7-7. 미 이용 이유
	A7-1. 이용 빈도	A7-2. 이용 시간대	A7-3. 1회 이용시간	A7-4. 1회 평균 이용 비용	A7-5. 육아에 도움정도	A7-6.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		
모기	A7-0. 이용 경험 1) 주중 1-2회 2) 주중 3-4회 3) 거의 매일 4) 주말(토, 일) 5) 간헐적으로 6) 이용하지 않음	A7-2. 이용 시간대 1) 오전 10~12시 2) 점심시간 대 3) 오후 1시~3시 4) 오후 3시~6시 5) 오후 6시이후	A7-3. 1회 이용시간 1) 1시간 이내 2) 2-3시간 미만 3) 3-5시간 미만 4) 5시간 이상 5) 비 해당	A7-4. 1회 평균 이용 비용 1) 무료 2) 500원 미만 3) 500원~1만원 미만 4) 1만원~3만원 미만 5) 3만원 이상 6) 비 해당	A7-5. 육아에 도움정도 1) 전혀 도움 안됨 2) 별로 도움 안됨 3) 보통 4) 조금 도움됨 5) 매우 도움 6) 비 해당	A7-6.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사항 1) 접근성 부족 2) 스크린도 이용 기회 부족 3) 인력 구성/전문성 부족 4) 공간 및 환경 미비 5) 장비, 재료 불충분 6) 이용 비용 부담 7) 이용 가능 요일 및 시간제한	A7-7. 미 이용 이유 1) 프로그램 없음 2) 낮은 프로그램수준 3) 비용 부담 4) 시간 안 맞음 5) 장비, 재료 불충분 6) 인력에 대한 불만 7) 기타()	
1) 시간정보								
2) 장난감 도서관								
3) 문헌 및 자료 도서관								
4) 체험 활동실								
5) 각종 육아지원 프로그램 (신체발달프로그램 등)								
6) 자녀 검사, 상담 (놀이치료 등)								
7) 다양한 가족행사 (투지력 등)								
8) 부모교육								
9) 맘카페								
10) 기타()								

A8. 귀하는 보육정보센터(서울: 영유아플라자)에서 제공하는 방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육아에 관한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 응답)

- 1) 매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 2) 비교적 매우 충분한 지원을 받고 있다
- 3)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수준이 아쉽다
- 4) 전혀 유용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A9. 방문서비스 이용자로서 보육정보센터(서울: 영유아플라자)의 개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 1) 종사자 수 확충
- 2) 종사자의 서비스 마인드 제고
- 3) 보육정보센터 공간 확대
- 4) 설비 및 교재교구 개선
- 5) 접근성 제고(보육정보센터 설립 확충)
- 6) 기타(_____)

A10. 보육정보센터 외에 정보 또는 도움을 얻기 위하여 다른 기관도 방문하여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이용하는 곳을 모두 기록해 주시고 이용 빈도를 체크해주세요.

A10-2. 이용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기관 당 이용하는 프로그램을 것을 3순위까지 응답해 주세요.

보기	A10-1. 이용 빈도						A10-2. 프로그램		
	1	2	3	4	5	6	1순위	2순위	3순위
	1) 주중 1~2회 2) 주중 3~4회 3) 거의 매일 4) 주말(토, 일) 5) 간헐적으로 6) 이용하지 않음						1) 자녀상담프로그램 관련 2) 가족 프로그램 관련(한부모, 부부상담 등) 3) 자녀의 외국어(영어)프로그램 관련 4) 자녀 예체능 교육 프로그램 관련 5) 자녀의 독서프로그램 관련 6) 직업교육프로그램 관련(구직활동) 7) 기타(_____)		
1) 건강가정지원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2) 사회복지관	①	②	③	④	⑤	⑥			
3) 문화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4) 주민자치센터	①	②	③	④	⑤	⑥			
5) 학원	①	②	③	④	⑤	⑥			
6) 기타(_____)	①	②	③	④	⑤	⑥			

A11. 보육정보센터(영유아플라자)에서 앞으로 운영했다면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A12. 귀하는 이용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얼마나 자주 방문하십니까?

- 1) 주중 1~2회
- 2) 주중 3~4회
- 3) 거의 매일
- 4) 주말(토, 일)
- 5) 필요할 때 간헐적으로
- 6) 아예다 한번
- 7) 방문하지 않음(☞ A16번으로 이동)

A13. (A12번의 ①~⑥ 까지 응답한 경우) 귀하는 보육정보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주된 목적은 무엇입니까?(단수)

- 1) 정보 검색
- 2) 상담
- 3) 맘 카페
- 4) 기타(_____)

A14. (A12번의 ①~⑥ 까지 응답한 경우) 귀하는 보육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얻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가 충분합니까?

- 1) 매우 불충분
- 2) 불충분한 편
- 3) 충분한 편
- 4) 매우 충분

A15. (A12번의 ①~⑥ 까지 응답한 경우)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자로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A16. (모두 응답) 귀하는 이 보육정보센터 외에 온라인으로 자녀 양육 관련 정보를 구하는 데가 있습니까? 있다면 어디입니까?

- 1) 다른 보육정보센터 2) 아이사랑 포탈 3) 건강가정지원센터
 4) 정부부처(복지부, 교과부 등) 5) 포털사이트의 육아관련 카페 6) 기타()
 7) 없음(☞ A17번으로 이동)

A16-1. (A16에서 ①~⑥ 까지 응답한 경우) 보육정보센터 외에 다른 자녀양육 인터넷에 방문하는 주요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육아정보를 얻으려고 2) 홈페이지에서 다른 사이트로 링크(연결)하기 위하여
 3) 카페에 글을 올리려고 4) 또래 부모들과 교류하기 위하여
 5) 기타()

A17. (모두 응답) 귀하는 자녀양육 관련 인터넷 카페에 가입한 적이 있습니까?

- 1) 현재 가입하고 있다 2) 과거에 가입한 적이 있다 3) 가입한 적이 없다

A18. 귀하는 자녀양육을 위해 자녀와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과 육아품앗이를 한 적이 있습니까?

(※ 육아 품앗이(가족 품앗이) : 이웃끼리의 모임을 조성 서로 협력하여 자녀를 돌보는 것)

- 1) 있다 2) 없다(☞ A19번으로 이동)

A18-1. (자녀양육을 위해 자녀와 또래 아이를 둔 부모들과 육아품앗이를 한 적이 있다면) 주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A19. 학부모의 특성을 묻는 질문입니다

구분	보기	A19-1. 부	A19-2. 모
1) 연령	1) 20대 2) 30대 3) 40대 4) 50대 5) 기타()		
2) 직업	1) 사무직 2) 전문직 3) 기술직 4) 자영업 5) 일용직 6) 무직 7) 학생 8) 주부 9) 기타()		
3) 학력	1) 고졸 이하 2) 대졸(전문대 포함) 3) 대학원졸(수료 포함)		
5) 월평균 가구소득	1) 200만원 미만 2) 200~300만원 미만 3) 300~400만원 미만 4) 400만원~500만원 미만 5) 500만원 이상		
6) 가구형태	1) 부부+자녀 2) 부(또는 모)+자녀(한부모 가정) 3) 부부+자녀+조부모 4) 기타()		

A20. 귀하와 보육정보센터를 이용하는 아이와의 관계를 해당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 1) 모 2) 부 3) 조부모
 4) 친인척 5) 베이비시터(아이돌보미) 6) 기타()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보고 2011-24

출산수준 제고를 위한 육아지원 내실화 방안

발행일 2011년 12월

발행인 이 영

발행처 육아정책연구소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33 안국빌딩 6층, 7층, 10층, 11층

전화: 02) 730-7070 팩스: 02) 730-3313

<http://www.kicce.re.kr>

인쇄처 대명기획 02) 2263-1292

보고서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

ISBN 978-89-92396-90-5 93330